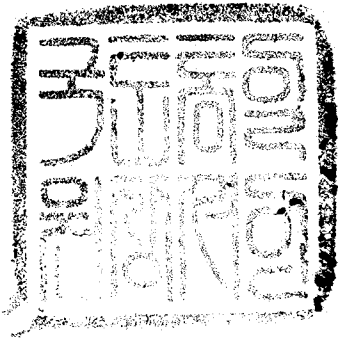


東西獨關係資料 II

東·西獨關係發展에 관한報告 및 文書

1989. 3.



國 土 統 一 院

本資料는 獨逸聯邦政府의 「獨逸内部關係省」이 發行한 1973年度版 『東西獨關係發展에 관한 報告 및 文書』(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 und Dokumentation)를 完譯한 것이다.

獨逸聯邦政府가 1970年初에 東西獨關係에 관한 第1次報告文書を 發行한 바 있으나 그 속에는 當時의 兩獨關係가 協商의 豫備段階에 不過했고 또 兩獨首相會談이 開催되기 前이었기 때문에 主要한 協商經緯 및 實質的 關係發展內容이 包含되지 않았다.

그런데 本資料는 1969年 獨逸社會民主黨(SPD)이 執權한 直後 먼저 歷史的인 東西獨首相의 相互訪問과 兩獨頂上會談을 主導하고 이를 基盤으로 하여 『兩獨間 우편 및 체신協定』, 『兩獨間 伯林通行協定』, 『兩獨間 交通條約』 그리고 最終的인 『兩獨間의 基本條約』을 締結하는 約 4年間的 東西獨協商過程과 關係發展狀況에 관한 主要한 內容을 거의 網羅하고 있다.

우리는 本資料를 通해서 理念과 體制를 超越한 共同의 原則, 即 歐洲平和, 人道主義 그리고 民族의 一體性에 立脚한 獨逸民族의 分斷克服努力을 보게 되며 主·客觀的 與件에서부터 모든 問題를 풀어나가는 現實主義와 合理主義의 슬기로움을 배울 수 있다.

本資料는 分斷國問題와 東西獨問題를 깊이 研究하는 專門家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安保問題, 統一問題, 南北對話問題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略 等に 關心을 갖고 있는 一般國民들과 大學生들에게도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

目 次

I 部 政治的 與件的 造成	13
1. 東·西獨 協商的 出發點 및 目標	15
2. 東·西獨 頂上會談을 위한 豫備接觸	15
3. 「에어폴트」頂上會談과 「카셀」頂上會談	18
4. 東·西獨間의 法的地位問題에 관한 雙方立場	20
5. 「獨·蘇條約」, 「獨·波條約」締結以後의 東獨의 協商態度 變化	21
6. 東·西獨間 實務會談 進行	22
7. 東·西獨間의 人的·物的 交流의 緩和措置	24
8. 東·西獨間 基本條約 締結을 위한 與件造成	24
9.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	26
10. 東·西獨關係의 發展	29
II 部 實際的 關係의 發展	31
1. 交易, 非商業性物資·支拂去來, 郵便 및 電信業務	33
가. 兩獨間 交易	33
1) 基本原則	33
2) 節 次	34
3) 發 展	35
나. 非商業性 物品 交流	36
1) 膳物用 小包交流	36
2) 旅行往來時 膳物攜帶	37
3) 이삿짐 및 遺産	38
다. 非商業性 支拂 및 清算去來	38
1) 發 展	38
2) 當座 支拂	38
3) 閉鎖計定	39
라. 郵便交流와 電信交流	39
1) 1945年 以後의 發展	39

2) 郵便協商의 經緯	40
3) 1970年 4月 29日字의 合意事項	41
4) 1971年 9月 30日字의 議定書	43
5) 基本條約에 의한 規制	44
2. 交通業務와 旅行交流	45
가. 交通業務	45
1) 1945年 以後의 發展	45
가) 航空交通	45
나) 鐵道交通	46
다) 道路交通	46
라) 水路交通	48
2) 交通協定	48
가) 前 文	49
나) 一般規定과 最終規定	49
다) 鐵道交通	50
라) 內陸船舶交通	51
마) 自動車交通	51
바) 海上交通	51
나. 旅行者交流	52
1) 獨逸聯邦共和國으로부터 獨逸民主共和國으로의 旅行者 交流	52
2) 獨逸民主共和國으로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旅行	53
3) 西伯林 居住人의 東獨旅行 및 東伯林旅行	54
3. 西伯林通行	55
가. 4大國의 伯林協定	55
나. 伯林通行 協定	55
1) 旅行者의 保護	55
2) 人的交流에 대한 業務節次 緩和	56
3) 物品交流의 緩和	57
4) 交通緩和	57
5) 通行委員會	58

4. 法的, 行政的, 人道的 및 實際的 問題.....	59
가. 兩獨 法院間의 法的 및 行政的 協調와 檢察廳間의 協調.....	59
나. 國籍問題	59
다. 行政接觸	60
1) 公共機關의 行政協調	60
2) 地方行政機關의 協調	61
3) 兩獨 境界地方問題	61
4) 西伯林市 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特殊問題 規制	62
가) 鐵道業務, 道路工事業務, 水路	62
나) 西伯林市의 下水道問題 및 쓰레기 處理에 관한 規制	62
다) 領土交換(包領問題)	62
〈結 論〉	63
라. 特殊한 경우의 支援	63
마. 保健 및 環境	64
1) 保健問題.....	64
2) 環境保護.....	65
5. 文化, 「스포츠」, 教育 및 學術分野의 關係.....	66
가. 文化分野의 交流問題.....	66
나. 「스포츠」 交流.....	67
다. 文學分野의 接觸, 圖書出版業務關係, 藏書·文庫의 交流	67
라. 教育, 學問, 技術交流	70
마. 綴字法 改正과 言語의 發展.....	71
6. 新聞, 映畫, 「라디오」, 「텔레비전」	72

Ⅲ部 文 書..... 75

文書 1.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의 施政演說(1969. 10. 28).....	77
2.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가 聯邦政府 大統領 「구스타프·하이네만」 博士에게 보낸 書翰과 附屬文書(1969. 12. 17).....	78
1) 書 翰.....	78
2) 附屬文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草案.....	79

3.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구스타프·하이네만」 博士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에게 보낸 書翰(1969. 12. 19).....	80
4.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의 記者會見 內容에 대한 聯邦政府의 聲明(1970. 1. 19).....	80
5.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에게 보낸 聯邦政府 首相 「빌리·브란트」의 書翰(1970. 1. 22).....	81
6.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에게 보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의 書翰(1970. 2. 11)	82
7.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에게 보낸 書翰(1970. 2. 18).....	84
8. 「빌리·슈토프」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이 「에어폴트」會談에서 行한 原則的 問題에 관한 演說(1970. 3. 19).....	85
9.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에어폴트」 會談에서 行한 原則的 問題에 관한 演說(1970. 3. 19)	97
10. 「에어폴트」 會談에 관한 共同聲明(1970. 3. 19)	105
1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 相互取扱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관한 合意書 및 附屬文書(1970. 4. 29)	105
1) 合意書.....	105
2) 附屬文書; 合意書 第2條 2項에 따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의 相互 取扱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대한 議定書.....	106
12.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에서 聯邦首相과의 公式會談 開催에 앞서 발표한 聲明(1970. 5. 21).....	107
13.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의 聲明에 대한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의 答辯(1970. 5. 21).....	108
14. 「빌리·브란트」 聯邦首相이 「캄셀」會談의 오전 會議에서 行한 原則問題에 관한 演說(1970. 5. 21).....	109
15.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會談의 오전 會議時 行한 原則問題에 관한 演說(1970. 5. 21)	113
16.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캄셀」會談의 오후 會議에서 한 演說(1970. 5. 21) ...	123
17.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會談의 오후 會議에서 한 演說(1970. 5. 21).....	131
18.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合意에 관한 聯邦政府 公報局의 報告(1970. 10. 29)	140

19. 國務次官「콜」博士와 國務次官「바르」간의 意見交換에 관한 「콤유니케」(1970. 11. 27)	140
20. 4大國協定과 附屬文書(1971. 9. 3)	141
1) 4大國協定	141
2) 附屬文書 I; 佛·英·美政府에게 보낸 蘇聯政府의 通知文	142
3) 附屬文書 II; 蘇聯政府에게 보낸 美·英·佛政府의 通知文	143
4) 附屬文書 III; 美·英·佛政府에게 보낸 蘇聯政府의 通知文	144
5) 附屬文書 IV; A. 蘇聯政府에게 보낸 美·英·佛政府의 通知文	144
B. 美·英·佛政府에게 보낸 蘇聯政府의 通知文	145
21. 美·英·佛政府大使와 獨逸聯邦首相과의 書翰交換(1971. 9. 3)	146
1) 聯邦政府 首相에게 보낸 美·英·佛政府大使의 書翰	146
2) 美·英·佛 政府大使에게 보낸 獨逸聯邦政府首相의 回答書翰	147
22.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間的 協商에 관한 議定書(1971. 9. 30)	148
23.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指向性 「킬러」放送間設置 및 運營에 관한 協定(1971. 9. 30)	150
24. 「본」駐在 西方 3大國 大使에게 보낸 聯邦政府 首相의 書翰(1971. 12. 14)	151
25.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交通往來에 따른 民間人 物資의 送荷狀作成· 處理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首相廳「울리히·사암」局長과 獨逸民主 共和國 內閣廳「카알·사이텔」局長間的 書翰交換과 書式, 附屬文書 및 備忘錄(1971. 12. 15)	152
1) 「울리히·사암」博士의 書翰	152
2) 「카알·사이텔」局長의 書翰	152
3) 書式; 送荷狀	153
4) 附屬文書;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物資 通行에 따른 送荷狀의 作成·處理 節次	154
5) 備忘錄	155
26. 聯邦政府 首相에게 보낸 3大國 政府大使의 回答書翰(1971. 12. 16)	155
27.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的 協定, 附屬文書 및 議定書 附錄(1971. 12. 17)	155
1) 協 定 文	155
2) 附 屬 文 書	162

3) 議定書附錄	163
28. 伯林市長에게 보낸 聯合軍司令部의 書翰(1971. 12. 18)	164
29.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와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當局의 協定 및 議定書附錄과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 「코울트」次官과 西伯林市 議會 「필러」局長간의 議定書附錄과 書翰交換(1971. 12. 20)	165
1) 協定文	165
2)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간의 協定을 위한 議定書 附錄	167
3) 議定書 附錄	168
4) 書翰交換	169
i) 獨逸民主共和國 內閣 外務省 次官의 書翰	169
ii) 西伯林市廳 「필러」局長의 書翰	170
5) 議定書 附錄	171
30. 院內 基民黨(CDU)/基社黨(CSU), 社民黨(SPD), 自民黨(FDP)의 共同決議案 提出(1972. 5. 10)	171
3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과 同條約과 관련한 議定書 附錄, 書翰交換, 國務省 「바르」 次官 및 「콜」 次官의 聲明(1952. 5. 26)	173
1) 條約文	173
2)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의 議定書 附錄	179
3) 書翰交換	180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 次官의 書翰	180
ii) 內閣廳 「미카엘·콜」 次官의 書翰	181
iii) 內閣廳 「미카엘·콜」 次官의 書翰	181
iv) 聯邦首相廳 「에곤·바르」 次官의 書翰	182
4) 1972年 5月 26日 締結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交通條約에 署名하고 이를 西伯林에 適用함에 즈음한 聲明	182
32. 4大國協定の 最終議定書(1972. 6. 3)	183
33. 1972年 10月 16日字 國籍問題에 관한 規制法令(1972. 10. 16)	184
34.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旅行에 관한 規定(1972. 10. 17)	185
35.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定 및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1972. 10. 17)	186

1)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定	186
2)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87
36. 基本條約 假調印에 즈음한 「쿨」次官 및 「바르」次官의 聲明(1972. 11. 8)	187
1) 「쿨」次官의 聲明	187
2) 「바르」次官의 聲明	189
37.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의 「에곤·바르」次官과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쿨」博士間的 郵便 및 電信業務에 관한 書翰交換(1972. 11. 8)	190
1)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190
2) 內閣廳 「미카엘·쿨」博士의 書翰	191
38. 「유엔」加入申請에 대한 書翰交換과 同 議定書에 관한 聲明(1972. 11. 8)	191
1)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191
2) 內閣廳 「미카엘·쿨」次官의 書翰	192
3) 「유엔」加入申請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192
i)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192
ii) 兩國家 代表의 聲明	192
39.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 同 書翰交換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假調印時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合意事項을 西伯林에 適用하는데 대한 雙方的 聲明(1972. 11. 8)	193
1) 書翰交換	193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193
ii) 內閣廳 「미카엘·쿨」次官의 書翰	194
2)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195
i) 獨逸民主共和國의 聲明	195
ii)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195
3) 假調印時 記者의 活動保障에 관한 合意事項을 西伯林에 適用하는데 관한 雙方的 聲明	196
40. 4大國의 聲明(1972. 11. 9)	196
4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과 其他 事項(1972. 12. 21)	196
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	196
2) 獨逸統一에 관해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게 1972年 12月 21日에 보낸 書翰	198

3) 基本條約에 대한 追加議定書	198
4) 國籍問題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199
5) 家族의 再會와 旅行規制緩和 및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	199
i) 內閣廳 「미카엘·쿨」 次官의 書翰	199
i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 政務長官의 書翰	200
6) 家族의 再會와 旅行規制緩和 및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한 書翰交換에 대한 說明	201
7) 附屬文書 I	202
8) 附屬文書 II	204
9) 國境通過地域 增設에 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	206
i) 內閣廳 「미카엘·쿨」 次官의 書翰	206
i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 政務長官의 書翰	206
10) 條約 第9條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覺書原文에 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	207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 政務長官의 書翰	207
ii) 內閣廳 「미카엘·쿨」 次官의 書翰	207
11) 西伯林問題와 관련한 雙方的 聲明	208
12) 條約 署名時 政治的 協議에 대한 口頭 合意事項	208
13) 國境委員會의 任務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兩首席代表의 聲明	208
14) 行政交流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 首席代表의 聲明	208
42. 基本條約 署名後의 雙方協商代表 聲明(1972. 12. 21)	209
1) 「바르」 長官의 聲明	209
2) 「쿨」 次官의 聲明	210
43.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基本條約에 대한 備忘錄(1972. 12. 22)	212
44. 「빌리·브란트」 聯邦首相의 施政演說 (拔萃)(1973. 1. 18)	217

I部：政治的 與件의 造成

1. 東·西獨 協商의 出發點 및 目標

1969年 가을에 發足한 聯邦政府의 全獨政策은 무엇보다도 먼저 東獨에 對한 現實政策을 通하여 兩獨間의 深化되는 對立을 緩和하고 緊張狀態와 苦痛을 解消하는데 寄與하려는 것이 그 出發點이었다. 同時에 聯邦政府의 政治的 目標은 長期的으로 歐洲平和 維持에 寄與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獨逸民族의 自決에 依한 再統一을 達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政策은 1966年以來 特히 美·蘇關係와 東西關係 全般에 걸쳐서 追求되어 온 緊張緩和 努力과 符合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聯邦政府는 增大되는 獨逸民族의 分裂危機에 對處하고 實際의 現實에 基礎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의 對蘇, 對「폴란드」 및 對東獨關係를 暫定協定(Modus Vivendi) 形態로 解決하기 위한 可能的한 方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解決方法으로 提起된 것이 첫째로 東獨이 또하나의 獨逸國家로 存在한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로 現存하는 歐洲의 國境線을 尊重하는 問題였다. 同時에 獨逸全體와 伯林市에 對한 4大國 責任의 存續, 伯林市의 聯邦政府와의 密接한 連繫性, 獨逸民族의 單一性 存續, 그리고 獨逸民族의 自由와 統一을 指向하는 聯邦基本憲法 등이 重要的한 基本問題로 提起되었다.

歐洲의 緊張緩和 趨勢와 同 問題解決과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그래서 聯邦政府는 처음부터 西方 同盟國家들의 共同的 努力에 발맞추어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0年 7月 15日 「셀」聯邦政府 外相이 言명한 대로 한가지 分野의 協商이 進展되면 다른 分野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다는 點에 留意하였다. 勿論 이것은 한 分野의 어려움이나 失敗가 다른 分野의 問題解決에 支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2. 東·西獨頂上會談을 위한 豫備接觸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지 20年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의 獨逸民族의 分裂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規制된 共存關係를 넘어 하나의 協力關係에 到達하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 1969年 10月 28日 「브란트」首相의 聯邦政府 政策聲明 —

이 方針은 1969年 10月 28日 聯邦政府의 政策宣言속에서 闡明된 것이다. (文書 1)

聯邦首相은 東獨에 대해 協商提議를 거듭하였다. 聯邦政府는 兩獨逸이 共存關係를 넘어 協力關係에 到達하도록 努力을 傾注함으로써만 分斷으로 인한 不幸을 덜고 더 이상의 分裂을 防止하며 아울러 歐洲平和와 歐洲人の 利益을 위해 共同的 義務를 다할 수 있다고 믿었다.

聯邦政府는 東獨이 또 하나의 獨逸國家로서 存在한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東獨을 同等한 資格으로 相對하겠다는 基本方針下에서 政策을 推進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同 政策이 또한 將次 對外的인 關係에도 適用됨을 意味한다.

聯邦政府는 對外貿易과 對外文化 交流에서 東獨人이 얻는 利得을 侵害하지 않겠다는 點을 分明히 強調하였다. 즉 東獨의 對外關係에 對한 聯邦政府와 우리 友邦國의 立場은 「東伯林當局 自體의 態度」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聯邦政府는 모든 國家에 對하여 西獨이 더 以上 東獨의 對外活動을 原則적으로 封鎖하지 않을 것임을 通告하였다.

그리고 關係國들에 對해서 東·西獨間의 關係가 正常化될 때까지 對東獨關係 正常化를 延期해 출 것을 要請했다. 聯邦政府는 東獨을 同等한 資格을 가진 또 다른 獨逸國家로 認定한다는 點을 確認하였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兩獨逸 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해 努力하는 過程에서 獨逸問題를 歐洲平和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解決한다는 基本目標을 堅持하였다.

聯邦首相은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데 대하여는 斷乎히 拒否하는 立場을 取했다. 그는 비록 獨逸에 두個의 國家가 存在하더라도 相互關係는 어디까지나 外國間의 關係가 아니며 그들의 關係는 特殊한 關係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以上과 같은 聯邦政府의 政策宣言에 대한 重大한 反應이 1969年 12月初 「모스크바」에서 나왔다. 즉, 「바르샤바」條約國會議는 聯邦政府의 現實主義를 받아들이고 聯邦政府가 東歐諸國들과의 關係正常化에 앞서 먼저 東獨을 正式으로 承認할 것을 要求하였다.

1969年 12月 4日 「바르샤바」條約國의 聲明에 依據해서 8日後에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長兼 獨逸社會統一黨(SED) 中央委 第1書記 「발터·울브리히트」도 聯邦政府의 現實的인 立場을 歡迎하였다. 그러나 그는 同時에 聯邦政府의 政策宣言中 主要한 本質問題 즉, 東獨을 獨逸內의 「特殊한 關係」라는 前提下에 同等한 資格을 가진 또 다른 國家로 取扱한다는 提案에 대하여 激烈한 批判을 加했다. 同 批判이 戰術的 理由에서 나왔건, 깊이 뿌리박힌 不信에서 나왔건 간에 獨逸社會統一黨은 「特殊한」 또는 「獨逸내부의 關係」라는 概念에 대해서 強力한 理論鬭爭을 展開했다.

聯邦共和國은 獨逸 內部 關係의 特殊한 與件에 대한 自國政府의 立場을 誤解의 餘지가 없도록 說明하였다. 즉 聯邦政府는 東獨을 西獨으로부터 完全히 獨立된 하나의 國家로 그리고 同等한 資格을 가진 協商 및 條約의 相對로 認定한다는 立場을 闡明했다. 아울러 獨逸의 特殊한 政治的·法律的 條件을 考慮해야 할 不可避性에 대하여도 繼續 強調하였다. (4大國權利, 兩獨逸國家의 憲法, 獨逸民族의 單一性 保存 등) 그러나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는 1969年 12月 12日 또다시 聯邦政府의 立場이 東獨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後見人的 優越感」을 表現한다고 攻訏하면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非難하였다.

「『본』當局은 「外國이 아니다」라는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西獨의 唯一代表權과 東獨의 屈服을 要求하는 越權을 行使하려 하고 있다. 國際法的으로나 現實적으로 無意味한 「外國이 아니다」라는 구절은 倉庫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은 기껏해야 後見人的 優越感을 多少 偽裝할 뿐이기 때문이다.」

1969年 12月 17日 東獨이 提示한 條約草案은 이와 같은 傾向을 反映한 것이었다. (文書 2)

「발터·울브리히트」는 「하이네만」聯邦政府 大統領에게 보낸 添加書信에서 兩獨間에 平和共存關係와 圓滿한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위해서는 普遍的으로 認定되는 國際法的 基準에 根據한 關係正常化가 必要하다고 主張하였다. 相互 同等한 資格에 基礎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正常화를 위한 東獨側의 條約草案은 1個의 前文과 9個條項으로 되어 있었다.

同 草案의 核心的인 事項에는 同等한 資格을 基礎로 한 關係正常化, 武力行使拋棄, 安全保障 및 軍縮, 「유엔」同時加入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한 同草案에서 모든 既存 境界線은 認定되어야 하고, 西伯林的 地位는 獨立的인 政治 單位로 明文化되어야 하며, 聯邦政府의 特定法律과 規定은 廢棄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먼저 外交關係의 樹立이 先行되고 다음에 具體的인 問題에 대한 協商이 個別的으로 處理되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1970年 1月 19日의 對外記者會見에서 「발터·울브리히트」는 이와 같은 條約草案을 說明하고 이로써 1970年 1月 14日字 「聯邦政府의 國家現況 報告書」에 對應하는 立場을 取하였다. 그는 모든 反論에도 不拘하고 民族單一性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聯邦政府의 見解에 反對하고 東獨의 命題를 하나 「社會主義的 獨逸民族國家」로 規定하였다. 이로써 東獨은 聯邦政府의 政策宣言에 대하여 反對立場을 表明했고 獨逸에 存在하고 있는 實質的 및 法律上의 特殊性에 대한 考慮를 拒否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聯邦政府는 東獨側의 條約草案에 對應해서 西獨側의 草案을 提示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聯邦政府는 1970年 1月 19日字 政策宣言을 통하여 條約은 다만 協商의 結果이지 協商開始의 前提條件이 될 수 없음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東獨의 態度가 蘇聯과 「폴란드」의 그것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이 前提가 되어야 하며 東西獨 相互關係의 發展은 相反되는 두 條約草案을 公開的으로 맞세워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文書 4)

1970年 1月 22日 聯邦首相은 東獨首相「슈토프」에게 보낸 書翰에서(文書 5) 모든 懸案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兩獨政府間에 廣範圍한 意見 交換을 試圖해 보자고 提案하였다. 同 書翰에서 聯邦首相은 이 對話에서는 分斷으로 인한 獨逸國民의 生活上의 不便을 덜어주기 위한 實質的인 問題討議와 함께 武力行使拋棄 및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正常化 問題를 對話議題에 包含시키자고 주장하였다.

聯邦首相은 于先 閣僚級會談을 통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하고 이를 위해서 「에곤·후랑케」獨逸內部關係省 長官을 西獨代表로 任命했다.

1970年 2月 11日 東獨首相「빌리·슈토프」는 回答을 보내어 聯邦首相이 東獨側 條約 草案에 아무런 言及을 하지 않은데 遺憾을 表明했다. 그리고 그는 兩獨政府의 首相이 單獨으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東伯林의 內閣廳舍에서 兩獨頂上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했다. (文書 6)

1970年 2月 18日 聯邦首相은 이에 同意하였다. 그러나 그는 먼저 雙方의 全權代表가 만나서 實務的 準備事項을 協議하고 最終的으로 第1次 兩獨頂上會談의 日字를 決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文書 7)

1970年 2月 20日 雙方은 「테레타이프」를 통해서 豫備會談의 兩側 首席代表를 任命 通告하였다. 1970年 3月 2日 雙方間에 實務的 問題와 儀典上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對話가 東獨의 內閣廳舍에서 始作되었다. 그러나 그후 얼마 안되어 聯邦首相의 旅行經路設定에 따른 政治的, 法律的 意味에 대한 公開的 論爭으로 말미암아 同 對話는 膠着狀態에 빠졌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1970年 3月 12日 雙方은 兩獨首相會談을 1970年 3月 19日에 開催하기로 合意했다. 雙方은 「에어플트」를 會談場所로 選定함으로써 頂上會談의 障礙要因을 打開하였다.

3. 「에어폴트」頂上會談과 「캣셀」頂上會談

『關係正常化는 公式文書만으로는 不足하다. 關係正常化를 통해서 雙方地域의 사람들에게 惠澤을 주어야 한다.』

— 1970年 3月 19日 「에어폴트」에서 「브란트」聯邦首相 —

「에어폴트」會談은 雙方의 基本立場의 說明으로 始作되었다.

東獨首相 「빌리·슈토프」는 將次의 會談議題에 대한 東獨政府의 構想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내놓았다.

- (1) 東西獨間에, 모든 差別없이 國際法에 基礎한 同等한 資格의 關係正常化 樹立, 獨逸聯邦共和國의 唯一代表權 主張 拋棄
- (2) 相互間 對外政策에 대한 不干涉 및 「할슈타인」政策의 最終的 拋棄
- (3) 「유엔」憲章 第2條 4項에 立脚한 東西獨間의 武力行使拋棄, 相互, 完全한 國際法的 承認, 領土保全, 現存國境線 遵守
- (4) 東西獨의 「유엔」加入 申請
- (5) 核武器의 獲得 및 여하한 形態로든 核武器 使用拋棄, 化學·細菌 武器의 製造, 使用, 貯藏의 拋棄, 軍事費 50%의 削減
- (6) 2次大戰의 殘滓 處理問題와 關聯된 協議事項
- (7) 東獨에 대한 西獨側의 모든 負債清算 및 西獨側의 報償義務에 대한 協議 (文書 8)

同 會談에서 聯邦首相은 1970年 1月 22日字 書翰에서 이미 東獨政府에 대해 提議했던 다음과 같은 基本立場을 되풀이해서 強調하였다.

- (1) 東西獨은 서로 外國이 아니며,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維持할 義務가 있다.
- (2) 그 외에 國際法의 一般의 原則 適用, 特히 모든 差別撤廢, 領土保全, 모든 紛爭의 平和的 解決의 義務, 兩獨 國境線의 尊重
- (3) 條約雙方 領域의 社會構造를 強制的으로 變更시키지 않을 義務
- (4) 相互 善隣的 協力, 特히 專門的 技術的 協力の 圖謀, 이를 위한 兩政府間의 協定을 통한 共同의 解決策 協議
- (5) 獨逸全體 및 柏林市에 대한 既存 4個國의 權利와 義務 尊重
- (6) 柏林市 地位改善에 關係 合意하려는 4大國 努力支持 (文書 9)

그러나 아직 具體的인 討議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同 接觸의 本來의 意義는 對面 自體에 있었다. 이로써 數年間 凍結되어 있던 獨逸問題가 다시 世界政治舞臺에 오르게 된 것이다. 獨逸 사람들의 希望은 부풀었다. 이와 같이 1次會談이 實現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 會談을 1970年 5月 21日 「캣셀」에서 다시 열기로 合意함으로써 兩獨間의 旅行이 容易하게 되고 相互協力이 增大될 것이라는 東西獨 사람들의 期待는 한층 高潮되었다.

「캄셀」會談에 대한 聯邦政府의 方針은 當時 同時에 進行中이던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會談과 伯林에 關한 4大國 會議에 대한 方針과 一貫되도록 調整되어야 했다.

즉 最大限의 主張을 내놓지 않고 長期間의 協商을 통하여 貫徹할 수 있는 範圍에서 必要한 伸縮性을 發揮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聯邦政府는 次期會議에서 東西獨 相互間의 關係正常化에 必要한 諸般要素들의 內的關係와 連繫性을 東獨側에 說明해 주기로 決定하였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또다시 條約草案을 提議하지 않고 同等한 資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의 原則과 條約要件에 關한 聯邦政府의 提案을 하나의 目錄으로 만들었다. 그 結果로 나온것이 다음의 『「캄셀」會談 20個項目』이었다.

이것들은 그후 聯邦政府의 獨逸政策으로 決定되었다.

- (1) 各其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그 憲法에 明記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族의 平和와 未來 그리고 團結에 寄與하기 위하여 條約을 締結하고 이를 基礎로 兩獨間의 關係 正常化 및 東西獨과 兩獨國民들의 連帶性 強化 그리고 分斷으로 因한 不利益 解消을 圖謀한다.
- (2) 이 條約은 雙方 憲法에 符合되는 節次를 밝아 雙方 立法機關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 (3) 雙方은 國際法의 一般原理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共存 그리고 無差別原則의 基礎위에 關係正常化를 圖謀한다는 意思를 表明한다.
- (4) 雙方은 相互 暴力의 使用과 威脅을 拋棄하며 雙方間의 諸般 懸案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그리고 相互 領土保全과 國境線을 尊重한다.
- (5) 雙方은 兩獨逸 國家의 主權과 關係되는 諸般問題에 있어 獨立성과 自主性を 尊重한다.
- (6) 雙方은 어느쪽도 다른 獨逸國家를 代理 또는 代表할 수 없다.
- (7) 두 條約當事國은 獨逸領土內에서 다시는 戰爭이 惹起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宣言한다.
- (8) 雙方은 國際的 平和共存에 有害한 一切의 行動을 禁止할 義務를 지닌다.
- (9) 雙方은 歐洲의 保安을 提高시키는데 寄與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한다.
- (10) 이 條約은 2次大戰의 結果 및 獨逸의 特殊한 狀況 그리고 두 國家에서 살고 있으나 한 獨逸民族이라는 「單一性」으로부터 出發한다.
- (11) 伯林市 및 獨逸全體에 關한 4大國의 特殊權利와 合意에 따른 美·英·佛·蘇의 諸般 責任은 存續된다.
- (12) 伯林과 獨逸全體에 關한 4大國協定은 尊重되며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市의 結束關係도 保障된다. 雙方은 4大國의 伯林問題 正常化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지닌다.
- (13) 雙方은 兩獨逸國家의 立法活動의 어떤 分野에서 衝突이 發生하는지 檢討한다. 雙方은 兩獨國民들의 不利益을 防止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立法上의 衝突을 解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雙方은 自己主權을 各者의 國家領域에 局限시킨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 (14) 이 條約은 兩獨間의 相互往來를 擴大하고 自由로운 旅行을 促進할 수 있는 措置를 講究한다.
- (15) 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한다.
- (16) 雙方 境界線上의 地方行政 區域에서 發生하는 問題들을 善隣精神에 의하여 解決한다.

- (17) 雙方은 交通, 郵便, 通信, 情報交換, 學術, 教育, 文化, 環境問題, 「스포츠」等 諸般分野의 協力を 통하여 相互利益을 增進, 擴大하며 具體적인 問題協議에 臨하겠다는 決意를 다짐한다.
- (18) 雙方間의 交易을 위해서 既存 協定, 委任, 合意등은 繼續 有效하며 交易關係를 繼續 擴大하여 간다.
- (19) 雙方政府는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고 常駐 全權代表部를 各各 設置한다. 全權代表部의 任務는 具體적으로 明示한다.
 雙方政府는 管轄地域內에 駐在하는 相對便 全權代表部의 任務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必要한 協調와 便宜를 提供한다.
- (20)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이 合意하는 條約의 原則에 依據해서 國際機構加入 및 協力を 위한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4. 東·西獨間의 法的地位問題에 關한 雙方立場

『本人이 構想하는 條約案에는 우리들의 兩國家 關係를 規定하는 基本原則이 設定되어야 한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에 包含시킬 一連의 基本原則과 內容을 마련하였다.』

— 1970年 5月 21日 「캣센」에서 「브란트」聯邦首相 —

聯邦首相은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關係 樹立問題를 討議하기 위해서 上記 20個項의 原則과 內容을 提案하였다. (文書 14의 10페이지)

聯邦政府의 上記 提案後에 東獨首相은 演說을 通하여 「에어폴트」會談때와 같이 1969年 12月 17日에 내놓은 條約草案을 다시 主張했다.

그는 特히 東獨의 國際的 領域에서의 主權과 同等權에 대하여 強調하였다. (文書 15)

聯邦首相은 答辯을 통하여 東獨側이 兩獨關係를 樹立함으로써 獨逸民族에게 어떤 利益을 주는가 하는 問題에 關心이 없음을 指摘했다.

그리고 萬一 이같은 問題에 具體적이고 合理的인 答辯을 얻게 된다면 東獨側이 實際로 追求하는 國際法的 承認問題도 時間이 지나면 解決될 수 있다고 말했다. (文書 16)

聯邦首相은 끝으로 兩獨政府 所在地에서 雙方全權代表의 常時接觸을 通하여 앞으로의 協商을 계속 準備할 것을 提議했다. 이에 대하여 東獨首相은 即刻적인 外交的 次元의 關係正常化 및 兩獨의 「유엔」加入을 거듭 要求했다.

東獨側은 아직도 頂上會談 以下の 實務級 協商에 臨할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東獨側은 結局 會談終了時 于先 「생각할 時間」을 갖자고 提議했다. (文書 17)

5. 「獨·소條約」, 「獨·波條約」締結 以後의 東獨의 協商態度 變化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兩獨政府가 各各 第3國과 締結한 다른 協定과 同一한 國際法的 效力을 갖는 協定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側과 締結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 1970年 8月 12日 「모스크바」에서 밝힌 構想 6項中에서 —

1970年 여름 聯邦政府의 外交政策의 重點은 1970年 8月 12日의 「모스크바」條約 署名이었다.

1970年 1月부터 同年 5月까지 聯邦政府의 「바르」次官과 蘇聯 外相 「그로미코」(Gromyko)間에는 相互 意見交換이 進行되었다. 兩國間에는 相互 平和條約이 締結되고 있지 못하다는 點을 考慮하여 聯邦政府가 一次的으로 重要視한 것은 獨·소關係를 相互 武力行使 拋棄의 原則에서부터 發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雙方이 抽象的인 武力行使 拋棄만으로는 滿足하지 못했기 때문에 武力行使 禁止와 密接한 關聯性이 있는 國境線 遵守問題를 協商에 包含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東西獨 境界線 問題도 該當되었다. 그런데 同 協商中에서 가장 重要한 點은 歐洲의 實際的인 現實에 基礎한 暫定協定의 協議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聯邦首相이 「에어폴트」會談에서 밝힌대로 『누구도 한편으로는 現實認 定을 主張하고 다른편으로 現實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비록 東西獨關係 樹立의 決定 當事國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지만 聯邦政府는 兩獨 關係 樹立에 대한 自國政府의 構想을 戰勝國의 하나인 소聯에게 說明할 必要가 있었다.

이 問題는 1970年 8月 12日 獨·소條約과 關聯해서 構想된 說明文의 序頭에 言及되었다.

同 說明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兩獨政府가 各各 第3國과 締結한 다른 協定과 同一한 國際法的 效力을 갖는 協定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締結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이에 따라 聯邦政府는 兩獨關係를 相互 完全한 同等權, 無差別, 그리고 各其 該當領域內의 主權과 關聯되는 所管業務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는 原則의 基礎 위에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樹立을 願한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兩獨逸 國家가 어느쪽도 對外的으로 他方을 代表할 수 없고 또 代理할 수 없다는 原則에 基礎하여 各其 第3國과의 關係를 發展시켜야 한다는 事實로부터 出發한다.』

以上과 같은 構想은 1971年 12月 29日~30日 聯邦政府 「셀」外相의 「모스크바」訪問時에 다시 한번 相互理解를 다짐하는 意味에서 共同聲明에 包含시켰다.

1970年 7月 16日 獨逸 社會主義 統一黨 中央委 第1秘書 「발터·울브리히트」는 西獨·소聯間의 不可侵條約이 締結되면 中斷된 兩獨間의 對話를 再開하겠 다고 밝혔지만 「모스크바」條約 締結 以後에도 協商이 再開되지 않았다.

1970年 10月 7日 「빌리·슈토프」는 東獨政權 樹立 21周年 演說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重要問題』에 대하여 言及했다. 그는 먼저 兩獨間에는 相互 「內部的關係」가 存在한다는 前

提를 反對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國家的·社會制度的 對立關係를 考慮할 때 兩獨間에는 相互 接近 過程이 아니고 相互 分立이라는 客觀的 過程이 불가피하게 展開되어 왔으며 또한 展開되고 있다.』

即 東獨 指導層의 見解에 따르면 同 內容은 社會秩序 全般問題에서 또는 그 以上の 分野에서 東獨을 徹底하게 「區劃」하는 것이 獨逸聯邦共和國과의 모든 形態의 條約協商에서 내놓을 수 있는 必須的 代案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3週日 後인 1970年 10月 29日~30日에 聯邦政府首相廳에서 東獨 使節 2名이 參加한 가운데 첫 豫備會談이 開催되었다.

「모스크바」條約의 締結과 同時에 東獨側의 態度變化는 意見交換 初期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東獨側의 態度는 그후 伯林問題에 關한 4大國 會談의 進展으로 더욱 影響을 받았다.

아직 4大國間의 合意가 確實치는 않았지만 1970年 가을, 처음으로 4大國이 伯林 往來의 具體的 協商問題를 兩獨政府에게 委任할 可能性이 엿보였다.

東獨政府는 4大國責任의 權限에서 벗어나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問題協商의 裁量權을 가져야 하며 伯林通行問題와 其他 通行問題(西獨에서 東獨으로 또는 東獨을 經由한 第3國 入國問題)에 差別이 없는 것으로 伯林往來問題를 解決하여야 한다는 見解를 가졌다.

1970年 10月 29日~30日의 豫備會談 共同聲明은 歐洲 中央의 緊張緩和 및 兩獨逸國家의 利益에 寄與하기 위한 諸般問題를 公式經路의 協議를 通하여 合意할 것을 強調하였다. (文書 18)

1971年 3月의 第24次 小聯共產黨 大會 및 1971年 6月의 第8次 東獨 社會主義 統一黨 大會에서(그후 「에리히·호네커」가 黨首) 蘇聯과 東獨은 緊박한 伯林協定과 獨·波條約 및 獨·소條約 締結이 서로 聯關된 것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다음 段階는 伯林問題에 關한 4大國協定을 締結하는 方案을 構想하고 있음을 分明히 했다.

東獨側은 獨逸聯邦共和國과 長期間의 對話와 協商段階에 들어갈 態勢를 取하기 始作했다.

6. 東·西獨間 實務會談 進行

『獨逸聯邦共和國 首相廳 「에곤·마르」國務次官과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미카엘·콜」國務次官은 11月 27日 金曜日 公式 對話를 위해 會同했다.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舍에서 進行되었으며 雙方間에 對話를 繼續하기로 合意했다.』

— 1970年 11月 27日 共同聲明에서 —

이와 같은 소위 「마르-콜」會談 (文書 19)을 始發로 해서 2年間 70回 以上の 接觸을 거쳐 通行協定, 交通協定 그리고 마침내 基本條約을 締結하는 對話가 進行된 것이다.

처음에는 對話의 進展을 별로 느끼지 못할 程度였다. 雙方 代表들은 「본」과 東伯林을 번갈아 往來하면서 對話를 開催했다. 聯邦政府側에서는 首相廳 官吏, 獨逸內部關係省 官吏, 交通省 官吏, 그

리고 外務省官吏들이 對話에 參加했다.

對話의 議題中에는 交通問題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交通問題는 兩獨間의 相互關係와 分離할 수 없는 基本問題였기 때문이다. 聯邦政府는 (東獨 政府側도 마찬가지로) 모든 實質의인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對話를 繼續하자는데 關心을 集中했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特惠的 伯林通行問題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一般的 通行問題를 形式上 區分해서 解決한다는데 合意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相互 意見交換 段階에서 全般的 通行問題에 대한 本格的 協商을 할 立場이 아니었다.

이때 聯邦政府에게 決定的으로 主要한 問題는 伯林通行의 安全을 保障하는 4大國의 繼續的인 義務에 基礎해서 兩獨間에 伯林通行問題에 關한 協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71年 9月 3日 伯林에 關한 4大國 協定이 締結되었다.

同協定 第Ⅱ部 A項 2段은 西伯林과 西獨間의 民間人 往來에 關한 具體的 協定은 兩獨의 關係當局間에 締結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 協定 附屬文書 1은 그와 같은 協定에 必要한 原則과 具體的 內容을 明示하고 있다. (文書 20)

이와 함께 兩獨間에는 伯林通行協定の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必要한 議題들이 檢討되었다. 代表團은 專門家팀을 補強해서 人的·物的 交通問題에서 提起되는 複雜한 事項들을 하나하나 檢討하였다.

그리고 4大國協定에 따라 1971年 9月 30日에는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間의 協商에 關한 議定書가 合意되었다. 그 內容에는 伯林地域에 該當하는 規제도 包含되었다. (文書 22)

1971年 10月中旬 通行問題 協商過程에서 數日間の 實務會議가 進行되었다.

同 會議와 併行하여 西伯林市廳 當局과 東獨政府 當局間에는 4大國協定 附屬文書 Ⅲ에 基礎하여 西伯林 住民의 家族訪問 規制問題와 領土 交換問題에 關한 協商도 進行되었다.

兩獨政府 代表團의 協商過程은 定期的으로 자세하게 報道되었다.

1971年 12月 11日 4大國協定에 따른 兩獨間의 追加協定이 締結됨으로써 聯邦政府가 主張해 온 伯林通行 問題가 滿足스럽게 妥結되었기 때문에 聯邦政府는 곧 獨·소條約과 獨·波條約의 批准準備를 始作했다.

通行協定은 1971年 12月 17日에 調印되었고 (文書 27) 西伯林市 當局과 東獨 當局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20日에 調印되었다. (文書 29)

1972年 6月 3日 最終議定書(文書 32)가 調印된 後 4大國協定과 兩獨政府의 追加協定이 發效되었는데 東獨側은 이미 그 以前에 復活節과 聖靈降臨節을 期해서 上記 通行協定 및 西伯林市—東獨間의 協定에서 規定한 通行緩和措置를 一方的으로 取하고 條約批准을 끝냈다.

伯林通行의 安全과 緩和措置에 關한 通行協定の 意義는 交通關係의 進展問題와 함께 本 報告書의 第2部에서 說明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4大國 協定과 伯林通行協定の 根本的인 成果에 대해서 強調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協定方式의 規制를 통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政治的 關係發展도 決定的으로 促進되었다.

7. 東·西獨間的 人的·物的 交流의 緩和 措置

『곧 우리들의 經驗이 보여 주는 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政治的 協商으로 얻는 成果가 人間의 負擔을 輕減시켜 준다는 것이다.』

— 1972年 5月 10日 聯邦議會에서 「브란트」聯邦首相 —

通行協定은 첫 出發點이었다.

4大國協定과의 緊密한 法律的·實質的 連繫가 最初의 政府間 協定締結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兩國間的 交通協定 協商의 段階에서는 그러한 出發의 바탕이 없었던 것이다.

約 1年間에 걸친 協議過程에서 여러가지의 交通問題가 論議되었다. 그리하여 兩獨間的 交通問題를 安全한 法的 原則에 基礎해서 解決하기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다. 聯邦政府는 무엇보다도 相互 人的 往來를 實質的으로 容易하게 하기 위해 努力했다. 東獨側은 交通協定에 署名하기 前에 이를 約束했다. (文書 31)

獨逸聯邦議會가 1972年 9月 22日 全員 贊成으로 交通協定批准을 通過시킨 後, 同 協定은 1972年 10月 17日字로 發效되었다.

東獨側이 通告해 온 交通緩和措置도 같은 날에 發效되었다. 그 結果 兩獨間에 비록 相互 政治的 法律的 見解差異가 存在하지만 雙方이 協商을 通해서 어려운 實質問題를 解決할 수 있음이 立證되었다.

西獨國民들이 처음으로 東獨內的 親知들의 招請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었으며 觀光旅行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獨住民들도 特別한 家族的인 事情이 있을 境遇, 年齡에 關係없이 獨逸聯邦共和國內的 親戚들을 訪問할 수 있게 되었다.

具體的인 協定 實務에 關해서는 본 報告書의 「交通問題와 人的往來」項에서 說明될 것이다.

8.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을 위한 與件造成

『우리들은 많은 東獨住民들, 아니 大部分의 東獨住民들이 「모스크바」條約, 「바르샤바」條約, 그리고 東伯林當局과의 協定을 通해서 거둔 우리의 成功的 政策을 한가지 希望으로 바라볼 것을 의심치 않는다. 卽 그 希望이란 獨逸은 事情이 더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와질 것이며, 그리고 獨逸民族의 理念은 拋棄될 수 없고 또 拋棄될 必要가 없다는 그런 希望이다.』

— 1972年 5月 10日 聯邦議會에서 「브란트」聯邦首相 —

聯邦政府는 1972年初 聯邦議會의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條約 批准을 위한 討議에 出席하여

「캄셀」會議에 입한 聯邦政府의 立場을 說明하고 誤解와 疑問의 餘地가 생기지 않도록 努力했다.

1972年 5月 10日 聯邦首相은 聯邦議會에서(수일전에 調印된 交通協定の 成果와 關聯해서) 聯邦政府가 곧 兩獨關係 樹立의 原則에 關한 協議를 進行할 것임을 強調하였다.

聯邦政府로서는 그와 같은 協議가 여전히 쉬운 問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이 때를 協商開始의 좋은 機會로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東獨側의 言動에 새로운 「악센트」가 보였기 때문이다.

1972年 4月 18日 「소피아」에서 行한 演說에서 東獨 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 第1書記 「에리히·호네커」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條約 批准이 끝나면 獨逸民主共和國은 西獨과의 正常的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한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고 계속 다음과 같이 言明했다.

『分明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平和共存에 寄與하고 平和와 獨逸住民에 有益한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할 수 있는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될 수 있을 것이다.』

1972年 5月 17日 獨逸聯邦議會는 1972年 5月 10日 院內 3個政黨의 決議案을 全員 贊成으로 採擇하였는데 同 內容에는 獨逸政策과 東方政策에 關한 共同의 原則들이 明示되어 있었다. (文書 30) 同 決議案 第10項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含되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한다. 兩獨間의 關係正常化의 出發點은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逸의 人間的·制度的 關係에까지 充分히 適用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條約과 4大國協定이 同年 6月初 發効된 後 1972年 6月 15日 「바르」次官과 「콜」次官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正常化에 關한 協議를 위해 만났다.

數次의 對話를 통해서 將次의 兩獨關係 樹立에 重要한 모든 問題들이 檢討되었다. 그리고 이 對話에서는 서로 相對方의 軍隊를 對象으로 하는 宣傳活動에 關해서도 討議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合意에 따라 東獨의 「第935 獨逸軍放送」과 聯邦政府 國防省의 통신 「베라」 宣傳活動이 同時에 中斷되었다.

1972年 8月 9日 聯邦政府 內閣은 「바르」次官을 正式으로 協商代表로 任命했다.

東獨側은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앞서 兩獨逸國家의 即刻的인 「유엔」加入과 相互大使交換을 통한 外交關係 樹立을 主張했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이 두가지를 모두 拒否했으므로 結局 東獨側은 그들의 前提條件을 撤回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聯邦政府로서는 兩獨關係樹立의 暫定協定 性格을 獨逸全體에 對한 4大國 責任의 存續問題와 結付시켜 強調하는 것이 絶對 必要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獨逸民族의 存續性에 대한 4大國責任이 침해당하지 않고 또 兩獨關係의 正常化가 여러 生活領域에 걸친 實際的 正常化를 가져오는 뚜렷한 발판으로 連結되는 것이다.

兩獨間의 正常的 善隣關係를 對等한 資格,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對한 尊重, 武力行使 拋棄 그리고 兩獨逸國家의 自主性 등을 바탕으로 發展시키려는 雙方의 決意가 바로 協商을 위한 共同의 出發點이 되었다.

協商은 1972年 2月 16日 始作되었다.

9.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

『本人은 兩獨間의 새로운 關係가 兩獨國民들에게 祝福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本人의 期待와 確信을 表明한다.

우리는 共存關係를 더욱하고 이제는 協力關係를 배우게 될 것이다.』

— 1972年 11月 7日 協商終結聲明에서 「브란트」 聯邦首相 —

1972年 12月 21日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이 東伯林에서 調印되었다.
(文書 41)

聯邦政府는 協商終結과 앞으로의 條約成果에 대한 說明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確認하였다.

(1) 戰後의 獨逸歷史는 점점 深化되고 있는 民族의 分裂로 特徵지워졌고 獨逸民族은 지금 두개의 國家에서 相異한 同盟에 속하는 對立된 社會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더 以上의 分斷을 防止하고 緊張을 解消하는데 寄與하며 「兩獨逸住民 相互間에 同族意識」을 強化해 주는 現實的인 政策目標은 오직 同等한 資格에 基礎한 條約締結로서만 可能하다.

雙方이 서로 相對方의 目標을 拋棄하도록 強要한다면 條約이 締結될 수 없다. 이와 같은 雙方의 目標가 根本的인 問題에서 너무도 相異하다는 事實이 이 條約으로 얼버무려지는 것은 아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이 條約이 聯邦基本法의 目標과 相衝되지 않음을 署名前에 適切한 方法으로 闡明할 것이다. (獨逸民族의 單一性에 關한 覺書는 그 後 1972年 12月 21日 條約締結당일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 手交되었다.)

聯邦政府는 그의 同盟國들과의 緊密하고도 持續的인 協議下에 協商을 進行시켜 왔다. 聯邦政府는 이 條約이 追求하고 있는 緊張緩和과 政策이 平和를 위해 반드시 必要하고 또 同盟國들의 利益에도 합치된다는데 立場을 같이 하고 있다.

兩獨逸國家는 條約이 批准된 後에 「유엔」會員國이 되고자 한다. 兩獨逸國家는 加入申請書를 同時에 提出할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은 加入申請을 提出하기 前에 獨逸聯邦議會의 事前同意를 받아야 한다.

相互關係에 있어서 條約當事者들은 「유엔」憲章의 目標과 原則을 遵守할 것이다. 그 原則들 中에는 다시 한번 特別히 強調된 武力行使拋棄, 民族自決 그리고 人權이 包含되어 있다.

政治的 問題의 協商에 關한 合意, 特히 歐洲平和保障에 重要한 事項에 關한 合意는 앞으로 特別히 獨逸問題의 紛糾로 支障을 받아온 과거와는 달리 국제문제를 보다 容易하게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2) 이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의 法體制에 完全히 합치되며 基本法의 精神과도 符合된다.

4大國의 權利와 責任도 이 條約으로 影響을 받지 않는다. (兩獨逸 國家는 3大國 및 소聯에

게 各各 通告된 覺書에서 이 점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4大國도 1972年 11月 9日字 聲明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入 申請과 關聯하여 그의 權利와 責任의 存續性を 強調했다.)

第9條에 關한 解釋과 文書交換을 通하여 分明해진 事實은 國際社會에서의 獨逸民主共和國의 同等한 地位가 다른 또 하나의 獨逸國家를 外國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見解를 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條約當事者間에 大使를 交換하지 않고 常駐 代表部를 交換한다.

한편 이 條約은 數年間에 걸쳐 모든 當事者間에 論爭의 餘地가 없는 한가지 事實을 正式으로 確定시키고 있다. 卽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의 一部分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의 對內外問題에 關하여 獨自的 責任을 가진 하나의 自主國家이다.

이 條約은 國籍問題나 財産問題를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두 地域內에서의 法的 問題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이 條約의 特別히 重要한 成果의 하나는 將次 獨逸聯邦共和國의 獨逸民主共和國駐在 常設 代表部가 西伯林을 代表한다는 것이고 西伯林에 關한 4大國協定에 基礎해서 앞으로 雙方이 締結할 合意事項이 西伯林에도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을 確定한 것이다.

- (3) 法的 側面의 重要性을 保全하면서 政治的 關係를 規制하는 것이야말로 實際的 問題에서 協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前提가 되었다.

經驗에 依하면 이 두가지 側面은 서로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다. 이 條約 自體만으로도 一連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 同 條約에는 여러가지 條文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重要한 項目은 條約 發効와 함께 實踐이 可能한 家族再會와 旅行緩和를 爲한 書簡交換에 關한 것이다. (第7條 1項의 內容: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 相互間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하면서 實際的이며 人道的인 問題를 規制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한다.』)

그러한 與件이 이루어진다면 將次 夫婦들이 再會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祖父母들은 그들의 孫子들에게 갈 수 있으며 東·西獨에 살고 있는 獨逸人들 間의 結婚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旅行者들을 위하여 4個所의 國境通過地點이 追加로 開設될 것이다.

國境附近에 所在하는 56個 地域의 獨逸聯邦共和國의 650萬名의 住民은 獨逸民主共和國內 54個 該當地域에 特別히 旅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現在까지의 旅行 可能性에 追加하여 1回의 申請으로 1年에 30日間의 限度로, 1分期에 9回까지 合意된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에 觀光目的이나 親戚과 親舊를 訪問할 目的으로 滞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몇달전부터 西伯林 사람들에게 適用되고 있는 「即時訪問」 規定에 該當된다.

反對方向으로도 旅行緩和는 規定되어 있다. 卽 獨逸民主共和國의 國民이 緊急한 家族事情으로 聯邦共和國을 訪問할 수 있는데, 葬禮에는 勿論 金婚式, 銀婚式의 境遇도 여기에 該當된다. 申請을 할 수 있는 獨逸民主共和國 市民의 範圍는 異腹兄弟 및 姉妹까지 擴大되었다.

獨逸民主共和國을 통한 鐵道 및 內水船舶(河川을 航海하는 船舶)에 依한 通行交通에 있어서는 將次 書面申請이 不必要하게 된다.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 미리 申告가 되면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도 通過旅行(東伯林交通의 境遇 除外)이 取消될 수가 있다.

獨逸民主共和國 港口를 지나는 貨物船을 탄 聯邦共和國의 旅客은 將次 그곳에 上陸할 수가 있다. 西쪽에서 東쪽으로 가는 旅行에 있어서 「필름」, 寫眞原版, 「스라이드」寫眞, 音盤 等에 對한 輸入禁止는 廢止될 것이며 지금까지 最大 「커피」輸入 許可量 500g 을 1,000g 으로 늘리게 된다.

一般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으로부터 贈物을 보내는 限界는 獨逸民主共和國 貨幣로 30「마르크」에서 100「마르크」로 引上되며 織物의 輸出禁止는 撤廢된다. 이 贈物의 送付는 勿論 獨逸民主共和國 貨幣로 60「마르크」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 條約과 關聯하여 兩國은 記者活動의 改善에 關해서도 合意하였다.

(4) 追加議定書에는 將次의 實務分野의 協力要綱이 插入될 것이다.

條約이 署名된 後 한 委員會는 두 國家間의 國境標識板을 點檢할 것이며 必要하다면 새로 分明한 標識를 하며, 지금까지 國境地帶의 많은 住民에게 顯著하게 不便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問題解決을 위한 提案도 내놓을 것이다.

「발틱」해로부터 「외베르발트」까지의 國境線에 걸친 많은 사소한 問題로 보이는 것들도 窮極的으로 解決될 것이다.

既存協定の 法的 基礎위에서 貿易은 더욱 發展될 것이다.

兩側에 利益을 주었던 現存하는 郵便, 電信, 電話에 關한 合意와 節次는 다시 包括的인 協定으로 規定되며 이를 위한 交渉이 곧 始作될 것이다. (이 交渉은 1972年 12月 7日 始作되었다.)

關係當局間의 現存하는 交流는 維持되고 可能한 限 增進될 것이다.

法律共助(辯護)活動分野에 關한 協定은 또한 이 領域에 있어서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社會的으로 特別히 解決을 要하는 非商業的 送金과 清算去來같은 主要한 分野에 있어서도 똑같은 業務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保健, 科學, 文化의 協力分野, 環境保護, 그리고 「스포츠」交流의 增進, 書籍, 雜誌, 「라디오」, 「텔레비전」作品들의 相互間 輸出改善에 關하여서도 合意가 豫見되고 있다. 以上은 全體的으로 完全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廣範圍한 「프로그램」이다. 交渉을 통한 實際的인 實行協定이 締結되려면 앞으로 몇회가 必要할 것이다.

關係正常化의 길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이 열려 있다.

10. 東·西獨 關係의 發展

『兩獨逸國家의 國民과 政府는 多年間의 斷絶과 對決時代를 지나 相互 協力을 體驗하고 배워야 한다. 勿論 우리의 앞길에는 어려움과 葛藤이 없지 않을 것이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發展에 土臺가 되는 基本條約을 法的으로나 政治的으로 一貫性있게 具現하여 兩獨 國民들의 利益에 符合되도록 實踐해 나갈 決心이다.』

— 1973年 1月 18日 獨逸聯邦議會에서의 聯邦政府 政策宣言, 「브란트」 聯邦首相 —

聯邦政府는 1972年 12月 21日字 基本條約의 第1條에서 밝힌 善隣關係에 對한 公約이 반드시 履行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根本問題에 對한 確定은 늦어지고 政治的 對立은 繼續될 것이다. 그러나 人間相互間의 對話를 보다 容易하게 하는 可能한 方法을 찾아내야 한다. 聯邦政府는 앞으로의 實際的·人道的 問題의 發展에 보다 重要한 意義를 賦與하고 있다.

基本條約 第7條와 追加議定書 그리고 交換文書 등을 實行하는 것이 곧 廣範圍한 條約政策을 通하여 善隣關係로 發展하는 出發點이 된다.

Ⅱ部：實際的 關係의 發展

1. 交易, 非商業性 物資·支拂去來, 郵便 및 電信業務

가. 兩獨間 交易

1) 基本原則

兩獨間 交易에 관한 協定上의 原則은 1951年 9月 20日 域內貿易代行所(Treuhandstelle für Interzonenhandel)와 當時의 對外 및 域內貿易省(1967년부터 獨逸民主共和國 對外經濟省으로 改稱)間에 締結된 獨逸「마르크」貨幣 通用地域(西獨「마르크」)과 獨逸發券銀行의 獨逸「마르크」貨幣 通用地域(東獨「마르크」)間的 交易協定(伯林協定)에 根據하고 있다.

이 協定은 兩獨國家間的 物資, 用役, 支拂去來를 規制하며, 여기에는 西伯林이 西獨側에 包含되고 東伯林이 東獨側에 包含되었다. 그 以後 수차례의 改正을 통해서 —특히 1960年 8月 16日과 1968年 12月 6日에 이루어진 것— 發展的 合意事項과 雙方的 要求事項이 追加되었다.

1961년까지 物資交流는 合意된 物品目錄의 原則에 의해 遂行되었다. 協定의 基本方針上 物品目錄에 包含된 몇몇의 物資는 계속 規制를 받았지만 1960년부터는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制限에 구애받지 않고 物資交流가 繼續되었다. 그 當時의 協定條項에는 購入者側이 얼마만큼의 額數까지 購入許可를 申請할 義務가 있는가 하는 것이 規制되어 있었다. 協定條項의 規制를 받지 않는 것은 自由롭게 去來가 이루어진다.

原則적으로 西獨「마르크」貨나 東獨「마르크」貨의 通用地域內에서 生産되고 購入된 物資에 限해서 交流가 許容된다. 外來品을 取扱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合意가 必要하다. 貿易 및 交流와 結付된 用役, 「에너지」(「가스」와 電氣), 用水의 購入 및 供給은 許容된다. 人夫들의 改良工事, 修理作業은 可能하지만 互惠貿易과 補償交易은 許容되지 않는다. 貿易業務의 原則은 西獨의 市場價格을 基礎로 한다. 모든 業務는 伯林協定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되어야 한다. 두 通貨地域間的 支拂去來는 오직 獨逸聯邦銀行(Deutsche Bundesbank)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銀行(Staatsbank der DDR)間的 雙務的 清算窓口를 통해서 實施된다. 西獨의 購入者가 東獨에 物品代金을 支拂할 경우 이 支拂은 清算通貨單位(Verrechnungseinheiten) (1VE=1DM)로 東獨의 國家銀行에 入金된다. 東獨의 供給者는 販賣代金을 東獨「마르크」貨로 支拂받는다. 反對로 東獨의 購入者는 購入代金을 東獨「마르크」貨로 支拂하며, 이것은 清算通貨單位로 聯邦銀行에 入金된다. 西獨의 供給者는 西獨「마르크」貨로 代金을 支拂받게 된다.

一定한 信用限度(Swing)까지 清算計定은 無利子로 引出할 수 있다. 이 信用限度는 1950年 以後 繼續해서 增額되어 왔으며, 1968년에는 伯林協定에 의해 2億VE에 達하였다. 1968年 12月 6日에 이루어진 協定을 통해서 1975년까지를 期限으로 한 信用限度(Swing)의 새로운 規定이 合意되었다. 信用限度(Swing)는 1969年以來 東獨側을 위해서 每年初에 前年度 支拂額의 25%로 策定해 놓았다. 信用限度는 그후 東獨側의 供給이 增加함에 따라서 增額되었다. 1972년에 信用限度는 5億8千5百萬VE에 達했으며 1973년에는 이것이 6億2千萬VE에 達했다. 이와 같은 超過引出限度는 오래 前부

더 全的으로 東獨側의 必要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東獨과의 交易을 위한 兩獨間의 法的 基礎는 1949年의 軍事統治法 第53號(聯邦地域)와 1950年 7月 15日字의 美·英·佛 占領地區司令官令 500號(柏林) 및 (1968年 5月 22日의 改正令에 의해 1970年 12月 16日의 5個項의 施行令으로 된) 1951年 7月 18日字의 兩獨間交易令(Interzonenhandelsverordnung), 그리고 一連의 一般許可, 公告文 및 公報(揭示事項)等이다. 이러한 交易의 特殊한 地位는 1951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에 대한 「토크이」議定書(Torquay-Protokoll)의 補完 및 1957年의 歐洲經濟共同體(EWG)의 創設條約에 대한 議定書를 통해 國際的으로 保障되었다.

2) 節 次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柏林協定以前에는 交易業務申請에 대하여 모두 個別許可만을 發給하였지만 1969年 以後부터는 보다 많은 分野에서 一般許可와 같은 보다 더 簡單한 節次에 따라 發給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1973年 初에는 統計上의 申請件數 6,182件(工產品部門 5,227件 및 農產品部門 955件) 중에서 購入者側의 5,303件(4,856件의 工業部門, 447件의 農業部門)과 供給者側에서의 5,502件(4,586件의 工業部門, 916件의 農業部門)이 一般許可의 節次에 의해 處理되었다. 交易에 대한 行政的 事務處理는 이러한 方法으로 決定的으로 容易해졌다.

더 簡單한 行政節次를 차례로 導入함으로써 工產品部門에 대한 輸入限度를 解除하여 交易의 自由化가 擴大되었다. 5,227件의 申請된 統計數字中 5,044件의 工產品이 制限없이 輸入되고 나머지만 여전히 個別許可의 對象으로 規制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3個種類가 아직도 輸入「쿼터」에 묶여 있는 物品이다. 一連의 制限條項이 公示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1年과 比較해 볼 때 制限된 物品의 數는 增加했다. 制限品目이 增加된 原因은 鐵鋼部門에 대한 再次的 制限措置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聯邦政府는 이 部門에서의 交易不振을 打開하기 위해 努力해 왔다. 非鐵金屬 製品 部門에서의 交易不均衡때문에 不可避하게 實施하고 있는 非鐵金屬의 制限品目を 除外한다면 供給者側에 加하는 制限措置는 거의 없다.

東獨에서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交易이 國家的 對外貿易獨占의 一部를 이룬다. 輸出入許可는 國家對外貿易計劃의 範圍內에서 發給된다.

그러나 獨逸聯邦共和國側에서는 東獨과의 交易이 對外貿易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東獨으로부터 工產品과 農產物을 購入할 때 關稅나 輸入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國家貿易을 實施하는 東獨은 原來 外國에서 輸入하는 경우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에서 購入하는 경우에는 關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對外貿易과는 달리 東獨과의 交易에 있어서는 賣上稅의 特別規定을 適用받는다. 東獨에 工產品을 供給할 경우 이에 대한 賣上稅는 보통 6%가 賦課되고 農產物의 供給에는 稅金이 없다. 東獨에서 購入時 輸入補償稅가 免除될 뿐만 아니라 獨逸聯邦共和國의 購入者는 優先 稅金控除에 該當하는 附加價値稅의 削減을 要請할 수 있다. 대부분의 工產品의 경우에 物品價格의 11%, 農產物의 경우 物品價格의 2.5%에 該當되는 減稅要請을 할 수 있다.

3) 發 展

交易量은 1971년에 약 52億DM에 達하였고 이는 1967年과 比較해볼 때 正確히 倍加된 額數이다. 1972年에도 또한 兩獨間의 交易은 위와 같은 量에 達하였다.

그러나 獨逸聯邦共和國의 總物品去來(對外貿易과 東獨과의 交易)의 比率은 1.8%(1971年)라는 작은 量에 不遇하다. 獨逸聯邦共和國의 貿易對象國中에서 東獨은 겨우 10位를 차지하며, 이는 「스웨덴」 다음이고 「덴마크」의 앞이 된다. 東獨側에서 볼 때 獨逸聯邦共和國은 蘇聯 다음의 두번째 交易對象國이며 總貿易量의 약 10% 比率을 차지한다.

1952년부터 1971년까지의 兩獨間의 物品 및 用役去來 現況

(단위 100萬VE=DM)

年 度	DDR에서 購入	DDR로 供給	計
1 9 5 2	119.0	153.5	272.5
1 9 5 3	294.7	261.4	556.1
1 9 5 4	434.4	450.4	884.8
1 9 5 5	583.5	576.4	1,159.9
1 9 5 6	656.7	671.5	1,328.2
1 9 5 7	844.7	838.3	1,683.0
1 9 5 8	879.8	872.8	1,752.6
1 9 5 9	935.4	1,062.6	1,998.0
1 9 6 0	1,007.3	1,030.3	2,037.6
1 9 6 1	917.3	911.0	1,828.3
1 9 6 2	898.9	901.5	1,800.4
1 9 6 3	1,028.7	907.2	1,935.9
1 9 6 4	1,111.9	1,192.8	2,304.7
1 9 6 5	1,249.0	1,224.9	2,473.9
1 9 6 6	1,323.7	1,680.8	3,004.5
1 9 6 7	1,254.8	1,490.6	2,745.4
1 9 6 8	1,450.5	1,458.5	2,909.0
1 9 6 9	1,656.1	2,077.8	3,734.0
1 9 7 0	2,064.2	2,483.9	4,548.1
1 9 7 1	2,583.5	2,652.3	5,235.8
1 9 7 2	2,394.8	2,959.8	5,354.6

出處: 1971年度까지 包含된 統計, 「聯邦公報」에 실린 聯邦政府經濟 및 財務省 年報.
1972年度の 統計, 1973年 3月 8日字 聯邦政府 經濟省日報.

물론 交易이 均衡있게 發展되지는 못했다. 東獨으로의 供給이 東獨에서의 購入을 현저히 증가했고 1972年末 現在로 獨逸聯邦共和國의 累積된 供給黑字은 약 18億VE에 達했다. 그중 약 6億VE가 信用限度(Swing)에 該當한다. 지속적인 交易發展을 위해서는 供給과 購入間의 均衡을 이루게 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이다.

兩獨間 交易의 顯著한 發展에도 不拘하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經濟關係는 1969年以後에 바로소 그 構造와 規模面에서 兩國民經濟의 높은 發展水準에 相應하는 正常化段階에 突入하고 있다. 지금까지 兩獨逸國家間에는 物品 및 用役去來만으로서 그 經濟關係가 制限되고 있다.

1972年 1月 21日에 締結된 基本條約에서 雙方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易을 現在의 協定의 原則에 의해 發展시킬 것을 合意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經濟關係의 繼續的인 發展을 促進하고 必要한 規定을 補完하여 交易의 構造를 改善하는데 目標을 두고 長期間의 協定을 締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交易關係의 增大 및 長期的 持續的 經濟協力을 위한 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나. 非商業性 物品交流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住民間의 密接한 關係로 인해서 兩獨間에는 民間人들의 物資交流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 이러한 交流는 購物小包의 部類, 郵便運送(鐵道運送, 旅行交流)以外的 購物發送과 이삿짐 및 遺産의 發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物品交流는 東獨의 規制에 의해 점점 制限되었고 不便을 겪게 되었다.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이런 分野의 不滿足스러운 實態를 協商을 통해 改善하는데 成功하였다. 正 常化를 위한 努力이 계속됨으로써 規制는 緩和될 것이다.

1) 購物用 小包交流

購物用 小包交流에 있어서는 運送規制로 인해 빈번히 郵送한 購物의 押収 및 返送現狀이 일어났 었다. 그러한 까닭에 聯邦政府는 무엇보다 먼저 運送規制를 緩和하기 위해 努力하였다.

關稅法에 관한 施行細則 第19號의 公布를 통해서 즉 1972年 9月 14日字의 「郵便을 통한 越境用 購物小包, 小荷物 및 越境旅行時의 物品의 搬入과 搬出에 대한 節次規定改正」을 통해서 東獨側은

—密閉된 容器의 運送禁止 措置의 廢止

—嗜好品の 上限線을

담배의 경우 250g 까지(그때까지는 50g)

「커피」의 경우 500g 까지(그때까지는 250g)

「코코아」의 경우 500g 까지(그때까지는 250g)

「초코렛」과 「초코렛」제품의 경우 1,000g 까지(그때까지는 300g)

酒類의 경우 11병

포도주나 백포도주의 경우 21병까지 높였다.

여우기 1971年 7月 1日以來 小包의 許容上限線이 7kg에서 20kg으로 높아짐으로써 發送者들은 처

음으로 뚜렷한 輕減策의 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基本條約이 發效된 다음부터 規制緩和가 繼續的으로 實施되었다. 1972年 12月 21日字의 覺書交換에서 東獨은 또한 非商業性 物品交流를 위한 改善策을 約束하였다. 緩和措置內容은 다음과 같다.

- 每發送時 東獨의 60「마르크」價格限度內에서 東獨 織物輸出의 許可(指定된 物品, 例를들면 幼兒服, 兒童服, 作業服 등은 例外이다.)
- 膳物發送限度額을 東獨의 30「마르크」에서 60「마르크」로 引上
- 音盤의 搬入과 搬出에 대한 一般的 禁止 解除(文化遺産이나 現代的 創作品에 限한다.)

2) 旅行往來時 膳物攜帶

旅行往來時에 膳物을 攜帶하는 問題는 1968年에 東獨이 「許可手數料」制를 實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어왔다. 東獨으로 膳物을 攜帶하고 들어가는 경우와 東獨에서 膳物과 購入한 商品을 攜帶하고 나오는 경우, 單일 100「마르크」의 許可限界를 違反할 때는 每回마다 高額의 許可手數料를 納付해야만 하였다. (平均 東獨에서의 小賣價格의 20%) 더구나 嗜好品의 許可限度額은 아주 낮게 策定되어 있었다.

交通協定이 發效된 다음에 獨逸聯邦共和國이 關稅法에 관한 施行細則 第19號를 公布하고 아래와 같은 改善策을 導入했을 때, 어느 程度 規制緩和가 이루어졌다.

- 密閉된 容器의 搬出·搬入禁止를 廢止
- 東獨에 一定한 期間 滯留하는데 必要한 攜帶品目에 대해서는 許可限度額을 東獨의 500「마르크」까지로 引上
- 許可 및 手數料없이 東獨으로 攜帶할 수 있는 物品의 許可限度額의 引上은 다음과 같다.
 - 담배의 경우 250g 까지(그때까지는 50g)
 - 「커피」의 경우 500g 까지(그때까지는 250g)
 - 酒類의 경우 11병까지

포도주와 백포도주의 경우 11병까지(그때까지는 포도주와 酒類를 合하여 11병)

1972年 12月 21日字의 覺書交換을 통한 合意에 따라 계속적인 改善策이 이루어졌다.

- 越境旅行往來時 그때까지의 搬入最高限界를 「커피」의 경우 500g에서 1,000g으로 引上
-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旅行往來時 그때까지 適用되었던 「필름」, 「슬라이드」, 「陽畫」, 「인화지」, 「音盤」의 輸入禁止를 解除(音盤에 있어서는 文化遺産이나 實際로 文化的 現代創作品에 限한다) 郵便以外的 方法(鐵道運送, 旅行往來)으로 通常의 것보다 더 큰 膳物(예를들면 冷藏庫, 洗濯機 등)을 運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郵便物의 重量限界가 20kg까지이므로 우선 許可의 對象이 될 수 없다. 旅行往來時 衣類를 除外한 廢品의 攜帶는 許容되지 않는다.

貨物列車便으로 膳物을 託送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만 可能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託送은 東獨의 對外經濟省의 許可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慣例上 아직까지 發給된 일이 없다.

이로 인해서 西獨 및 西伯林 住民들은(主로 東獨製品인) 物品代金을 西獨「마르크」貨로 支拂하면 同 商品을 東獨內의 受取人에게 配達하는 東獨의 「게넥스」膳物「서비스」會社인 「츄리히」 및 「코펜하겐」에 있는 公式的인 「게넥스」代理店을 통해서 많이 利用하고 있다.

3) 이삿짐 및 遺産

東獨에서 西獨으로 보내는 이삿짐과 遺産의 運送도 역시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年金生活者가 獨逸聯邦共和國으로 移住하고 그들의 個人財産을 携帶하며 혹은 遺産 상속자가 그들의 遺産을 兩獨逸國家中 한쪽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 移動시키고자 願하는 경우가 許多하다.

東獨에서 遺産을 搬出하는 경우에는 非正常的인 複雜한 許可節次 때문에 時間적으로 상당히 遲延되는 問題가 일어난다.

基本條約에 따른 覺書交換이 施行됨으로써 하나의 改善策이 마련되었다. 同 覺書에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遺産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할 것을 約束했다.

다. 非商業性 支拂 및 清算去來

1) 發 展

1948年 6月の 通貨改革以後로 獨逸占領地域內에는 統一된 貨幣가 없었다. 獨逸帝國「마르크」(Reichsmark)는 單一經濟圈으로 統合된 西獨의 3個國占領地域에서는 獨逸「마르크」(Deutsche Mark)로, 그리고 당시의 蘇軍占領地區(SBZ)에서는 「獨逸發券銀行의 마르크」(Deutsche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오늘날의 「東獨마르크」(Mark der DDR)]로 交替되었다. 그 이후로 商業적이고 私的인 支拂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商業적인 支拂, 다시 말해 交易이라는 테두리內에서의 物品供給과 用役提供에 대한 支拂은 1951年 9月 20日에 締結된 「柏林協定」의 支拂去來 清算에 관한 合意로서 可能해졌다. 이에 따르면 支拂去來는 오직 清算計定을 통한 清算通貨單位로 이루어진다. (Clearing)

이에 相應하는 非商業性 支拂去來를 위한 一般的 合意는 缺如되어 있다. 1950年代부터 兩獨逸國家의 少年保護局間에는 未成年者 扶養金을 위한 對替去來가 있었지만 其他 모든 個人間的 支拂去來部門에 관해서는 그 때까지 東獨側과 어떤 包括적인 規定이 없었다. 그래서 이로 因한 問題들 즉 醫師의 報酬, 辯護士料, 文筆家나 藝術家의 創作에 대한 補償金, 贍物과 補助金支拂, 埋葬手數料 등이 支拂되지 못하거나 또 充分한 額數가 支拂되지 못할 경우에 發生하는 問題가 雙方의 當事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以外에 個人的 資金을 他通貨地域內에서 使用하는 것도 그것이 閉鎖計定(Sperrkonten)에 約定되어 있기 때문에 一定한 限度內에서만 可能하다. 基本條約에서 雙方은 以上과 같은 被害當事者들의 利益을 위해서 非商業性 支拂 및 清算去來의 規制를 위한 協商을 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았다. 그리고 우선 相互 共同的 利益을 위해 社會的 觀點에서 早速한 協定締結을 위해 努力하기로 하였다. 聯邦政府는 基本條約 發効後에 始作될 協商을 통해서 持續적인 支拂去來에 있어서나 閉鎖計定 問題에 있어서나 兩獨逸間의 個人支拂去來 分野까지도 關係正常化를 推進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2) 當座 支拂

現在는 東獨의 國家銀行(Staatsbank)이 交易清算計定을 통해 清算을 許容할 때에 限해서 獨逸聯

邦共和國로부터 東獨의 受取人에게 1회 혹은 當座 支拂이 實施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限定된 範圍內에서만 이루어졌다. 年金이나 利子같은 一連의 支拂인 경우 東獨의 國家銀行은 原則적으로 同清算을 拒否한다. 東獨으로 訪問旅行한 者가 發病한 경우나 携帶한 돈을 紛失한 경우에도 至急送金은 不可能하다. 1971年度에는 清算方法에 의해 약 400萬「마르크」의 私的 支拂이 東獨으로 送金되었다. 그러나 支拂要求額은 실제로 이 金額보다 더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言及된 「게넥스」贈物用役會社를 통한 獨逸聯邦共和國의 支拂問題도 考慮되어야 한다. 지난 10年間 5億「마르크」를 超過하는 額數가 「게넥스」贈物用役會社를 통해서 支拂去來가 이루어졌다.

反對方向에서 볼 때—즉 東獨으로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東獨은 支拂을 許容하지 않는다. 負債償還은 단지 東獨의 閉鎖計定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3) 閉鎖計定 (Sperrkonten)

兩獨間의 支拂去來가 이렇게 엄격한 制限을 받는 가운데 雙方間에 閉鎖計定이 設置·運營되고 있다.

西獨이나 西柏林의 銀行과 貯蓄組合에 閉鎖預金口座를 갖고 東獨에 居住하는 者는 獨逸聯邦銀行(西獨)의 一般許可의 테두리內에서 自身과 家族構成員을 위해 本人이 直接 出頭하여 每月 1,000「마르크」씩 引出할 수 있고 獨逸聯邦共和國에 있는 受領人에게 每月 300「마르크」를 送金할 수 있다. 以外에도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一定한 例外規定에 따라 特別한 超過引出, 즉 예컨대 東獨地域으로의 引出이 許可된다. 이에 相應하는 條件에서 東獨市民도 獨逸「마르크」銀行 閉鎖預金口座를 利用하여 「게넥스」贈物用役會社를 통한 物品購入이 可能하다.

東獨에서는 閉鎖預金口座가 東獨內部에서의 一定한 支拂을 위해서만 使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家族成員의 扶養費支出과 같은 경우나 또는 東獨訪問中の 滞在費로서 每日 15「마르크」의 預金を 引出하는 경우 등이다.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送金許可는 여전히 發給되지 않고 있다.

이런 問題들은 基本條約에서 合意한 대로 獨逸民主共和國側과의 協商을 통해 社會問題의 觀點에서 早速한 解決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라. 郵便交流와 電信交流

1) 1945年 以後의 發展

1945年 5月 8日까지 獨逸帝國의 全地域을 對象으로 統一된 郵便 및 電信行政이 維持되어 왔다. 獨逸이 4個의 占領管割地區로 分割되고 大柏林(Groß-Berlin)이 共同管理地域으로 됨으로써 이러한 統一된 行政은 分離되었다. 占領軍政當局이 兩獨地域에 設置한 郵便 및 電信行政은 1949년에 오늘날의 獨逸聯邦共和國인 西方 3大國 占領地域에서는 獨逸聯邦郵便局(Deutsche Bundespost : DBP)으로 되고 오늘날의 獨逸民主共和國인 소련占領地域에서는 獨逸郵便局(Deutsche Post : DP)으로 되었다.

모든 占領地域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를 可能한 限 支障없이 解決하기 위해서 終戰直後에 소련占

領地域의 郵便當局과 西部地域의 郵便當局間에는 활발한 相互接觸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接觸은 雙方機關長의 水準에서 뿐 아니라 地方局과 末端實務者 水準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兩獨間의 政治的 對立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接觸은 점차 줄게 되었고 實際의인 郵便 및 電信業務는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遞信業務는 便紙, 葉書, 印刷物, 盲人用 出版物, 小荷物 그리고 小包의 運送에 限定되었다. 1954年 8月 5日에 獨逸民主共和國은 『西獨, 西伯林, 外國과의 購物用 小包, 購物用 小荷物の 郵便交流에 관한 規定』을 制定하였다. 購物規定을 違反할 경우에는 購物은 發送인에게로 返送되거나 補償金 없이 押収되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統制를 받는 稅關의 購物規定이 점점 더 엄격히 施行됨에 따라 郵便物이 返送되고 押収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增加했다. 동시에 便紙, 小荷物, 小包의 配達時間이 지나치게 遲滯되었다.

電信業務도 또한 상당한 制限을 받았다. 이것은 특히 長距離 電話業務의 경우 두드러졌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에는 1970年 中半까지 總 34回線의 電話回線이 架設되었고 이 回線으로 東西獨의 通話가 實施되어야 했다. 비록 受動式 交換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通話를 하려면 보통 4時間내지 15時間의 待機時間을 必要로 했고 日常對話는 거의 通話할 수 없었다. 가급적이면 多數의 申請者에게 通話를 可能토록 하기 위해 2~3分의 通話時間制를 採擇해야만 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이 1952年 5月頃 東西伯林間에 通用되어 오던 支線(약 4,000回線)을 中斷시킨 以後로 伯林的 兩地域間에는 長距離 電話交流가 不可能했다. 西伯林과 東獨間의 長距離電話는 西獨內의 長距離電話 交換所를 經유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電報業務와 「텔레타이프」業務도 業務處理에 充分한 回線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서 電信業務는 —특히 申請者가 밀리는 경우— 상당히 遲滯되는데 그 原因은 西獨과 西伯林 全域을 一方으로 하고 東獨과 東伯林 全域을 他方으로 하는 兩地域間의 交通을 東伯林에 位置한 中央電信局에서 中繼하기 때문이다.

2) 郵便協商的 經緯

1966年末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郵便局과 西伯林當局에 對하여 郵便 및 電信問題의 解決條件으로 國際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清算原則에 따라서 1948년까지 遡及한 郵便料 清算을 數次 要求해 왔다. 東獨은 獨逸聯邦郵便局과 西伯林當局에 대하여 1968年末까지 總計 약 18억「마르크」를 要求했는데 그 中 獨逸聯邦郵便局에 약 11억「마르크」, 그리고 西伯林當局에 약 7억「마르크」를 策定하였다. 要求額中的 主要內容은 小包料金, 西伯林間의 電信「케이블」使用料 그리고 그 當時까지의 全體利子和 複利 等이다.

聯邦政府 遞信相은 國際的 原則에 따른 清算을 拒否하고 그 代身 原則적으로 1967년부터 獨逸郵便局(東獨)側의 超過 負擔額에 대한 清算用意를 表明하였다. 그는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清算要求를 契機로 料金差額의 清算을 위한 協商과 함께 時急히 改善되어야 할 郵便 電信交流의 協商도 始作할 것을 거듭 提議하였다.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側이 이 모든 提案을 拒否했기 때문에 獨逸聯邦郵便局은 1968年 10月 暫定的 支拂方法으로 1967年度分의 差額 清算額 約 1,690萬「마르크」를 그리고 1969年 2月에는 1968年度의 6個月分 差額 清算額 約 510萬「마르크」를 東獨의 獨逸郵便局에 支拂하였

다. 오랫동안 망설임 끝에 結局 獨逸民主共和國側은 1969年 9月 19日 第一次協商에 同意하였다. 聯邦政府가 그 當時 郵便 및 電信交流의 改善을 爲해 提示한 基本立場은 「브란트」首相이 1970年 1月 14日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國家狀況에 關한 報告』의 資料속에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다.

『…長距離 電話交流에 있어서 相當한 技術的 難點이 있다. …이를 改善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措置가 必須的이다.

- a) 長距離 電話回線의 大幅增加
- b) 兩獨間 長距離 電話交流의 自動化
- c) 東西伯林間의 長距離 電話交流의 再開
- d) 電報交流의 自動化
- e) 回路設置에 關한 協定締結
- f) 「라디오」放送 및 TV放送 中繼業務를 改善하기 爲한 措置
- g) 새로운 無線電信施設의 設置(「케이블」 및 指向性 放送體制(Richtfunkverbindungen)

…郵便物의 交流가 비록 正常的으로 實施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改善策 即 配達時間의 短縮, 贈物小包 및 贈物小荷物の 託送規制 緩和, 郵便換交流의 開始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3年以內에 이러한 業務改善策이 거의 모든 面에서 實現되었다.

3) 1970年 4月 29日字의 合意事項

어려운 協商끝에 이루어진 合意事項 即 1970年 4月 29日字의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 發生한 費用의 請求 및 清算에 關한 合意事項」(文書 11)에서 다음과 같은 成果를 거두었다.

—最少限 지금까지의 範圍內에서 境界線을 通過하는 郵便 및 電信交流의 相互保證을 約束

—長距離 電話線과 「텔레кс」線의 追加 設置運營에 對한 義務履行

東獨側은 그 後 既存 長距離電話 34回線에 40回線을 增設하고 또 既存 「텔레кс」 35回線에 32回線을 追加함으로써 이 義務를 履行했다. (概要表 參照)

—1967年 1月 1日부터 相互 遂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總額 清算의 約束

獨逸郵便局(東獨)에게 支拂할 總額은 每年 3,000萬「마르크」로 確定되었다. 이 金額은 最少限 1973年末까지는 有効하였고 그 후는 多少 變動된 交流量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 總額에는 獨逸聯邦郵便局(西伯林 郵便支局도 包含하여) 및 獨逸郵便局의 書翰, 小包, 長距離電話, 電報, 「텔레кс」, 海上通信, 放送中繼等 交流뿐 아니라 豫備通路의 利用 및 西伯林에 이르는 「케이블」의 使用等を 包含해서 費用을 考慮하였다.

—東西獨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서 1960年 12月 31日까지 相互 遂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費用全額 清算을 위한 協商開始 約束

—1952年以來 中斷된 西伯林과 東伯林間의 長距離 電話業務를 再開할 것을 獨逸民主共和國側이 口頭同意表明

이 問題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側의 約束履行은 아주 消極的으로 이루어졌다. 即 1971年 1月

31일에 獨逸郵遞局은 雙方이 各各 5回線씩을 利用할 수 있도록 했고 더우기「포츠담」(Potsdam) 中繼所를 經由하도록 했다.

그후 1971年 4月 8日과 6月 5日에 各各 5回線씩 追加되었고 이로써 總 30回線을 가졌으며 처음에는 手動式 中繼를 始作하다가 곧 大部分을 半自動式으로 中繼하게 되었다.

한편 獨逸民主共和國側이 1971年 6月부터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향하는 郵便 및 電信交流에 대하여 지금까지 徵收하는 國內手數料 代身에 國外手數料를 賦課하는 規定을 適用함으로써 郵便 및 電信交流은 그만큼 새로운 負擔을 안게 되었다.

1970年 4月 29日과 1971年 9月 30日의 遞信協商으로 이루어진
 電信交流改善에 대한 概要表 (回線, 自動化的 增加)
 (兩獨間的 交流에서 나타난 回線의 要約)

	聯邦領域/DDR※	西伯林/DDR※	計
I. 長距離電話交流 回線			
1970年까지의 狀況	34(수동교환)	無	34(수동교환)
1970年 中期 改善……………	+40 == 74(수동교환)	無	74(수동교환)
1971年 1月~7月……………	74(수동교환)	+ 30 == 30(一部 반자동식)	104(一部 반자동식)
1971年末……………	+60 == 134(一部 반자동식)	+120 == 150(一部 반자동식)	284(一部 반자동식)
1972年初……………	+32 == 166(一部 반자동식)	150(一部 반자동식)	316(一部 반자동식)
1972年 中期……………	+16 == 182(一部 반자동식)	+ 51 == 201(一部 전자동식)	383 (一部 반자동식 전자동식)
1974年末까지……………	계속적으로 전자동식	장거리전화 교류	
II. 電報交流 回路			
1970年까지의 狀況	24(비자동화 구간연결)	4(비자동화 구간연결)	28 (비자동화 구간연결)
1970年 中期 改善……………	24(비자동화 구간연결)	+ 3 == 7(비자동화 구간연결)	31 (비자동화 구간연결)
1971年末……………	+43 == 67(자동화)	+12 == 19(자동화)	86 (자동화)
III. 텔렉스交流 回線			
1970年까지의 狀況	35	11	46
1970年 中期 改善……………	+32 == 67	+12 == 23	90
1971年 末……………	67	+12 == 35	102
1972年 中期……………	+24 == 91	35	126

※ 東伯林 包含

그러나 聯邦政府는 이같은 措置를 유감으로 생각했지만 郵便 및 電信交流을 더욱 改善시키기 위한 努力을 促進하였다.

4) 1971年 9月 30日字의 議定書

이러한 努力의 結果 「獨逸聯邦共和國의 聯邦遞信局 代表團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遞信局 代表團間의 協商에 관한 議定書」가 1971年 9月 30日에 調印되었다. (文書 22)

이 議定書의 合意內容에 伯林에 관한 規定이 明白하게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은 政治的으로 특히 意味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西伯林 當局을 相對로 한 獨逸郵便局의 要求는 清算되었고 伯林郵便 및 電信狀態의 改善策이 合意事項에 反映되었다.

細部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合意되었다.

1. 獨逸民主共和國의 郵便局이 1966年 12月 31日까지 遂行한 超過「서비스」分 經費 總額 2億5千萬 「마르크」를 一時拂로 清算
2. 長距離電話, 電報, 「텔렉스」交流用 回線의 繼續的인 增設 運營
3. 全長距離 電話와 電報交流의 段階的 自動化(概要表 參照)
4. 周波數 使用의 調節
5. 새로운 電信施設의 設置 및 運營
(1973年末까지 指向性放送, 1976年末까지 搬送周波數 「케이블」 開通)
6. 音響放送中繼의 質的 改善과 送信線의 變更
7. 書翰, 小荷物, 小包의 配達時間 短縮
8. 獨逸民主共和國側의 贈物郵送規定을 再檢討하겠다는 東獨側 代表團長의 聲明
9. 合意된 技術的 措施의 實施를 위한 實務次元의 協商 開始
10. 1970年 4月 29日에 合意된 1976年末까지의 年間 3,000萬 「마르크」의 一時拂 清算制의 繼續 有效 이의 同時에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指向性 「칼라」放送帶의 設置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졌다. (文書 23)

合意된 措置方案들을 技術的으로 實行하기 위해 協商直後에 獨逸聯邦郵便局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側의 獨逸郵便局 代表間에 協議가 進行되었다. 이를 위해서 4個의 專門團이 構成되었고 이것이 이때부터 必要한 技術的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長距離電話, 電報, 그리고 「텔렉스」交流의 回線 設置에 관한 概要表를 보면 1971年 9月 30日의 郵便合意가 얼마나 劃期的 改善을 이룩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1972年 여름에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16回線이 追加로 設置되고, 또 西伯林과 東伯林 및 東獨間에 51回線의 長距離 電話回線이 追加로 開通됨으로써 더욱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西伯林과 東伯林間에는 長距離 自動電話가 開通되었다.

現在는 總 383個의 長距離 電話回線이 있는데 그중에서 西獨地域→東獨/東伯林間에 開通된 것이 182回線이고 西伯林→東獨/東伯林間에 開通된 것이 201回線이다.

비록 通話量이 每日 約 14,000通話, 다시 말해서 1970年 4月 以前과 比較하여 볼 때 10배밖에는 增大되지 않았으나 通話時間이 보다 延長되었고 長距離電話 申請後의 待機時間이 보다 短縮될 程度로 改善되었다. 向後 2年內에 —合意된 바와 같이— 完全自動式 長距離 電話施設이 마련된다면 더욱 業務의 簡素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現在의 技術的 準備狀況으로 본다면 앞으로 所要되는 새

로운 長距離 無線電話區間(Fernsprechrichtfunkstrecke)이 앞당겨 完成될 것이며 1973年 중반부터 自動長距離 電話業務가 聯邦領域부터 段階的으로 實施될 可能性이 있다.

同時에 雙方 合意에 따라서 1971年末부터 着手된 電報交流의 自動化와 함께 電報의 即刻的인 送達이 可能하게 된 것도 큰 意義가 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칼라텔레비전」放送을 위한 指向性 「칼리」放送帶 設置計劃은 豫定대로 1972年 6月初에 開通되었으며 「올림픽」競技에 맞추어 放映이 되었다.

遞信業務를 위해 兩獨遞信行政의 專門家들은 雙方地域間의 書翰, 小荷物, 小包運送의 迅速化뿐만 아니라 業務 簡素化를 目的으로 한 協商에 成功했다. 業務處理時 手荷物は 더 잘 分類되었고 더욱 合理的이고 迅速하게 處理되고 있다.

發信郵遞局의 發送業務處理가 보다 正確性, 合理性, 迅速性을 띠게 됨으로써 相互 協調關係가 改善되었다.

5) 基本條約에 의한 規制

郵便 및 電信交流의 發展이라는 面에서 基本條約이 이룩한 가장 重大한 成果는 第7項에 規定된 合意事項인데 이에 의하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間에 郵便 및 電信業務分野에서 相互 協力을 增大시키고 促求하기 위해 協定을 締結하도록 되어 있다. 基本條約 第7條에 대한 追加議定書에 根據하여 이러한 協定속에는 既存合意事項과 兩側에 有利한 節次가 包含되어야 한다.

以外에도 雙方間의 書翰交換을 통해서 合意된 것은 基本條約의 假調印 直後에 郵便 및 電信協定을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 既存 合意事項과 規定節次는 이 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계속 有效하다는 것,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協商이 始作된 이후에 國際郵便聯盟(UPU)과 國際電信聯盟(UIT)會員加入을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는 것 等이다. (文書 37)

協商은 1972年 12月 7일에 始作되었다.

2. 交通業務와 旅行交流

가. 交通業務

1) 1945年以後의 發展

1944年 9月12日 4大戰勝國이 「런던」議定書를 통해 合意한 輸送 및 通信業務에 관한 共同政策에 따라서 必要한 聯合國機構(管理理事會의 輸送 및 空路管理委員會)와 最初의 規定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서 當時 가장 重要하게 擡頭되었던 問題는 西獨의 西伯林地域에 對한 支援問題 및 西獨과 西伯林間의 空中回廊設置 問題였다. 그러나 그 후의 政治發展의 結果로 占領地域 全體에 有效한 聯合國의 通行權이 制約을 받게 되었다. 西部地域과 蘇聯占領地域은 兩分된 交通管理地域이 되었다. 두 地域間의 交通은 1948年 7月 18日부터 1949年 5月 12日까지의 伯林封鎖期間에 거의 完全히 遮斷되었다. 이 伯林封鎖는 1949年 5月 4日에 締結된 「뉴욕」協定(Jessup-Malik協定)으로 解除되었다. 1949年 5月 3日부터 6月 20日에 걸쳐 開催된 「파리」外相會談에서 이루어진 合意에도 不拘하고 交通妨害는 繼續되었다. (1952年 5月 8個所의 越境道路 閉鎖) 同 「파리」外相會談에서는 「뉴욕」協定 및 1948年 3月 1日以後의 交通妨害 解除措置가 承認되었을 뿐 아니라 『西方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의, 그리고 西伯林과 蘇聯占領地域間의 사람들의 往來, 物品交流, 그리고 通信交流에 대한 規制緩和』가 決議되었다. 1953年과 1957年사이에 旅行條件이 一時 緩和되었으나 그후 人的交流는 行政의 規制措置를 통해 다시금 制限되었다. 1958年의 伯林最後通牒(Berlin-Ultimatum)과 1961年의 伯林障壁構築은 사람들의 往來와 伯林交通에 妨害와 緊張을 몰고 왔다.

東獨住民들의 聯邦領域으로의 私的 旅行往來는 1964年에야 비로소 許可되었고 그것도 年金生活者에 限하여 許可되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는 西伯林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 憲法機關의 職務遂行을 東獨側이 違法이라고 抗議함으로써 伯林交通은 특히 政治的 條件의 障礙와 妨害를 받아 왔다. 1965年 6月 30日에는 東獨側이 兩獨間의 交通에 대한 一般의 運送料金表를 通告함으로써 鐵道貨物 輸送의 運送條件은 더욱 惡化되었다. 이렇게 하는 原因은 다른 分野에도 그런 試圖가 豫見되지만 越境交通에 國際運送法의 慣例를 適用하려는데 있었다. 그리고 協定不加入으로 겪게되는 實際面의 不利益 때문에 國際鐵道協定인 CIM 및 CIV(「베른」協定)의 正會員加入의 必要性을 提起하였다.

가) 航空交通

1945年 11月30日 聯合國의 獨逸管理 理事會의 決定으로 4大強國은 西伯林과 西部獨逸間에 3개의 空中回廊과 伯林上空에 統制地域을 設定하였다. 이 空中回廊一幅이 各各 20마일—은 西伯林에서 「함부르크」, 「뷔케부르크」(「하노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으로 各各 連結된다. 이 回廊내에서의 4大國 航空機의 飛行은 事前 許可없이도 할 수 있다. 以外에도 伯林에는 聯合國의 飛行安全本部(Flugsicherheitszentrale)가 設置되었다. 이러한 規制 특히 空中回廊의 管理規定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効力이 維持되고 있다. 伯林危機中에도 이 規定으로 西伯林으로의 自由로운 交通이 保障되었고 더우기 伯林封鎖中에도 空中橋梁을 통하여 伯林市の 모든 生活을 安全하게 保障하였다. 4大 強國은 1972年 11月 9日의 聲明에서 既存 4者間의 規制條項에 追加적으로 決定, 施行細則을 補強함으로써 空中回廊의 管理를 보다 強化하였다.

最近까지도 兩獨逸國家間에 航空交通은 없었다. 聯邦地域의 領空通過를 위한 個別許可는 예컨대 1968年의 「그레노블」에서 開催된 冬季「올림픽」에 參加한 東獨選手들과 1972年의 夏季「올림픽」期間中 「뮌헨」으로 오는 東獨의 「올림픽」選手團 等 몇몇 경우에만 發給되었다.

1972年 가을에 東獨은 처음으로 「라이프찌히」 見本市를 往來한 西獨 傳貴飛行機의 飛行을 許可했다. 航空交通은 交流協定에서 除外되었다. 그러나 兩側은 適當한 時期에 이에 관한 協商을 着手하기로 合意했다.

나) 鐵道 交通

西伯林에 生活必需品와 燃料을 供給하기 위하여 4大強國은 每日 最高 16輛의 貨物列車을 「헤름스테트」(Helmstedt)를 經由하여 西伯林으로, 그리고 되돌아서 「쉬덴달」(Stendal)―「웨비스펠트」(Oebisfelde)를 經由하여 運行시키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945年 9月 10日 聯合國管理理事會의 決定) 1949年 5月 4日의 「뉴욕」協定으로 伯林封鎖가 解除됨으로써, 그리고 그뒤 1949年 6月 20日의 「파리」外相會談 閉幕聲明을 통해서 거듭 確認된 이 規定들은 아직도 繼續 有效한 伯林交通의 基本原則이다. 1946年 8月 14日 聯合國管理理事會의 決定은 兩國間 交通에서 생기는 所得의 分配에 關係 規制하였다. 「뉴욕」協定이 締結된 直後인 1949年 5月 11日에 獨逸聯邦鐵道の 管理本부와 伯林市 帝國鐵道管理本부는 東西獨 貨物鐵道交通의 再開에 關係한 「헤름스테트」協定(Helmstedter Abkommen)을 맺었다. 그후 1949年 9月 3日에 맺어진 「오펜바하」協定(Offenbacher Abkommen)으로 兩獨逸 旅客鐵道(Interzonen-Reisezugverkehr)는 擴大되었다. 이 原則에서 合意된 共同料金表가 獨逸帝國鐵道局에 의하여 1965年 6月 30日 公告되었다. 그 中에는 특히 料金表에 包含되는 運送條件 및 運送物資에 同封하는 送荷狀이 明示되었다.

1950年 以後 旅客列車과 貨物列車 交通協議가 進行되었다. 1954年 7月 12日과 1964年 8月 17日에 交通量 增加問題가 合意되었다. (西伯林과의 貨物輸送을 위한 「뮌헨」(Büchen), 「베르바」(Berba), 「호프」(Hof)를 通過하는 追加 通路의 增設) 「켈스통겐」區間의 「카리」(KALI)輸送에 關係한 合意는 特別한 意義가 있다. 獨逸聯邦鐵도가 「헬스펠트」(Hersfeld)―「아이세나하」(Eisenach)區間의 獨逸帝國鐵道 路線을 利用하고 反對로 또 獨逸帝國鐵도가 同區間의 獨逸聯邦鐵道 路線을 使用하게 된 直後에 東獨地域에 새로운 線路를 設置한 帝國鐵道는 1961년부터 同 區間에 對한 權利를 拋棄했다.

1966年에 帝國鐵道는 獨逸聯邦鐵道の 使用料를 1961년부터 溯及하여 要求했다. 오랜 協商끝에 1969年 9月 11日과 12日의 書信交換을 통해서 使用料 問題와 「카리」輸送의 再開問題에 合意했다.

交通協定 第14條는 이런 規制問題를 明示하고 있다.

다) 道路 交通

지난 20년동안 그 重要性이 크게 浮刻된 民間人의 道路交通에 關係서는 1971年 9月 3日에 4大國協

定이締結될 때까지 聯合國의 明文化된 法的 原則이 樹立되지 않았다. 伯林封鎖解除에 관한 聯合國의 約定을 履行하기 위해 兩獨當局間에 締結된 「헤름스테트」協定은 1949年 10月 4日에 맺어진 兩獨間의 버스路線 交通에 관한 協定으로서 무엇보다도 旅客列車 交通을 補完해 주는 役割을 하였다. (運賃은 同一)

一定한 數의 「버스」路線에 대해서는 持續的으로 充分한 交通量이 認定되었다. 伯林往來를 위한 乘用車의 利用이 繼續 增加하고 있는 反面, 그밖의 兩獨間 旅行交流에서는 私的 訪問旅行에 대한 個人乘用車의 使用이 더욱 制限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東獨側은 「라이프찌히」見本市場 訪問者 및 業務旅行者, 그리고 特殊한 例外의 경우에 限해서 乘用車 利用을 許可하였다.

伯林往來 및 兩獨間의 貨物運送部門에서도 貨物自動車의 利用이 增加되었다.

伯林往來交通의 경우 거의 모든 貨物車가 外國車輛과 西獨地域 및 西伯林地域에 所屬되고 있으나 西獨地域 및 西伯林에서 東獨地域 및 東伯林을 往來하는 貨物車輛은 大部分 東獨에 所屬하는 것이었다. 道路交通에 관해서 明文化된 規定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交通方式은 특히 伯林往來問題에 있어서 各種의 妨害를 받을 憂慮가 있었다. 1951年 9月 1日부터 貨物車輛에 대한 道路使用料가 徵收되었고, 이것은 1955年 4月 1日부터 2倍 以上으로 引上되었다. 그러나 協商結果 그중 一部分은 다시 引下되었다.

既存 12個所의 越境通路는 1952年에 獨逸民主共和國側의 一方의인 措處로 8個所가 閉鎖되어 4個所로 減少되었다. 1960年 復活節에는 「뤼벡」地方의 새通路(Schlütup-Selmsdorf)가 添加되었다. 旅行者에 대한 嚴格한 統制, 貨物車에 대한 貨物調査, 그리고 手續節次의 지연때문에 越境通路에서 長時間 待機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8年 獨逸民主共和國側은 또한 伯林交通에 通行證과 手數料를 義務化하는 查證制度(Visumzwang)를 導入하였고 貨物輸送時 道路使用料에 添加하여 調整稅(Steuerausgleichsabgabe)를 徵收하였다. 特定한 團體旅行者들에게 越境을 禁止하였고 더우기 뚜렷한 理由도 없이 個個人的 通行을 拒否하기도 했다.

1970년에는 通路가 隨時로 封鎖되어 交通이 몇 時間씩 中斷될 程度로 妨害가 많아져 갔다. 이러한 經驗으로 볼 때 迅速하고 마찰없는 越境手續을 保障하는 規制措置가 특히 道路交通部門에서 要求되었다.

새로운 伯林通行協定の 重點이 바로 여기에 두어지고 있다.

1960년부터 1964년에 걸친 長期間의 協商끝에 「힐쉬벨크」의 「살레」橋 復舊問題에 合意했다. 1964年 8月 14日에 이루어진 合意에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工事を 擔當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은 總額 550萬VE의 工事費를 支拂하였다. 이 橋梁은 1966年 12月 19日에 完工하여 開通되었다.

責任災害保險協會 및 貨物自動車 保險協會(HUK)는 獨逸民主共和國側의 該當 保險協會와 1956年에 災害調整에 관한 契約을 맺었고, 이것은 1958年 새로운 協定으로 代置되었다. 兩側은 各各 相對便 地域 車輛에 傷害를 입은 自己側 人員들에게 保險金을 支拂하여 이것을 契約當事者間에 每年 清算한다. 1972年 4月 26日 獨逸聯邦共和國의 聯邦法務相과 獨逸民主共和國의 財務相間에 맺은 管轄權協定(Ressortabkommen)에서는 兩側의 該當 保險會社間의 새로운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要綱이 合意되었고 이 새로운 協定으로 이미 合意된 節次規定을 施行하고 더욱 發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새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協議가 그동안에 着手되었다.

나) 水 路 交 通

雙方간의 水路交通에 있어서 「함부르크」港과 東海의 「로스톡」港 그리고 北東海運河는 重要한 浬을 하고 있다. 內陸水路交通에 있어서는 西伯林 往來水路交通, 「함부르크」로 부터 「볼프스부르크」地域과 「엘베」江을 지나 中部內陸運河(Mittellandkanal)를 통해서 東獨領域으로 向하는 「U字形 通路」(Hufeisentransit) 그리고 東獨領域으로 부터 「엘베」江을 통해서 聯邦領域을 지나 「함부르크」港을 向하는 東獨側 船舶의 通路가 交通産業上 가장 重要한 路線이다. 以外에도 兩側의 相互 關心은 接境地方의 다른 通路를 開發하는데 있다.

獨逸內的 모든 水路交通은 1945年과 1946年에 公布된 聯合國의 水路交通令에 의해 規制되었다. 同令에는 船舶의 標識, 4個國語로 쓰여진 運行許可證과 提出할 乘船者 名單等에 관한 規定이 包含되어 있었다. 그런데 同令은 1950年에 보다 緩和된 條項이 包含된 聯合國 最高管理委員會 命令 第42號에 의해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廢止되었다. 1955년 蘇聯軍政當局은 우리側에서 相應한 措置를 取한 바와 같이 그들의 所管 權限을 獨逸民主共和國側에 양도했다. 雙方간의 協商을 통해서 「함부르크」水路交通管理所와 「마그데블크 水路交通管理所」의 設置에 合意하고 이 두 事務所를 雙方地域의 通行許可 發給官廳으로 指定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958年 5月부터 1961年初까지 伯林通路와 U字形通路에 대해서 一時 水路使用 手數料을 徵收했다. 이러한 措置는 「엘베」江 下流 「게스트하흐트」(Gesthacht)에서의 貯水地工事に 대한 反應이었다. 同紛爭은 兩獨政府의 關係機關間에 協商을 통해서 1961年 3月に 調整되었다.

「엘베」江上의 境界線問題의 논란때문에 雙方間에는 水路調整作業의 管轄權과 水上警察權 그리고 其他問題에 관해서 意見對立이 있었다.

道路交通의 경우와 같이 西伯林往來를 위한 內陸水路交通도 1960年代에 東獨側의 政治問題와 結付시킨 制限措置로 인하여 妨害받았다.

隣接된 外國과의 通行交通, 예를 들면 聯邦領域에서 「폴란드」로, 혹은 東獨에서 西歐쪽 外國으로의 通行交通은 실제로 許可되지 않았다.

2) 交 通 協 定

交通分野의 正常化問題는 雙方의 共通된 關心事였다. 여기에는 多様な 交通手段을 包含한 法的 原則의 樹立, 個別의 問題에 대한 具體的 改善策, 그리고 雙務의 多務的 關心事에 대한 將次의 協力 問題등이 包含된다.

雙方은 政治的 目的도 追求하였다. 즉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共和國과의 外交의 次元의 條約締結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은 東獨이 要求한 國際法的 承認이든 國際法上의 條約과 同一한 拘束力을 갖는 兩獨間의 協定이 可能하다는 立場에서 合意點을 찾으려고 努力했다. 더우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兩獨間의 交通往來와 같은 特殊問題에서 國際間的 多務的 交通法規, 예컨대 CIM과 CIV(「베른」協定)의 國際鐵道交通法을 適用하려고 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은 旅行制限의 廢止뿐 아니라 交通協定을 西伯林地域까지 延長시키는 問題에 重點을 두었다. 이 協商을 통해서 基本條約을 締結하는데 도움을 준 解決策이 마련되었다.

交通問題에 관한對話가 「바르」(Bahr)次官과 「콜」(Kohl)次官間에 1970年 11월에 始作되었다. 그들의對話는 1971年 9月 公式的인 會談으로 發展되었고 1972年 5月 26日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게 되었다. 1972年 10月 16日字의 立法措置로 兩獨이 各各 對內條件을 具備한 다음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에 相互 覺書交換이 이루어짐으로써 同 條約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効되었다. (文書 31)

基本條約은 追加議定書를 통해서 細部條項과 航空交通問題를 補完하게 되었다. 協定署名時 雙方은 國際鐵道旅客手荷物協定(Eisenbahn-Personen-und-Gepäckverkehr:CIV)과 國際鐵道貨物運送協定(Eisenbahn-Frachtverkehr:CIM) 會員加入에 관한 覺書를 交換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미카엘·콜」(Michael Kohl)次官의 回答書翰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은 內容의 또 다른 書翰에서 基本條約 發効와 同時에 東獨側이 取한 旅行緩和措置를 西獨側에 傳達하였다. 「바르」次官과 「콜」次官은 以外에도 基本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日字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과 符合되도록 履行되기 위해서는 西伯林에 대한 交通協定の 諸規定이 遵守되어야 한다는 合意事項을 聲明을 통해서 強調하였다.

가) 前 文

雙方은 協定文의 序頭에 다음과 같은 總論的인 두 文章을 넣었다.

—雙方은 相互共同生活에 관한 協定上의 規制가 歐洲의 平和의 發展과 歐洲諸國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가장 중요한 前提條件 中の 하나임을 認識하면서, 歐洲緊張緩和에 寄與하기 위해 努力할 것을 宣言한다.

—雙方은 兩國家間의 正常的인 善隣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해 함께 努力한다는데 合意한다. 「正常的」關係라는 用語의 뜻은 「善隣」이라는 概念으로 明白히 하였다.

이러한 關係發展은 반드시 國際的인 協調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兩國家가 相互 獨立되어 있다는 表現은 兩國家中 어느 一方도 他方에 從屬되지 않는다는 法的 地位를 強調한 것이다.

前文은 協定の 基本計劃 즉 民間人 및 物資의 越境通行問題를 包括的으로 規制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나) 一般規定과 最終規定

協定の 對象은 相互往來(Wechselverkehr) 즉 兩側 交通地域間의 往來問題이며 道路, 鐵道, 水路를 利用한 第3國에의 通行交通이다. (第1條 1項) 海上旅客船과 內陸船舶에 의한 民間人 交通에 관해서는 適當한 前提條件이 마련된 다음에 協商한다. (第1條에 대한 議定書附錄) 航空交通은 이 分野의 特殊한 法的 條件으로 因하여 除外된다. 그러나 雙方은 航空交通分野에서 相互協力을 增大시키기 위해 適當한 時期에 航空交通協定을 위한 協商을 始作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航空交通에 관한 議定書附錄) 第1條 2項에는 協定の 基本原則이 包含되어 있다. 協定雙方의 管轄領域內의 또는 이를 通過하는 交通은 一般的인 國際慣例에 相應하여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해서 最大限으로 保障, 緩和되고 그리고 可能的인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交通業務遂行上 國際的 一般基準에 未達되는 分野에 대하여는 自然히 改善策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問題가 提起된다.

그리고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서 要求되는 重要한 問題는 協定雙方의 相互關係에서 不公平한 條件이 發生하거나 또는 第3國의 當事者가 더 좋은 條件을 누리게 될 때에는 公正한 處理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2條에서 第9條까지는 雙方의 國內法의 適用에 관한 規定을 담고 있다. 즉 相對方地域內의 公共 交通施設 및 越境施設의 利用權, 交通手段 利用에 必要한 證明書 및 個人身分證의 認定, 旅行用 携帶品 및 消耗品, 燃料의 携帶問題, 事故 및 災難時의 救護措置, 그리고 交通狀況 및 越境交通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工事計劃에 관한 情報交換 等이다. 協定の 運用 및 解釋에 대한 意見差異를 解消하기 위하여 兩國政府의 交通省 全權委任者가 이끄는 代表團으로 構成된 合同委員會(Gemischte Kommission)를 두기로 하였다. (第32條) 合同委員會가 解決하지 못하는 意見對立은 雙方政府가 協商 經路를 通해서 解決하기로 하였다.

同 委員會는 1972年 11月 13日 東伯林에서 構成되었다. 同 交通委員會의 2번째 會議는 1972年 12月 7日 「본」(Bonn)에서 開催되었다. 同 會議에서는 특히 「엘베」江의 얼음을 깨는 問題에 관해서 合意가 이루어졌다.

協定은 無期限으로 締結되었다. 同 協定은 發効後 5年이 지나 每年 年末 3個月의 유예기간을 두고 廢棄通告를 할 수 있다.

다) 鐵 道 交 通

鐵道交通에 관한 7個條項은 다음과 같은 必要한 原則的 規定을 담고 있다.

— 列車運行計劃, 列車의 構造 및 配車, 交通 需要增加에의 對策 等に 관한 合意(第10條)

— 旅客과 그의 所持品 및 貨物運送에 適用시킬 法(第11條)

— 協定雙方의 두 境界驛사이의 區間(越境區間)에 適用한 規定과 列車機關士 및 列車乘務員에게 適用할 規定(第12條 및 第13條)

— 相對方 鐵道管理地域에서의 最短線路區間의 使用(所謂 U字形 交通地域, 第14條에서 第16條까지) 列車運行計劃, 列車構造 그리고 이와 類似한 問題에 관한 合意事項은 越境鐵道運行的 實際業務와 直接 關係된다.

即, 國際列車 運行計劃會議에 立脚한 協定에 따라서 또는 該當 中央機關間의 合意나 協定當事國의 該當 中央機關間의 合意에 依해서 列車運行이 된다. 平常時의 交通量을 훨씬 超過할 경우 可能한 運行限度內에서 追加로 增車を 協議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旅客 및 物資의 越境通行은 CIV 및 CIM 約定에 明文化되어 있는 「國際鐵道旅客 및 貨物運送法」(「베른」協定)의 規制를 받는다. (第11條) 雙方은 1972年 5月 26日字 覺書交換을 通해서 兩獨國家가 上記 約定에 加入될때까지 本條項의 適用을 留保하기로 했다.

그 사이 雙方은 「베른」協定 會員加入申請을 했다. CIV 및 CIM의 約定을 適用하게 되면 旅客 및 貨物運送業務는 훨씬 改善된 것이다. (通過運賃, 往復票, 通過運送狀 等)

國境地域에서의 鐵道運送에 관한 規制(第12條)는 그 동안 豫定대로 獨逸聯邦鐵道 中央管理局과 獨逸民主共和國 交通省間에 1972年 9月 25日 締結된 鐵道通行協定을 通해서 運行技術上的 問題가 補完되었다.

第14條 및 第15條는 獨逸聯邦鐵道가 아래와 같은 獨逸民主共和國內 區間을 U字形으로 通行하는데 따른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당크마르스하우젠」(Dankmarshausen)/「겔스툽겐」(Gerstungen) (「카리」輸送)

—「오버스투울」(Oberstuhl) 往來

—「쉬벵다」(Schwebda)/「헬드라」(Heldra)

第16條는 獨逸帝國鐵道가 獨逸聯邦內의 「바르타」(Wartha) — 「겔스툽겐」(Gerstungen) 區間을 U字形으로 通行하는데 따른 法的 基礎가 된다.

라) 內陸 船舶交通

第1條에 의해서 1945年 이후 처음으로 第3國으로의 通行交通이 다시금 可能해졌다. 第17條는 第1條의 原則을 具體化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協定雙方은 義務적으로 各者의 領域內에서 迅速하고 經濟인 船舶運행을 實現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함으로써 通行을 最大限 保障하고 이를 緩和하며 可能的 限 合理的으로 運營해야 한다. 雙方은 그들의 水路航行에 대한 特別許可制를 取消함에 따라서 聯合國의 法令에 따라 實施되었던 通行許可制 및 東獨側이 實施했던 許可制가 廢棄되었다. 그런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이에 관한 議定書 附錄속에 通行許可制가 다시 實施될 경우엔 許可 節次條項이 再發効된다고 留保하였다.

一般的인 慣例에 따라서 協定相對方의 港口 및 積荷場間의 物資輸送은(沿岸航行) 特別한 許可가 必要하지만 歸路에 協定相對方 領域을 通行航行하는 경우(連結航行)에는 許可가 必要하지 않다. (第18條) 以外에도 碇泊所와 陸路使用(實際로는 東獨側 領域에만 該當, 第19條), 現行의 保稅倉庫許可證, 船荷證書認定(第20條, 第21條), 그리고 每回 手數料徵收(第22條) 등에 관한 規定에 合意하였다. 特別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은 「엘베」江上의 472.6km 내지 566.3km 區間을 아무 論難없이 內陸船舶이 運航되고 있다는 點이다. 과거에는 國境通過問題에 대한 法的 見解差異 때문에 雙方間에는 계속 論難이 惹起되었던 것이다. 이 區間의 管理, 標識, 그리고 事故時의 措置 등에 관한 細部問題는 現行業務遂行과 關聯되는 議定書 附錄속에 明文化되어 있다.

마) 自動車交通(Kraftverkehr)

自動車交通에 관한 規定의 主要部分은 第25條와 이에 附屬되는 議定書 附錄속의 「産業上의 人員과 物資의 輸送에 대한 許可節次」다. 雙方은 自己側 領域內의 또는 이를 通過하는 一時旅行者와 貨物 自動車의 貨物에 대하여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그들의 許可節次에 관한 法規를 適用하지 않고 있다. (第25條 1項) 그러나 雙方은 協定相對方의 貨物自動車 및 「버스」의 定期路線에 대해서 許可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25條 2項) 이를 위한 節次規定은 第25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속에 있다. 第26條는 道路交通許可法의 相互認定을 規定하고 있다. 第28條는 이 問題의 多務協定에 관한 規定으로서 雙方이 該當 國際協定에 加入할 때까지 그 施行을 留保한다는 것을 關係 議定書 附錄속에 明示하였다.

바) 海上交通

海上交通에 관한 條項은 지금까지 兩獨國家間에 重視되었던 國際的 慣例을 反映하고 있다. 第29條는 港口와 기타 海上交通施設을 서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最大限의 互惠原則을 規定하고 있

다. 協定相對便의 港口 및 積荷場間의 物資運送에 대해서는 (沿岸航行)慣例에 따라 通行許可權을 發動한다. 第30條는 國籍을 證明하기 위해 携帶한 證明書類 및 合法的으로 提示된 船舶噸數 證書의 認定問題를 規定하고 있다. 第31條는 協定一方의 國籍船舶이 協定相對便의 領海에 있을 때에도 同 乘船員, 裝備, 設備, 船舶安全措置, 船舶諸元, 航行能力에 관한 規定은 有効하다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나. 旅行者 交流

1) 獨逸聯邦共和國으로부터 獨逸民主共和國으로의 旅行者 交流

交通協定이 發効되기 前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은 私的 用務로 東獨을 旅行하는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에게 原則적으로 1等親 및 2等親의 家族을 年間 1回 4週間に 限해서 訪問하도록 許可하였다.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이 東伯林에서 24時間 滯留하는 것도 可能했다. 이것과는 關係없이 業務旅行, 「라이프찌히」見本市場 參觀旅行 그리고 公共機關 招請에 의한 旅行 等은 許可되었다.

1972年 10月 17日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締結된 交通問題에 관한 協定이 發効됨으로써 根本적으로 旅行規制 緩和 및 改善이 실시되었다. (文書 35)

獨逸民主共和國은 이 때부터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에게 東獨內 親戚訪問 旅行뿐 아니라 親知訪問 旅行까지 許可하고 年間 1回 혹은 數回에 걸쳐 總 30日까지의 滯留를 許可했다. 以外에도 獨逸聯邦共和國市民이 商業, 文化, 「스포츠」, 宗教上의 用務로 東獨內 該當機關의 招請을 받을 경우 入國許可를 받을 수 있다. 먼저 獨逸民主共和國에 觀光旅行을 가는 問題가 獨逸聯邦共和國 旅行社와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總局間의 協定에 의해서 解決되었다.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各種 旅行案内所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로의 觀光旅行 業務를 代行하고 있다. 東獨에 觀光旅行을 가기를 願하는 西獨市民이 西獨內의 旅行社에 이를 申請하면 同 旅行社는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을 통해서 入國查證을 얻기 위한 資格證明書類를 發給받고 許可된 日程計劃에 따라 東獨內 目的地에 있는 호텔을 豫約한다.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이 東伯林을 24時間 訪問하는 問題와 「라이프찌히」見本市場을 訪問하는 旅行은 別途로 特別히 保障되고 있다.

西獨 市民들이 一定한 條件을 받아들이는 前提下에 自己의 乘用車를 타고 東獨을 旅行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旅行希望者들에게 커다란 便益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自家用乘用車로 東獨에 入國하는 것을 原則적으로 許可하지 않았으나 現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許可된다.

- ◎ 緊急한 用務로 旅行해야 할 경우, 公共交通手段으로는 豫定時間에 到着할 수 없거나 또는 目的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利할 때
- ◎ 3歲 以下의 어린이를 同伴해야 할 때
- ◎ 旅行者가 身體上의 不便으로 自家用車의 利用을 必要로 할 때
- ◎ 商業, 文化, 「스포츠」, 宗教上의 目的으로 旅行할 때

또 한가지 改善된 緩和措置로는 西獨市民이 原則上 東獨全域을 旅行하고 滯留할 수 있는 許可를 發給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東獨內의 旅行者들은 許可된 地域內에 限해서 滯在할 수 있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의 他地域을 계속 訪問하고자 하는 旅行者는 특별히 許可를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特別許可는 原則上 1等親 家族訪問에 限해서 發給되었다.

1972年 12月 21日에 締結된 基本條約에 따라 雙方은 同 條約이 發効된 뒤에 兩獨間의 觀光旅行을 包含한 旅行者 交流 및 訪問客 交流의 계속적인 改善策에 合意하였다.

基本條約이 發効됨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隣接地域 住民들은 年間 許可日數 30日의 範圍內에서 當事者의 每 申請에 따라 3個月內에 9回까지 獨逸民主共和國 境界地方을 1日間 訪問할 수 있도록 許可될 것이다. 그리고 人的 交流을 위해서 새로 4個의 道路通過地域, 즉 「윔젠」(Uelzen)—「잘쯔베델」(Salzwedel), 「두더쉬타트」(Duderstadt)—「보르비스」(Worbis), 「바트 노이슈타트」(Bad Neustadt) 「잘레」(Saale)—「마이닝겐」(Meiningen), 그리고 「코부르크」(Coburg)—「아이스펠트」(Eisfeld)의 通路가 追加로 開設될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國을 旅行한 西獨住民의 數는 1969년에 약 110萬名, 1970년에 약 125萬名, 1971년에 약 126萬名에 達했다. 1972년에는 154萬名の 西獨住民이 東獨內로 旅行했다.

2) 獨逸民主共和國으로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旅行

1961年 8月 13日以後 獨逸民主共和國의 通行閉鎖措置로 말미암아 獨逸民主共和國의 모든 居住者는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旅行이 禁止되었다. 1964年 11月 2日부터 年金生活 老人들은 1년에 1回 4週間까지의 滯留期間으로 西獨地域 또는 西伯林에 居住하는 그들의 親戚을 訪問할 수 있게 許可되었다. 本人家族의 死亡이나 重病의 경우, 年金生活者에게는 別途의 追加旅行이 許容될 수 있다. 年金生活者의 資格은 만 60歲의 女性和 만 65歲의 男性에 該當된다. 不具者 및 傷害年金 生活者들도 上記 年金生活者 老人들과 같은 待遇를 받는다. 1972年 10月 17日 交通協定이 發効된 후 東獨住民들은 1년에 1回 또는 數회에 걸쳐 30日 以內의 滯留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車便으로 西獨內 旅行이 許可될 程度로 事情이 改善되었다.

1964年 11月 以來로 每年 약 100萬名の 東獨內 年金生活者가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그들의 家族親戚을 訪問했다.

交通協定の 發効와 함께 旅行者交通 및 訪問者 交流를 더욱 緩和하는 措置들이 合意되었다. 1972年 10月 17日 交通協定과 같은 날에 發効된 東獨住民의 旅行規制令(文書 34)에 따라 처음으로 年金生活者 以外의 모든 東獨사람들이 年齡에 關係없이 緊急한 家事務로 가까운 家族, —예컨대 祖父母, 父母, 子女, 姉妹—을 만나기 위해 西獨이나 西伯林으로 旅行할 수 있게 되었다. 緊急한 家事問題로서는 分娩, 婚姻, 生命이 위독한 重病, 死亡 등이 該當된다. 그들의 出國은 年 1回 혹은 數회에 걸쳐 總 30日의 滯留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車便으로 許可될 수 있다.

基本條約의 署名에 즈음하여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와 觀光旅行을 보다 緩和하는 措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約束하였다. 따라서 基本條約이 發効된 다음에는 東獨에 居住하는 異腹兄弟(어머니가 낳은 兄弟)에게도 緊急한 家事問題로 旅行申請을 하게되면 이를 許可하게 된다. 緊急한 家族問題에는 銀婚式과 金婚式까지 包含될 것이다.

1972年 10月 17日 交通協定이 發効된 以後 1973年 1月 31日까지 東獨住民 15,719名이 새로운 規定에 根據해서 緊急한 家族問題로 西獨을 旅行했다. (西伯林 除外)

3) 西伯林 居住人的 東獨旅行 및 東伯林旅行

지난 20年間 西伯林 住民들이 東獨地域을 旅行하고 東伯林市를 訪問할 수 있는 機會는 漸次 減少되었다. 1952年 以後에 그들이 東獨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不可能했고 1961年 以後에는 東伯林에 들어가는 것도 原則적으로 拒否되었다. 다만 短期間의 暫定措置로서 即 1963年, 1964年 그리고 1965年의 「크리스마스」 및 新年的 訪問期間, 1965年과 1966年の 復活節 및 聖靈降臨節의 訪問期間, 1964年 가을의 14日間, 그들은 通行證協定에 基礎하여 東伯林市內의 가까운 家族親戚을 訪問할 수 있었다. 1966年 以後부터는 緊急한 家族問題가 發生한 사람들에게 소위 嚴格한 檢問所를 通해서 東伯林을 訪問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이러한 方法으로 東伯林에 居住하는 그들의 家族을 再會할 수 있었던 西伯林住民은 年平均 약 9萬名에 達했다.

4大國協定の 關係規定에 따라 西伯林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締結되고 1972年 6月 3日 發効된 旅行 및 訪問緩和 改善에 관한 協定에 따라서(文書 29) 西伯林에 居住하는 市民들은 年間 30日 限度內에서 1回 또는 數次에 걸쳐 東獨 또는 東伯林을 旅行할 수 있다. 訪問許可는 人道的, 家族的, 宗教的, 文化的 그리고 觀光 目的으로 發給된다. 緊急한 家族問題로 旅行할 경우에는 비록 年間 許可日數 30日을 全部 利用했을 경우에도 許可된다. 그리고 社會的, 經濟的, 學術的 또는 文化的 目的의 入國도 許可된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旅行案內所와 獨逸旅行社(DER)間의 合意에 基礎하여 東獨觀光旅行도 可能하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西伯林 居住者가 申請하면 獨逸民主共和國內의 여러 地方에 滯留할 수 있는 許可를 發給한다.

旅行者가 身體的 障礙로 乘用車를 必要로 할 경우, 緊急한 用務로 旅行할 경우 또는 公共交通手段으로는 目的地 到着이 늦어진 경우, 3歲以下의 어린이를 同伴할 경우, 目的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便할 경우 그리고 西伯林에서 100km以上 떨어진 目的地를 旅行할 경우 등에는 自家用車의 利用을 許可한다.

以外에도 社會的, 學術的, 經濟的 내지 商業的 혹은 文化的 目的을 내고 旅行할 때에는 自動車를 利用할 수 있다. 西伯林市 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各各 委任代表를 任命하고 그들로 하여금 協定旅行 및 適用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見解差異와 어려운 問題들을 解決하도록 했다. 그리고 雙方은 適當한 時期에 그 동안의 經驗을 土彙로 해서 보다 旅行業務를 改善하는 問題를 協商하기로 合意했다.

이러한 合意된 諸規定들은 벌써 發効되기도 전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 의해서 1972年の 復活節과 聖靈降臨節을 期해서——1972年 3月 29日부터 4月 5日까지와 1972年 5月 17日부터 5月 24日까지——의 方으로 實施되었다. 이 期間中에만 약 115萬名의 西伯林사람들이 東獨과 東伯林市를 旅行하였다. 1972年 6月 3日 協定發効 以後 1972年 12月 31日까지 약 350萬名의 西伯林市民이 東伯林과 東獨을 訪問했다고 1973年 1月 6日字 「노이에스 도이취란트」紙(Neues Deutschland)는 報道하였다.

3. 西 伯 林 通 行

이미指摘된 伯林通行에 대한 妨害와 難關은 1970年度까지 이 都市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을 沮害하였다. 滿足할 만한 解決을 이루기 위해서는 民間人 通行을 위한 陸路와 水路에 관한 包括적이고 明白하며 持續적이고 實質적으로 緩和된 協定締結이 先行되어야 한다.

가. 4大國의 伯林協定

伯林通行의 安全과 改善에 관한 基本規定은 1971年 9月 3日字의 4大國協定の 範圍內에서 合意되었다. (文書 20)

同 協定은 第Ⅱ部 A項의 基本原則 條項에서 通行交通을 妨害하지 말고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迅速한 方法으로 通行할 수 있게 緩和하며 特惠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附屬文書에는 通行交通이 가장 簡便하고 迅速하며 有利한 方法으로 國際的 慣例에 따라서 保障되어야 한다는 具體的인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이러한 原則을 實現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緩和措置가 規定되어 있다.

- 物資輸送手段은 封印裝置를 하고 檢問節次는 封印裝置 및 送荷狀에 限해서 實施된다.
-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에 대한 制限된 檢問節次
- 通過列車 및 「버스」에 대하여 證明書類 檢問만으로 通行許可
- 通行路 使用에 대한 手數料 및 公課金 徵收의 一時拂 清算
- 通行遲延을 防止하기 위한 手續節次의 簡素化; 通行路 違反時 以外の 旅行者와 交通手段 그리고 個人手荷物에 대한 搜索禁止

이러한 緩和措置의 實施 및 補完을 위한 具體的인 規制를 協議하는 것은 兩獨政府의 關係機關에 委任되었다.

나. 伯林通行協定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17日에 締結되었다. (文書 27) 4大國協定에 대한 最終議定書와 함께 同 協定은 1972年 6月 3日부터 發効되었다.

陸路를 利用한 個人旅行者의 往來가 飛躍적으로 增加했다는 事實만 보더라도 同 協定의 實質的인 意義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交流는 1972년에는 前年보다 약 45%가 增加했다.

1) 旅行者의 保護

4大國 伯林協定과 兩獨間의 施行協定이 發効됨으로써 原則적으로 通行路使用이 拒否되는 사람들의 部類란 없다. 어떤 旅行者도 西獨이나 西伯林에서의 그의 政治的인 活動을 理由로 退去당할 수

없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許可없이 東獨地域을 떠났거나 혹은 그 以前에 東獨地域內에서 處罰받을 만한 行爲를 한 사람이라도 通行路를 干涉없이 使用할 수 있다. 과거에 東獨內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法을 違反한 殺人犯, 故意的 重傷犯, 또는 所有物이나 財産에 대한 重犯行者 등에 대해서는 通行을 拒否할 수 있다.

通行協定은 通行路의 使用時 및 國境通過地點에서의 檢問時, 無根據한 強制措置로부터 旅行者를 保護한다. 同 協定은 어떤 경우에 通行路使用 違反에 該當되고 또 그 경우엔 어떤 措置가 취해지는가 하는 問題를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旅行者가 通行路를 使用하는 途中에 物資를 流布하거나 蒐集할 때, 사람을 태울 때, 規定된 通行路를 無斷離脫할 때, 기타 犯法 및 通行規則을 違反할 때에는 通行路 使用違反에 該當된다. 그리고 通行路 使用中에 違法 또는 犯法行爲를 했거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共犯, 教唆, 幫助行爲를 한 旅行者도 通行路使用 違反罪에 該當된다. 通行路 使用違反의 嫌疑가 뚜렷할 경우에는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旅行者와 그의 交通手段 및 個人 手荷物を 搜索할 수 있으며 旅行者를 退去시킬 수 있다.

通行路 使用違反의 嫌疑가 判明될 때,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退去令, 處罰措置, 罰金, 警告措置를 취할 수 있으며 携帶品의 押留, 保管, 沒收措置를 취할 수 있고 旅行者에 대한 退去, 一時的인 通行路使用不許 또는 拘束措置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措置는 旅行者가 過去의 通行路使用中에 獨逸民主共和國의 法을 違反하고 犯法行爲를 하였을 경우에도 該當된다. 旅行者의 通行路 使用違反에 대하여 獨逸民主共和國側은 違反行爲의 輕重의 程度에 따라 가장 適當한 法的 措置를 취한다. 旅行者의 逮捕, 通行不許, 退去措置 등에 관해서도 獨逸聯邦共和國當局에 通報된다.

通行協定 第19條에 의해 設置된 共同委員會가 雙方間의 意見差異를 調整하며 必要하다면 兩獨政府도 여기에 介入한다. 最終 決定權은 4大國協定에 따라 4大強國이 行使한다.

2) 人的交流에 대한 業務節次 緩和

鐵道交通과 道路通行上의 業務節次는 根本的으로 簡素化되었다.

旅行者는 原則的으로 車를 타고 앉아서 手續을 밟을 수 있다. 檢問節次는 通行證의 記載事項과 本人의 確認에 局限되며 西伯林 住民의 경우에는 本人身分證을 確認한다. 「비자」發給은 別途의 書面상의 手續없이 許容된다. 「비스」의 경우에는 一括「비자」가 發給될 수 있다.

車輛과 個人的 手荷物は 特別한 경우 以外에는 調査받지 않는다. 通過버스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檢問節次는 오직 本人 身分確認뿐이며 다른 手續은 없다. 個人的 手荷物이라 함은 旅行中에 必要한 物品 및 消耗品, 携帶한 膳物, 모든 種類의 旅行用 讀書物, 旅行中 本人이 持參하는 이삿짐 등 모든 物品을 말한다.

持參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公醫가 發行한 接種證明書 提示로 充分하다. 個個人이 「비자」 手數料 및 通行路 使用手數料를 支拂할 必要가 없다. 그 代身 聯邦政府는 1975년까지 每年 2億 3千 900萬「마르크」로 策定된 總額을 一時拂로 清算한다. 이러한 總額과 함께 個人別 物資交流에 대하여 지금까지 引上된 一連의 追加的인 公課金도 清算된다. 個人別 手數料는 特別한 경우, 예컨대 臨時通行證을 發給할 때 또는 特別히 別途의 許可가 必要한 物品을 携帶한 경우에는 이를 徵收할 수 있다.

3) 物品交流의 緩和

4大國協定과 通行協定은 장차 封印輸送手段에 의한 物資運送을 實施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했다.

聯邦議會는 1972年 6月 23日에 封印輸送法을 制定하였다. 同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發効될 封印輸送義務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으며 例外規定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例外規定을 보면 車輛의 構造上 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過度의 費用때문에)封印裝置를 安全하게 保障할 수 없는 車輛 또는 封印할 수 없는 個別的인 物資를 輸送하는 車輛에 대해서는 義務規定의 適用이 除外된다. 또한 짐을 싣지 않은 開封된 車輛에 대해서도 例外規定이 適用된다.

封印裝置는 原則的으로 西獨地域 및 西伯林의 稅關當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鐵道와 郵便封印도 認定된다. 實際的인 簡素化를 위해서 國境檢問所에서 뿐만 아니라 國內稅關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一定한 前提條件下에 企業體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檢問節次는 封印과 送荷狀의 調査에 局限한다.

封印될 수 없거나 封印規制를 받지 않는 車輛의 貨物은 4大國協定에 따라서 充分한 違法嫌疑가 있을 경우에 限해서 必要한 調査를 받는다. 이 때는 通行路 使用違反에 관한 規定이 適用된다.

雙方間에 別途의 書翰交換을 통하여 西伯林往來의 證明書類로 物品送狀을 使用하도록 새로이 合意함으로써 節次가 根本的으로 簡素化되었다. 지금까지 必要했던 地方官廳의 個別許可制는 廢止되었다. 物品送荷狀이 必要한 物品의 範圍를 明白히 規定하였다. 이미 1972年 3月 1日부터 實施된 새로운 物品送荷狀制度는 西伯林往來의 物資輸送을 根本的으로 緩和하였다.

살아 있는 動物을 包含한 特定한 物品의 運送 및 携帶에 관한 特別規制 條件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公報」(Information)에 明示되어 있다. 그 속에는 특히 獸醫師證明書와 植物保護證明書 등의 分野에 대하여 一連의 根本的인 緩和措置가 斷行되었다.

4) 交通 緩和

現在의 國境通行路和 通過地域은 通行協定속에 合意되어 있으며 特定한 交通 및 輸送方法에 따라 여러 地域의 國境通行路 使用이 擴大되었다. [예를 들면 旅客列車의 「구텐푸르스트」(Gutenfürst)경유 許可, 모든 旅行者, 物品, 그리고 動物通行時 「바르타」(Wartha)道路의 通行許可]

모든 列車는 急行列車로서 通過地域을 運行한다. 國境에서의 停止時間은 短縮되었고 이로 인하여 鐵道交通은 빨리 運行되었다. 以外에도 伯林을 경유하는 「뮌헨」(München)—「자스니쯔」(Saßnitz) 連結路線이 새로이 開通되었다. 旅客列車와 貨物列車는 交通量에 따라 增車될 것이다. 交通需要가 급작스럽게 增加되면 追加的인 配車問題가 協議될 것이다.

道路交通에 있어서 通行許可와 運轉免許證의 認定과 함께 獨逸民主共和國은 通行許可發給 地域에서 有効한 모든 車輛의 製造 및 裝置에 관한 規定을 認定한다. 모든 路線「버스」 및 臨時「버스」는 特別히 簡略한 手續을 받고 急行으로 運行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一定한 휴게소를 設置하였고 이 곳에서 停車하는 急行「버스」는 急行車의 性格을 잃지않고 停車할 수 있다. 物品 交流를 위한 運送許可의 發給과 新規「버스」路線의 認可는 全的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의 法에 따라야 한다.

內陸水路交通에 있어서 東獨內 水路航行을 위한 特別許可가 不必要하게 되었다. 휴게소의 數는

增加되었다. 특별히許可된 碇泊所에 限해서 內陸船의 乘務員들에게 上陸이 許容된다.

西伯林往來를 위한 道路 및 水路交通은 災害, 運航故障 그리고 事故時의 救助에 관한 協商과 相互 交通情報 傳達을 通해서 더욱 緩和될 것이다.

5) 通行委員會

通行協定 第19條에 의하여 한 委員會가 構成되었는데 同 委員會의 任務는 通行協定の 適用 및 解釋過程에서 發生하는 意見差異와 어려운 問題를 調整하는 것이다. 通行協定이 發効된 以後 여러 차례의 會議가 開催되었고 거기에서는 同 協定の 施行과 同 協定에 關係된 問題에 관한 많은 見解差異를 解決할 수 있었다.

同 委員會는 또한 適當한 時期에 伯林通行을 위한 더 많은 計劃과 發展에 관해서 協議할 것이 豫想된다.

4. 法的, 行政的, 人道的 및 實際的 問題

가. 兩獨 法院間的 法的 및 行政的 協調와 檢察廳間的 協調

1945年 終戰後부터 얼마동안 東西獨의 各 法院間에는 直接的인 法律的, 行政的 協調關係가 維持되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차츰 雙務的 規制가 없는 兩國家間에 適用되는 原則들을 嚴守할 것을 要求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主張에 의하면 獨逸聯邦共和國에서 獨逸民主共和國으로 送達되는 法律共助請願(Rechtshilfeersuchen=刑事 또는 民事上의 辯論, 證人出頭, 證據協調, 面會 等 協調要請)은 聯邦法務相을 통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法務省—으로 接受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共和國側이 慣例대로 東獨內의 法院에 接受시킨 모든 法律共助請願書를 處理도 하지 않은 채 聯邦法務相앞으로 返送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各州 最高法院를 經유해서 獨逸民主共和國 法務省에 接受시킨 法律共助請願도 1969년부터 이러한 方法으로 處理되었다. 基本條約에 關한 協商이 終結된 이후부터는 獨逸民主共和國에 移牒된 獨逸聯邦共和國 法院의 法律共助請願은 東獨內의 法院에 의해서 處理되어 東獨法務省을 통해 聯邦法務相에게 通報되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檢察廳間的 交流도 역시 長期間 直接的으로 展開되었다. 그러나 1967年初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共和國 檢察廳의 모든 請願을 東獨檢察總長에게 接受시킬 것을 要求했다. 그 후 獨逸民主共和國 檢察總長은 그에게 送達되는 모든 請願書는 獨逸聯邦共和國 檢察總長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送達된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모든 請願이 獨逸民主共和國側에 의해서 處理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여기에도 難點들이 發生하였다. 왜냐하면 獨逸民主共和國側이 때로는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各州政府 最高司法當局을 통해 請願送達를 要求했기 때문이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基本條約에서 兩獨間的 法律協調問題 即 法院間的 法律 및 行政協調와 檢察廳間的 協調를 가능한 限 簡素하게 그리고 合理的으로 規制하는데 原則적으로 同意하였다.

나. 國籍 問題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第16條 및 第116條)과 獨逸聯邦共和國에서 계속 有効한 1913年 7月 22日 帝國法 및 國籍法은 하나의 單一獨逸國籍에 根據하고 있다.

1949년에 制定된 獨逸民主共和國 憲法과 그 뒤 얼마동안 獨逸民主共和國에서도 有効했던 帝國法 및 國籍法에 의하면 오직 하나의 獨逸國籍이 存在할 뿐이다. 그런데 1967年 2月 20日에 制定된 獨逸民主共和國의 公民에 關한 法(公民法)이 施行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 獨自의인 國籍이 생겼고 帝國法 및 國籍法이 廢止되었다. 1968年 4月 6日에 改定된 獨逸民主共和國 憲法은 公民法의 規定만을 適法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同 法에 의하면 獨逸民主共和國 公民이란 獨逸民主共和國 創建當

時 獨逸國民이었던 者, 獨逸民主共和國內에 계속 現住所를 가졌거나 常住했던 사람으로서 그 후 東獨公民權을 喪失하지 않은 者, 또는 獨逸民主共和國外에 現住所를 가졌거나 常住했던 者로서 그동안 他國籍을 取得하지 않고 本人意思에 따라 獨逸民主共和國的 關係機關을 통해 登錄을 畢하여 獨逸民主共和國 公民權을 取得한 者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公民權法의 規定에 의하여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을 取得하고 그 후 이를 喪失치 아니한 者도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이다.

同 法에 따라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을 所有한 父 또는 母의 子孫은 公民權을 取得한다. 以外에도 獨逸民主共和國 領土內에서 出生한 어린이가 出生을 통해 他國籍을 取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을 取得한다. 其他 獨逸民主共和國 公民權을 授與할 수도 있다.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은 追放, 授與取消, 剝奪으로써 喪失된다. 이러한 法的 措置는 國家機關의 協調를 要한다.

以上과 같은 法 實情을 根據로 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法解釋 如何에 따라서는 한동안 獨逸民主共和國를 떠났던 東獨住民과 그 子女들도 公民權을 保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2年 10月 16日字의 國籍問題에 관한 規制法은 1972年 1月 1日 以前에 許可없이 東獨을 떠났거나 그 후 다시 東獨內에서 居住하지 않은 者 및 그들의 子孫은 그들이 獨逸民主共和國 國家機關의 許可없이 東獨外部에서 居住하고 있는 限 1972年 10月 17日字로 發効되는 同 法에 따라서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을 喪失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文書 33)

同 法은 同 法이 規定하고 있는 人的 狀況에 따른 法的 地位와는 關係없이 國籍問題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相異한 法解釋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如前히 統一된 獨逸國籍을 根據로 하고 있고,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的 公民權을 根據로 하고 있다.

基本條約 締結에 의해서도 이러한 法的 問題는 變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條約雙方의 解明을 통해서 分明히 되었다.

다. 行政 接觸

1) 公共機關의 行政協調

獨逸聯邦共和國 行政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行政機關間의 行政協調交流는 本質的으로 身元問題, 靑少年善導, 保險業務 그리고 社會問題 등의 分野에까지 擴大되고 있다. 이런 分野에서의 行政協調는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마찰없이 遂行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協調系統上의 問題로 因하여 어려움이 發生하였다. 특히 어려운 問題는 逃避者問題, 補償問題, 金錢償還問題, 損害賠償問題 그리고 負債清算問題 등에 관한 行政協調였다.

身元에 관한 業務分野의 行政協調로서는 本質的으로 身元證明書의 發給要請, 戶籍事務機關의 證憑書類通報, 戶籍關係 照會 및 回報業務 등이 該當된다.

靑少年 善導問題中에는 未婚靑少年의 生活費 請求, 押留 그리고 公共機關에 의한 保護 및 善導 등이 行政協調의 請願 對象이 된다.

4) 西伯林市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的 特殊問題 規制

1961년의 封鎖措置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持續되었던 東西伯林市 行政當局間的 接觸은 中斷되었다. 그러나 生活上 不可避한 分野에서의 技術的인 下位級 接觸은 維持되었다.

가) 鐵道業務, 道路工事業務, 水路

定期的인 接觸이 不可避했던 理由는 西伯林市內的 電鐵 및 帝國鐵道가 獨逸帝國鐵道(東獨)의 管理下에 있었고 또 獨逸帝國鐵道가 鐵道運營에 必要한 土地를 管理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市內 道路網 및 高速道路網의 工事は 必然的으로 鐵道の 上下를 交叉하게 되었고 또 鐵道運營을 考慮해야만 했다. 이로 因해서 西伯林市の 建設 및 住宅局과 獨逸帝國鐵道を 代表한 帝國鐵道局과 持續的인 協調가 必要했다. 그리하여 鐵道 및 道路建設 計劃과 이를 施行하기 위한 管理當局間的 技術的인 對話가 定期的으로 이루어 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西伯林市 水路의 水門管理問題도 비슷한 實情이다. 西伯林市 建設 및 住宅當局과 東伯林市 水路局間에는 同 水路局이 運營하는 水路管理問題와 關係되는 諸般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定期的인 對話가 進行되고 있다.

나) 西伯林市的 下水道 問題 및 쓰레기 處理에 관한 規制

伯林市的 生活條件을 改善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1963년부터 1966년까지 進行된 通行證發給에 관한 協商을 契機로 獨逸民主共和國 및 東伯林 當局과 地域社會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 이루어진 書信往來 및 長期間의 協商 끝에 西伯林市の 建設 및 住宅局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廳 水利管理局間에 西伯林的 下水道處理問題를 正常的 法規에 따라 解決하게 되었고 西伯林市 當局이 支拂해야 할 經費補償問題도 合意되었다. 支拂問題는 交易總額에 包含해서 清算된다. 現在는 每 4分期에 平均 250萬「마르크」씩 水利管理局에 支拂하고 있는데 이 額數는 漸次 增加하고 있다.

1969년부터 市內 清掃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獨逸民主共和國이 除去하고 있다. 西伯林市の 建設 및 住宅局은 年間 40萬立方「미터」의 쓰레기除去 用役契約을 個人會社와 締結하였고 同 西伯林會社로 하여금 國營貿易業體인 「벨크라우」交易會社(Bergbau-Handel GmbH)와 契約을 締結하여 「드라이비츠」(Dreiwitz)地方的 「레브뤼케」(Rehbrücke)로 쓰레기를 運搬해 가도록 하였다.

4大國協定과 西伯林市當局—獨逸民主共和國 追加協定에 署名한 후 쓰레기를 東獨地域으로 運送하기 위한 努力은 強化되었다. 이러한 問題는 1972年 10月 國營貿易業體인 「벨크라우」交易會社와 西伯林市的 「베르린콘설트」會社(Berlin-Consult GmbH)間的 協商을 通해서 契約을 締結함으로써 解決되었다. 同日 交換된 一方的 聲明을 通해서 西伯林當局은 財政問題를 保障했고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은 同 契約上 그들이 履行할 義務를 確認하였다. 同 契約은 1972年 12月까지의 期限으로 締結되었다. 20年間 每年 약 600萬立方미터의 쓰레기를 西伯林市에서 東獨地域으로 収去하도록 計劃된 契約이 協商中에 있다.

다) 領土交換(包領問題)

4大國協定과 이를 補完한 西伯林當局—獨逸民主共和國間的 協定으로 伯林地域內的 包領問題

(Ex-und Enklaven) — 특히 「슈타인슈튀켄」(Steinstücken)까지의 出入開放問題 — 를 解決할 수 있게 되었다. 「슈타인슈튀켄」方式의 調整을 통해서 行政區域을 確定함으로써 1920년에 大柏林區域 (Groß-Berlin)으로 統合된 區域中 여러개의 大小形 包領을 얻게 되었다. 그 中 몇몇 地域 — 특히 「슈타인슈튀켄」 — 은 사람이 居住하거나 週末別莊地域으로 되어 있다. 包領中에서 重要的 地域은 사람이 居住하지 않고 특히 農地로 利用되고 있는 곳이다. 包領의 總面積은 112.8「헥타」에 達했다.

1971年 12月 20日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西柏林當局과 「換地를 통한 包領問題의 規制를 위한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柏林과 「슈타인슈튀켄」을 連結하는 약 20미터幅의 東獨領土를 양도하였고 더 나아가서 「슈타인슈튀켄」과의 交通을 改善하기 위해 東獨의 「스타안스토폴」道路의 一部를 양도해 주었다. 이 合意와 관련하여 獨逸民主共和國側은 또 몇군데의 땅을 양도했다. 1972年 7月에 締結된 追加協定을 根據로 東柏林市 中部의 「포츠담」驛과 隣接地域이 西柏林市 動物園地域으로 編入되었다. 이로 인하여 都市의 西方과 南方 「프리드리히」街의 第2의 都市間에 都市計劃上으로나 交通面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調和를 이루게 되었다. 柏林市 西部地域으로 編入된 總面積은 25「헥타」 以上에 達했다. 西柏林市當局은 東獨側 包領의 讓渡代價로 總面積 15.6「헥타」를 東獨側에 주었고 追加로 土地代金 3,500萬「마르크」를 支拂했다.

1971年 12月 20日에 締結된 協定에 따라 雙方은 以外에도 現在 未解決 狀態의 包領에 관한 協商을 推進하고, 그 때까지 同 包領의 現狀態를 變更시키지 않기로 했다. 西柏林市當局은 앞으로 계속 協商을 통해서 東獨 및 東柏林에 所屬한 몇몇 地域과 西柏林市의 交通計劃에 支障을 주는 地域의 땅을 西柏林市로 併合시킬 것을 考慮하고 있다.

結 論

1971年 9月 3日에 締結된 4大國協定 附屬文書Ⅲ은 西柏林市와 隣接地域間의 相互交流 및 紐帶關係를 改善, 發展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原則에 依據하여 西柏林當局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協商을 통해서 柏林市의 生活條件을 改善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하는 努力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물론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政府間의 協商에서는 規制되지 않은 實質的인 問題와 地域的 問題만을 解決하는데 目的이 있다.

進行中인 對話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對話를 통해서 問題를 段階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柏林이 現代都市로 發展하는 것을 가로막는 障礙物인 環境遮斷狀態를 克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旅行者交流」章에서 言及된 바 있는 西柏林市民의 東獨 및 東柏林訪問과 旅行에 관한 協定은 특히 主要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라. 特殊한 경우의 支援

獨逸의 分斷으로 因해서 지금도 많은 家族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數年前부터 그들의 一部는 獨逸民主共和國內에 있는 그들의 家族을 出國시키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中에서 特別한 경우로는 多數의 約婚者들인데 東獨에 사는 相對方이 結婚許可를 얻지 못하고 또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出國許可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다.

聯邦政府는 지난 數年間 이러한 陳情事項을 解決해 주기 위해 상당한 努力을 傾注해 왔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出國旅行許可를 發給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大部分의 경우, 當事者들이 數年間的 힘든 努力끝에 許可를 받은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基本條約 協商過程에서는 特히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가 重點의으로 取扱되었었다. 基本條約 第7條에서 雙方은 關係正常化와 더불어 實際的이고 人道的인 問題를 規制할 것에 合意하고 있다.

離散家族의 再會 및 旅行簡素化에 관한 覺書交換을 통해서 實際的인 緩和措置가 이미 이 時點에서 斷行되었다. 同 覺書는 條約의 發効와 함께 施行된다. 同 條約이 發効되면 一定한 前提條件下에 떨어져 있는 夫婦가 再結合할 수 있고 父母는 그들의 子息들과, 祖父母는 그들의 孫子들과 再會할 수 있으며, 東獨人和 西獨人間의 結婚이 可能해진다. 昨年에는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子息들이 西伯林 및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그들의 父母 및 家族들과 再會할 수 있도록 特別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1972年 11月初부터 많은 獨逸內의 父母들이 獨逸民主共和國當局的 短期間 旅行許可를 받고 出國한 그들의 子息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 數個月동안 이와 같은 再會事業이 계속 잘 進行될 것이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가 1972年 10月 6일에 數많은 政治犯들에게까지 惠澤을 베푼 大赦免令을 환영했다. 同 赦免結果, 1972年 11月 1일부터 1973年 1月 31일까지 拘禁에서 풀려나는 2,000名 以上の 사람들이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移住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逮捕되기 전에 西獨이나 西伯林市에 居住했던 小數의 사람들도 包含되어 있었다. 그러나 大多數는 逮捕以前에 東獨에 居住했으며 赦免으로 釋放된 者들이다.

마. 保健 및 環境

1) 保健 問題

保健分野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關係는 보잘 것 없다. 傳染病 退治問題 程度의 範圍에서 相互間에 情報가 交換된다. 東獨住民이 西獨內의 家族을 訪問하자면 同 家族이 重患者임을 證明하는 醫師의 診斷書가 必要한데 이러한 醫師證明書의 發給業務는 獨逸聯邦共和國 保健所가 擔當하고 있다. 同 保健所는 또한 東獨으로 發送되는 中古衣類品の 消毒證明書도 發給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醫藥品の 個人的인 郵送을 許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物品交流는 兩獨交易으로 行해지고 있다. 兩獨交易代行業所를 통해서 그동안 食肉檢查規定 施行에 관한 協商이 進行되었다. 東西獨 保健學者들이 함께 會議를 하는 일은 드물다. 기껏해야 獨逸民主共和國의 停年退職期의 醫師와 學者들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專門機關行事に 參加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協定을 통해서 保健管理分野의 이러한 不滿스러운 狀態를 改善하고 相互 緊密한 協力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해 協商을 始作할 計劃이다.

2) 環境保護

지금까지 環境保護分野에 있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關係는 本 報告書의 別項에서 言及될 特定한 一部接觸을 除外한다면 전혀 없다. 聯邦政府의 見解에 의하면 基本條約의 追加 議定書에 規定된 協定對象, 即 條約相對便에 대한 被害와 危險을 豫防하기 위한 問題는, 예컨대 東海의 汚染, 內陸河川의 不潔, 國境通行으로 因한 空氣汚染, 自動車排氣가스의 減少 그리고 其他 自然環境保存 및 開發 等이다. 以外에도 環境保護를 위한 研究計劃의 調整, 「유엔」活動計劃을 共同으로 遂行하는 問題 等도 考慮되어야 한다. 聯邦政府는 이와 같은 分野의 相互協力を 最短時日內에 具體적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5. 文化, 「스포츠」, 教育 및 學術分野의 關係

基本條約 追加議定書에서 條約雙方은 學術, 技術分野에서의 相互協力을 增進시키고 이에 必要한 協定을 締結하겠다는 洪意를 表明했다. 그리고 文化分野에서의 相互協力을 增進시킬 目的으로 政府間의 協定締結을 위한 協商意圖를 表明하였다.

이와 함께 雙方은 1960年代末부터 事實上 거의 中斷되고 있는 文化 및 學術分野의 相互關係를 雙方의 利益에 基礎해서 正常化하는 問題에 共同的 關心을 表明했다. 이를 實現하기 위한 基本條件은 充分히 造成되었다.

가. 文化分野의 交流關係

1964년부터 1966년까지 活潑히 進行되던 招請公演交流가 1967年初에 와서는 갑자기 沈滯되었다. 무엇보다도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完全한 承認을 東獨側이 要求해옴으로써 協商은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雙方의 合意下에 進行되던 招請公演이 中斷되었다. 1969年の 政權交替後 이러한 狀況은 어느 정도 改善되었다. 1970年の 「루우르」演劇祝祭(Ruhrfestspiel) 때에는 東柏林의 獨逸劇場(Deutsche Theater)은 3篇의 演劇을 上演했다.

1970年 11月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탄생 150周年 記念으로 「부퍼탈」(Wuppertal)에서 公演한 것과 같은 特別한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에서 公演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앙상블」(Ensemble)은 一般大衆을 위한 公演도 하였다.

1972年에도 獨逸民主共和國의 劇團과 「오케스트라」의 招請公演이 있었다. 「비스바덴」(Wiesbaden)에서 開催된 國際五月祝祭(Internationale Mai-Festspiel) 때에는 「할레/잘레」(Halle/Saale)國立劇場이 「헨델」의 「오페라」 「아리오단테」(Ariodante)를 公演했고, 「뮌헨」에서 開催된 夏季「올림픽」競技의 國際의 文化行事에서는 「라이프찌히 게만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베르린앙상블」의 招請公演 그리고 「기젤라 마이」(Gisela May)의 「브레히트」(Brecht)詩朗誦이 있었다. 1972年 11月에는 「베르린」交響樂團이 「본」(Bonn)을 包含한 西獨의 三個都市에 招請되어 國際적으로 有名한 피아니스트인 「안네로제 슈미트」(Annerose Schmidt)와 協演하였고 指揮者는 「쿠르트 잔더링」(Kurt Sanderling)이었다. 1973年에도 「베르린」交響樂團은 3회의 招請演奏를 가질 豫定이다. 現在로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劇團이 西獨에서 3차례의 招請公演을 할 豫定이며 그 중 「레크링겐하우젠」에서 開催되는 「루우르」祝祭에서는 2회의 「라이프찌히」市立劇團의 公演이 豫定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는 反對로 약 5年前부터 西獨의 劇團들과 「오케스트라」의 東獨訪問 公演은 없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招請公演 交流는 兩獨國家間的 진밀한 文化協力關係의 可能性을 열어주고 있다. 造形藝術分野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社會主義的 寫實主義」가 獨逸民主共和國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狀況으로 因해서 影響을 받고 있다.

『藝術家의 多樣한 技法』(Vielfalt der künstlerischen Handschrift)을 默認하기 始作한 지금의 段階

에서 現代的, 抽象的 表現樣式을 위한 機會가 주어질는지 또는 具象派의 作家나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가까운 傾向의 作家들에게만 接觸의 可能性을 주게 될지의 問題는 아직도 時間을 要한다.

무엇보다도 展覽會와 美術館關係의 分野에서는 交流가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 지금까지는 東獨의 所藏作品이 西獨에서 展示될 機會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1970年 여름 「쾨른」에서 『中世의 가을』(Herbst des Mittelalters)이란 展示會가 開催되었을 때 단 한개의 中世後期 油畫作品인 『사랑의 마력』(Liebeszauber)이 「라이프찌히」 美術館에서 出品되었을 뿐이다.

나. 「스포츠」交流

11年間の 交流中斷 끝에 1970年 7月 2日 「할레」(Halle)에서, 그리고 1970年 11月 20日에는 「뮌헨」에서 처음으로 兩獨逸國家의 「스포츠」指導者들이 接觸을 갖게 되었다. 獨逸「스포츠」聯盟(DSB)과 獨逸體操 및 「스포츠」聯盟(DTSB)間的 이러한 對話를 通해 雙方 「스포츠」團體의 最高機關이 「스포츠」交流에 관한 協商과 協定을 主管하고 그 義務를 지도록 合意하였다. 獨逸體操 및 「스포츠」聯盟은 한 聲明을 發表하고 一般的으로 國際「스포츠」機構內에서 여러나라가 同等한 資格의 會員으로 認定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東西獨「스포츠」聯盟의 相互關係가 樹立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주장하였다. 獨逸「스포츠」聯盟은 同 協商에서 雙方間的 「스포츠」交流를 改善하기 위한 細部計劃으로서 各協會 및 聯盟間的 接觸強化, 國際的 訓練課程參加, 相互「스포츠」關聯學術會議 代表派遣, 「스포츠」關係學術情報交換, 「스포츠」施設 및 器具製作에 관한 經驗交流, 大衆「스포츠」促進을 위한 對策相談 그리고 靑少年「스포츠」會館의 共同設置 등을 提議했다.

兩獨逸國家의 體育人들도 國際的 競技에서 자주 相面하기는 했으나 1972年 「뮌헨」에서 열린 夏季「올림픽」競技가 그 絶頂을 이루었다—그 때까지만 해도 兩獨逸國家의 「스포츠」聯盟間에는 서로 交流를 거의 하지 않았다.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스포츠」交流를 促進하기 위해 雙方의 當該「스포츠」機構間的 協商을 支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73年 3月 14日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린 獨逸「스포츠」聯盟과 獨逸體操 및 「스포츠」聯盟間的 會談議題中에는 相互間的 「스포츠」交流 增進問題가 包含되어 있었다.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이 締結됨으로써 이제 西柏林의 「스포츠」人을 包含해서 「스포츠」交流增進을 위한 모든 與件이 造成되었다는데 대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最高「스포츠」委員會와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

다. 文學分野의 接觸, 圖書出版業務關係, 藏書·文庫의 交流

1960年代에 講演과 文學討論 등으로 總回數上 매우 活潑한 傾向을보였던 文學分野의 接觸이 60年代末에 와서는 크게 감소되었다. 最近에 와서야 비로소 獨逸民主共和國의 作家들이 다시 獨逸聯邦共和國을 巡訪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스테판 하임」(Stefan Heym)은 1971年 늦가을에 西獨의 8개 都市에서 講演을 했고, 1年後에 다시 西獨에 와서 그의 小說 『다비드 베리히트왕』(Der König David Bericht)에 대한 講演旅行을 했다. 「헤르만 칸트」(Hermann Kant)는 1972年 초여름에

大部分 大學都市에서 當時 東西獨에서 거의 동시에 「라이센스」版으로 出刊된 그의 小說 『刊行記錄』(Das Impressum)에 대해 講演을 했다.

著作家協會間의 接觸은 아직 별로 없다. 물론 獨逸民主共和國의 「펜클럽」中央會(PEN-Zentrum)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이 國際 「펜클럽」會長으로 選出될 때 그에게 支持票를 던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東獨의 「펜클럽」中央會도 1972年 11月 西柏林市에서 開催된 國際 「펜클럽」總會에 參加했다.

東獨의 大部分의 「베스트셀러」作品과 「社會主義的 現代小說」類의 有名書籍들이 「라이센스」版으로 西獨의 出版業界에 의해서 出版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헤르만 칸트」의 新作도 獨逸聯邦共和國에서 出版되었다. 「칸트」의 初期長篇小說 『大講堂』(Die Aula)과 短篇小說 『南海』(Ein bißchen Südsee)는 文庫版으로 出版되었고 또 東獨에서 널리 普及되고 있는 「디터 놀」(Dieter Noll)의 教養小說 『베르너 홀트의 冒険』(Die Abenteuer der Werner Holt)이 西獨에서 文庫版으로 出版되었다. 옛날 作家이거나 1950年 以前에 이미 알려진 作家들인 「아놀드 쾰바이크」(Arnold Zweig), 「루트비히 렌」(Ludwig Renn), 「안나 제겔스」(Anna Seghers) 以外에도 「어윈 스트리트마터」(Erwin Strittmatter), 「크리스티나 볼프」(Christina Wolf), 「롤프 쉬나이더」(Rolf Schneider) 그리고 다른 몇몇 作家들의 「라이센스」版 作品이 出版되었다. 東獨에 居住하고 있는 많은 作家들은 그들의 出版된 作品을 통해서 곧 西獨의 出版界에 알려졌고 그중에는 1965年에 作故한 小說家이며 抒情詩人인 「요하네스 보브롭스키」(Johannes Bobrowski)와 역시 小說家이며 抒情詩人인 「귄터 쿠네트」(Günter Kunert), 「라이너 쿤제」(Reiner Kunze)의 一部 作品들이 西獨에서만 公開된 것도 있다.

東獨에서는 西獨作家의 同時代作品이 거의 「라이센스」版으로 出刊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인리히 뵐」이나 「막스 폰 데어 그룬」(Max von der Grün)의 몇몇 作品이 出刊된 것은 있다. 東獨側 出版計劃에 관한 最近의 情報에 의하면 1973년에는 「알프레드 안덜쉬」(Alfred Andersch)의 한 作品이 「라이센스」版으로 出刊된 것이라고 한다.

專門書籍分野에서 東·西獨出版界는 共同出版計劃으로부터 販賣契約에 이르기까지 多様な 형태의 協同出版을 도모하고 있다.

書籍販賣關係는 通貨改革以後 交易의 一部로서 制度化되어 있다. 1971年度の 總購入額은 약 1,580萬 VE「마르크」, 總販賣額은 약 1,360萬 VE「마르크」에 達했다.

「書籍販賣品目」(Gegenständen des Buchhandels)이라는 交易對象속에는 出版圖書뿐 아니라 商業性 新聞 및 雜誌의 交流와 넓은 意味에서 各種 印刷物交易까지 包含된다. 『東獨으로부터의 購入』總額속에는 東獨內 印刷所에 發注한 印刷注文의 代金支拂도 包含되어 있다. 다음의 購入概要表中에서 書籍欄은 注意해서 읽을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이 統計數字中에는 西獨內의 出版社가 東獨의 印刷所에 支拂한 相當額의 印刷注文代金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서 國際書籍展示會가 開催되었을 때, 東獨側은 40個의 出版社를 固定的으로 參加시켰다. 지금까지는 年初와 가을에 開催되었고 또 장차는 「라이프찌히」見本市場과 함께 開催될 「라이프찌히」書籍展示會에는 西獨의 여러 出版社가 주로 協會 共同으로 書籍을 出品할 것이다.

公共圖書館 藏書의 貸出交流는 一般的으로 무난히 進行되고 있고 그 量도 적지 않다. 東獨側은

1958년부터 1971년까지의 兩獨間 書籍類 交流에 있어서 總販賣 概要※

(단위 1000VE「마르크」)

年 度	書 籍	新 聞 및 雜 誌	그림印刷物과 그림葉書
1958	5953	4368	—
1959	5911	4600	—
1960	5667	5398	89
1961	3685	5448	—
1962	4266	4354	—
1963	4763	4479	—
1964	6192	5015	455
1965	6710	4766	10
1966	5943	5074	—
1967	5910	6601	—
1968	5119	5587	—
1969	5181	6447	—
1970	5686	5956	90
1971	6015	7602	8

※ 書籍交易中 『其他 印刷物』種類로 登錄된 品目은 除外

1958년부터 1971년까지의 兩獨間 書籍類 交流에 있어서 總購入 概要※

(단위 1000VE「마르크」)

年 度	書 籍	新 聞 및 雜 誌	그림印刷物과 그림엽서
1958	8135	3737	609
1959	7730	3337	362
1960	8366	3516	592
1961	5593	2153	209
1962	6880	2694	279
1963	6923	※※	※※
1964	9119	2995	256
1965	10156	3200	278
1966	9148	3285	329
1967	10581	3742	146
1968	9872	3206	175
1969	11457	3415	384
1970	12285	1725	334
1971	14107	1438	300

※ 書籍交易中 『其他 印刷物』種類로 登錄된 品目은 除外

※※ 購入은 印刷物속에 合算으로 表示

出處: 『Buch und Buchhandel in Zahlen』 Ausgabe 1972, Hrsg. von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 am Main 1972 S.81.

東獨에 있는 西方世界의 專門書籍을 長期貸出交流를 통해서 入手하는 問題에 큰 關心을 갖고 있다. 그런데 西獨의 公共圖書館이 이러한 貸出交流를 통해서 入手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것은 東獨側의 圖書館에만 남아있는 藏書나 古書籍 또는 주로 地誌學分野같은 것이다.

記錄文書의 協調分野에서는 公務上 또는 學術上의 目的을 띠고 있는 것은 資料入手가 容易해졌고 相互主義的 土臺위에서 擴大되고 緩和되었다. 예컨대 聯邦文書室, 外務省 政治文書室, 또는 地方公共團體文書室과 같은 西獨內의 文書室 利用許可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西獨人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과 같은 程度의 便宜를 東獨人 利用者에게 提供하고 있다. 그러나 東獨側은 西獨人이 學術的인 目的으로 東獨人의 中央 또는 地方文書室을 利用하려는 것을 종종 拒否하고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寬대히 許可할 때도 있으나 許可와 拒否의 一定한 原則을 明示하지 않고 있다.

라. 教育, 學問, 技術交流

1945년부터 東西獨 兩地域의 教育은 매우 相異하게 發展되어 왔다. 兩獨逸國家間의 理念的, 政治的, 社會的 差異는 무엇보다도 教育에 잘 反映되어 있다.

聯邦政府가 獨逸聯邦議會에 提出한 『分斷獨逸의 教育現況比較報告』(印刷物 第4609卷)는 教育問題를 最初로 比較한 것이다. 學術 및 研究分野에 관해서도 聯邦政府는 『分斷獨逸의 學術 및 研究』에 관한 報告(印刷物 第4631卷)를 提出한 바 있다. 同 報告書에는 특히 自然科學과 工學分野도 包含되었다.

1969年度에 이미 이러한 比較報告書의 重要性을 強調한 바 있는 聯邦政府는 새로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學術 및 教育에 관한 綜合報告書』에 上記 두 報告書內容을 包含시켰으며 그것이 完成되면 이를 公開할 計劃이다.

私的인 情報蒐集旅行과 西獨에서 開催된 個人講演會에 參加한 경우를 例外로 한다면 지금까지 이分野의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基本條約에 根據해서 이 分野에서도 相互利益에 寄與하는 協力方途를 開拓해야 한다.

지금까지 學術研究 및 技術開發 分野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制度化된 情報 및 經驗交流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兩獨逸間의 交流關係는 주로 個人的 次元뿐이다. 이러한 關係는 學者 個個人間의 「커뮤니케이션」이 容易한데 基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一般的으로 雙方의 專門書籍을 利用하는 것이 重要한 情報出處로 되어 왔다.

現在 높은 水準을 誇示하는 東獨의 諸學術分野 및 專門分野를 考慮해 볼 때 基本條約에서 合意된 關係發展은 特別한 意義를 띠고 있다.

우리는 旅行緩和과 措置와 함께 學術大會 및 其他 行事を 開催, 管理하는 정도까지 相互關係가 活潑하게 增進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는 「바이마르」(Weimar)에 있는 「괴테」研究協會(Goethe-Gesellschaft)의 會議를 例外로 한다면 實際 共同行事を 가진 일이 없다. 西獨에서 開催되는 行事に 特定한 東獨學者를 個人的으로 招請해도 招請에 應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招請狀이 學術研究所에 發送될 경우에는 本人에게 傳達하지 않거나 때에 따라서는 同 研究所에서 適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選出해서 보내기도 한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이 國際機構의 行事に 漸次 積極的으로 參與

하고 있는 것은 肯定的인 側面이다.

學術誌, 研究成果, 蒐集資料를 出刊할 경우 및 學術誌 시리즈를 出刊할 경우에 協力方法은 多樣하다. 즉 發行者와 編輯者의 一部는 西獨內에 혹은 一部는 東獨內에 그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으며 大部分의 경우 兩獨逸國家에 그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다. 技術的 處理와 印刷는 보통 東獨에서 이루어진다. 報酬, 印刷費, 免許手數料는 協定の 범위內에서 清算될 수 있다. 自然科學 및 技術分野의 雜誌, 辭典 그리고 學術辭典一部는 協同出刊되고 있다.

招請講議와 招請講演에 관한 規制를 통해서 主要한 學術研究協力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東獨의 大學教授가 個別的으로 西獨內의 大學 또는 學術機關의 招請으로 西獨에서 열리는 講演會에 參加하고 있다. 學術交流關係를 制限했던 지난 期間中에도 西獨의 大學教授 및 學術機關 專門家들이 간혹 東獨의 招請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旅行緩和가 實現되면 이러한 分野의 活潑한 關係發展이 期待된다.

마. 綴字法 改正과 言語의 發展

雙方은 다같이 綴字法을 바꾸지 않고 있다.

聯邦政府의 內務省과 各州政府의 常任教育相會議의 委任을 받는 綴字法審議會 執行議長은 名詞의 첫字를 一部 小文字化하는 等の 獨逸語 綴字法改正에 관해서 獨逸民主共和國側과 對話를 再開하기 위해 努力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協商이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 規定된 文化交流의 協商속에 包含되기를 期待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이 새로 制定한 標準發音法은 우리의 文法에서 認定되고 있고 또 實際로 使用되고 있는 것과는 本質的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言語의 文法的 基礎에 중요한 差異點이 있는 것은 아니다. 語彙上의 差異程度는 아직도 3%以下로 評價된다. 語彙의 差異가 뚜렷한 分野는 特히 政治的·理念的 用語, 職業生活 및 經濟的 概念, 教育 및 文化的 領域이다. 「러시아」語가 東獨에 끼친 影響은 英美語圈이 西獨에 끼친 影響보다는 확실히 적다. 「앵그로 아메리카니즘」(Anglo-Amerikanismen)은 어느面에서 東獨의 流行語에 影響을 주고 있다.

6. 新聞, 映畫, 「라디오」, 「텔레비전」

基本條約과 關聯하여 合意된 重要한 規制中에는 雙方間의 書翰交換을 通해서 특히 「저널리스트」와 言論機關의 活動條件에 대해서 까지 擴大시킨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分野에 關한 것이 있다. (文書 39)

獨逸聯邦共和國 및 西伯林 記者들의 東獨에서의 活動條件에 關해서는 明示되지 않았고 制限과 附帶條件이 뒤따랐다. 西獨記者에 대한 東獨當局의 記事取材許可는 一定한 原則이 없으며, 그들이 取材旅行 또는 訪問旅行次 東獨으로 갈 경우, 出入許可를 갑자기 이리저리 變更하기도 하고 또 理由說明도 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記者들이 東獨을 旅行하려면 누구나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廳 公報室에 書面申請을 해야 하는데 許可를 發給할 때에는 大部分의 경우 旅行日程과 案內員 等에 關한 附帶條件이 붙게 된다. 그리고 「텔레비전」記者들에게는, 예컨대 東獨內에서 撮影된 「필름」資料를 使用한 다음 이를 個人用으로 保管하는 것을 禁止한다는 口頭警告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記者活動을 侵害하는 行爲이다. 西伯林에 居住하는 記者들이 東伯林에서 開催되는 國際會議에 參席하려면 東獨側의 「테렉스」招請이 있어야만 可能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西伯林에서 「테렉스」를 通해 申請함으로써 出入許可가 發給된 일도 있다.

그후 基本條約에 關한 協商이 進行되면서 西獨記者와 西伯林記者들의 活動에 대하여 몇가지 緩和措置가 取해졌다. 그리하여 「텔레비전」記者團이 東伯林에서 長官들과 質막한 「인터뷰」를 하고 輿論報道用 撮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2年 8월에 「코니히스부스터하우젠」(Königswusterhausen)에서 일어난 飛行機墜落事故를 契機로 葬禮式에 參加할 수가 있었다. 1972年 1月 1日附로 西獨과 西伯林記者에 대한 主務管轄權이 內閣廳 公報室로부터 外務省 記者關係局으로 移管되었다.

1972年 12月 基本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各種 日刊新聞 및 TV의 編輯者들은 上記 外務省 記者關係局과 接觸을 갖고 東伯林內에 그들의 支社와 特派員 駐在을 위한 보다 具體的인 問題를 協議하였다.

雙方間에 書翰交換을 通해서 合意된 權利, 即 他國의 通信員과 同一한 待遇를 받을 權利는 勿論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活動하는 記者가 모두 兩獨國家의 諸般政策과 社會政治的 條件에 順應한다는 前提下에 保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東獨에서 活動하는 記者의 與件과 西獨에서 活動하는 同僚記者의 與件을 서로 比較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社會主義的 社會制度와 그 社會의 情報政治的, 言語統制的 機能面에서 新聞이 맡은 役割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認識은 政府와 新聞의 關係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基本條約이 署名된 후 1973年 2月初 政府次元의 會議를 再開하고 書翰交換에서 合意된 記者活動 保障問題에 關한 具體的인 協議를 하였다.

基本條約締結後 「텔레비전」分野에서는 報道와 取材活動을 계속 遂行하면서 每件別로 放送用 또는 放映用 製作品을 相互入手하기 위한 接觸이 進行되었다. 특히 每年 開催되는 「만하임」(Mannheim)

의 短篇映畫鑑賞日, 「오버하우젠」(Oberhausen)의 短篇 및 記錄映畫鑑賞週間, 그리고 「라이프찌히」(Leipzig)의 國際短篇 記錄映畫祭週間 等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映畫製作者, 配給會社, 映畫記者, 評論家들의 接觸과 意見交換에 寄與하고 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立映畫資料室, 「비스바덴」(Wiesbaden)의 獨逸映畫技術研究所, 西伯林的 映畫技術財團 그리고 東西獨 映畫記者協會 等은 國際的 專門團體를 통해서 서로 協力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接觸關係는 基本條約이 發效되면 더욱 發展될 것이다.

技術分野에 있어서는 1971年 9月 30日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間에 「兩獨間 指向性 「칼러」 TV放送帶設置 및 運營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였다. 同 協定은 放送 프로그램 交流 및 相互間의 TV放送受信을 容易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獨逸民主共和國 및 기타 「인터비전」(Intervision=東歐TV放送協定)에 加入된 東歐諸國과의 直接的인 「칼러」TV「프로그램」 交流가 可能해 졌다. 그 후 TV放送中繼가 특히 「빈헨」夏季「올림픽」大會期間中에 周期的으로 實施되었다.

1972年 5月 26日字의 交通協定을 통해서 規制된 交通情報交流(道路狀況 및 航行情報)는 「라디오」 및 TV放送을 통한 相互 情報交流도 可能하게 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과 東伯林에서 定期的으로 發行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全般的이며 公開的으로 販賣되고 있는 新聞, 雜誌 等은 어떠한 制限도 받지 않고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搬出되고 있으며 販賣도 되고 있다. 그러나 街頭販賣는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販賣組織이 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東獨側이 미리 策定해놓은 配當部數가 充分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獨逸聯邦郵遞局의 郵便配達을 통한 購讀도 東獨의 供給機關에서 充分한 配達을 約束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實施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東獨의 日刊新聞과 定期刊行物의 普及은 西獨의 專門業體에서 맡고 있다.

現在 東獨에서 搬出되고 있는 것은 극히 專門的인 分野의 各種 雜誌를 包含해서 약 600種에 이르는데 그중 400種을 各界專門家들이 定期的으로 入手하고 있다. 東獨의 地方新聞들은 當局에 의해서 搬出이 禁止되고 있다.

1971年 6月 30日까지만 해도 東獨의 專門雜誌를 獨逸聯邦郵遞局을 통해서 郵便配達을 해주었으나 그후부터는 專門業體를 통하거나 單純한 郵便物로 發送되는 것만을 許容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 發行되는 定期刊行物로서 東獨側이 郵便配達目錄으로 購入하는 것은 總 152種이며 그중에서 84種은 西伯林에서 發刊되고 있다. 同 刊行物의 大部分은 醫學, 數學, 自然科學系의 雜誌들이다.

雙方은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서 앞으로 書籍, 雜誌, 「라디오」 및 TV製作物의 交易을 增加시키기 위한 協商을 하기로 合意하였다.

Ⅲ 部 文 書

文 書 1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의 施政演說

1969年 10月 28日

〈抜 萃〉

現政府는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와 「히틀러」政權의 民族背反行爲로 말미암아 獨逸民族에게 提起된 여러 問題들이 終局的으로는 하나의 歐洲平和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解決될 수 있다는 것을 그 出發點으로 한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 라고 해도 獨逸國民이 다른 모든 民族과 마찬가지로 民族自決權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을 變更시키지는 못한다.

이제 앞으로 수년간 우리가 해야 할 實際의 政治問題는 兩獨逸의 現在의 非正常狀態를 解消함으로써 民族의 一體性을 維持해 나가는 일이다.

獨逸사람들은 그 言語와 歷史(榮光된 歷史와 不幸한 歷史)로 結束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獨逸領土內에서 삶의 터전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共同的 任務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은 곧 獨逸과 歐洲의 平和에 대한 任務와 責任이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獨逸民族이 더 이상 分斷된 生活을 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 즉 우리의 관계는 規制된 共存關係를 거쳐 相互協力關係로 發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獨逸人의 利益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歐洲平和와 東西關係를 위해서 그 意義가 크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의 立場과 우리 友邦들의 立場은 全적으로 東伯林當局의 態度에 달려 있다. 어쨌든 우리는 同族인 東獨人들이 對外的인 貿易과 文化交流를 통해서 얻는 利得을 侵害할 생각은 없다.

聯邦政府는 1966年 12月 當時 「키징거」聯邦首相과 그가 이끈 聯邦政府에 의해 導入된 政策을 계속 遂行할 것이며 獨逸民主共和國內閣에 대하여는 雙方間에 同等한 政府次元의 協商을 進行시킬 것을 다시 提議함으로써 相互條約締結을 통한 協力關係를 誘導해 나갈 것이다.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上으로 認定하는 問題는 考慮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비록 獨逸땅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 外國이 아니며 그들의 相互關係는 오직 特殊한 性格을 갖는 것이다.

前 聯邦政府의 政策을 이어받아 現 聯邦政府는 暴力行使 및 暴力威脅의 相互拋棄를 위한 拘束力 있는 協定을 東獨側과 締結할 用意이 있음을 闡明한다.

聯邦政府는 美國, 英國, 佛蘭西에 대하여 伯林의 現狀을 緩和하고 改善할 目的으로 그들이 소聯側과 始作한 協商을 積極적으로 推進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4大國의 特殊한 責任下에 놓여있는 伯林의 地位는 侵害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伯林市內 및 伯林市로 通하는 交通을 緩和하는 努力을 阻害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伯林市의 生活能力을 계속 保障해 나갈 것이다. 西伯林은 兩獨間의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改善을 增進하는데 寄與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兩獨間의 交易이 增大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1968年 12月 6日 締結된 協定에 의해서 이루어진 交易緩和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

聯邦政府는 善隣의 交易關係를 더욱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出處：1969年 10月 28日 獨逸聯邦議會 第5次 會議 議定書〉

文 書 2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가 聯邦政府 大統領 「구스타프·하이네만」 박사에게 보낸 書翰과 附屬文書

1969年 12月 17日

1) 書 翰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구스타프·하이네만」 博士 貴下

「본」(Bonn)

존경하는 聯邦大統領!

本人은 歐洲의 平和保障에 寄與하고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資格에 立脚한 關係正常化를 樹立하려는 趣旨에서 貴下에게 書翰을 보냅니다.

兩獨間의 平和의 共存關係와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위해서는 現行 國際法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基準에 바탕을 둔 關係正常화가 要求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各自의 國民과 歐洲의 다른 民族들로부터 賦與받은 매우 重大한 義務인 『歐洲中心部의 緊張緩和』에 有益한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의 承認을 받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草案을 送付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同 協商進行과 協定締結을 위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와 外相 「오토·민쎈」를 全權代表로 任命하였습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平和共存關係가 갖는 意義를 考慮하여 可能하다면 1970年 1月中에 協商을 始作한 것을 提議합니다.

本人은 貴下께서 本人의 提議를 즉가 받아 들임으로써 雙方間에 具體的인 協商이 進行되어 國際法的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關係樹立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발터·울브리히트」

1969年 12月 17日, 伯林

〈出處：1969年 12月 22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2) 附屬文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 草案』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과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은

歐洲의 緊張緩和와 平和保障에 効果的으로 寄與하고,

兩獨國家間的 緊張解消 및 兩獨間에 規制된 共存關係와 善隣, 同等資格, 自主性에 立脚한 國家關係를 樹立하며,

歐洲의 安全保障體制 構築을 促進하기 위한 努力으로부터 出發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同等資格에 基礎한 관계수립을 위한 條約을 체결할 것을 決定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은

「빌리·슈토프」首相과 「오토·빈셔」外相을 全權代表로 任命하고,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은 「빌리·브란트」首相과 「발터·셸」外相을 全權代表로 任命하였으며,

이들은 원만하고 적절한 形式을 갖춘 全權委任狀을 相互交換한 뒤 다음과 같은 條項에 合意하였다.

第1條 條約雙方은 國際法上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諸原則과 基準을 바탕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相互無差別, 同等資格을 갖춘 正常的 關係樹立에 合意한다. 이들의 相互關係는 特히 主權平等, 領土保全, 國境線不可侵, 內政不干涉 그리고 互惠의 原則에 基礎한다.

第2條 條約雙方은 서로 現存하는 國境線內의 領土의 保全과 그 不可侵性을 認定한다. 雙方은 第2次大戰의 結果로 생겨난 歐洲의 國境線, 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國境線 및 獨逸民主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間的 「오메르·나이세」國境線을 認定한다.

第3條 條約雙方은 서로 暴力威脅 및 暴力使用을 拋棄하고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 方法과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을 지닌다. 雙方은 本 條約 第1條의 規定에 違背되고 條約一方을 差別하는 모든 措置들을 中止하고 本條約에 背馳되는 法과 規定은 撤廢하며 同時에 이에 準하는 法院判決들을 修正하는 措置를 取할 義務을 지닌다. 그리고 雙方은 앞으로도 그와같은 條約一方에 대한 差別行爲를 中止한다.

第4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核武器를 保有하거나 이를 어떤 形態로든지 處理하는 行爲를 拋棄한다. 雙方은 이를 위해서 軍縮協商을 進行할 義務을 지닌다. 兩獨逸國家의 領土內에서 는 化學武器와 세균武器의 製造, 保有, 貯藏이 禁止된다.

第5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서로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雙方은 首都인 東伯林과 「본」(Bonn)에 各各 大使館을 設置한다. 同 大使館은 1961年 4月 18日에 制定된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定에 따른 一切의 免責特權을 누린다.

第6條 細部分野에 대한 關係는 別途의 條約으로 規定한다.

第7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의 地位를 하나의 獨立된 政治單位로서 존중하고 이런 觀點에서 西伯林에 대한 雙方의 關係를 規制할 義務을 지닌다.

第8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유엔」의 普遍性 原則에 따라 遲滯없이 「유엔」의 正會員이 되도록 加入申請을 낸다. 雙方은 兩獨逸國家의 「유엔」加入을 다른 나라들이 支持해 주도록 努力한다.

第9條 本條約은 10年 期間으로 締結된다. 本條約은 批准을 받아야 하며 批准文書를 相互交換한 다음 1個月 후에 發効된다.

本條約은 「유엔」憲章 第102條에 따라 「유엔」事務局의 公式文書로 提出된다.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을 代表하여

〈出處：1969年 12月 21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3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구스타프 · 하이네만」博士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 · 울브리히트」에게 보낸 書翰

1969年 12月 19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 · 울브리히트」 貴下

伯林

존경하는 國家評議會 議長!

本人은 1969年 12月 17日字 貴下の 書翰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면서 이 書翰을 보네는 바입니다. 本人은 우리가 歐洲의 緊張緩和에 무거운 共同 責任을 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貴下와 意見を 같이 합니다. 그리고 本人은 聯邦政府와 함께 平和保障, 緊張緩和 그리고 相互協力에 대한 共同的 義務를 느낍니다. 우리들의 共同關心事는 獨逸民族의 一體性を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貴下가 協商을 始作할 用意를 表明한 것을 歡迎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の 規定에 立脚해서 貴下の 書翰과 添加文書를 聯邦政府에 넘겼습니다. 聯邦政府가 해야 할 일은 貴下の 提案을 檢討하고 이에 대한 우리側의 立場을 빠른 時日內에 決定하는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하이네만」 서명

〈出處：1969年 12月 23日字 公報 第156號〉

文 書 4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 · 울브리히트」의 記者會見內容에 대한 聯邦政府의 聲明

1970年 1月 19日

獨逸聯邦政府는 「울브리히트」의 宣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確認한다.

즉 「울브리히트」는 그의 특이한 歷史的, 政治的 附說(本論에서 벗어난 理論)에도 不拘하고 聯邦政府와의 協商을 始作할 用意이 있다는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立場을 確認하였다. 그래서 聯邦首相은 이미 國政에 關한 그의 報告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數日內에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할 것이다.

協商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出發點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소련 및 「폴란드」와 同一한 態度를 取할 것이라는 點이다. 즉 一般的 關係로 본다면 모든 條約은 오직 協商의 結果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前提條件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條約草案을 서로 公開的으로 對決시키는 것은 「울브리히트」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冷戰의 特徵이다. 聯邦政府는 東西獨關係에 있어서 緊張緩和을 이루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側에서도 그러한 努力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울브리히트」는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련間에 먼저 相互不可侵協商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그 協商이 가져올 結果에 대해서 미리부터 모든 關心을 쏟고 있다.

聯邦政府는 그러한 時間的인 優先順位를 定하지 않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分明히 時間을 벌려고 애쓰고 있으며 聯邦政府와의 協商을 遲延시키려고 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歐洲의 平和와 安全 그리고 協力에 有害로운 그러한 態度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兩獨關係의 發展이 公開的인 討論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聯邦政府는 「울브리히트」와의 公開討論은 하지 않겠다. 戰後 獨逸이 걸어온 歷史的 過程에 대한 「울브리히트」의 見解는 전혀 建設的인 討議를 위한 것이 아니며 緊張緩和에도 寄與하지 못한다. 그의 見解가 矛盾되고 있다는 것은 예컨대 獨逸共產黨과 獨逸社會黨이 強制로 獨逸社會主義統一黨에 統合된 過程만 보더라도 自명한 일이다.

聯邦政府는 東西獨 全體의 領土的 現實狀況에 關해서 論爭하려 하지 않는다. 聯邦政府는 「울브리히트」의 主張과 같은 無條件 認定과 無條件 拋棄 등을 要求하지 않는다. 聯邦政府는 責任있는 協定을 통하여 獨逸사람들의 共存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다.

〈出處：1970年 1月 21日字 公報 第9號〉

文 書 5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에게 보낸 聯邦政府首相 「빌리·브란트」의 書翰

1970年 1月 22日

존경하는 首相 貴下

本人은 聯邦政府의 이름으로 兩獨政府間에 相互 武力行使拋棄宣言을 交換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합니다. 相互 無差別의 原則을 바탕으로 해서 進行될 이러한 協商은 兩獨間에 提起되는 모든 問題, 예컨대 同等한 資格의 關係樹立問題와 같은 것을 解決하기 위한 廣範圍한 意見交換의 機會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雙方은 各已 正當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構想, 提案, 原則 그리고 草案들을 自由롭게 提起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時間上의 制約을 받지 않고 充分한 說明과 協議가 可能해야 합니다.

貴下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本人은 1970年 1月 14日 이 問題와 關連하여 聯邦議會에서 行한 本人의 政策宣言內容을 添加하는 바입니다.

우리 聯邦政府가 希望하는 것은 이같은 雙方間의 協商을 通해서 分斷된 獨逸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生活을 改善해 주는 實質的인 問題를 解決하는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協商을 開始할 모든 態勢를 갖추고 있습니다.

協商日程과 進行을 合意하기 위한 첫 會談의 우리側 代表로 「에곤·프랑케」長官이 任命되었습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獨逸聯邦共和國 首相

「브란트」署名

〈出處：1970年 1月 24日字 公報 第11號〉

文 書 6.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에게 보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의 書翰

1970年 2月 11日

獨逸聯邦共和國 首相

「빌리·브란트」貴下

「본」

존경하는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의 1970年 1月 22日字 書翰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은 貴下의 今般書翰과 함께 貴下가 1969年 10月 28日 및 1970年 1月 14日 聯邦議會에서 行한 政策宣言을 檢討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貴下가 1970年 1月 22日字 書翰에서 表明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相互 無差別과 同等資格에 基礎한 協商을 始作할 用意가 있다는 點을 諒知합니다.

相互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事實上的 地位, 다시 말해서 國際法上的 同等權과 自主權을 認定하고 존중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런데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가 1969年 12月 17日 獨逸聯邦共和國 「구스타프·하이네만」 大統領에게 보낸 書翰을 通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資格을 바탕으로 한 관계수립을 위한 條約締結을 提議하고 이와함께 該當 條約草案을 同封한 問題에 대하여 貴下의 편지속에 아무런 言及이 없는 事實을 確認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의 書翰에 대한 回答에서 「하이네만」大統領은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의 提議를 檢討할 것이며 早速한 時日內에 同 問題에 대한 聯邦政府의 立場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을 接受한 지는 거의 2個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에 대하여 聯邦政府의 立場을 밝히겠다고 한 聯邦政府 大統領의 約束은 아직 履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聯邦政府는 同等 資格의 原則에 反對되는 措置들을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取하고 있습니다. 同等 資格의 關係樹立 및 武力行使拋棄를 위한 協商은 무엇보다도 서로 國際法上의 承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積極的인 成果를 얻을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은 將次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普遍的으로 認定되는 國際法의 原則과 基準에 立脚해서 어떤 差別도 없는 同等資格의 關係樹立에 合意하도록 作成된 것입니다.

이 關係는 特히 主權平等, 領土의 존중, 國境不可侵, 內政 不干涉 그리고 相互利益의 原則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歐洲의 平和保障과 自主의 두國家間의 規制된 共存關係와 善隣關係를 樹立하는데 效果的으로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담긴 모든 條項들은 그것이 東西獨의 境界線을 包含해서 第2次 大戰의 結果로 생긴 國境線의 認定問題이든 또는 東西獨의 「유엔」會員加入 要求問題이든간에 다같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歐洲의 安全에도 利益이 되는 것입니다.

本人은 또한 貴下에게 傳達된 條約草案이 兩獨間의 完全한 平等資格과 無差別, 同等한 權利와 義務를 前提로 한 것이며 그속에 獨逸民主共和國을 有利하게 하거나 獨逸聯邦共和國을 不利하게 하는 어떠한 條項도 없다는 點을 聯邦政府가 留意하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基準에 立脚한 平和共存關係와 條約上의 規制를 통한 關係正常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獨逸民主共和國 首相과 獨逸聯邦共和國 首相이 直接協商을 위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解決할 問題는 東西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創造的 活動을 安全하게 保障할 수 있으나, 없느냐하는 問題 즉, 平和냐 戰爭이냐 하는 問題입니다.

問題의 緊急性和 根本的 意義를 考慮한다면 우리의 會同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1970年 2月 19日 또는 26日 午前 11時에 獨逸民主共和國 首都 伯林에 있는 內閣廳舍에서 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합니다. 時間과 場所問題는 本人과 貴下가 直接 電話 또는 「텔레타이프」로 合意할 수 있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에서는 外相 「오토·빈저」도 會談에 參加할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署名

〈出處：1970年 2月 13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7.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에게 보낸 書翰

1970年 2月 18日

(경유)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次官

「미카엘·콜」 博士 貴下

伯林

존경하는 次官,

本人은 貴下에게 다음과 같은 1970年 2月 11日字 內閣首相의 書翰에 대한 聯邦首相의 回答을 傳함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으로부터

1970年 2月 18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 貴下

伯林

존경하는 首相!

本人은 1970年 2月 11日字의 貴下의 書翰과 對話에의 招待內容에 감사하고 이를 認知했습니다. 貴下의 書翰은 細目까지 言及하고 있으나, 반복해서 自身の 立場만을 提示한다면 書信往來를 지속한다는 것이 有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人은 前提條件들을 受諾할 수 없습니다. 이제 始作되고 있는 獨逸內 兩國家間의 關係正常化는 歐洲의 緊張緩和과 安保에 대한 兩側의 貢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分斷의 問題를 뒤로 미루고 結合의 問題를 찾는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成功한다면 條約上의 協定에 이르는 것도 可能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本人은 「프랑케」內獨關係相과 其他 諮問官을 同伴하게 될 것입니다.

貴下가 제의한 期日은 本人이 없어서는 아니 될 議會의 豫算審議와 관련된 다른 業務와 重複되어 있습니다.

本人은 兩側의 官吏들이 2月 23일부터 2月 27日間에 必要한 技術的인 事前準備를 論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會合에서 우리들의 첫 會合日字도 決定될 수 있습니다. 本人은 3月 둘째주나 셋째주보다 늦지 않는 日字가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두번째 相逢이 「본」에서 이루어 지리라는 立場을 再確認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聯邦首相 「빌리·브란트」

貴下께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에게 回信을 보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敬意를 表하며

聯邦首相廳 官房長官

「엠펜케」

〈出處：1970年 2月 19日字 公報 第23號〉

文 書 8.

「빌러·슈토프」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이 「에어폴트」會談에서 行한 原則的 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3月 19日

존경하는 聯邦首相!

本人은 本 會合을 始作함에 있어서 貴下와 貴下の 隨行員들이 獨逸民主共和國에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本人은 貴下가 本人의 招待에 應한데 대해 滿足을 表明하며 다만 우리의 會談이 原來的 合意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인 伯林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貴下는 그 原因과 우리의 立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政治의 重要性을 갖는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처음으로 獨立된 主權國으로서 兩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基本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人民들, 歐洲의 모든 市民들은 이 會談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歐洲의 緊張에 直面한 그들은 우리 大陸의 心臟部에서 平和를 保障하는데 兩國家의 建設的인 貢獻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과장하거나 沈黙을 지키지 아니하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서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貴下와 本人이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兩國家의 政府는 결코 다시는 獨逸땅위에서 戰爭이 일어나지 않게 할 무거운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今世紀의 그 무서운 兩次 世界大戰은 獨逸帝國主義政府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數週日이 지나면 獨逸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立되었다가 피와 鐵로 沒落한 날인 5月 25日이 됩니다.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즘」의 支配者들은 數百萬의 人間生命과 그 엄청난 값비싼 裝備를 희생하면서 諸國民을 파괴하는 戰爭을 수행했으며 결국은 그 戰爭을 自國안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終局에는 「히틀러·파시즘」의 破壞, 獨逸軍國主義의 無條件 降伏, 帝國主義獨逸帝國의 沒落이 뒤따랐으며 獨逸은 몇개의 占領地域으로 分割되었습니다. 獨逸帝國主義의 不幸했던 政治에서 教訓을 얻어 平和를 持續的으로 保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人間的인 渴望임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首腦는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人은 이러한 崇高한 責任을 充分히 意識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目標을 平和確保에 두겠다는 것을 保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責任에서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발터·울브리히트」는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구스타프·하이네만」 博士에게 1969年 12月 17日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의 諸原則에 立脚하여 同等하고 無差別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草案을 전달했습니다. 이 條約은 궁극적으로 眞正한 同等資格과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供하고 있습니다.

지난 20年동안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國의 「이니셔티브」는 多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政策에 대해 從來의 모든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 주지 않았고, 더우기 그 政府들이 냉혹하게 拒否立場을 取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軍事武裝化를 加速化하여 東獨을 전복함으로써 兩次 世界大戰의 諸結果를 白紙化시키려는 그들의 目的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政策이 挫折된 以後, 우리는 오늘날 唯一한 代案, 即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機會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努力할 것을 期待합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二次的, 三次的 問題를 規制하기 위해 이 곳에서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歐洲安保와 우리 國家 人民들의 平和로운 生活에 대한 關心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하나의 轉機를 마련하려는 모든 根本的 問題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 現在 우리 國家間의 關係는 完全히 非正常的입니다. 그로부터 중대한 危險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關係의 持續적이고 原則的 規制가 議事日程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規制는 完全한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하여 國際法의 關係를 樹立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條約草案이 立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대해 이미 우리 스스로가 取하고 있는 立場, 그 以上의 것을 期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純粹한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立場이므로 雙方中의 어느 一方의 降伏이 문제로 된다는 소문은 事實을 完全히 歪曲한 것이며 또 一方의 威信이란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本人은 가장 人間的인 渴望이 平和의 確保問題임을 다시 한번 強調합니다. 모든 紛爭問題를 省略할 수 있다는 어하한 示唆에 의해서도 이러한 基本問題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現狀과 歐洲國境線 및 第二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모두 修正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因해 세워진 障壁들은 除去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餘地없이 20年以上이나 基民黨/基社黨의 指導下에 復古勢力과 復仇勢力에 의해 形成된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인 것입니다.

✓ 政權交替로 基民黨/基社黨은 축출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政治路線의 變化를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과거 20年에 걸친 平和를 위협한 非現實主義的인 政策으로부터의 轉向을 招來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광범위한 계층의 意思表現으로 보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貴政府는 그와 같은 意思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니면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同等한 國際法의 關係를 拒否함으로써 우리 국가間에 惹起되고 있는 緊張關係를 持續해야 하겠습니까? 「아베나워」가 17年동안 힘의 政策과 「플렉」政策에 立脚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의 承認에 대해 反對鬭爭을 했던 바와 같이 그 政策을 踏襲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 必要합니까?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勞動者들에게 결코 有益하지도 않으며, 또한 平和와 安定된 生活

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歐洲市民들에게도 有益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復仇와 征服을 目標로 하는 政策이 成功할 可能性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主義 秩序를 暴力로 除去하려는 「아데나워」政策의 變型이나, 同一한 目的을 가진 其他의 變型도 결코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立證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現代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한 것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또 中斷할 수도 없습니다. 反共主義라는 눈가리개 없이 그리고 幻想없이 狀態를 觀察하는 者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勞動者 農民의 勢力이 人民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國과의 공고한 友誼속에 結合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독일땅위에서 종식시키려는 모든 希望은 幻想의인 것으로 立證되었습니다. 50年代와 60年代에 敗北의 判決이 내려진 것은 결국 오늘날 근거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獨逸聯邦議會에서 注目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였습니다.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과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하여 規制하려는 必然性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면 「바르샤바」條約國들과의 規制에 도달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즉 外交關係를 樹立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認識과 符合될 것이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의 對歐洲政策과도 符合할 것입니다. 그 理由는 兩國가 그것을 통해 모든 歐洲國家와의 關係를 正常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35

本人은 貴下가 지난날처럼 오직 緊張을 激化시키고 歐洲平和의 妨害要因으로 되는 政策을 지속하고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위험한 政策은 首相職에 있었던 모든 貴下의 先任者들도 成功的으로 實現시키지 못했습니다. 낡은 目的을 단지 公式만 새로이 바꾸어 계속 求한다면, 그것을 進歩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獨逸聯邦共和國은 우리 大陸에서 他國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地帶로 남을 것입니다. 그 경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正常化는 封鎖되고 中歐의 平和는 恒久的으로 위험당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貴下를 포함한 聯邦共和國의 代表들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을 2개의 主權的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分明히 認知했으며 이것은 물론 相異한 社會秩序를 가진 兩獨逸國家의 平和共存을 可能케 하는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해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關係를 樹立할 때에 비로소 論理的으로 合當합니다.

1970年 1月 22日字의 貴下의 書翰에서 貴下는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한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가 現在의 相互關係, 即 서로 主權的인 國際法的 主體로 承認된다는 것과 對立할 수가 없습니다. 聯邦首相, 貴下 自身이 國際法的 諸原則에 관해서 言及한다면 거기에서는 必然的으로 國際法上 効力을 가지는 條約을 締結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主權의 平等을 承認해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貴下의 政府는 過去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들과는 달리 참으로 지난날의 無用한 政策으로부터 解放되어 現實의 土臺위에서 있다는 것을 立證할 것입니다.

本人은 貴政府의 卓越한 代表者들의 表現, 즉 『나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그 洞察의 根據를 分明히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聯邦共和國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一方的인 事前措置에 관한 기묘한 言及들이 결부되어 있음

니다. 그것은 우리 社會主義社會秩序의 變化를 占치는 行爲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의 不可避性에 관한 洞察이 그토록 理性的이라면——本人은 그것을 아주 明白히 밝혀야 합니다——그 承認을 어떤 反革命的인 意圖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自명한 事實, 即 國際法的 基本原則을 承認하는데 代價를 支拂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의 不可避性을 把握한 者는 그 承認을 各 合當한 形態로 表明할 수 있는 政治的 先見之明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름으로 이러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우리側이 提議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을 可能한 限 빨리 締結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獨逸民主共和國 首相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는 民번히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가 「파리」條約에 의해 制限받고 있다는 論難을 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곳에서 聯邦共和國의 主權問題가 어느 限界까지 要求되고 있는지에 관한 質問은 그만 두려고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중요시하는 問題는 社會民主主義의 由 영도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自主的인 政治를 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 自身의 主權을 制限받지 않고 行使하기를 求하고 있는지? 하는 質問입니다.

兩側이 善意를 가지고 政策을 追求하며 平和와 兩國市民에게 關心을 가지고 成果를 이루고자 한다면 言行에 矛盾이 있어서는 不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政策裏面에는 그와 같은 矛盾들이 있음을 示唆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들이 公的으로 緊張緩和와 規制된 共存에 関해 言及하고 있지만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위험한 軍事計劃들을 계속 發展시키고 있음에 對해서 우리는 無關心할 수 없으며 오히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社會主義諸國,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都市, 村落 및 人民들에 對해 細目別로 作成된 前進 戰略計劃이——어떠한 名稱下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왔든——聯邦軍將星들과 貴 國防相의 鐵甲의 輪에 準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分明한 侵略計劃을 위한 國防豫算이 聯邦共和國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前보다 急増되고 있고, 輿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核武裝化가 계속 推進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들이 平和的인 意圖,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同等關係에 関한 公式的인 宣言과 어떻게 合致될 수 있습니까? 勢力關係를 誤判해 왔던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影響力있는 集團은 오늘날도 露骨的으로 위험한 장난을 試圖하고 있으며, 그러한 計劃과 行爲들은 끊임없이 導火線을 향해서 推進되고 있어 軍事的인 紛爭의 危險事態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聯邦軍을 統帥하는 長官 「슈미트」氏가 武裝化를 加速化시킨다면,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이러한 發展을 無關心하게 도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本人이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보낸 書信에서 明白히 陳述한 바와 같이——가장 眞正한 意味에서는 平和나 戰爭이냐가 主要한 問題로 됩니다. 그런데 貴下는 公的으로 平和만이 問題된다고 回答했습니다. 그러나 領土的인 現狀 및 歐洲國境線의 變更을 求하는 모든 目的을 포기하지 않는 限, 平和의 確保는 不可能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平和를 確保하고자 한다면 모든 導火

線과 紛爭의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습니다.

政治的, 領土的 地位가 分明하고도 留保없이 承認되지 않는 限, 平和에 관해 言及할 수 없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이룬바 講和條約이 締結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意圖입니까? 講和條約의 締結에 재삼 逆反應을 보였던 側은 바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였습니다. 앞서 意識的으로 講和條約을 妨害했던 者들이 오늘날 그것을 구실로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拒否하고 이러한 境界를 오직 變更하기 위한 길만을 追求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歐洲의 諸國民을 侵略하고 獨逸帝國主義와 「파시즘」이 罪를 犯하고 그리고 無條件降伏을 한 후에 어떻게 侵略을 받았던 諸國民들에게 그 무슨 「權利의 要求」를 할 수 있습니까?

「로카르노」條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方的으로 西方強大國들과 同盟을 맺고 西方의 國境을 承認했음에도 不拘하고 東方의 國境을 保留하려는데에 「슈트레제만」의 政策(Politik von Stresemann)을 反復하려는 意圖가 숨어 있으며, 獨逸帝國主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以後에 行勢하고, 그들과 함께 「히틀러」가 戰爭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境界의 問題가 提起된다면 어떻게 過去를 克服하여 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歐洲住民들은 聯邦政府가 歐洲의 境界를 國際法上 拘束力있는 것으로 承認하고 또한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그 境界를 變更시키려 시도하지 않겠다는 聯邦共和國의 義務를 公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國境變更에 있어 暴力을 전혀 使用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는 것은 스 위 平和의 手段으로 國境變更을 위해 鬭爭한다는 戰術, 즉 이미 「히틀러」가 그의 侵略時 使用했던 戰術을 회상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슈트라우스」氏와 「슈뢰더」氏의 命題에 매우 가까이 接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歷史의 經驗을 무시한다면 重大한 結果를 초래합니다. 國境變更을 目標로 한 帝國主義的 強大國 政策이 今世紀에 두번이나 獨逸住民을 流血戰爭과 破局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侵略을 받았던 人民들의 苦痛은 形言할 수 없었으며,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陣營의 多數의 反「파시스트」들과 共同으로 恒時 「파시즘」과의 戰爭에 對抗해서 決定的으로 鬭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反「파시즘」勢力들은 2次 世界大戰의 勃發을 沮止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파시즘」이 敗北하고 獨逸帝國이 沒落한 후, 오늘날 獨逸民主共和國의 領域에 있는 團結된 勞動者階級과 그의 階級同盟者들은 이 機會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秩序를 樹立하기 위해 利用했습니다.

모든 人民의 利害와 一致시켜, 「포츠담」協定에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實現하였습니다. 즉 軍國主義 및 「나찌즘」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및 戰爭利得者로서 戰爭에 대한 主要責任者인 大企業系列(Konzerngewaltigen)의 無力化 그리고 獨逸「파시즘」의 侵略을 당했던 이 웃 民族들을 위한 올바른 國境의 確定이 實現되었습니다.

大資本을 除去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에는 軍備와 戰爭에서 利潤을 취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며, 戰爭宣傳, 人民들의 煽動과 種族憎惡는 法的으로 禁止되고 있습니다. 이미 1950年에 獨逸 民主共和國의 人民會議는 侵略行爲, 侵略戰爭의 宣傳과 準備에 대해 處罰하는 平和守護法을 議決했 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階級이 農民, 知識層, 企業經營者들과 同盟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하 고 있습니다. 大獨逸農民戰爭 以後 議事日程에 올랐으나, 1848年의 「브르조아」革命에서도 實現되지

못한 民主的인 改革들을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했으며, 그후 社會主義社會의 建設로 移行 하였습니다. 民主的인 土地改革을 통해 數百年동안 農民과 農業일꾼에게 加해졌던 不法을 말살했을 뿐 아니라 地主(Junker)層을 無力化시킴으로써 軍國主義의 發生素地가 除去되었습니다. 옛 支配階級들의 不當한 教育特權들은 中斷되었고, 편협한 愛國主義와 民族主義의 不健全한 精神은 永遠히 學校와 大學에서 驅逐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現代社會主義的인 教育體制를 建設하는데 決定的인 前提였습니다.

우리의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勞動하는 人民은 自由로운 意思決定으로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를 形成 하고 있으며, 自由로운 決定과 民主的인 方法으로 人民投票를 實施, 壓到的인 支持로써 社會主義憲法을 採擇했습니다.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모든 屬性을 지닌 우리 國家는 鞏固해진 平和秩序위에 存立하고 있습니다.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 우리는 確固한 友誼와 利害의 平等에 立脚하여 蘇聯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持續的인 同盟을 맺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的인 對外關係를 追求하고 있으며, 바로 그 理由로해서 國際적으로 尊重받는 國家로 發展했습니다.

貴國의 內的인 發展을 評價하는 問題는 물론 聯邦共和國市民의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聯邦共和國 外部에서 결코 無關心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局面과 作用이 지난 25년에 걸친 이러한 內的 發展속에 存在하고 있습니다. 貴國은 1945年 以後의 期間을 有用하게 利用하지 않았는 바, 「포츠담」協定을 意識的으로 履行치 않았으며, 過去를 克服하지 않고 낡은 權力關係를 계속 存續시켰음이 確實합니다. 이러한 復古主義는 直接的으로 緊張을 초래했습니다. 그 당시 西獨의 聯邦議會議長은 『全獨逸이 卍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卍의 獨逸이 全體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西獨의 大資本은 낡은 所有構造를 救濟하고 再建하기 위해 힘의 政治에 依存하여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하기 위해 西方強大國들과 同盟하여 獨逸을 分斷시켰습니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聯邦首相이었던 「아테나워」는 그 스스로 民族을 破壞하기 위한 일을 한 후에 그에게는 民族의 統一보다도 西歐統合이 더 중요하다고 솔직히 是認했습니다. 이미 1945年 10月 5日 「아테나워」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論人代表들 앞에서 『3個의 西方占領地域을 하나의 聯邦國家로 形成』할 意圖를 分明히 밝혔으며, 그후 1948年의 獨自的인 通貨改革은 經濟的 斷切을 초래하였고, 西方占領地域들은 西獨 「마르크」貨를 導入함으로써 計劃的으로 外換外國 (Devisenausland)이 되었습니다. 1年後의 聯邦共和國樹立으로 獨逸은 分斷國家가 되었고 民族도 完全히 分斷되었습니다.

우리는 事態가 이렇게 發展하는 것을 막기 위해 恒常 努力했습니다. 50年代에 獨逸民主共和國과 蘇聯은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目標로 하며, 恒久的인 分斷狀態를 止揚하기 위해서 正當하고 建設的인 提案을 數次 提示했습니다. 특히 1952年 3月 蘇聯의 講和條約案은 그러한 좋은 機會를 提供했었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現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하이네만」博士가 1958年 3月 25日 「본」의 聯邦議會에서 그러한 蘇聯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事實을 想起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機會 역시 당시의 聯邦府府에 의해 虛事가 되었습니다. 民族의 單一性問題는 西獨輿論의 憂慮와 우리의 警告를 無視함으로써 破壞되었습니다. 分斷과 西獨의 單獨政府樹立에 反對했던 西獨

의 유일한 政黨은 共產黨이었고 그래서 同黨의 活動은 後에 不法化되었고 禁止되었습니다.

民族의 分斷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再武裝과 1945年の 「파리」條約의 締結에 의해, 그리고 1955年 聯邦共和國이 「나토」에 加入함으로써 굳혀 졌으며, 「아테나워」가 주도했던 「본」政府가 「파리」條約에 署名하고 우리의 모든 提議를 拒否함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 自體는 窮極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外國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社民黨黨首 「에릿히·올렌하우어」가 1955年 1月 29日 「프랑크푸르트」의 「파울」教會에서 言及했던 말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파리條約에 署名함으로써,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에서 처음으로 獨逸의 分斷을 굳혀 버리게 될 커다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政策에 대하여 스스로 決定的이고 大膽한 方式으로 그 責任을 甘受한다.』

現在도 貴下는 聯邦首相으로서 「에릿히·올렌하우어」가 적절하게 특징지었던 外交政策의 遺産과 關係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런 歷史的인 眞實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獨逸을 分斷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責任은 오직 聯邦共和國과 西方強大國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支配集團들의 利己心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20年前부터 이미 存在하지 않는 「民族의 單一性」에 대해 言及한다면 「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고자 한다는 것은 無根據한 일입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말할 때 貴下는 빈번히 「獨逸內部關係」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貴政府의 한 部處는 이러한 名稱을 가지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을 分斷시키고 「파리」條約에 署名한 후에는 그러한 表現의 使用은 不合理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이 —모든 警告에도 不拘하고— 「파리」條約으로 「나토」體制에 結合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스스로 外國임을 宣言한 以後에는 獨逸內部關係는 存在할 수 없으며, 「파리」條約에 대한 聯邦共和國政府의 同意는 反民族的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侵略的인 帝國主義的 性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獨逸條約」第2條를 지적한다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條文에는 西方強大國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獨逸全體에 대해 行使했거나 保留하고 있던 모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특히 第7條는 獨逸民主共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獨占資本主義的 社會體制에 編入시키고 또한 西方 帝國主義的 條約體系속에 統合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貴下 自身の 發言과 같이 이러한 條約들이 現 聯邦政府의 政治基盤을 이루는 경우,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은 聯邦共和國의 帝國主義的 支配體制를 獨逸民主共和國에 擴大시켜 獨逸民主共和國을 「나토」條約에 編成化시킨다는 意味外에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 通用되고 있는 4大國의 責任이라는 命題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 伯林에 대해서는 아무 根據가 없으며, 獨逸民主共和國에 관한 限, — 우리의 憲法과 이와 관련된 獨逸民主共和國이 締結한 國際法的 條約에 비추어 그것을 確信한다는 것은 용이합니다. — 獨逸民主共和國은 4大國의 責任에 예측되지도 않고 3大國의 管轄權에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입니다.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에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後見關係에 종속시키려는 넓은 要求가 內包되어 있으며, 現實과 矛盾되는 그와 같은 構想들은 오직 넓은 唯一代表라는 越權을 變型된 形態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差別政策 持續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貴

나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수락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協商目的이 아님을 理解할 것입니다.

우리는 貴下에게 그와 같은 行動을 要求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試圖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 本人은 다음 事項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共和國이 「나토」에 加入하지 않고 再武裝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講和條約과 民主的인 統一獨逸을 위한 提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獨逸聯邦共和國에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現實主義的 政策을 支持하는 充分한 先見之明을 가진 政治家가 있으리라는 希望에서 國境까지 開放했으나, 聯邦共和國의 指導的 政治集團들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끊임없는 鬭爭을 위해 公開된 國境을 많이 惡用하였으며, 同時에 그 集團들은 社會主義에 대한 攻擊用 軍事力으로 聯邦軍을 完成하는데 모든 企圖을 했습니다.

「特殊한 獨逸內部關係」와 「人道的 措置」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유난히 不快했던 經驗을 記憶합니다. 1961年 8月 31日까지 國境을 開放했던 期間에 우리는 당시 「本」政府의 敵對的인 干涉 政策으로 인해 매우 값비싼 代價를 支拂해야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1,000億「마르크」以上을 「損害」고았습니다. 本人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이 經濟戰의 總規模를 明示하기 위해 이 金額이 1956年과 1957年의 獨逸民主共和國의 總國民所得과 거의 같은 規模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比較를 한다면 위에 든 損害額은 주로 1950年부터 1961年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이 支出한 總投資額보다도 더 많은 金額입니다.

「本」當局은 「東쪽의 가난한 兄弟姉妹」에 대해 言及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했고, 우리는 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負債의 支拂과 모든 補償義務를 規制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우리의 立場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모든 損害에도 不拘하고 그의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에 힘입어 世界產業國家中 注目할만한 位置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共和國과 人民들은 물론 오늘날 所謂 「特殊한 獨逸內部關係」 또는 「人道的 措置」같은 것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욱 잘 存立할 수 있습니다.

1961년에 우리가 國境安全措置를 취한 것은 人道的 措置이었으며, 이것은 우리 人民의 生活과 歐洲平和維持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人民은 1961年 8月 13日 外勢가 國內事情을 偵探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最大의 經濟的인 비약을 經驗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에는 그와 같은 방식의 「特殊한 獨逸內部」 狀態를 再確立하는 것을 許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特定國家間的 관계는 他國家와의 關係와 比較하면 언제나 特殊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聯邦共和國의 對「오스트리아」共和國 및 瑞西와의 關係는 그 特殊한 特徵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의해서 佛蘭西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는 區別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國家間的 關係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相互獨立的인 主權國家間的 關係는 언제나 國際法의 普遍妥當한 規範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獨立的인 兩主權國家間的 關係에 대해서도 完全한 効力を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獨逸人」이라는 公式으로 國際法의 關係의 拒否를 위장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問題가 그렇게 單純한 것도 아닙니다. 19世紀初부터 항상 勞動者階級과 勞動하는 人民의 편에 있는 進歩的 獨逸人 및 資本主義的 反動的 편에 서있는 獨逸人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社會主義的 獨逸民主共和

國과 獨占資本主義的 聯邦共和國은 서로 獨立한 두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의 人民들은 완전히 對立的인 條件下에서 生活하며 勞動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들은 自身の 勞動으로 自身の 福祉와 社會主義社會의 福祉를 增進시키고 있으며, 그와 反對로 聯邦共和國에서는 少數階層의 財閥들이 勞動者의 勞動에서 利潤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武裝化에 기여하고, 權力追求를 擴大함으로써 平和를 威脅하는 것도 同一한 獨占集團입니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과 獨逸聯邦共和國의 住民間에는 基本的으로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歷史가 指向하는 바와 같이 大「부르조아지」의 利己的인 階級利害는 항상 國家利益을 詐稱하였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現實을 歪曲한 것이며, 大「부르조아지」에게 有益했던 것은 결국 創造的 人民에게는 害롭고 不幸한 것으로 立證되었으며, 勞動者階級과 全人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會的 利害, 社會主義의 利害는 이른바 모든 民族의 共通性에 우선합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스스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인 社會體制間에는 「여하한 混合」도 「여하한 진부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事實上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는 對立的인 社會秩序가 統合될 수 없기 때문에 相互統合될 수가 없습니다. 本人은—提示된 바대로—이러한 共通的인 評價가 現實主義的인 政策, 즉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겠다는 理性的 政策을 위한 기반이 된다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누가 이에 관해서 沈黙하겠는가?—社會主義者로서 모든 나라와 聯邦共和國에서 社會主義가 勝利하는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原則에 立脚한 將來의 統合이 可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人民投票의 結果 大多數의 人民이 同意했던 우리의 憲法에는 그것이 分明하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이나 來日의 問題가 아니라는 것은 自明합니다. 이 問題는 서로 獨立된 主權國으로서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協商의 對象도 아닙니다. 그것은 聯邦共和國의 勞動者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層들의 問題입니다.

서로 獨立되고 對立的인 社會秩序를 가진 두개의 國家가 存在함으로써 惹起되는 明白한 問題狀況과 法的 地位에 비추어 볼 때, 平和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하여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唯一한 方法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最近 外國에서 行한 演說에서 우리 두 國家間에 暫定協定(Modus Vivendi)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말하였읍니다. 國際法的 概念으로서의 暫定協定은 주어진 與件下에서—社會主義諸國과 帝國主義諸國間의 現存勢力關係라고도 말할 수 있음—더 以上の 目的과 意圖들이 達成되지 못한다는에서 出發하는 하나의 一時的인 合意입니다.

確實히 貴下에 의해서도 評價받고 있는 「빌헬름·리브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敵對的이라고 생각하는 國家間의 交流를 위한 合意形態의 하나로 解釋했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아메나워」가 考案했던 非平和의 共存을 위한 하나의 다른 表現 또는 一般的으로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存立에 대한 妥協方式으로서 一旦 「大氣象」(Großwetterlage)이 變化하게 되면 承認되지 않는 國境을 侵犯할 수 있도록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敵對的인 政策을 계속 追求하는 一種의 감정적인 解決策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現實的인 政策도 또한 平和指向的인 政策

도 아니며 반드시 狀況을 尖銳化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重要的 것은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持續의이며 拘束力있는 規制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平和共存關係를 전혀 저해하지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國際法上 同等資格을 가진 主體입니다. 우리는 國際法上 主體로서의 聯邦共和國의 國家的 存在를 결코 疑心한 일이 없으며, 우리는 關係規定을 위한 國際法的 條約을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聯邦共和國 政府의 見解는 우리와 相異합니다. 聯邦共和國은 如前히 成立될 수 없는 前提條件을 앞세워 우리에게 國際的 承認과 主權國으로서의 完全한 同等資格을 포기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츠담」協定의 基本規定들을 決定的으로 이행한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이었습니다. 聯邦首相, 問題는 貴下의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를 變化시킬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인 次元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계속 差別하여 損害를 끼치는 것이 貴政府의 實際的인 政策인 限, 正常的인 關係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貴政府의 外相이 他國과 獨逸民主共和國과의 正常的 關係樹立을 방해하고 貿易代表部의 設置까지도 방해하기 위해 公式的인 訓令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지하게 同等資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政府代表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를 規制하려는 第3國의 모든 措置를 妨害하기 위해 얼마나 맹렬한 手段을 動員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國際機構에의 同等한 參與를 위해 努力해온 獨逸民主共和國을 遮斷시키려는 變함없는 企圖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企圖는 특히 崇高한 人道的 要請에 이마지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獨逸民主共和國이 加入하는 것을 지지할 정도입니다. 貴下의 政府가 다른 「나토」諸國의 뚜렷한 疑懼心과 反對를 무릅쓰고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西伯林에 設置한 이른바 旅行局(Travel-Board)이라는 官廳을 유지하기 위해 展開하고 있는 活動 역시 우리에게 대한 差別的인 行動입니다. 占領時期부터 始作해서 오랫동안 되풀이 해온 그 行動은 獨逸民主共和國을 모욕할 만큼 差別政策을 쓰고 있으며 다른 國家의 統治權을 干涉하는 越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人民을 계속 差別하는 政策을 具體化하는 반대한 證據資料를 제시할 수 있는 立場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本人은 聯邦共和國의 여러 機關들이 수년 전부터 不斷히 增加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財政的인 義務를 履行하고 결국 많은 負債를 支拂할 必要性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首相! 唯一代表權과 「할슈타인」原則을 持續적으로 適用하는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을 이 以上 差別하지 않겠다고 貴下가 反復하여 申明하고 있는 意圖와 完全히 相反되고 있으며, 결국 여기에 言行間의 깊은 矛盾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으로는 어떤 경우든 規制된 共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國際法 違反인 唯一代表權 要求와 이에 立脚한 「할슈타인」原則은 窮極적으로 포기되어야 하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을 妨害하고 계속 第3國에 壓力을 가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試圖를 放置할 수는 없다는 事實을 인식하지 바랍니다. 第3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계에 부담을 加한다는 主張은 옳지 않으며, 第3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外交關係樹立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를 促進시킬 것입니다.

1969年 以來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亞細亞와 「아프리카」의 8個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

立했으며, 같은 해에 처음으로 聯邦共和國政府는 두개의 主權國家인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가 存在한다고 宣言했습니다. 이들 國家의 元首들과 政府首腦들간에는 國際的 慣例의 節次에 따라 公式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全世界가 納得할 수 있는 明白한 結論이 나옵니다.

聯邦首相, 貴下의 政府가 참으로 獨逸民主共和國와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한다면 同一한 目標을 향해서 나아가는 他國家들의 모든 措置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冷戰의 壟斷속에 貴下의 政府를 묶어 두려는 集團으로부터 貴政府를 풀어주는 同盟者를 얻게 할 것입니다.

聯邦首相, 어쨌든 貴下는 무엇보다도 社民黨 黨首입니다. 貴下는 마땅히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働者 農民이 政治權力을 쥐고 있으며, 모든 「파시스트」의 國家機關이 숙청되었고 또한 大企業이 人民所有로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1891년에 이곳 「에어폴트」에서 滿場一致로 決議되었던 獨逸社會民主黨의 綱領이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貴下의 現實主義的 態度와 그에 수반되는 必然的인 結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尊敬하는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立場을 밝혔으며,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우리 두 國家間의 同等關係에 관한 條約의 必要性을 論證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지난 20年歷史에 終止符를 찍을 時點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出發을 합시다. 그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것은 疑問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眞正한 平和措置를 위한 善意와 決意가 必要합니다. 우리는 平和, 歐洲安保,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不幸한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본다면 復仇政策을 維持하려는 努力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基本問題—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의 解決을 가능하게 하는 條約草案을 提議했으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協議하여 이러한 條約을 締結할 생각입니다. 同等資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그와 같은 條約이 締結되면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史에는 새로운 章이 記錄될 것입니다.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 그리고 歐洲의 모든 國家住民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써 平和나 安保以上の 것이 達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正常的인 關係가 樹立되었다고 해서 聯邦共和國의 軍需財閥, 新「나치」主義者들, 復仇主義的인 結社들의 活動과 威勢, 그리고 나날이 만연되고 있는 復仇思想과 十字軍思想으로부터 發生하는 危險들이 다 除去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注意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5年前부터 始作된 單獨 貨幣改革과 聯邦共和國의 單獨樹立으로부터 再武裝과 「파리」條約을 거쳐 「나토」에의 加入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의 그릇된 措置가 취해진 후, 처음으로 올바른 方向에서 이루어 지는 實際的인 措處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條約草案은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 외에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

邦共和國間的暴力拋棄에 合意하자는 提議를 內包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主要한 問題는 暴力拋棄가 條約 當事國과 그의 國境線을 國際法的으로 相互 承認하는 바탕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際法上 効力있는 暴力拋棄協定은 國際法上 主體로서 存在함을 相互 承認하는 國家間에만 締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가 成立하지 않고는 暴力拋棄란 無根據한 것이며 속이 빈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拘束力없는 단순한 國境의 尊重이 問題視되는 것이 아니라, 國境과 領土保全에 대한 留保없는 國際法的 承認이 問題視됨을 本人은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지체없이 「유엔」機構加入을 申請하자는 의미깊은 規定도 包含되어 있습니다. 팔복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的인 潛在力을 지닌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同等하게 「유엔」機構의 世界的인 活動에 參加하고 또한 이러한 方法으로 世界人民의 全般的인 平和의 協力에 이바지할 경우, 그것이 우리 兩國家와 그 人民의 利害에 關係됨은 물론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한다는 데에 疑問을 提起할 者는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은 끝으로 兩國家가 모든 形態의 核武器를 拋棄하며, 自己領土위에서 生化學武器를 生産한다는가 所有 또는 貯藏하지 않는다는 것을 保障하고 軍縮協商을 始作할 것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國際法上 拘束力을 가지는 軍縮에 관한 措置에 合意하자고 다시금 提議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가장 무섭고도 危險한 武器에 대한 恐怖로부터, 毒「가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恐怖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키는 것이 가장 人道的인 行爲가 아닐가를 묻겠습니다.

우리의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속에 提示돼 있고 또 建設的인 解決策이 마련된 것처럼 歐洲心臟部의 平和를 確保한다는 決定的인 問題에 관한 直接的인 妥結可能性을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共存을 貫徹하는 過程에서 서로 國際法的인 正常關係를 樹立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모든 敵對的인 政策이 포기되는 경우, 다른 問題도 解決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基本問題 解決은 다른 모든 問題解決을 위한 前提입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協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對話目的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同等關係를 樹立하는 問題에 관해 合意하는데 있습니다.

이 點에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協議를 遂行함에 있어서 貴下에게 提示된 條約草案으로부터 出發하여 그 條約草案의 原則에 立脚해서 다음과 같은 原則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1.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無差別, 同等關係의 樹立, 모든 形態의 越權的인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唯一代表權 拋棄
2. 他國의 對外關係의 不干涉, 「한슈타인」原則의 궁극적이며 明白한 拋棄
3. 「유엔」憲章 第2條 4項에 따라 制限없는 國際法的 自主權의 相互承認, 領土保全과 既存 國境線 不可侵 및 相互承認下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暴力拋棄
4.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機構 加入申請
5. 核武器 保有的 拋棄, 또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拋棄, 生化學武器의 生産, 使用

및 貯藏의 拋棄, 軍費支出의 50% 節減

6. 第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滓의 必的인 除去와 關係된 問題들의 討議

7.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모든 負債의 清算과 獨逸聯邦共和國에 의한 賠償義務의 規制

聯邦首相, 끝으로 本人은 다시 한번 建設的인 解決을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決意를 確認하고 싶습니다. 本人은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볼 때 雙方首相들이 協議를 위해 계속 만나 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隣接地域에서 貴下와의 對話를 위해 만날 의도가 있습니다. 本人은 다음과 같이 確信합니다. 聯邦共和國 政府가 長期的 眼目으로 勇氣와 決斷을 發揮한다면 平和와 歐洲安保에 寄與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를 規制할 수 있는 與件들이 造成될 것입니다. 貴下의 傾聽에 감사합니다.

〈出處: 1970年 3月 20日字 東伯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9.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에어폴트」會談에서 行한 原則的 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3月 19日

首相, 그리고 紳士 여러분!

本人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와 상당한 差異가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會談에서 아무것도 美化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지난 20年 또는 25年間的 功過를 따진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現實狀況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將次 平和와 人間을 위해 發展을 가져다주는 雙方의 共同的 利害關係를 追求해야 합니다.

이 問題에 관한 本人의 見解를 表明하기 前에 우리를 이곳 「에어폴트」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貴下의 友好的인 歡待에 感謝드리고 싶습니다. 우리側의 對話相對方의 誠意있는 準備로써 우리의 相逢은 착오없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貴下는 貴政府와 「에어폴트」地區 그리고 「에어폴트」에서 온 모든 會談參加者와 補助者들에게 그분들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本人의 人事를 傳해 주시기 바랍니다.

數週만 지나면 獨逸帝國의 破滅로 民族社會主義者들의 暴力統治가 終末을 고한 지 25년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갈라져 있지만 獨逸帝國의 終末로 因해서 이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世界는 獨逸 사람의 이름으로 자행된 非行과 이미 다 저질러진 破壞에 대한 恐怖로 가득 차 있습니다. 運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事件에 責任을 져야 합니다. 世界는 우리가 이러한 責任을 질 것을 善意로 要求하였고, 또 이것은 獨逸이 現狀態로 된 原因에 대해서도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러나 歷史的인 論爭은 우리에게 無益합니다. 獨逸民族의 進路가 서로 分離되고 1945年 以後 國

家的統一의 길이 막혀 있는 現狀은 個人的으로나 民族의 立場에서 悲劇的이며 우리는 그러한 歷史를 無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本人은 序頭에서 現狀이 平和와 獨逸國民을 위해 將次 發展을 가져다 주는 共同의 利益을 追求할 것을 要求한다고 말했습니다.

今年 3月 19日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은 물론 獨逸民主共和國의 住民들과 모든 獨逸人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兩國가 樹立된 후 처음으로 政府首腦들이 共同의 關心事를 協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理性만이 必要한 것이 아니라 感情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兩側은 확실히 우리의 會談이 獨逸의 國境을 넘어 全世界의 큰 關心을 받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이 「에어폴트」라는 지역이 獨逸人에게 어떤 意味를 지니는 가를 우리는 우리의 共同의 歷史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1808年 10月 22日 이곳에서 「괴테」에게 『政治는 運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에어폴트」에서 1850年 3月 20日 그 당시 獨逸을 平和的이며 民主的인 方法으로 統一하려는 마지막 試圖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社會民主主義者들은 1891年의 「에어폴트」綱領이 獨逸勞動者運動의 活性化를 위해 발휘했던 役割을 記憶할 수 있습니다. 同 綱領이 恒時 理念史의 한 章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民主主義의 意志, 보다 重大한 社會的 正義의 意志, 그리고 平和의 意志가 적절한 時期에 貫徹되었다면 獨逸國民과 歐洲와 全世界가 그 엄청난 不幸을 甘受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民族이 沒落한 것처럼 보인 時期에—전혀 相異한 條件下에서 일지라도—民族에게 새 出發의 機會가 許容된 것입니다. 이것은 獨逸兩地域의 再建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都市들이 破壞로부터 蘇生하였으며, 經濟와 科學이 驚愕할만한 水準에 도달했습니다.

相互 分離된 두 國家로의 分斷은 그것을 어느 側의 立場에서 觀察하는 가에 따라 根本的으로 相異한 評價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分斷으로 因한 事態發展을 全的으로 否定的 觀點에서 評價한 것은 서로 相對便에게 그 責任과 義務를 轉嫁해야 했고 또 해야 할 必要性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45年以後의 獨逸政治는—兩側의 모든 再建의 경우—全的으로 獨逸을 占領했던 強大國 政治의 한 機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東·西間의 勢力對決은 獨逸의 狀況을 完全히 左右했고, 歐洲를 分斷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分斷을 단순히 以前狀態로 還元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分斷의 諸結果를 緩和시키고 또한 能動的으로 發展에 기여함으로써 歐洲와 獨逸에서의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障礙物들을 除去하기 위해 努力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本人은 持續的이며 生命力있는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現實로부터 出發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本人이 過去의 民族主義的인 思考에서 脫皮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民族의 構成要素들이 歐洲統合과 國際的인 聯合過程에서도 그 當爲性을 상실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確信하고 있습니다. 共同生活을 經驗하고 共同의 責任을 나누며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脫皮할 수 없는 強한 歷史性과 우리로 하여금 共屬感을 느끼게 하는 家族, 言語, 文化 및 其他 모든 無形의 結束關係가 오늘날 하나의 現實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民族의 實存的 基底를 否定

하거나 無視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련이라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即, 1970年 現在의 事實上의 獨逸領土內에서 함께 生活해야 할 2개의 國家가 分斷되어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各其 다른 社會秩序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는 深刻한 見解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差異가 歐洲平和를 보다 鞏固히하고 兩國家間의—歐洲平和秩序를 展望하면서— 規制된 平和共存을 追求하는 우리의 課題를 排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課題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만 우리의 會談은 正當한 意味를 지닙니다. 우리가 問題를 解決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歷史속에 存續할 수 있습니다. 問題의 解決을 가로막는 難關들에 대해서 그릇된 希望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兩獨國民들은 너무도 現實主義的이기 때문에 설사 兩側이 뜻을 같이 한다해도 兩政府 首腦가 現在 國家統一을 實現시킬 수 없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습니다. 世界情勢에 비추어 볼 때, 危險한 不安을 甘受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許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實을 초월하여 우리 國家의 利益과 우리 國家가 同盟을 맺고 있는 強大國들의 利益이 平和와 人間을 위해 서로 調和를 이루도록 함께 努力해야 합니다.

獨逸당위에 있는 兩國家間의 現關係에서 우리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國家와 國民들이 相互交流하고 있는 通路에서 밀려난 채 兩獨國民들이 아직도 서로 담을 쌓고 있다는 現實입니다. 이러한 否定的인 特殊狀況은 타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克服되어야 합니다.

緊張 代身に 緊張緩和, 軍事的 對決 代身に 平和의 確保—이것이 우리 政府의 目的입니다. 그리고 本人은 이와 관련해서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責任있는 勢力에 의해 支持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對話가 國家間의 常例의인 方法대로 官吏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頂上의 對話로 始作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關係의 特殊性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들은 政府次元에서의 直接的인 接觸없이 解決이 不可能할 程度로 증대한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分斷은 점차 深化되었습니다.

바로 이 點에 우리의 共同 責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兩國家의 關係規制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全般的 責任을 歷史에게 또는 部分的 責任을 「히틀러」에게 돌릴수는 없습니다. 그 責任은 現在 우리 自身에게 있는 것입니다.

本人과 本人의 一行은 이곳에서 單純히 友好的인 說得이나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있다는 事實을 통해 雙方의 見解를 一致시킬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原則的인 差異들을 알고 있으며, 그 差異를 冷靜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가 서로 相對便의 見解를 理解함으로써 自己自身の 政治를 옮겨 評價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을 拋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現實 그 自體의 狀況에서 出發해야 합니다. 歐洲心臟部의 關係가 沮害되고 있는 경우 東西間의 關係가 本質的으로 改善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것은 兩政府가 우리 두 國家의 利益과 獨逸民族의 利益을 위해, 우리 大陸의 安保를 위해 나아가야 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엄숙히 試圖해야 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 경우 어두운 過去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앞을 내다 보려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姿勢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國家間에는 서로 友好的인 나라 또는 其他 同盟國家들의 住民間에는 存在하지 않는 特殊한 關係가 있음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他國家들간에는 存在하지 않는 共通性이 있습니다. 우리가 克服해야 할 對決狀態 역시 他民族들간의 對決과는 相異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 對決들은 民族의 單一性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共通性도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은—高度로 武裝한 채—獨逸領土 위에서 서로 對決하고 있는 集團防衛同盟體제의 構成員입니다. 兩 國家는 지난 數年間 戰爭을 防止했고 오늘날 相對的인 安全을 보장함으로써 歐洲의 勢力均衡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眞正한 의미의 平和와 安全은 「블럭」의 對決과 獨逸內의 두 國家의 敵對關係를 함께 終熄시킬 수 있는 歐洲平和秩序에 의해서만 持續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平和를 最高的 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땅위에서 더 以上 戰爭이 勃發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兩 獨逸國家는 憲法에 規定된 目的을 追求하기 위해 暴力行使나 暴力으로 威脅할 權利나 그 可能性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平和를 愛護하는 民主的인 獨逸의 統一은 결코 戰爭이나 內亂에 의해 成就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물론 兩 獨逸國家가 指向하는 目標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貴下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간에는 差異가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記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自由主義社會的 法治國家를 支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歷史만이 對答할 수 있는 「테마」에 관하여 이곳에서 論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오늘날 歐洲의 여러 國家들을 分斷시키는 障礙들을 除去하게 될 歷史의 發展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獨逸民族이 自由로 스스로 決定해서 함께 生活하려는 努力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以外에도 우리 두 獨逸政府에게 重要한 點을 밝히고자 합니다.

1944年以後에 締結된 獨逸에 관한 4大國協定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두 國家間의 合意는 4大國의 既存權利를 侵害하거나 代置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西方 3大國과 우리의 協定에 대해서는 물론 蘇聯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定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맺은 雙務條約이나 多邊的 條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協定은 必要한 것이지만 우리사이의 障壁을 解消시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本人이 4大國協定과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協定에 대해서 言及하는 것은 결코 伯林問題 때문은 아닙니다. 本人은 貴下가 이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기를 請합니다. 獨逸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우리는 伯林的 現狀을 變更시킬 수 없습니다. 本人은 一面 現實을 認定한 것을 要求하면서 또 다른 面에서는 주어진 現狀의 一方的 變更를 要求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가 西伯林을 統治하지 않는다는 事實로 인해, 聯邦政府가 西方 3大國으로부터 一定한 委任을 받아 外部에 대해 西伯林을 代表하거나 伯林的 經濟的 生活能力을 支援하는 일 등이 방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事實上 西伯林은 經濟的, 財政的, 法的, 文化的인 面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分離될 수 없습니다. 伯林은 그러한 點에서 完全히 우리에게 所屬되고 있습니다. 西方 3大國도 獨逸聯邦共

和國도 그리고 직접적 當事者인 伯林住民도 4大國이 確定한 伯林的 地位가 變更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變更은 所屬을 바꾸는 것입니다.

4大國이 伯林에 대해서 그들의 最高權限을 어떻게 行使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은 4大國의 事項입니다. 現地位의 改善에 관해 4大國間에 約定이 成立한다면 聯邦政府는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 歐洲中心部の 正常化와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이 伯林과 伯林周邊의 緊張緩和 및 正常化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昨年 12月 18日 우리의 大統領에게 兩獨國家間의 同等關係樹立에 관한 條約草案을 傳達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그 후 條約草案의 內容을 檢討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草案의 內容을 對話를 통해서 다루기 前에는 결코 公表하지 않을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우선 意見交換을 始作하자는 것으로 그 立場이 決定되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條約草案에 대한 우리側의 代案을 提示하지 않았습니까.

- 이러한 意見交換의 目的은 우리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條約上 規制하기 위한 協商의 可能性與否를 확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政府로서는 同 條約이나 協定이 우리들의 政府가 第3國들과 締結하는 모든 協定과 同一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政府間에 이루어 질 協商의 方式과 對象에 관해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首相이신 貴下에게 이미 1970年 1月 22日字의 書翰으로 通知했습니다. 그 당시 本人이 貴下에게 傳達한 內容, 即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밝히고 있는 原則들을 다시 한번 確認하겠습니다. 즉,

1.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兩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다.
2. 이밖에 雙方은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排除,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義務 및 兩側 國境의 尊重義務를 履行해야 한다.
3. 거기에는 條約 雙方의 領域內의 社會構造를 暴力으로 變更시키지 않는 義務도 包含된다.
4. 兩 政府는 특히 專門的, 技術的 協力을 위한 規制等 善隣的 協力を 위해 努力하며 이를 위해서 政府間 協定속의 改善措置를 規定한다.
5.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대한 4大國의 既存權利와 責任은 尊重되어야 한다.
6. 伯林內 및 伯林問題의 現狀을 改善하기 위한 4大國의 協定締結 努力을 支持한다.

首相! 지난 1月 22日에 本人은 貴下에게 相互間의 暴力拋棄에 관해서 合意할 것을 提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 두 國家가 歐洲安保와 國際的 安全保障問題에서 뿐 아니라 相互關係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條文의 一般的인 原則과 目的에 따를 것이라는 共同宣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紛爭問題는 오직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兩獨關係에 있어서는 물론 歐洲安保問題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第2條에 따라 暴力威脅 또는 暴力行使를 拋棄할 義務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兩國家關係를 條約上의 原則위에 세운다는 것은 歐洲를 위한 重大한 措置이며 歐洲의 安保와 協力の 強化에 이바지할 會議를 促進할 것이 確實합니다.

貴 國家評議會 議長의 條約草案에는 國際機構에서의 우리 두 國家의 地位와 관련된 內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本人은 이미 1969年 10月 28日字의 施政演說에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유엔」과 其他 國際機構에서 協力을 強化할 意圖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本人은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와 우리 友邦의 立場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自體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本人은 우리 對話의 進行過程에서 그리고 우리 對話의 進展에 따라서 이 問題에 관해서도 論議할 것을 提議합니다.

이와 같은 進展이 이루어지면 우리 國民과 우리의 經濟 및 科學의 能力은 全世界의 平和와 發展, 그리고 貧困追放鬭爭에 보다 더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우리는 東西의 兵力과 軍備를 制限하여 均衡을 이루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우리 獨逸人들은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는 分野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同盟體들을 完全히 信賴하면서 建設的인 競争을 할 수 있는 能力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相互間에 그리고 우리 國民을 위해서 平和를 이룰때에 비로소 世界에서 平和的 關係를 促進시키려는 모든 努力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確信할 수 있습니다.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形式的인 文書만으로는 不充分합니다. 關係를 正常化함으로써 兩側市民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廣範한 分野가 提示될 수 있으며, 本人은 이 分野에 관해서 단지 暗示的으로 한계를 짓고자 합니다. 具體的인 內容은 앞으로의 會談과 다른 次元의 實務的 協議에서 취급되도록 留保되어야 합니다. 本人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人間的인 苦痛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例를 두가지만 들어 보면, 子息들이 兩親과 結合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들을 再結合시킬 方案을 마련해야 합니다. 愛人들이 境界線의 兩側에서 서로의 結合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들의 結婚을 可能하게 해야 합니다.

交易이 계속 發展되고 있음을 本人은 滿足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管轄 官廳들이 지난 1年半동안의 肯定的인 資料에 滿足하지 않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經濟와 技術分野에서도 本質的으로 더욱 活潑한 交流를 追求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領域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道路交通分野에서 우리국가와 他國들의 計劃을 調整해서 國際高速道路(Fernstraße)를 建設하고 더 많은 越境通路의 開放과 其他 通信業務의 改善을 圖謀해야 합니다. 旅客列車往來의 促進, 一般料金表에 의한 統一된 運送法規의 制定 및 鐵道行政間의 技術的 接觸의 改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兩獨間의 水路航行分野에서도 改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兩獨間에 서로 緣故關係가 있는 個人이나 商社間의 接觸을 改善하는데 關心을 가지고 電話交流, 電報交流 및 「텔레타이프」交流를 強化하고 其他 電信制度和 施設의 效果의 利用 및 清算交流에서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本人은 境界線을 사이에 두고 發生하는 문제, 그리고 그 地方의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수 많은 實際的인 問題와 行政的인 問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獨逸聯邦共和國와 東歐의 諸國家間에 이미 進行되고 있는 것처럼 東·西伯林과 兩獨間에 相互訪問, 文化交流, 「스포츠」交流등을 더욱 擴大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發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始作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正常化를 원한다면

면, 그리고 條約이 空虛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단 始作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솔직히 말하자면, 眞正한 意味의 正常化가 이루어지면 兩獨間의 境界와 障礙物의 克服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안타까운 狀況을 상징합니다. 今明間 現狀을 變更시킬 수 있는 展望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自由로운 往來와 人權伸張을 이룩하는 關係發展이 우리가 追求하는 目的이요 意味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와같은 우리의 見解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하여 樹立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出發하고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누구도 다른 쪽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으며, 對外的으로 獨逸의 다른 한 部分을 代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어떤 感情으로서든—우리가 認識하고 있는 發展의 結果입니다.

一般的인 關係樹立이 進歩임에는 틀림없지만 兩獨國家의 目標은 特別히 密接한 關係를 樹立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本人은 今年 1月 14日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本人의 演說속에 列學했던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兩獨逸國家中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後見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의 어떤 法이나 어떤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위해 이 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한 同一한 要求를 수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首相! 貴下가 이 곳에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提示하면서 言及한 一連의 중요한 個別問題들에 관하여 本人은 오늘의 對話와 次後의 對話過程에서 기꺼이 論議하고 싶고 또한 本人이 말한 內容도 貴側이 주의깊게 檢討해 줄 것을 要請합니다.

다만 本人이 이 機會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內政治發展의 여러 相異한 局面에 관한 貴下의 評價, 여러 個別的 政治集團과 政治의 人士들에 관한 貴下의 評價,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發展과 兩獨國家의 成立에 관한 貴下의 諸分析等에 本人이 일일이 反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貴下의 見解에 同意한 것은 아니라는 點입니다.

本人은 또한 貴下가 방금 「나토」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의 役割에 관해 發言한 內容을 容納할 수 없습니다. 특히 本人은 貴下가 聯邦政府의 國防相이며 本人의 社會民主黨 副黨首의 한 사람인 本人의 親舊 「헬무트·슈미트」의 特殊하고 個人的인 役割에 관해 貴下가 根據없는 非難을 한 內容도 容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하한 侵略的 國防政策을 追求하고 있지 않습니다. 貴側도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所屬하고 있는 同盟의 充實한 「파트너」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東西間에 또는 同盟間에 歐洲의 政策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 限해서 兩側에 變化가 招來됩니다. 故로 本人은 그와 같은 變化가 오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首相, 貴下는 貴下의 觀點에서, 本人에게 全般的인 問題와 原則的인 問題에 討議를 集中해야 하고, 2次的이며 3次的인 問題에 沒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本人은—몇가지 더 補充發言을 해야 하겠습니까—本人의 觀點에 立脚해서 全般的이며 原則的인 問題와 個別的으로 是 原則的인 問題만큼 重要하지 않은 實際問題를 對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對比는 雙方에게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해 줍니다. 우리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해야 한다는 것, 어느 側도 다른 側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느 側도 對外的으로 獨逸의 다른 部分을 代表할 수 없다는 것 等은 獨逸內部關係의 次元에서 말하는 意味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強調하는 바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實側은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를 獨逸內部關係라고 하지 않고 獨逸國家間(Zwischendeutschland)의 關係即 두 獨逸國家間의 關係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貴下는 具體的으로 두 차회에 걸쳐 本人이 協商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對해 本人은, 우리는 協商에 적합한 時期가 언제인가를 決定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對答했습니다. 本人은 時期가 到來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本人은 이제 雙方이 協商을 위해 提議했거나 앞으로 提議할 모든 問題를 添加해서 協商할 準備가 되어있다고 分明히 對答합니다. 本人은 統一獨逸을 展望하면서 우리 兩 國家의 憲法에 관해서 言及했습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이 締結한 諸 條約들에도 해당합니다. 西方 3人國과 우라와의 條約은 蘇聯과 貴側의 友好條約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家統一의 可能性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雙方이 하나의 目的을 標榜한 一連의 態度 表明이 있습니다. 따라서 諸 條約에 있어서는 물론 民族自決權과 관련되는 이러한 展望에 대한 意圖와 目的에서 어떤 變化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明白합니다.

바로 이러한 理由에서 本人은 國際法的 承認은 물론 內政不干涉의 概念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에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兩 國家의 各 政府는 自己의 權限으로 自己領土內에서 規制한 바를 各各 尊重해야 할 同一한 義務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勿論 이 경우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指導의 人士들을 非難攻擊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正當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國家間의 無差別原則의 一部입니다.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이 將次 實現될 하나의 固有한 自主的 獨逸民族이라는 우리의 目的을 侵害하여서는 안됩니다.

首相, 貴下의 發言과 本人의 發言에 비추어 判斷할 때 우리는 멀고도 험난한 艱難의 始發點에서 있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러나 過去에 있었던 모든 것과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 길을 떠날 準備가 되어있다는 또 하나의 結論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要因들을 度外視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合意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問題에 重點을 두고 對話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선 豫備的인 宣言을 했다는 것은 두 國家의 政府首腦들이 처음으로 合席했다는 特異한 事情에 비추어 理解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經驗을 土臺로 問題의 解決에 關心을 갖고 보다 信賴의 雰圍氣속에서 對話를 進行시켜야 하며 마치 窓밖의 鏡子구경하듯 形式的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本人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러한 方法으로 對話를 進行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이 對話方式을 基礎로 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이 蘇聯政府와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를 相對로 갖게 될 對話를 展開할 것입니다.

首相, 本人은 끝을 맺기 前에 우리의 對話를 繼續하기 위해 곧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을 訪問해 주도록 招請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오후에 계속해서 本人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本人은 우리가 오늘 演說을 마친 後에 雙方의 代表를 任命해서 그들이 몇몇 補佐官들과 함께 5月初頭 우리의 第2次會談때까지 兩側에서 提議한 內容을 充分히 評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우리가 第2次 會談時 報告받을 수 있도록 檢討를 必要로 하는 問題들의 目錄을 提示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이 目錄에 根據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會議節次, 특히 우리의 實務代表團 또는 委員會의 課題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는 그들이 우리 政府의 首都, 즉 「본」에서 恒久的으로 作業을 할 수 있도록 條件을 保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입니다.

이것은 本人의 節次上的 提議이며, 아주 合當한 提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問題를 逆으로 解決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고도 現實主義적으로 일을 進行시켜 나가는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 國民들과 더 나아가서 東西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期待하는 바를 達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出處 : 1970年 3月 20日字의 公報 39號〉

文 書 10

「에어플트」會談에 관한 共同 聲明

1970年 3月 19日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日 「에어플트」에서 第1次 會談을 갖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과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만났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토·빈쎌」(Otto Winzer)長官, 「미카엘·콜」博士, 「귄터·코올트」(Günter Kohrt)次官, 內閣 副局長 「게르하르트·쉬슬러」(Gerhard Schüßler)博士, 局長 「한스·보스」博士(Hans Voss)를 隨行員으로 대동했다.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隨行員으로 「에곤·프랑케」(Egon Franke)長官, 「볼프람·도른」(Wolfram Dorn)次官, 「콘라드·아알러스」(Conrad Ahlers)次官, 局長 「울리히·사암」(Ulrich Sahn)博士, 「위르겐·바이헤르트」(Jürgen Weichert)局長이 同行하였다. 이 會談에는 이 밖에도 兩側의 고문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1970年 5月 21日, 「캇셀」에서의 第2次 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招請을 수락하였다.

聯邦首相 「브란트」는 「부헨발트」(Buchenwald) 기념관에 헌화함으로써 「나치스」의 暴力統治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오토·빈쎌」長官의 안내를 받았다.

〈出處 : 1970年 3月 21日字 公報 第40號〉

文 書 11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間的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 相互 取扱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관한 合意書 및 附屬文書

1970年 4月 29日

1) 合 意 書

獨逸聯邦共和國遞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遞信省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相互 郵

便 및 電信交流에 관한 全般的 規制가 아직 없다는 諒解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雙方은 兩獨間의 相互郵便電信交流을 최소한 現存하는 規模內에서 可能한 程度로 實施한다.

第2條

(1) 1967年 1月 1日부터 相互 取扱한 業務實績에 대한 補償은 總額清算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2) 上記 (1)項의 總額清算規定은 本 合意書의 附屬文書인 追加議定書에 규정된다.

第3條 1966年 12月 31日까지 兩獨間의 郵便과 電信交流에서 相互 取扱한 業務實績에 대한 總額報償은 조속한 時日內에 協商을 통해 處理한다.

第4條 雙方은 第1條의 規定을 참작하여 兩獨間의 相互郵便, 電信交流 業務의 改善을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追加 長距離電話 및 「텔레кс」線을 架設할 義務를 진다.

第5條 本 合意는 署名함으로써 効力을 가진다. 本 合意書는 2통을 作成한다.

1970年 4月 29日, 「본」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을 代表하여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博士

「렙케」

2) 附屬文書

合意書 第2條 2項에 따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의 相互取扱 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대한 議定書

第1條

(1) 相互間의 遞信 및 電信交流에서 遂行된 業務에 대해서 每年 總括的으로 清算하며, 年度가 경과함에 따라 滿了한다.

(2) 獨逸聯邦郵便局은 獨逸郵便局에서 每年 取扱한 業務에 대해 總 3,000萬「마르크」를 報償한다.

(3) 計算書의 作성과 送達節次는 省略한다.

第2條

(1) 第1條 2項에 따라 合意된 總額은 우선 1973年末까지 有効하다. 이 規定은 合意한 어느 한 便이 總額의 變更을 希望하여 이 總額의 額數에 있어 交流規模에 合當하지 않음을 證明하지 않는 限 계속 有効하다. 이 證明은 每 當該年度 6月 30日까지, 즉 總額의 變更이 確立되는 時期의 6個月前에 提示되어야 한다.

(2) 變更된 清算總額은 總額을 變更하기로 合意한 다음해가 시작되면 有効하게 된다. 이 時期까지는 그 때까지 통용되던 合意書가 有効하다.

第3條 1967年, 1968年, 및 1969年에 대한 支拂總額은 지금까지 獨逸聯邦郵便局이 支拂한 22,016,100「마르크」를 算定해서 本 合意書 締結後 14日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第4條 支拂하게 될 金額은 獨逸聯邦銀行 細部計定/3-4003號의 獨逸民主共和國 國立銀行 計定을 통해서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앞으로 支拂한다.

〈出處：(聯邦遞信省의 文書에서 나온) 原文〉

文 書 12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캣셀」에서 聯邦首相과의 公式會 談開催에 앞서 발표한 聲明

1970年 5月 21日

聯邦首相!

우리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에 到着해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의 問題들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즉 本人은 다음과 같이 言明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아직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機關들과 法院이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聯邦共和國의 國境線을 넘어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의 權利와 管轄權을 侵害하는 立法, 判決, 其他의 國家的 行爲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는 國際法에 對한 恒久的이고 엄중한 違反이며, 本人이 言及한 獨逸聯邦共和國의 立法活動과 司法行爲는 完全히 諸 國家의 主權的인 平等, 不干涉 및 無差別의 原則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全世界에서 通用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家間的 平和的 協調라는 觀點에서 볼 때,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法院의 權限은 國內에서만 拘束力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効力範圍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을 超越하여 擴大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 其他 法令, 決定, 判決 그리고 그 외의 國家機關의 行爲는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에 대하여 이제까지 전혀 法的 効力을 갖지 않으며 現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대해서는 無効입니다. 不法에서 法이 成立될 수는 없습니다.

1970年 3月 19日 獨逸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모든 差別을 떠나 두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였습니다.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立法뿐 아니라 政策 역시 主權國家로서의 國家代表들간의 關係樹立을 위해 國際法的인 規範과 完全히 一致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會合을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도 물론 이러한 點을 前提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70年 5月 5日字 書翰에서, 本人은 貴下에게 모든 差別을 止揚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代表團의 自由로운 滯留를 保障해 줄 것을 要求했습니다. 本人은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再次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表들에 대한 「과시즘」적인 策動과 直接的인 殺人使噓를 禁해 줄 것을 強力히 要求했습니다.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新「나치」勢力들을 制止하지 않고 公公然한 殺害威脅을 禁止시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代表團은 貴下가 引導했던 代表團이 「에어플트」를 訪問했던 때와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享有할 것이라는 貴下의 確約과 이것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本人은 貴下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든 이러한 問題點들에 대해서 世界輿論은 應當한 結論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러한 式的 策動으로 오늘 우리의 會合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差別的인 立法措處에 관해서, 本人은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貴下가 우리의 「에어

폴트」會合에서 公式的으로 申明했던 것, 즉 『各者가 自己側만을 代表할 수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는 發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聯邦政府는——貴下는 거듭 이렇게 강조했습니다——自己側 以外에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는 越權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貴下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無差別한 同等關係를 보증한다고 宣稱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行爲들은 이러한 貴下의 表明들과는 矛盾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依據한 聯邦首相인 貴下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路線을 決定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貴下에게 「에어폴트」에서 한 貴下의 確約에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其他 法令, 判決, 獨逸聯邦共和國 國家機關의 決定 또는 行爲들이 그의 現存境界內의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만 効力을 가지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게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함은 無効라는 事實에 同意할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解明을 하는 것은 우리의 對話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가집니다.

〈出處：1970年 5月 22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13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의 聲明에 대한 聯邦首相 「빌리·브란트」의 答辯

1970年 5月 21日

첫째로 本人은 그렇지 않아도 序頭에서 立法分野의 抵觸問題, 즉 「에어폴트」에서 이미 討議된 「테마」에 관해서 우리의 立場을 밝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5月 6日字의 書翰에서, 本人은 貴下에게 兩獨逸國家內에는 한쪽이 다른 편에 對해 差別을 느끼게 하는 法律이 있다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는 本人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캇셀」에서 相逢하는 경우 이러한 問題들을 解明하고 難關들을 除去하기 위해 一定한 措置를 마련할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한 바 있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오늘 아침 이 「테마」에 관해 이미 言及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른 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서 法律上 侵害하고 있다는 「테마」에 관해 本人이 貴下에게 提示한 우리의 立場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會談이 進行되면 이에 관해 다시 討議할 수 있도록 여기 이 論文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다 狹義의 問題로서 貴下의 이 곳 「캇셀」訪問과 滯留의 條件에 관해 言及하고자 합니다. 5月 6日字의 書翰——貴下는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에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本人은 貴下와 貴政府의 代表, 隨行員들이 豫定된 「캇셀」訪問時에 우리가 「에어폴트」를 訪問했을 때 받은 것과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貴下에서 確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明白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언제나 兩獨逸國家의 與件의 差異를 前提로 하는 것이며 우리의 경우처럼 公開할 수 있는 分野 또는 行動을 통해서 確認시킬 수 있는 分野를 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事實上 주어진 與件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손님으로서, 本人이 이미 5月 6日字의 書翰에서 밝힌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內

에서 保護와 禮遇를 받는 立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이미 言及한 대로 立法問題에 관해서 貴下에게 이 두개의 文書를 傳해 드리는 바입니다. <出處: 1970年 3月 23日字의 公報 71號>

文 書 14

「빌리·브란트」聯邦首相이 「캄셀」會談의 오전 會議에서 行한 原則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5月 21日

內閣首相,

紳士 여러분!

本人은 尊敬하는 首相과 그 隨行員들이 이곳 「캄셀」에 와서 우리와 第2次會合을 갖게 된 자리에서 人事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原則的인 問題와 實際的인 問題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見解差에도 不拘하고 本會談이 成功할 것을 希望하는 바입니다.

「에어플트」에서의 우리의 會合이 당시 貴下의 첫 演說에서 表明되었던 바와 같이 政治的 重要性을 지닌 하나의 事件이었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國民은 獨逸內의 또는 獨逸問題와 함께 提起되는 모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나라 國民들과 같이, 우리에게 큰 關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相當한 義務와 責任을 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義務와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는, 本人이 「에어플트」에서 宣言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獨逸의 平和와 獨逸國民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領域을 追求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플트」에서의 우리의 會談이 끝난 후 遞信分野에서 部分的이지만 成功的인 協定이 이루어진 것을 本人은 고무적인 徵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提起되어 있는 課業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可能性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의 小小的 始作에 不過한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리의 關係를 規制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에어플트」會談以後 多樣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움지 못한 批判과 責任追窮을 提起함으로써 더 險難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란히 서 있다는 事實은—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兩者는 함께 공헌해 왔습니다. —兩側에 緊張을 緩和하려는 意志가 있다는 것을 充分히 證明하고 있습니다.

서로 抗議하는 聲明들 때문에 우리의 會談이 負擔을 받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우리 政府가 거의 매일 當面하고 있는 不信과 비난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信念이 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本人은 貴下에게 確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有利的한 輿論造成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네바」世界保健機構會議에서 보여준 우리 聯邦政府의 立場에 대한 批判도 같은 結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가 兩獨關係의 發展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公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食言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事業에 共同으로 參與하려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가 그 機構에서 差別을 받고 있다는 貴下의 陳述을 本人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그로 인

해서 同 機構의 活動에 參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責任이 아닙니다.

우리의 態度는 後見이나 越權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態度는 獨逸의 兩國家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시키려는 努力의 表現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어폴트」에서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첫번째의 協定을 締結하는 問題에 合意하였더라면 그것은 매우 合理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妥協하기 위한 時間은 아직도 있습니다.

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 두 國家間의 同等權에 基礎한 條約上의 規制에 관해서 協商할 것을 거듭 提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그러한 規制를 통해서 相互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決意를 本人은 이 곳에서 最大限 강조하고자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계속 差別에 관해서 여러가지 言及한 경우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措置로 인해서 여러 分野—예를 들면 交易分野에서—獨逸民主共和國側이 이미 取했고, 또 取하고 있는 여러 利得에 대해 言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獨逸民主共和國政府가 聯邦政府의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 努力을 妨害하는데 대해 言及해야 하겠습니까.

本人이 이미 「에어폴트」에서 強調했듯이 兩獨逸國家의 憲法은 民族의 單一性에 立脚하고 있습니다. 兩國 憲法은 모두 分斷을 永久化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이러한 憲法의 原則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關係를 뜻있게 規制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故로 本人은 우리의 根本問題에 대해서 言及합니다.

本人은 第2의 措置를 第1의 措置보다 먼저 取할수 없다고 主張하거나, 第1의 措置를 取하기도 전에 第2나 第3의 措置가 무엇이냐고 論爭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에게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 그때 可能한 緊急한 措置를 取하는 問題입니다. 오직 事態如何에 따라—그것은 이미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이러한 措置를 取해 나감으로써 兩 政府는 實際問題와 政治的 問題로 까지도 協商을 進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協商의 目的은 人間과 平和에 有益하고 동시에 民族의 將來에 有益한 方向으로 兩獨逸國家間의 關係를 條約으로 規制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聯邦政府는 이러한 準備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條約들은 물론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입각해서 締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條約上의 規制는 또한 우리의 關係發展과, 그리고 獨逸에서의 人間生活의 進歩를 意味하는 具體的 內容을 包含해야 한다는 것도 自明한 事實입니다. 條約이 形式的으로만 履行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어폴트」에서 本人은 우리가 規制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問題들에 관해서 상세히 言及하였습니다. 그 경우 條約上의 規制들이 우리 兩獨逸國家間에 存在하고 있는 것 같은 特殊한 事情과 符合해야 하며, 法的으로 兩側이 第3國家와 締結한 모든 條約과 同一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疑問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本人은 밝힌 바 있습니다. 本人은 동시에 우리가 4大強國의 持續的 權利行使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獨逸의 分斷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는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우리의 協商에서 形式的 承認만을 要求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協商으로 相互關係發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構想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批判, 責任轉嫁, 要求, 前提條件以外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提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會談의 意義, 人間의 期待와 우리

의 廣範한 課題에 올바로 對處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리라는 希望과 假定下에 本人은 오늘 貴下에게 協商開催에 關係 妥協하고 그 方法의 細部事項을 決定할 것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本人은 協定內容에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한 原則을 樹立하는 條約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을 위해 一連의 原則과 內容을 提議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1969年 12月 18日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聯邦大統領에게 傳達했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首相, 本人이 貴下에게 1970年 1月 22日字의 書翰으로 알렸던 이러한 原則中 몇 가지를 本人은 이미 「에어플트」에서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眞正한 意味의 協商을 始作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짧은 日程을 利用해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單獨으로 일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課題를 賦與하고 決斷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任務일 것입니다. 豫備協商節次를 決定하는 것은 우리가 協商의 開催에 關係 意見을 같이 할 경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效果의인 協力을 위해서는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本人은 이에 「에어플트」에서 兩側 政府廳舍가 있는 곳에 우리 兩側의 全權受任者들의 일을 可能케 할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政府는 우리 兩獨國家間 條約의 主要內容에 關係 自身の 構想을 表明하였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그 構想의 細目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 聯邦政府는 우리들 相互間의 條約上의 規制가 兩獨國家間의 條約上 및 其他 關係의 內容과 密接한 相互關係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다른 모든 差異를 감안하여 그렇게 理解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한 地位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原則과 條約要素에 關係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各其 그 憲法에 民族의 統一을 目標로 提示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와 民族의 將來, 團結에 關心을 갖고 兩獨國家間 關係를 規定하며, 獨逸民族과 兩獨逸 國家間의 結束을 增進하며 既存의 不利益을 除去함에 이바지할 條約에 合意한다.
2. 條約은 憲法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서 兩側의 立法機關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3. 兩側은 國際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的 共同生活 및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하여 關係를 맺겠다는 意思를 公約한다.
4. 兩側은 相互間 모든 暴力의 威脅 또는 모든 暴力行使를 禁止하고 그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들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이것은 領土保全과 國境의 尊重도 포함한다.
5. 兩側은 그들의 內的인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대해서 兩獨逸國家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
6. 兩獨逸國家中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理하여 行動하거나 代表할 수 없다.
7. 條約締結 雙方은 결코 독일땅에서 戰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宣言해야 한다.
8. 兩側은 諸民族의 平和的 共同生活을 沮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止시킬 義務를 진다.
9. 兩側은 歐洲安保強化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한다는 自身の 意思를 確認한다.

10. 本條約은 獨逸國民이 두 國家內에서 生活하고 있으나 한 民族이라는 것을 理解하고 獨逸 및 獨逸人의 特殊狀況과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發해야 한다.
 11. 伯林과 全體獨逸에 관한 強大國의 特殊한 權利와 合意에 立脚해서 佛蘭西, 英國, 美國, 蘇聯의 모든 義務들은 本條約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12. 伯林과 獨逸에 관한 4大國 合意는 尊重된다.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存在하는 結束關係에 대해서도 同一하다.
- 兩側은 伯林內部와 伯林問題의 地位를 正常化하기 위한 4大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진다.
13. 兩側은 兩獨逸國家의 立法活動中 어느 부문에 相互矛盾이 있는지 檢討할 것이며, 兩側은 兩獨逸國家市民의 不利益을 解消하기 위해 相互矛盾을 除去하는데 協力한다. 이 때 兩側은 兩側의 統治權은 各自의 領土에 限定된다는 原則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14. 이 條約은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고 通行自由를 實現하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15. 家族의 離散으로 생긴 問題들은 解決되어야 한다.
 16. 共同境界地域의 郡과 面들은 現地의 問題를 가능한 한 善隣關係로 解決하도록 해야 한다.
 17. 兩側은 특히 交通, 郵便, 電信交流, 科學, 教育, 文化, 環境問題, 그리고 「스포츠」分野에 걸쳐 相互間의 利益을 目標로 協力を 強化하고 擴大함은 물론 細目에 관한 協商을 開始한다는 立場을 確認해야 한다.
 18. 兩獨逸間의 交易을 위해 앞으로 既存의 協定, 委任事項과 合意는 계속 効力を 갖는다. 交易關係는 계속 擴大되어야 한다.
 19. 兩政府는 長官級의 全權代表를 任命하고 全權代表의 常駐를 위한 事務所를 設置한다. 全權代表와 그의 受任課業은 상세히 規定되며, 그들에게는 各其 政府廳舍의 所在地에서 業務遂行이 可能토록 하며 그에 必要한 便宜와 特權이 保障된다.
 20.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간에 合意할 수 있는 條約을 土臺로 하여 國際機構加入과 協力を 規制함에 必要한 措置를 강구한다.

首相! 이것들이 本人이 文書上으로 傳達하는 原則과 內容의 全部입니다. 이러한 提議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과 이미 提起된 또는 앞으로 提起될 其他의 宣言, 努力과 함께 우리의 意見交換의 對象들입니다. 이 경우 어떤 問題들이 實際적으로 着手되어 解決될 수 있으며, 어떤 問題들이 兩國家間關係의 原則적인 規制와 관련되어 取扱될 수 있는지 檢討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協商이 進行됨에 따라서 더 具體적인 提議를 할 것입니다.

「에이플트」에서 本人은 伯林에 관한 見解도 仔細히 表明했습니다. 本人은 그에 관해 지금은 다음의 事項만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즉, 聯邦政府는 시작된 4大國의 對話를 환영합니다. 聯邦政府는 伯林問題의 正常化를 위한 努力의 進展이 우리 兩政府間의 協商을 持續하는데도 重要性을 지닐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本人은 지금 以上の 事項에 관해서만 強調하고자 합니다. 首相! 本人은 우선 貴下가 貴側의 聲明을 發表할 意思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관심을 갖는 바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오늘 다음 日程을 協議해야 할 것입니다.

〈出處：1970年 5月 22日字 公報 70號〉

文 書 15.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會談의 오전會議時 行한 原則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5月 21日

尊敬하는 聯邦首相!

먼저 核心問題부터 言及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고 同時에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뜻깊은 공헌을 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聯邦共和國에 왔습니다.

聯邦首相, 今年 3월에 貴下와 相逢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의 立場이 새롭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支持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分明히 우리는 우리 兩 國家間的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어떤 副次的인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解決을 위해 國際法的 留保없는 適用이 要求되는 歐洲平和가 核心的인 問題임을 누구나 理解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國家들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할슈타인」原則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공갈 협박적인 政策을 계속 成功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不可能해지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도 正當한 根據를 들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을 主張하는 者의 數가 增加하고 있습니다. 결국 獨逸民主共和國을 差別하는 政策을 終結시키고 참다운 同等資格의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점점 提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聯邦首相, 貴下 自身은 그와 같은 理性的이고 現實主義的인 見解들이 獨逸聯邦共和國 住民大多數, 특히 젊은 世代에서 公式的으로 發表된 政治的 表明보다 더 廣範圍하게 普及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지난 數週동안에 우리의 具體的이고도 建設的인 提議들을 根本的으로 熟考하여 이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意思가 있는지에 대해 明白한 對答을 얻으려는 期待를 가지고 「캄셀」에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969年 12月 17日以來 이미 「본」에서 條約草案을 提示한 바 있고 우리 側에서 討議와 論證을 한 바 있으므로 이제 時期가 成熟하여 行動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우리가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즉각 準備하여 署名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國家間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平和共存關係를 우리 兩國家는 成就할 수 있습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하여 條約上 規制된 同等한 平和共存關係가 主權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고 그것이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도 이러한 關係를 樹立해야 하며 이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가 있고, 우리 代表團이 이 人民會議의 明白하고 適法한 委任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것은 今年 3月 21日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該當決議에서 表明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에서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獨逸民主共和國이 提示한 關係正常化, 緊張緩和와 平和에 對한 宣言들을 진지하게 熟考하는가의 與否를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미 數個月前에 提示된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해 公式的으로 回答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間의 國際法的 關係에 對한 貴政府의 否定的 態度가—또한 條約의 原則에 對한 否定的 態度도—變함없이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貴下가 처음부터 同 條約締結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貴側에서 條約問題를 말한다면 고양이 뜨거운 죽을 먹을 듯이 맴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大衆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歐洲大陸 心臟部의 어떤 國家가 이웃 國家를 國際的으로 承認하지 않고, 그의 主權의 平等을 무시하고 또한 그 國家가 國境을 問題視하고 領土의 現狀을 修正하려 한다면 그것은 歐洲平和의 基本的인 利害와 矛盾됩니다. 軍事的인 集團들간의 境界線問題 때문에 戰爭과 平和라는 이 基本問題들을 保留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지한 紛爭狀況의 危險을 惹起시켜 緊張을 緩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緊張을 激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고 歐洲에 있어서의 領土의 現狀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 것은—本人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法律問題 또는 獨逸民主共和國이나 어느 다른 國家의 特權問題일 뿐만 아니라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한 基本的인 要請인 것입니다.

社會主義國家의 政府로서 우리의 行爲는 人間의 利害에 의해 主導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平和保障을 追求합니다. 萬一 우리 國家間의 平和의 正常關係樹立을 위한 原則的 前提條件을 未解決로 남겨둔 채, 懸案問題를 여러 小소한 措置로 解決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人間의 感情의 계입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과거 20年間 以上—單獨貨幣改革과 分斷, 對獨逸民主共和國 長期冷戰에 이르기까지—많은 사람들이 聯邦共和國政策에 의해 加重的인 苦痛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人間性과 가장 矛盾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事態를 改善시키지 않고 도리어 尖銳化시켜 人間에게 그릇된 希望을 주거나 人道的이라는 말을 남용해야 되겠습니까?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가 이러한 點에서—특히 1961年 8月 13日에 이르기까지—쓰라린 經驗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지난번 會談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反復되지 않을 것입니다.

不安하고 緊張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政治家에게 맡겨진 가장 人間的인 使命은 平和의 確保임을 明白히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人道的 問題는 重大한 政治的 決斷을 要求합니다.

人道的 問題는 바로 歐洲의 複雜한 狀況에도 不拘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을 엄격히 遵守할 것을 要求합니다. 本人은 여기에서 歐洲人들이 國際法을 無視하고 질곡한 이것을 破棄했던 代價로 數百萬의 사람들의 人命과 財産을 支拂했었던 여러가지 歷史的 事實을 例로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人間이나 人間生活의 便宜에 對해 言及할 때—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파리」條約과 社會主義的 社會秩序에 對한 反革命的인 「灰色的 計劃」에서 나타난 巴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하여 敵對的인 目的을 追求하는 限, 『人間生活의 便宜』라는 말은 우리側에서는 獨特한 意味로 理解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他 主權國家와의 關係

에 있어서 國際法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연히 國際法과 人間의 基本的 要求에 逆行하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國境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拒否한다는 것은 부득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과 그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에 대한 侵略的인 行爲를 하면서도 이것으로써 國際法上 侵略者의 責任을 지지 않겠다는 態度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의 그와 같은 計劃들이 沙上樓閣이라는 것을 分明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과 社會主義의 人民主權은 不可侵이라는 것을 貴下는 確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獨逸 帝國主義의 모험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歐洲平和와 安定을 점차 위협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自由로운 自決을 通해서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根絶하고 「포츠담」協定の 基本要求를 實現하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認識해야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歷史의 教訓을 터득하고 不幸한 過去로부터 解放되어 社會主義의 길을 밝게 되었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 이러한 社會的, 政治的 現實을 修正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者는 그러한 希望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데나워」時代에 成功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 또는 앞으로도 成就되지 못할 것입니다. 變化에 대해서 말한다면 復仇主義的 目的을 가지고 歐洲平和를 威脅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이 變化되어야 합니다. 「포츠담」協定이 履行되지 않고 있는 곳, 罪를 지은 過去의 勢力들이 再活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든 變化되어야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基本的이며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保有하고 있음은 물론 自身の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完全한 同等資格, 國際法的 主體로서의 無條件的 承認이라는 倫理的인 要求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平和가 保障된 未來를 指向하는 우리 人民의 生存利益에 따라 행동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우리 兩獨問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의 留保없는 適用을 위해 努力한다면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的인 建設事業을 平和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實現시키려는 獨逸民主共和國 모든 人民의 安利益, 그들의 利害關係와 符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利害關係는 獨逸民主共和國과 밀접히 結束되어 있는 他社會主義國家들의 利害와 一致하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 지 2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現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히틀러파시즘」의 敗北 結果를 分明히 認定하고, 歷史의 教訓을 거울삼아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하려는 基民黨/基社黨의 復仇主義的 政策의 殘滓를 拋棄할 意圖를 表明하지 않고 있습니다.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歐洲에서 成立된—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는 물론 「오데르—나이세」境界를 포함하여—國境線들을 궁극적으로, 留保없이 承認해야 한다는 無條件的인 必要性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의해 여전히 否定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제까지 「핀켄」協定을 처음부터 無効라고 宣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聯邦議會, 社會民主黨의 黨大會 및 他機會에 行한 貴下의 演說에 상당히 注意를 集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現實的인 變化를 위한 徵表, 純粹한 根本的인 革新, 不幸한 過去의 궁극적인 克服을 目標로 하는 內容은 전혀 없습니다. 貴 政府가 最近 數週, 그리고 數個月 동안에 내린 決斷들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그 政策樹立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도 基民黨의 政治人들이 말했던 『占領地帶의 解放』(Befreiung der Zone)이라는

「솔로건」을 아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이 20年間 對獨逸民主共和國 敵對政治를 한 후, 단지 理解와 同等資格이라는 말을 하고 平和的 意圖를 宣稱함으로써만 正常的인 關係를 樹立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貴政府의 他 權威있는 代表者들과 같이 最近 여러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의 낮은 基本立場들을 固守한다고 公式的으로 公表하였습니다. 더구나 最近에는 境界線을 變更시킬 方法에 관해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同時에 「分界線」이라는 概念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間의 尙극적인 國境의 存在를 否定하였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은 問題視되지 않는다고 累次 宣稱되었읍니다.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性까지도 「아테나워」時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式的 代表들에 의해 이미 再論難되고 有읍니다. 이것은 大西洋同盟에 대한 西獨의 忠誠과 現在 世界的으로 非難과 反對를 받고 있는 美國의 政策과의 連帶性에 基因하고 有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西伯林에 關해 한마디 言及해야 하겠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強硬한 語調로 지난 數週동안에 西伯林에 關한 違法的인 要求를 하엿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에, 그리고 그의 領土위에 位置한 西伯林이라는 獨自인 政治的 單位體가 결코 앞으로도 獨逸聯邦共和國의 構成要素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構成要素인 수도 없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진 事實입니다.

西方3大強國 政府도 역시 西伯林이 聯邦共和國의 한 州가 아니며, 聯邦政府에 의해 統治될 수도 있다는 것을 反復해서 確認하였읍니다. 聯邦首相, 貴政府가 西伯林을 條件으로 또는 西伯林에 關해서 去來를 始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即 聯邦政府가 西伯林에 대해서 그리고 西伯林을 위해서 餘하한 權利나 管轄權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西伯林을 代表하여 어떠한 行動도 할 수 없고 協商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外相이 최근의 公式的인 宣言에서 西伯林問題와 그의 通行路問題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上의 規制問題와 연결시키고자 試圖했다면 그것은 西伯林問題의 規制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相互 無關하기 때문에 단언 거부되어야 합니다. 西伯林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越權들은 다만 不必要한 마찰과 緊張을 招來할 뿐이며, 西伯林과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西伯林 市民에게는 負擔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西伯林問題에 干渉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모든 試圖를 다시금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基民黨/基社黨 指導者들이 여전히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은 不可能하다고 宣言하는 것도 愕과할 수 없읍니다. 確實히 그것은 基民黨/基社黨의 宣言이며, 「슈트라우스」氏와 「마르켈」氏의 宣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貴政府가 이러한 宣言들을 拒否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有읍니다. 그 代身에 5月 27日 聯邦議會에서 取扱된 「基民黨의 大質疑」에 대해서 貴下의 內閣은 聯邦政府의 「이니시어티브」가 獨逸聯邦共和國의 從來의 政策目標을 전혀 修正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有으며, 오직 強度만이 變化했다고 말했읍니다.

聯邦軍의 武裝化도 역시 強化되었읍니다. 復仇主義의 精神으로 教育받은 高度로 武裝된 軍隊가 「히틀러」의 歐洲 侵略을 準備하고 執行한 將星과 將校들, 所謂 「獨逸의 統一政策」을 軍事的으로 解決하려는 將星과 將校의 命令下에 有읍니다. 本人은 바로 이와 關連하여 다시 한번 貴 政府內에서 그에 대한 管轄權을 가지고 있는 「슈미트」長官에 對해 言及해야 하겠읍니다. 주의할 점은 「슈미트」氏가 힘의 政策, 즉 緊張緩和의 目的보다 힘의 政策이 우선하다고 說明하기 위해서 「아메리카」合衆國에 滯留했

다는 사실입니다. 「슈미트」氏は「나토」同盟의 테두리 안에서 武裝化의 強化를 소위 「東方政策」의 前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盟邦들은 이러한 概念에 留意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直面하여 安保의 自衛手段을 강구한다는 것을 貴下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聯邦軍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가 되고 있는것은 결국 聯邦共和國이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은 우리의 境界地域에, 그의 訓練된 軍事組織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過度한 武裝化와 國境의 不承認은 聯邦共和國이 不斷히 「1937年度 領土下의 獨逸」을 再建하려는 目標을 표방하고 있다는 事實과도 無關한 것이 아닙니다. 數日前 政府側의 資金支援을 받아 편협한 愛國主義的 目的을 표방하고 있는 復仇主義的인 結社들이 所謂 「聖靈降臨祭大會」를 召集했습니다. 貴 政府內의 研究委員會가 推進하는 「灰色的인 計劃」은—明確히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反革命的인 侵略의 개념임—變함없이 그 效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告에 의하면 보다 擴大될 것이라고 합니다. 大資本主義的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예컨대 「슈프링거」系列(Springer-Konzern)만 보더라도—每日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主義秩序에 대한 敵對感을 說教하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에는 合法的으로 「네오나치」黨이 存在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主義者들의 狂亂性은 文書로 普及되도록 許容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獨逸民主共和國 市民도 상당히 분노를 느껴야 했던 것처럼—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이 殺害威脅을 받을 때 政府가 이에 一貫性 있게 對處하고, 效果的으로 處理하지 않은 事件이 바로 1970年度에 聯邦共和國에서 發生하였습니다. 그러한 威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責任은 全的으로 貴下가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그와 같은 事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느날인가 이른바 國際的 違反이 아니며, 또 責任질 必要도 없는 重大한 「國內」事項이라는 口實下에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을 侵略하는것을 막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絕對로 必要하다는 것이 全世界的으로 分明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聯邦共和國 땅위에서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결국 聯邦共和國 市民自身の 死活의 問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서도 사람들은 平和, 緊張緩和 및 安全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冷戰과 復仇政策의 負擔에서 解放된다면, 그것은 그 市民을 위해서도 크게 有益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聯邦首相, 貴下가 本人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할슈타인」原則을 유지하기 위해 使用되는 그 방대한 金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金額을 有用한 目的을 위해 使用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兩國家가 軍縮措置에 관한 合意를 한다면, 그것은 聯邦共和國 市民의 社會的 要求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民主的 改革을 위해 상당히 有益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聯邦共和國의 市民들이 바로 이제까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復仇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西獨獨占資本의 모험적이고도 不安한 政策으로 因하여 不安과 財政的인 負擔, 其他 많은 苦難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밖에, 이러한 政策은 聯邦共和國을 歐洲內의 紛爭의 火山과 平和의 妨害者로 만드는 結果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우리가 잘 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時間이 지나갈수록 不安한 事態로 될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先入見없이 받아들인 聯邦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이 바로 聯邦共和國 市民, 그 중에서도 이땅의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有益한 것이라고 確信하게 될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正常的인 國際法的 相互關係를 「獨逸內部」(innerdeutsche)라든가 「獨逸內 關係」(Zwischendeutsche Beziehungen)라는 개념과 절부시켜 拒否하였읍니다. 따라서 本人은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을—또는 어떠한 表現이 그에 代身하여 使用될 수 있든—우리의 兩國家間의 關係樹立을 爲해 絶對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宣言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의 경우 그것이 서로 獨立한 두 개의 國家라는 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獨逸內部」라는 公式을 排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서로 相異하고 對立的인 社會秩序를 가진 두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이 主要한 問題가 됩니다. 勞働者가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있으며 모든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와 軍需資本과 金融資本이 君臨하고 大獨占企業들이 社會의 모든 富를 處分하며 政治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間에는 하등 「內部的」關係가 있을 수 없읍니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에 社會生活의 어느 分野를 보든—混合이란 不可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에 對해서 말한다면, 客觀的인 狀況으로 判斷할 때—그 때 그 때의 國內狀況은 물론 世界의 事件들에 對한 우리의 立場에 있어서도—우리는 完全히 相異한 基本的 利害關係로부터 出發한다는 事實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現實에 執着하고 있습니다. 1945年 以來, 「아메리카」合衆國 帝國主義者와 同盟한 西獨帝國主義勢力들의 過誤로 招來된 民族單一性의 破壞는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虛構的인 存續을 사칭하는 어하한 概念造作에 의해서도 原狀復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歷史를 회고해 볼 때,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가 周知하는 要因에 의해 發生한 것처럼, 그것은 民族的 感情을 非平和的 目的을 爲해 濫用하려는 試圖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全獨」이라는 概念때문에 얼마나 不運한 힘의 政策이 追求되어 왔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大獨逸的」이라는 概念으로 全歐洲를 戰爭으로 몰아 넣고 諸國民에게 무서운 苦痛을 招來했던 權力과 領土의 要求를 提起, 征服政策이 追求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歷史上 周知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觀念을 가지고 이러한 政策을 持續하고자 한다면 이는 아주 不幸한 일입니다.

「파리」條約 署名, 西獨住民의 廣範한 輿論에 背馳되는 同 條約의 批准,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NATO加入으로 分斷은 끊어졌고 또한 聯邦共和國은 自己 스스로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해 外國이 되었습니다. 聯邦共和國은 이러한 發展의 結果에 對해 責任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하나의 主權國家이고 獨逸聯邦共和國의 內國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읍니다.

이에 關連하여, 本人은 聯邦首相 貴下에게 「파리」條約中 소위 「獨逸條約」第7條에 對한 貴下의 立場을 明確히 說明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第7條는 우리가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關係가 問題되는 경우 省略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獨逸條約」第7條에는 獨逸民主共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社會秩序와 國家秩序에 合併하고 獨逸民主共和國을 帝國主義的인 「나토」條約體에 歸屬시키려는 目的이 아주 明白히 表明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聯邦首相, 貴下는 反復해서 「파리」條約은 無制限 效力을 가진다고 稱명해 왔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貴下가 오늘 다른 立場을 闡明하시겠습니까?

要約해서 말하자면 :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아테나워」와 「덜레스」以後 實用화된, 그러나 展望없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聯邦共和國의 唯一代表權이라는 越權政策의 새로운 表現方式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에 대한 唯一代表權의 要求는—그 要求가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든—敗北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唯一代表라는 越權의 카야드를 가지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서 進展되는것을 妨害하는 者이며, 또한 그로부터 惹起되는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國際法과 不干渉의 原則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適用시키지 않으려는 破壞的인 立場을 포기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와 같은 立場은 우리 對話에 있어 짐이 될뿐만 아니라 그것을 궁지에 몰아 넣을 것이 확실합니다. 貴政府側의 이러한 前提條件은 우리 두 國家가 正常的인 同等關係에 이르는 길을 沮止시키고 있습니다.

貴下가 최근 「아메리카」合衆國을 訪問하였을 때 貴下는 「닉슨」 「아메리카」合衆國 大統領의 政策과 完全한 合意를 보았다고 強調하였습니다. 現在 越南, 「캄보디아」, 近東 또는 其他 다른 곳에서 이러한 政策의 標榜으로 어떤 結果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全世界가 알고 있습니다. 諸國民의 平和意志와 自由意志에 矛盾되는 이러한 侵略戰爭이 亡身당하고 있음은 모르는 자가 없으며, 또한 聯邦首相, 貴政府가 이러한 政策에 同意하고 있는 지에 關係 疑問이 提起되어 있습니다.

「닉슨」氏와 貴下間의 政治的 合意에는—貴下가 分明히 說明했던 바와 같이—歐洲의 社會主義諸國, 그 중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라는 「테마」도 包含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聯邦共和國의 政策을 美國의 世界戰略的인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의 目的안에 配列시킨 것이라고 評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條約과 「特殊」한 關係와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을 手段으로 歐洲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아메리카」合衆國의 世界戰略에 包含시킬 수 있으리라는 希望을 가지는 것은 狀況을 完全히 誤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經濟的 潜在力을 利用하고 「새로운 東方政策」의 도움을 받아 社會主義諸國으로 들어가기 위한 「乘車」를 할수 있다고 論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토가 결코 「獨逸內部」라는 지붕」을 타고 社會主義諸國의 共同體에 「乘車」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이 그와 같은 侵略的인 目的을 위해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者는 現實感覺이 없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始作된 歷史的인 轉換에 대한 理解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우리들의 첫 會談과 그 以後에, 貴下는 再三 同等資格과 無差別이라는 用語를 使用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行이 一致하는 경우에만 그 用語들은 의의를 자집니다. 물론 우리가 貴政府의 行動을 「에어폴트」와 「캄셀」會談의 數週동안만 관찰해 볼때, 言行의 一致에 關係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 發生했던 일, 특히 國際關係分野에서 發生했던 일을 우리는 다만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不平等과 差別을 위한 鬭爭이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事實을 말하겠습니다. 즉 이른바 우리에게 好意를 表한다는 口實下에 「유엔」歐洲經濟委員會에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우리가 正會員加入을 斷念하겠다고 同意할 경우에만 獨逸民主共和國이라는 名牌를 會議卓子 위에 세워 놓는 것을 「許可」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를 享有하고 있는 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이 그의 占領地帶(東獨)의

낮고 差別의인 地位로 因하여 이러한 國際的인 委員會의 「결 冊床」에 表決權없이 出席해야 한다는 特異한 方法으로 獨逸民主共和國에게 善心을 쓰려고 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에어플트」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을 낮은 地位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後 겨우 四週 동안에 「제네바」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들은 정확히 그와 對立된 指示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差別이지 同等資格이 아닙니다.

다른 例를 들지다. 즉 貴政府는 體系의으로 高度로 發達한 保健制度를 保有한 獨逸民主共和國이 同等한 正會員으로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배후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친박하고 협박적인 方法으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제네바」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에서는 그것을 위해 聯邦政府가 提示한 「獨逸內部的」인 後見關係라는 條件에 獨逸民主共和國이 屈服하는 경우에만 獨逸聯邦共和國은 그 態度를 變更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公式表明했음은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聯邦首相, 물론 貴政府가 有利하다고 생각했던 카야드는 效力이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聯邦政府의 行動方式에 관한 國際的인 反應은 分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 人民, 특히 醫師들과 醫學者들이 이러한 反人道的인 行動方式에 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러한 行動方式이 差別이지, 同等資格이 아니라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습니다.

貴政府의 外相은 최근에 「아프리카」諸國의 大使들과의 特殊한 會議에서 第3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지 말도록하는 越權의인 要求를 反復했는데, 그것은 貴政府 外相의 「業務指示」——貴政府가 發足한 후 곧 示達했음——가 비록 修正되었지만, 完全히 效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貴下가 지난해 우리의 對話時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對外的으로 오직 各其 自身만을 代表하며, 어느 側도 他側을 代表할 수 없다고 말하였었습니다. 言行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극히 矛盾의입니다. 同等資格에 관한 말은 差別의 行動에 의해 止揚되고 있습니다.

더 以上 實例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貴下가 主導하는 聯邦政府가 同等資格을 眞正으로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如前히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습니다. 聯邦政府가 主權의 獨逸民主共和國의 同等權利를 거부하고 또 聯邦政府가 앞으로도 自己 自身만을 國際法의 主體로서 간주하는 것이 과연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는 것입니까?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同等한 基本權利에 관해 論爭을 誘發하면서 聯邦政府가 그의 國際的 關係樹立에서 國際法의 原則과 一致하는 主權國의 모든 權利를 要求한다는 것이 과연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고 있는 것입니까?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에 干涉하고 또한——어떤 用語를 쓰든——唯一代表라는 越權에 執着하고 있는 것이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는 것입니까? 聯邦首相, 貴下는 萬一 우리가 唯一代表權을 完全히 拋棄하라고 要求한다면 그것은 無用한 일일 것이라고 말하였었습니다. 事實을 高찰할 때, 이러한 말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언필칭 同等資格에 대해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差別에 執着한다면 여하한 合意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합니다.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對外關係에 대한 聯邦政府의 態度는 全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의 對聯邦

共和國의 態度에 달렸다고 數次言及하였는데 이 말은 곧 獨逸民主共和國이 獨逸內部の 特殊關係에 屈服하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습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이 이미 그러한 越權의인 要求에 복종할 것이라는 希望은 완전히 沙上樓閣이라는 것은 論議할 必要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類의 前提條件은 絶대로 受諾할 수 없습니다.

國際法에 따른다면 同等資格을 어떤 意味로 理解해야 합니까? 유엔憲章 第2條에 規定되어 있는 主權平等의 原則은 모든 國家가 따라야 할 모든 原則들 중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國家들의 主權平等의 原則은 특히 다음과 같은 規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하다.

— 모든 國家는 完全主權에 內在하고 있는 權利를 享有한다.

— 모든 國家는 他國의 主權을 尊重할 義務를 진다.

— 한 나라의 領土의 保全과 政治的 獨立은 不可侵한 것이다.

—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自身の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인 體制를 選擇하고 發展시킬 權利를 가진다.

— 모든 國家는 自身の 國際的인 義務를 엄격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履行하고 또한 他國과 平和로이 生活할 義務를 진다.

「유엔」에 의해 확인된 國家의 同等主權에 관한 이 모든 事項들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도 완전히 適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同等資格은 獨逸聯邦共和國이 國際關係에 있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는 것을 獨逸民主共和國도 國際法에 一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이 機會에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對外經濟關係에 관해 한마디 言及하고자 합니다. 最近에 獨逸聯邦共和國과 其他 機關의 代表者들은 노골적인 方法으로 이른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相互貿易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利得을 取하고 있다는 主張을 퍼뜨리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歪曲된 報道的 目的은 무엇입니까? 本人은 이곳에서 細目을 取扱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原則的인 宣言만을 하고자 합니다. 즉 許可節次, 割當總額, 價格制限等を 通한 通商規制의 全體系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수많은 特殊規制를 創案한 것은 바로 獨逸聯邦共和國側입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貿易을 分析할 경우—그런데 우리는 分析을 하였습니다.—바로 獨逸聯邦共和國이 刮目할 만한 利得을 얻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거기에다 獨逸民主共和國의 第3國과의 經濟關係에 獨逸聯邦共和國이 干涉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이 입은 損害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現實的인 事實입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도대체 貴下의 政策이 무엇을 指向하며, 貴下는 어떠한 戰略的인 目的을 追求하는가 라는 本人의 質問에 對答을 하지 않음으로 本人은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을 反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貴下로부터 直接 적절한 對答을 듣고자 합니다. 本人의 質問을 부연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貴下는 歐洲平和의 利益을 위해서 우리 大陸의 모든 國家가 同等資格으로 參加하는 歐洲安保會議의 準備를 能動的으로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 貴下는 歐洲의 現狀, 歐洲의 現國境線을 留保없이 궁극적으로 承認할 생각이 있으며, 不干涉

의 原則에 따라 貴下의 外交政策目的을 追求할 것인가?

—貴下는 分明히 侵略的인 目的으로 設定해 놓고 있는 모든 形態의 唯一代表權要求를 聯邦政府의 政治手段으로 使用하지 않고, 그 代身에 同等資格의 原則으로 代置하여 이 原則에 따라 行動할 생각이 있는가?

—貴下는 歐洲의 平和와 安全을 軍縮協定을 통해 促進시킬 생각이 있는가?

—貴下는 무엇보다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생각이 있는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的인 適用을 「拒否」하고 또 이미 1969年 12月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했던 條約에 대하여 「拒否」하는 것은 바로 緊張緩和과 歐洲安保의 建設的인 措置,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正常化와 平和스러운 未來의 確保에 관한 人間 本來의 關心에 反對하는 것임을 本人은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여전히 建設的인 立場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提議들은 제시되어 있고——本人은 人民會議의 委任에 立脚하여,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이름으로 宣言하는 바입니다——우리는 곧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條約草案에 관해 協商을 始作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現 事情으로는 政府首腦들간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原則的인 合意를 보기도 前에 當場 副次的인 問題나 3次的인 問題들을 協議하기 위해 어떤 委員會나 代表者를 任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며 또한 問題의 核心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兩獨間의 正常的인 關係를 위해 確固한 土臺를 마련할 眞正한 解決을 원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을 主權的인 國家間의 同等關係를 위한 基本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첫 날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의 精神속에서 그 政策을 樹立했습니다. 이미 오래 前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加入申請을 내고 있는 것은 그와 符合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平和와 諸民族의 理解를 위해 創立된 「유엔」의 原則과 目的에 따라 會員國으로 活動하기 위해 「유엔」에 加入하는 것이 時期에 적절할 것이 아닙니까? 그 경우 獨逸聯邦共和國側에서 어떠한 留保나 附帶條件을 부과할 수 없는 主權國家로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完全히 同等한 會員資格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的인 것은 分明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機構의 會員國이 되어도 좋은가에 관하여 評價하려고 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越權的인 態度는 「유엔」憲章과 矛盾되고 世界機構인 「유엔」의 普遍性的인 原則과도 矛盾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에 의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加入은 議事日程에 올라 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貴政府에게 그와 符合하는 準備를 하도록 오늘 이 곳에서 指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歐洲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모든 必要的인 것들을 다 하겠다는 確고한 決斷을 確認하고 있습니다. 聯邦政府의 變함없는 拒否로 지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인 關係樹立이 不可能하게 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 이것을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確實히 歐洲의 人民들도 이에 대해 理解할 수 없을 것입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당신들에

게 우리 時代의 必要性을 고려하고 歐洲中心部의 平和를 위한 확고한 擔保를 마련하는데 協力할 것
을 呼訴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貴下가 끝까지 留意하여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립니다.

〈出處：1970年 5月 22日字「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16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캇셀」會談의 오후會議에서 한 演說

1970年 5月 21日

首相！ 紳士 여러분！

本人이 本論自體에 대해 言及하기 前에 오늘 發生한 事件과 상가신 일들에 關係 여러가지로 尤감
의 뜻을 表明하고 싶습니다. 특히 尤감스러운 것은 오늘 午後에 우리가 매우 尊敬하는 손님에게 花
環奉呈을 許容하지 않을 정도로 身邊保護措置를 取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에 殺害使團에 대해 非難하였습니다. 聯邦共和國의 法務相은 本人이 指示
한대로 發表했고, 그의 觀點에서 다시 한번 一部의 示威의인 意思表明을 聯邦政府의 責任으로 돌린
다는 것이 그 얼마나 不當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示唆했습니다. 法務相은 우리 刑法의 濫用을 統制
하기 위해 그의 管轄權과 그의 力量에 屬한 모든 措置를 취했다고 本人에게 確認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點에서 法務相은 모든 州의 法務相의 充分한 支持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詳細히 밝혔고 또한 本人은 우리의 會議과 關係하여 貴下에게 무엇이 重要한 問題인가
를 말하고 싶습니다.

首相, 本人은 貴下가 오늘 午前에 (本人이 이제 對答하려고 하는 바) 貴下의 陳述에서 語調와 形
式에 있어 그토록 強力한 抗議, 個人的인 非難 그리고 責任追窮으로 一貫된 發言을 할 必要性을 느
끼게 된 것을 尤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本人自身이 받은 攻擊에 關係 지금 言及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聯邦共和國의
다른 人士에 대한 攻擊을 反駁해야 겠습니다. 그것은 「마르켈」과 「슈트라우스」와 같은 聯邦議會議
員에 대해서는 물론 「셀」과 「슈미트」氏와 같은 內閣閣僚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의 陳述을 對照해 본 결과 相互矛盾과 對立點들을 發見했을 뿐만
아니라 一連의 實質의인 共通點들도 發見했습니다. 貴下는 지난 해의 12月 17日字 貴下의 條約草案
에 대해 우리가 具體的으로 充分히 回答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非難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
閣首相은 5月 7日 聯邦政府가 아직까지 그에 대하여 하등의 實質의인 對案을 提議하지 않았다고 宣
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重要한 點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反對하는 主張을 羅列하는 것이 아닙
니다. 우리는 兩側이 關係正常화 規制를 위해 提議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또한 검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原則的으로 協商만을 持續할 생각을 했고 또한 생각하
고 있습니다.

本人은 오늘 兩側이 提示한 文書를 基반으로 하여 協商할 것에 合意하고 同等關係를 規制하며 동시에 兩側의 利益에 따라 벌써부터 規制될 수 있었던 問題에 관해서 合意하기에 알맞는 時期라고 하는 本人의 생각을 言及했습니다.

그와 같은 協商을 始作하는 것이 아직도 不可能하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一定 期間동안 意見交換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實際적으로 緊張의 解消과 우리가 追求하는 正常化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와 그와 相關된 兩獨國家의 發展의 結果로써 이루어진 獨逸과 獨逸人의 現狀況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原則에 立脚해서 獨逸의 兩國家는 그들의 相互關係를 條約上 規制하는 問題에 合意해야 합니다. 兩獨國家間에 一定한 實質問題領域에서 特別한 條約上의 規制가 必要하지 않는 限, 一般적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特히 主權平等의 原則, 同等資格의 原則, 領土保全의 原則, 不干涉의 原則이 適用됩니다. 우리가 主權平等, 同等資格 등등을 말하는 경우, 이것은 「유엔」憲章 第11條에 規定되어 있는 原則에 對立하지 않음은 自明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條約草案의 核心은—그리고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자세히 說明했음—國際法의 承認問題입니다. 그러나 이 條約草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過去 貴側의 수많은 다른 示唆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록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內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獨逸內에 形成된 獨逸民族의 關係와 將來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한 根據를 提供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規制를 위해 우리가 提示한 內容에는 包含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貴下의 條約草案과 우리의 그것을 對照하여 協商時 一定한 경우 우리 國家相互間의 關係를 위해 國際法의 原則의 適用을 規定上 表現할 수 있는 現實에 符合되는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本人은 앞으로 貴下가 言及한 民族이라는 概念에 同意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說得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다시 한번 간절히 이에 대한 本人의 見解를 要約하겠습니다.

우리는 民族이라는 概念이 단지 過去만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民族이란 共通的인 言語와 文化 以上の 것을, 國家秩序와 社會秩序 以上の 것을 包括합니다. 民族이란 사람들의 共同體所屬感에 立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뜻에 民族의 單一性이 있습니다. 民族의 單一性은 貴下나 우리들에 의해서 廢棄될 수 없습니다.

貴下가 한편으로는 「나토」同盟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 샤바」同盟에 兩獨國家가 統合되었다는 것을 決定的인 特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의해서 國家의 領域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民族의 要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한편 兩分된 民族의 實際生活이 國家의 및 社會政策의 發達에 의해 많은 領域에서 矛盾되고 相異

하게 變化되고 있다는 事實을 論爭할 者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人들은 오늘날에도 共通의인 言語, 共通된 歷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持續的인 共同體 意識뿐만 아니라, 第2次 世界大戰과 그 結果에 의한 分斷이라는 共同運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本人이 希望하는 바와 같이—本人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代로 인해 더욱 이를 바람—平和의 確保 및 維持에 對한 責任과 特殊한 發展意識, 그리고 諸民族들의 自決權侵害에 대한 民族保護意識으로 우리는 결속되어 있습니다.

兩政府는 「에어플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獨逸땅위에서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된다는 決意에 合意했습니다. 그것은 不斷히 解決해야 할 많은 다른 問題의 한 局面에 不過합니다.

本人의 생각과 같이 한 獨逸國家의 法律과 其他法規가 理論上 他獨逸國家와 그 곳에서 生活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번과 오늘 午前 貴下의 첫 發言에서 批判되었습니다. 兩獨逸國家中 한 國家의 統治權限을 他國家의 市民에게 延長하고자 試圖하고 있다는 점도 言及되었습니다.

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人은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宣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提起된 非難들은 어떤 점에서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은 물론이고 聯邦共和國의 善意에 대하여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도록 聯邦共和國의 立法을 歪曲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差別할 意圖는 없습니다. 실상, 一連의 우리의 立法은 獨逸民主共和國 住民에게 有害한 것이 아닙니다. 本人은 다만 兩獨逸交易에서 關稅를 免除시켜 놓고 있는 1961年 7月の 關稅法을 例示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立法上의 抵觸이라는 모든 「콤플렉스」와 相互間의 差別에 대하여 協商하고 그것을 解消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貴下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差別問題의 非難과 관련하여, 그리고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전혀 不當한 復仇主義 非難과 관련해서 所謂 研究委員會에 관한 言及을 했습니다.

물론 獨逸의 國家의 統一이 4大強國政策의 한 要素였던 時期에 무엇보다도 全獨의 經濟的 關係를 規制할 可能한 모델들을 그 研究諮問委員會에서 檢討했던 것입니다. 本人은 이것을 侵略的인 計劃이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4大國의 政策과 矛盾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考慮되었던 모델들이 獨逸聯邦共和國의 廣範圍한 政治的인 輿論과 符合되었음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首相, 本人은 本人의 說明으로 貴下를 달리 理解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貴下가 根本적으로 誤認하고 있는 學術委員會의 活動이 全體狀況의 變化와 함께, 그리고 방금 言及된 이러한 思考모델에 의거한 우리 政策의 變化와 함께 展開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同 委員會가 오늘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協力狀態를 훨씬 앞질러 간 面이 있다고 하더라도 兩獨逸國家의 學術的 體制比較를 위해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貴下가 언제든지 適當한 時期에 貴側의 大學과 研究所의 專門家,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 研究所의 作業을 確認하기 위해 보내줬다면 우리는 그를 招請할 것입니다.

本人은 이미 「에어플트」에서 모든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獨逸땅 위에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共同의 信念임을 分明히 할 것을 強調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貴下가 部分的으로는 우리와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우리 역시 貴下와는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있지만, 貴下와 마

찬가지로 평화의 確固한 保障이 必要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見解로는 決定的인 問題는 平和를 確保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特殊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계속 진행될 우리의 對話는 바로 이 問題를 다루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같이 聯邦共和國도 相互間에 歐洲平和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能動的인 政策을 追求하겠다는 意志를 確認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우리 兩側은 「에어폴트」에서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속에 暴力의 威脅과 行使를 拋棄하는 規制를 다같이 수락할 것을 闡明했습니다. 首相, 貴下는 國際法的인 承認과 不干涉의 原則에 관한 우리의 見解差가 暴力拋棄問題를 沮喪할 수 있다고 異議를 提起했으나 本人은 그것을 納得할 수 없습니다. 暴力拋棄는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基本前提이며 만일 條約을 締結하는 國家間的 政治的, 社會的 相異性이 問題視된다면, 우리는 더욱 貴下의 主張을 納得하지 못합니다. 蘇聯도 聯邦共和國과의 意見 交換에서 언제나 다른 要因들 보다도 暴力拋棄가 우리 兩國家間的 條約上 規定의 主要部分임에 틀림없다는 데에 最大의 價値를 두었습니다.

萬一 보다 두터운 信賴의 霧圍氣속에서 條約上의 規制를 할 수 있을 정도로 既存 見解를 克服하기 위한 持續的인 發展이 이루어지는 경우, 暴力拋棄와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한다는 義務가 規制되어야 함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歐洲의 安保를 더욱 保障하는 문제에 있어 聯邦政府가 指向하는 積極的인 態度는 周知의 事實입니다. 聯邦政府는 이에 必要한 모든 努力을 支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의 除去가 있습니다. 단지 外的인 緊張狀態가 他形態로 탈바꿈한다면 이는 歐洲安保에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全歐洲住民을 위해 보다 現實的이고 強力한 安全保障策을 發見하기 위해서는 緊張의 原因이 除去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對話가 進展됨으로써, 歐洲의 安保提高를 위한 모든 努力은 成功的으로 遂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한 國家의 安保 때문에 他國家의 不安이 招來되어서는 아니됩니다.

首相, 이와 關係해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聯邦軍 戰車의 鐵柵속에 對獨逸民主共和國 侵略計劃이 있으며 貴側이 이러한 計劃案을 入手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首相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이러한 計劃을 公表할 수 있다고 發表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反對할만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屬한 同盟體의 테두리안에서의 우리의 軍事計劃은 獨逸聯邦共和國의 防衛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지 獨逸民主共和國이나 其他 나라들에 대한 侵略目的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計劃은 없습니다.

오늘 午前 本人의 發言序頭에서 本人은 이미 領土保全과 國境을 尊重하면서 關係를 樹立하자는데 兩側의 意思를 表明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本人은 國家間的 生活에 있어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이러한 原則이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關係에도 拘束力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國家間的 境界問題 以外에 本人은 다른 國境問題에 관해 다음의 사항만을 부언하고 싶습니다. 즉 「폴란드」人民共和國과 우리의 關係는, 貴下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곳에서 討議할 必要는 없으나 우리의 協商對象이며 對話가 계속 잘 進行되어 肯定的인 結論을 얻을 것을 希望합니다.

1938년에 成立된 「핀헨」協定 問題는 그 問題自體의 성격상,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協商할 對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問題는 獨逸聯邦共和國과 그 이웃 「체코슬로바키아」間的

協商에 의해서만 兩側이 滿足할 수 있는 方法으로 規制될 수 있다고 우리는 確信하며 聯邦政府는 그것을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습니다.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 伯林에 관해서 聯邦政府는 아무 것도 協商할 것이 없다고 상당히 強硬한 語調로 말했습니다. 聯邦政府와 獨逸聯邦共和國의 立場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同一한 貨幣制度和 同一한 經濟體制때문에 한 局面만 例로 들더라도 실상 伯林問題와 關聯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聯邦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폴트」에서 說明되었습니다. 現在 伯林에 대해서 特殊한 權利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強國은 伯林的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協商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이 協商이 4大強國에 의해서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면 곧 兩獨政府가 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를 더 깊이 討議하는 것은 時期尚早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歐洲平和과 秩序와 歐洲安保體制가 要求하고 있는 原則的 問題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먼 將來의 問題라고 우려할 必要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歐洲의 安保는 우리가 그것에 흥미가 있든 없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加盟하고 있는 防衛同盟體의 均衡 잡힌 關係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相互間的 關係規制는 歐洲安保에 아주 重要하며 우리가 單獨으로 歐洲平和과 秩序를 創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前提로 既存防衛同盟體와 우리가 그 同盟體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貴下가 4大強國의 責任을 反對하지만, 그 主張에는 한 가지 重要한 觀點이 缺加되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즉 伯林問題와 獨逸問題를 4大國 責任에 귀속시킨 것은 지난 25年間 不滿足스러운 結果를 招來하긴 하였으나, 적어도 그것이 平和를 維持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獨逸內의 兩國家는 各其 安保의 必要性을 인식하여, 東과 西의 戰勝國의 盟邦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歐洲의 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土臺, 즉 本人이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바로 4大國의 立場에서 出發할 수 있습니다.

貴下는 獨逸條約 第7條에 대해 날카로운 批判을 加했고 本人에게 質問을 던졌습니다. 貴下가 그 條文을 잘못 解析하셨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第7條 第1項에 유의하기를 권합니다. 즉 署名國들은 그들의 共同政策의 基本目的이 持續的인 平和의 기반을 이룩하기 위해 獨逸과 그의 以前 敵對國들간에 自由로이 合意된 對全獨 平和條約 締結에 있음을 合意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歐洲平和와 世界平和에 대해 危險한 存在가 될 수 없는 平和스러운 獨逸』이 同條文의 主要內容입니다. 그 條約의 모든 他規定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豫속됩니다.

이제 第3國과 國際機構와의 關係에 대해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兩獨國家 關係에 적합한 形態를 發見했거나 發見해야 할 경우 獨逸民主共和國의 第3國과의 關係에서 發生하는 難關들도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友邦國이 이러한 努力을 沮害하는 모든 일을 中止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關係를 平和의 秩序지우려는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貴下도 貴下의 友邦國이 貴下의 政策을 支持할 것을 期待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兩側의 努力으로 相互理解가 可能해진다 면 궁극적으로 우리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 밖에 本人은 獨逸內 兩國家가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해 努力하는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

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이제까지 「유엔」會員國이 아님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결국 從來의 兩國家關係의 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關係는 앞으로 條約에 의해서 새로 規制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努力이 成功한다면, 他 領域에서도 크게 成功하리라는 展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協力を 規制하는데 必要한 對策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번째로 「유엔」歐洲經濟委員會에 관해 言及할 機會가 있었는데, 이 問題도 演說의 對象으로 되기 때문에 本人은 또 이에 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4月の 「유엔」歐洲經濟委員會 會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力問題에 관해 聯邦政府가 취했던 態度는—本人은 「제네바」에서 表明된 어떤 文章 또는 切取된 文章이나 其他의 發言에 집착하지 않고 問題의 核心에서 出發하고 있습니다.—國際적으로 兩獨의 相互理解를 위한 準備段階로서 하나의 微表를 設定하려는 意圖에서 取해진 것입니다. 그 當時 聯邦政府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 事務局의 通告와 「제네바」에 있었던 獨逸民主共和國代表의 態度表明을 土臺로 貴政府도 地位의 問題를 떠나 實用主義的인 問題解決에 關心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誤解하였던 것이고, 결국 그 試圖은 失敗로 끝났습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 會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國際分野에 있어서는 中間解決은 거의 無用하다는 認識을 얻어냈습니다. 本人은 그러므로 우리가 第3國과의 關係 및 國際機構에 대한 우리의 關係를 合意하고 規制하기 前에, 우선 우리 兩國家間의 政治的 關係를 規制해야 한다고 結論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認識을 土臺로 世界保健機構會議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態度가 決定되었던 것입니다. 즉 일단 中間解決의 可能性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留保를 擇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 代表가 獨逸民主共和國이 取하는 通商利得에 관한 主張을 펴뜨리고 있다는 貴下의 非難에 本人은 當황하였습니다. 여하간 그것은 聯邦政府와는 無關합니다. 聯邦政府는 貴下의 發言에도 不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意識적으로 實質적으로 行動했었고 自制하였습니다. 聯邦政府는 「파트너」의 利益뿐 아니라 自己 自身の 利益에도 符合하도록 好意的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確信합니다. 利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論爭은 이 곳에서는 不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經濟交流를 兩側에게 有利하도록 發展시켜 나가기 위한 前提條件을 追求해야 하며 그에 符合되는 合意를 맺어야 합니다. 現在의 兩獨間 交流의 基盤을 離脫하는 것은 利로울 것이 없습니다. 聯邦政府는 앞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特殊한 經濟的 關係를 促進시키고자 努力할 것이며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는 現存協定, 委任事項 및 合意事項을 확인해야 합니다.

本人은 첫째로 聯邦政府가 條約을 위해 提議한 草案에 同等資格, 無差別, 第3國에게 侵害당하지 않는 主權의 行爲, 暴力拋棄 등의 모든 確約이—條約締結國家의 政治秩序와 社會秩序까지 考慮한— 포함되어 있다는 點과 問題의 本質上 例外的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際法的 慣例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努力해온 바와 같이 또 실제적으로 提議한 方案에 따라 協力問題를 條約上 規制하면서, 國際機構에의 加入 및 協力에 관해서 協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分明히 共同利益에 符合되는 우리들 提議의 核心에—貴下는 貴下의 觀點에서 「核心」을 言及하고 있습니다.—貴下가 反對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質問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貴側은 「에어폴트」會談 以來 所謂 우리가 反革命的 意圖를 가지고—歐洲와 獨逸에서—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써 이루어진 現實狀況을 修正시키려고 努力했다는 不信을 表明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告發에 대해 本人이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貴下에게 提議한 草案文속에 明白히 表明되어 있는 聯邦政府의 立場 即 모든 暴力의 公式的인 拋棄뿐만 아니라, 平和的인 協力 意思의 公式的인 表明, 領土保全과 境界線尊重等이 貴側의 告發과는 矛盾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것이 條約上 拘束的인 內容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에 成立된 獨逸과 獨逸人의 現實狀況에서 出發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겠습니다. 매우 尊敬하는 首相, 貴下는 우리의 狀況에서 獨逸과 伯林에 관한 現存 4大國의 合意를 尊重한다는 것을 合意하지 않은 兩獨間의 條約이 締結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 歐洲의 同盟體들과 우리를 에워싼 同盟體 밖에 있는 國家들에 의해 그런 條約이 환영받을 수 있고, 수락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어진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合意가 佛蘭西, 英國, 美合衆國 및 蘇聯을 相對로 우리가 받아 들인 義務條項을 除外하고 또한 獨逸과 伯林과 伯林에 대한 이들 強大國들의 特殊한 權利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다는 保障條項이 除外된 條約이 무슨 價値가 있겠습니까? 兩國家는 그들의 戰後史를 政治的 社會的으로 主導하려는 政策目標의 結果로, 그리고 各其 自己安保의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各其 自己側의 立場에서 東西戰勝國들의 盟邦이 되었습니다. 萬一 우리가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한 기반위에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해야 합니다.

本人은 오직 貴下의 條約草案에 立脚하여 우리 關係를 規制할 수 있다는 貴下의 立場을 계속 固守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貴下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관해서는 우리도 貴下를 이해하고자 하며 또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關係의 諸 形態가 法的 拘束力을 지닌 文書로만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首相, 本人으로서는 貴下의 條約草案에서 우리의 協商對象인 兩獨國家의 市民 即 獨逸人 相互間의 利益을 위해 實際的인 協力和 關係樹立을 위한 決意를 認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疑問이 생깁니다. 우리가—本人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獨逸인들이 이제 國家的인 分斷에도 不拘하고 共同生活에 秩序를 찾고, 이것이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할 것이라는 點을 國民들에게 認識시키지 않고서도 條約協商에 合意할 수 있겠습니까? 貴側의 條約草案에서는—실제적 概念은 여기에 의거함—그 點을 거의 認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本人을 不安하게 합니다. 具體的 內容에 관해 不分明하고 극히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第6條의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숨어 있으며, 부분적인 領域에 대한 合意도 可能한 것인지가 疑問視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獨逸의 現實狀況과 人間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結果는 무엇입니까?

問題는 歐洲平和의 確保를 위해 우리가 공원하기를 度外視한다면 우리 두 國家의 市民間에 보다 강한 結束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人이 質問하고 싶은 것은: 首相, 貴下도 우리 國家間의 條約이 一般的인 目標만을 公布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간에 存在하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 拘束力있는 措置를 取하는 경우에만 어려운 關係狀況이 改善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오늘 午前에 要約했던 것과 같이 아직도 다른 많은 問題들, 즉 離散家族에 관계되는 問題, 共同境界線에 沿한 郡·面의 問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는 具體的인 措置들을 우리 國家間 條約에서 規制한다면 그것이 우리사이에 存在

하는, 지울수 없는 政治的인 對立, 社會的인 對立, 그리고 이례을로기적인 對立을 侵害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首相, 貴側의 막연한 推測으로서 共同生活과 共同課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措置를 원하는 우리 國家의 市民을 失望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責任을 질 수 있는가를 貴下는 熟考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午前에 言及한 分野에 있어서 實際的인 協力的인 與件을 發展시키거나 혹은 이미 協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에서 이것을 強化시킬 準備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責任을 질 準備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에는 結局 個別問題의 協商에 까지 着手하고 그 協商結果를 가까운 時日內에 兩國家의 國民들에게 共同的으로 報告할 수 있도록 알찬 內容의 合意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兩國家間의 條約속에 包含시켜야 할 內容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方案을 提示한 바 있고 貴下는 또 貴下의 생각을 展開하셨습니다. 우리의 見解가 여러 面에서 不一致하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이미 意見一致를 確認할 수 있는 事項도 있습니다. 이제 兩側이 言及한 原則的인 問題를 論議해야 할 것입니다.

首相, 아마도 貴下는 本人도 그런데로 理解할 수 있는 바이지만 本人이 提議한 方案에 貴下의 公式立場을 表明할 형편은 아직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貴下는 더 檢討하고 相議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本人은 물론 萬一 貴下가 오늘 兩側이 提示한 原則的인 問題에 관해 協商을 始作하겠다는 決定을 하지 않는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協商의 形態에 관해서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同時에 이러한 形態의 豫備的인 對話가 우리의 決斷을 결코 不可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見解와 判斷에는 물론 差異點이 언제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날엔가는 이루어져야 할 合意點과 決定을 위한 基礎는 그 解決可能性을 事前에 摸索하고 그와 같은 形態로 事實上의 對立點들을 解消하는 것이 建設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本人이 序頭에서 言及한 대로 오늘날의 여러가지 附隨的인 現象에서 오는 失望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우리의 見解差들이 매우 深刻하고 根本的인 性質의 것임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가 對話의 실마리를 끊어서는 아니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것이 歐洲 및 우리 兩國家住民의 平和와 安保에 대한 關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對話를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努力할 수 있는 一連의 共同點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國家間 關係가 規制되기 前에, 이루어져야 할 協商에 관해 言及했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協商이 前提條件에 의해 負擔을 지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과 兩側의 提議들이 그와 같은 協商의 土臺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서로 양해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協商을 통해서 兩國家의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協력과 會員加入은 물론 國際關係의 問題를 規制하는 것도 試圖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 即 國際法의 原則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再次 反復하여 強調하였기 때문에 더 言及할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어폴트」에서 全權代表者를 任命할 것에 合意했다라면, 이 點에 있어서 進展이 이루어졌을 것이 확실하다고 本人은 이미 오늘 아침에 示唆한 바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條約上의 規制에 관한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우리 兩政府間의 接觸을 進行시킬 方法에 대해 속고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發言에 共通된 利害關係가 있다는 事實은 本人을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 暴力拋棄, 領土保全과 國境尊重, 相互不干渉과 兩國家의 統治權의 尊重 등의 原則이 바로 그것입니다.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努力도 그에 屬하는 原則입니다. 또한—本人이 이미 指摘하였습니다—특히 貴下가 強調하는 相互間의 立法上의 抵觸을 排除하고 이러한 方式으로 差別規制와 差別이라고 느끼는 規制를 廢棄시키는 問題가 解決可能한 지의 問題를 놓고 兩國家의 立法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努力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意見差異에도 不拘하고 貴下의 一連의 政治的 質問에 肯定的인 對答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關聯해서, 聯邦政府는 얼마 前부터 論議에 들어간 歐洲安保會議을 위해 慎重하게 準備中에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歐洲國境을 尊重하고 있고 歐洲平和와 安保를 위한 努力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分野의 問題를 둘러싼 여러가지 批判的 發言이 되풀이 되어도 事實을 전혀 變更시킬 수 없습니다. 貴下는 우리의 本質的 問題를 놓고 계속 兩者擇一의 立場을 固守하고 있으나 과연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라는 事實로부터 어떠한 肯定的인 結果를 兩獨逸國家의 住民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鮮명한 印象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우리들이 追求하고 있는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도 人間의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와 關連하여 意味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具體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首相, 貴下는 우리의 이 質問에 對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對答을 얻는 경우,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이라고 強調하는 그 問題 역시 解決可能性이 있다고 確信합니다. 本人은 다시 한번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全般的 相互關係와 關連시킴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고 그 條約이 純 形式的인 法律行爲로만 고찰할 수는 없다는 點을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에서 이 問題를 다른 角度에서 보려한다면 本人은 그것을 理解할 수 없을 것입니다. 本人은 우리 國民이 우리의 實際的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될 모든 規制를 支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장합니다. 우리 政府 역시 모든 態勢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貴下도 貴側의 立場을 再檢討하고 一定한 時期에 우리 兩政府間의 對話를 계속 하기 위해 서로 接觸할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中斷하지 말고 可能한 모든 問題 解決方案을 찾기위해 努力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소한 問題일지라도 어떠한 進展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出處：1970年 5月 23日字 公報 71號〉

文 書 17.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會談의 오후 會議에서 한 演說

1970年 5月 21日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가 序頭에서 提起한 여러가지 質問과 방금 發言한 質問들이 根本的으로 本人이 앞에

서 사실상 對答했던 問題들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이제 時間이 許諾하는 程度에
서 一連의 質問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貴下의 質問中 몇가지 問題에 本人이 答辯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가 答辯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貴側의 見解에 同意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相互間의 見解差異를 對比할
必要性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몇가지 基本的인 생각을 表明하겠습니다. 그 中의 몇가지는
이미 本人의 앞 演說에 包含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主權國家들간 에 通用되고 있는 바와같이 歐洲平和와 安全에 關心을 가지고 獨
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提議를 하였습니다. 獨
逸民主共和國은 모든 基本問題에서 具體的인 事項을 확정하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聯邦共和國間
의 同等關係樹立에 관한 條約草案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축각적인 유엔 加入과 그의 傘下機構加入을 위해 努力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家 政府首腦間의 對話를 위한 提案을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會談場
所의 其他 問題에 있어 恒時 큰 好意를 表示했고, 많은 忍耐을 發揮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곳 「캄셸」本會談에도 해당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代表團의 「캄셸」旅行이 「네오나치즘」적인 挑發과 暗殺陰謀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問題에 대한 關心과 本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에 오기로 決定했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이에 대한 올바른 評價를 해줄 것을 바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도 認定하는 바와 같이 社會體制의 根本的인 對立性과 異
質性에도 不拘하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과 後期資本主義的인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平和的
共存關係를 達成하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主導的인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根本的인 問題에 있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否定的 態度에 直面하고 있다
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의 異議, 留保, 條件들로 인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
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위한 길이 지금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貴下의 오늘의 發言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계속해서 이런 破壞的인 態度를 공공연히
表明하고 있다는 것을 看破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規制를 위해서
貴下가 提議한 原則들은 단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대한 偽裝된 그러나 分명한 拒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貴下가 言及한 多數의 項目에도 不拘하고
本人이 貴下의 言及에서 看取할 수 있었던 것처럼 貴下는 決定的인 項目이라 할 수 있는 獨逸民主共
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必要한 核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貴下가 우선 第1次的인 措置를 먼저 取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現實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오
직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平和와
人間을 위해서, 그리고 歐洲安保를 위해서 긴급히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아직도 變함없이 國際法的 原則에 입각한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
係樹立을 拒否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歐洲平和라는 긴급한 問題가
바로 그 때문에 未解決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聯邦政府의 몇가지 宣言中에는 聯邦政府도 現實的 基盤위에 서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인 兩體制를 서로 混合시킬 수 없다고 宣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은 이러한 宣言을 또 公公연히 否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어플트」에서의 對話와 「캣셀」에서의 오늘의 對話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아직 現實的인 狀況에 입각하여 唯一한 可能性있는 結論을 導出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表明하였습니다. 貴下는 수립할 수 없는 「獨逸內部關係」를 立證하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必要한 國際法的 關係 代身에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을 여러번 使用하였습니다. 貴下는 確實히 本人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社會的 現實과 政治的 現實에 一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와 관련해서 政治的 現實들을 상기시켜 立證했던 本人의 發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首相閣下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憲法上 「民族의 單一性」에 拘束되고 있는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도 憲法上 그것에 拘束되어 있다고 闡明하였는데, 聯邦共和國 基本法과 獨逸民主共和國 憲法을 이처럼 比較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은 實上 周知하는 바와 같이 聯邦共和國 代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憲法이 아니라 西方強大國, 특히 「아메리카」合衆國의 代表者들에 의해 成案되어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强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民族團合에서 分離되었고 單獨國家로, 「나토」의 加盟國으로 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만이 저주스러운 獨逸歷史로부터 참다운 教訓을 받았다는 事實, 獨逸民主共和國에 서만 「포츠담」協定の 根本的인 規定들이 決定的으로 實現되었다는 事實,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만이 人民이 統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獨逸民族國家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戰爭의 根源이 除去되었고 또한 獨逸人民의 平和國家이기 때문에 그 存在와 政治는 國際法과 一致합니다.

그러므로 犯罪的인 獨逸「파시즘」에 대한 反「히틀러」聯合의 勝利의 結果로 이루어진 歷史的 變化와 帝國主義로부터의 獨逸民主共和國人民의 解放을 白紙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소위 獨逸內部的 特殊關係를 樹立하려는 모든 試圖는 오직 唯一代表라는 越權行爲를 유지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을 後見하려는 目標을 追求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다시 한번 아주 明白히 그와 같은 方式이 결코 모든 差別을 止揚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原則일 수 없고 따라서 受諾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오늘의 貴下의 發言에서 결코 다시는 독일땅 위에 戰爭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強調하면서 1945年以來 反「파시즘」勢力이 追求한 原則을 再引用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保障하는 것이 「포츠담」協定을 체결했던 反「히틀러」聯合에 屬한 主要強大國의 主目標였으며 同協定은 國際法上 拘束力을 가지고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해서도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파시즘」과 軍國主義를 帝國主義의 뿌리와 함께 완전히 根絶하고 社會生活을 基本的으로 民主化함으로써 再論의 余地없이 保障되었습니다. 따라서 獨逸民主共

和國은 歐洲에서 平和와 安保를 위한 主要國家가 되었고 따라서 自主的인 獨立國家로서 1955年 9月 20日字의 獨逸民主共和國과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間의 國家條約에서 固定된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를 포함하여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完全히 自由로 이 樹立할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國際法的 關係를 거부함에 있어 4大強國을 방패로 삼는 것은 誤導이며 그릇된 處事입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포츠담」協定の 基本的 規定들이 오늘날까지 履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치즘」이나 軍國主義도 根絶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내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會談과 관련하여 우리는 결코 枝葉의 現象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克服되지 못한 過去를 政治的으로 表現하는 것을 問題視하는 것이며 우리의 相面이 바로 「네오나치즘」적인 策動의 目標場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反「히틀러」聯合의 主要強大國들은 여전히 獨逸聯邦共和國에서 「포츠담」協定을 實現할 權利와 義務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聯邦首相, 貴下가 오늘 4大強國의 權利와 責任을 만졌을 때 分明히 바로 그 點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貴下의 提案의 目的은 오히려 分斷을 高착시키고 聯邦共和國를 「나토」에 統合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合併을 追求하고 있는 「파리」條約에 獨逸民主共和國를 묶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貴下는 오늘 午後 이곳에서 「파리」條約 第7條 第1項을 引用하였으나 그 項目은 원래 問題되는 項目은 아니며, 참으로 問題되는 項目은 引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補充하여 부언하고 싶습니다. 本人은 第2項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講和條約締結時까지 署名國家들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그의 共同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協力할 것이다. 즉 聯邦共和國의 그것과 유사한 自由民主主義 憲法을 가지고 또한 歐洲共同體에 統合된 再統一된 獨逸이라는 共同目的을 實現시키기 위해 努力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의 政治的 目的인 것입니다.

本人의 見解에 의하면 第7條 2項은——條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本 第7條 1項과 同一한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條文은 아직 完全히 効力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있는 이 條約文書가 舊版인지?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項目이 삭제되었는지? 萬一 그렇다면 本人은 本人의 發言을 訂正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이제까지 그에 관해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故로 本人은 第2項이 여전히 存在하고 있고 앞으로도 署名國家들이 그 條文은 効力이 있는 것으로 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이 本 第7條에 대해서 그어떤 諒解를 할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오늘 獨逸民主共和國이 聯邦共和國의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방해하고 있다고 主張하였습니다. 이는 本人에게 금시초문이며, 聯邦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는 者가 있다면, 우리의 見解로는 그것은 바로 貴政府自體라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無條件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는 側은 바로 聯邦政府입니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을 拒否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그것이 우리의 對話의 目的이 아니며 또 우리가 規制해야 할 事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言及하였지만, 그것은 聯邦政府가 다름아닌 「오데르·나이세」境界의 承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貴政府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1938年의 「뮌헨」協定の 無効를 拒否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이

聯邦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고 있다고 不平하다면 本人은 솔직히 말해서 貴下가 그릇된 情報에 의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國家가 同等한 기반위에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모든 差別을 떠나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1970年 現在 이곳 歐洲에 살고 있는 時點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完全히 認定하는 것을 前提로 합니다. 그것은 달리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第2次世界大戰이 終了된 지 25年이 된 이제 關係正常化와 歐洲緊張緩和에 關係해서 진지하게 論議하고 現實의인 政治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狀認定부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貴政府의 態度에는 後見도 越權도 없다고 主張하였고, 나아가서 貴下 自身이 相互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最近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를 注意깊게 지켜 보았는데, 貴政府는 여러 方法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對한 後見과 差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強化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의 主權의 權利를 侵害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을 後見하고자 하는 그같은 政策이 계속됨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를 몹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겠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獨立國家 즉 國際法의 主體로서 存在하고 있으므로 兩 國家의 相互關係는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와 같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을 無制限 適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主權國家間의 關係에서 本質的 基準이 되는 이러한 規範을 무시하는 貴側의 態度는 本人이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歐洲經濟委員會 및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加入을 妨害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本人은, 聯邦首相 貴下가 오늘 午前의 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態度에 言及하면서 그것이 差別的인 것이라고 特徵지운데 대하여 貴下의 沒理解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貴下의 代表가 말한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을 主權國으로서가 아니라 「占領地帶」로서 대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對해 너무도 無理한 要求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對한 論據는 文書로 提示되어 있습니다. 貴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參席과 活動에 對한 前提條件으로 提示한 目錄은 國際關係에서 한 國家를 差別하기 위한 典型的인 例입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가 유감스럽게도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을 差別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法令을 廢止하라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正當한 要求에 對해 對答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代身 貴下는 本人에게 聯邦政府 公報省의 公表된 資料를 전해주었으나 그 資料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法律에 對한 知識이 缺乏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誤解투성이었습니다.

이 資料는 西獨 立法과 司法이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의 領域에까지 擴大되고 있음을 確認하고 있고, 또한 越權의인 方法으로 이러한 法律上의 侵略을 『法の 平和와 法の 安保』라고 宣布하고자 試圖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現政府가 20年前부터 基民黨／基社黨에 의해 追求된 西獨 立法과 司法의 効力圈을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에게까지 擴大시키려는 復仇主義의인 政策에 執着하고자 意圖하고 있음을 뚜렷이 表現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動機를 가지고 主題를 다루는 것이 언제나 合理的이기 때문에 本人은—오늘은 5月 21日입니다—言及하지 않으면

안 될 한가지 事實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本人은 5月 27일부터 6月 6일에 이르기까지 聯邦共和國에서 實施되는 人口調査를 위한 質疑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本人이 아는 한 이 質疑書는 5月 20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會談하기 하루 前에 住民들에게 分配되었습니다.

本人은 특히 그 質疑書의 第19項과 第20項에 유의하면서 그것을 여기 引用하겠습니다.

『第19項：本面은 獨逸國籍을 가진 者만이 記入하시오：즉 1939年 9月 1日(戰爭勃發)以後의 住所가 西伯林,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 獨逸 東方地域,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슈테텐란트」 東南 歐洲와 기타 地域의 東方 이웃 나라들을 포함해서 西獨地域에 있는 者

第20項：貴下는 終戰後,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에서 넘어 왔는가?

그것을 記入하면 어떤 條件들이 記錄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蘇聯占領地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그와 같은 일이 더 以上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貴下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5月 19日 그 質疑書를 報告받았을 때, 「프란트」聯邦首相이 한편으로는 10月 그의 施政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를 두개의 獨逸國家라고 言及하고 또 한편으로는 上記 質疑書를 發行한다면 5月 21日 會談때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關係에 關係 무엇이냐고 말할 지 모르겠다고 自問했었다는 것을 貴下께 말해야겠습니다. 결코 어떤 個人的 行動이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問題로 삼는것은 낡은 政策의 持續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本人은 그것을 달리 表現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貴下의 發言에서 그에 關係 言及했을 때 本人의 發言表現이——本人은 貴下가 어떻게 表現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挑戰의이었거나 攻擊의이었다고 한다면 貴下는 原因과 結果를 混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原因은 물론 단순히 없어지지 않는 이곳 西獨의 事情에 있습니다.

다른 問題를 例로 든다면 一連의 法律問題인데 本人은 원래 貴下에게 잘 제본된 法律集을 傳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本人이 그것을 포기하려는 것은 貴側의 法律은 貴下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本人은 오늘 그것이 資料銀行에 保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개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最近의 法律을 例로 들자면 聯邦法律集 1970年 1月號 第2面 86b에 있는 1969年 12月 22日字 公布 貨物自動車交通法을 보겠습니다. 즉 越境의 道路貨物交通에 있어 外國 또는 1937年 12月 31日을 기준으로 한 外國人管理下의 獨逸帝國領域에서 交通이 許容되어 있는 貨物車의 경우 境界通過地點의 地方當局이 그 主務官廳이 된다.

聯邦共和國에 所屬하지 않으나 1937年 現在로 獨逸帝國領域에 住所地를 둔 自動車에 대한 管轄權은 國境通過地域의 地方當局에 있다. 獨逸國境을 1回以上 通過한 경우에는 첫 번 通過地點의 地方當局이 主務官廳이 된다. 國內에 本社를 갖지 않은 企業體車輛에 대해서는 國境稅關이 所在하는 州 交通官廳이 外國으로 부터의 첫 通行時에 ……를 決定한다. 等等……입니다.

그러하여 이 分野에는 그밖에 一連의 여러가지 法律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內國」 「獨逸航空機」라는 개념을 一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1969年 11月 6일에 制定된 移轉法, 1969年 11月 16日字의 航空交通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再三 言及되고 있는 內國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立法에 의하면 內國이란 1937年의 獨逸帝國의 領域을 뜻합니다.

그것은 물론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聯邦共和國의 內國은 여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包含하여 聯

邦共和國의 이웃 國家들과 境界를 하고 있는 聯邦共和國의 領域을 指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오늘 貴下의 政府 代表者가 새삼스럽게 分界線(Demarkationslinie)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言及했던 것입니다. 서로 獨立한 두 國家間의 國境이 問題되고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든다든가 그렇지 못한가의 與否는 전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事實上的 國境이 主要한 問題입니다. 그런데 貴側은 우리가 「에어폴트」와 「캇셀」에서 가진 對話에서 하나의 分界線을 만들고 그것을 命名했을 뿐 아니라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線이 지워진 「에어폴트」—「캇셀」』이라는 歷史的인 記念銅錢을 發行하고 있습니다.

本人이 「에어폴트」에서 라디오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비열한 보도를 들었다고 貴下에게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낡은 동전에는 아직도 一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그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全히 사라졌습니다.

本人은 그것이 霧圍氣改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貴下에게 그것을 留意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貴側이 무엇이라고 하건 語調에 있어서 攻擊的인 것은 우리 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基本的인 問題가 重視되고 있는데, 過去의 모든 累犯—우리는 이를 慎重히 記錄할 것이고 또 記錄해야 합니다—과 그와 유사한 行爲들은 부득이 不信을 惹起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 立法과 司法에 있어 一般的으로 認定된 엄격한 國際法的 原則에서 出發하고 있고 이것은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에도 해당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어떤 方法으로든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主權의 權利를 侵害할 정도로 越權하고 있지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한 國家의 統治權이 根本적으로 自己領土의 境界內에 限定한다는 原則을 決定的으로 固守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는 것은 同等資格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貴下는 貴下의 演說內容에 비추어 볼 때 分明히 反革命的인 「灰色的인 計劃」을 持續하고 —聯邦政府의 閣僚들의 公式의 宣言에서 確認하고 있듯이— 그 計劃을 擴大시키는 努力을 集中하고 있다는 本人의 見解에 對答하지 않고 있습니다.

貴下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專門家와 學者들이 資料에 精通하지 못하다고 批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資料에 精通해 왔고 不斷히 이를 위해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貴下의 主張은 無根據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入手可能한 새로운 資料를 상세히 分析함으로써 얻은 結論입니다.

復仇主義的인 結社와, 「후프카」(Hupka)氏와 같은 聯邦議會의 社會黨 所屬 議員까지도 여전히 歐洲 平和를 위협하는 그들의 目的을 公言하고 있습니다. 「베오나치즘」은 계속 擴大되고 있으며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을 決定的으로 拒否하고 最近 그것을 강조하는 基民黨/基社黨과 그 指導者의 周邊에 계속적으로 雲集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勢力들은 反「파시즘」의이며, 民主的인 길을 걷는 것을 公同히 拒否하고 있습니다. 反對로 그들은 「네오나치즘」을 寬容하고 그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캇셀」會談과 關係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번 言及한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政府에 의해 毒인되고 있는 「파시즘」的 殺人陰謀가 활기있게 움직였습니다.

本人은 그동안 貴下로부터 貴政府가 司法相과 檢察廳에 指示하여 몇가지 措置를 取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그것이 報道되지도 않았고 우리 自身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指摘해야겠습니다. 反對로 言論界에서는 방대한 經費를 들여 新聞, 특히 特定 新聞「콘

채론」을 통해서 殺人陰謀를 선동했고 또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歲出은 ——本人이 이미 한번 言及했지만—— 史上最高의 金額에 達하였습니다. 執權黨인 社民黨黨員의 領導下에 있는 聯邦軍은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前進戰略의 精神으로 教育받고 있습니다.

貴下는 오늘 午後, 貴下의 軍隊를 防衛目的으로 保有하고 있다고 闡明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公表된 「나토」文書, 決議文, 「콤무니케」 및 其他의 文書資料를 想起할 수 있으며, 그 어느 곳에도 소위 前進戰略이 포기되었다고 言及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最近 ——本人은 그것을 이곳에서도 言及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對한 美國의 공격이 軍事上 必然的인 것이었다고 한 貴政府 外相의 聲明을 留意해야 합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말과 行動이 엄청난 矛盾에 빠져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를 말했으면 行動이 반드시 뒤따라야 歐洲人民에게 寄與하는 것이 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聯邦政府에게 反復하여 그와 같은 行動을 促求하였습니다.

따라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가능한 限 곧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的 關係를 수립할 때 관한 條約을 締結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條約은 兩國家의 住民들에 對해서는 물론 歐洲安保를 위해서도 대단히 有益할 것입니다. 現國境의 承認과 歐洲의 領土의 現狀으로부터 出發하여 이 條約이 完全한 同等資格과 不干渉의 土臺 위에서 兩國家間의 關係規制할 수 있도록 基本前提를 마련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 이를 即刻 締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本人은 貴下가 오늘 午後에 條約內容에 對해 提起했던 質問에도 對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해 基本前提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합니다.

聯邦共和國 市民多數의 利害關係에 따라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拒否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締結에 관한 聯邦共和國 政府의 從來의 否定的인 立場은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基民黨/基社黨과 美國의 支配集團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하는 兩者擇一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即刻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이것을 그 條約草案 第8條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그리고 本人은 특히 이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思考에 根據합니다. 즉 「유엔」憲章에 明文化된 바와같이 「유엔」創始者들은 大戰은 끝났으나 「파시즘」의 獨逸에 의해 勃發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 戰爭에 對備하여 앞으로의 새 世代를 戰爭의 災殃으로부터 保護하려는 諸國民의 意志에 의해 繼承될 수 있습니다.

獨逸帝國主義의 侵略政策에 의해 兩次世界大戰이 일어 났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유엔」憲章과 「포츠담」協定이 이처럼 崇高한 目的에 符合되게 함으로써 獨逸 땅으로부터 결코 世界 平和를 威脅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特殊한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入이 歐洲協力, 國際的 協力 그리고 平和를 위해 오래동안 기다려온 必須的 措置라고 간주합니다.

「유엔」은 벌써 4半世紀동안 機能을 다해 왔습니다. 世界의 거의 大部分의 國家를 會員國으로 하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世界機構의 活動에 參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이미 1966년에 「유엔」加入申請을 한 바 있습니다. 聯邦政府도 即刻 會員加入申請을 해야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會員加入을 妨害하는 違法行爲를 中止하고 또한 「유엔」憲章의 精神에 따라 建設的인 協力을 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宣言해야 할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一面 聯邦共和國이 主權國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他面에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機構加入申請을 共同聲明에 包含시킬 것을 反對하면서 特히 그 理由로서 美國의 反對意思를 말하셨습니다. 이로써 聯邦共和國의 政策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의 利益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 一致하고 있다는 結論이 導出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아직까지 同盟國의 反對를 理由로 그렇게 간단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入申請에 同意한다고 闡明하지 않으면서도, 貴下는 지엽적인 질문에 答辯하는 데만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아직도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妨害하고 있는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이 逐出될 時期가 오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엔」會員國이 되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外交關係가 樹立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確信하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캇셀」에서 進行되는 協商에서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에 同意하고 그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準備를 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非現實主義的인 態度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利害關係는 물론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利害關係와 矛盾되는 것입니다. 그런 態度는 歐洲心臟部의 緊張緩和와 安保를 追求하는 모든 歐洲人民의 努力과도 對立되고 있습니다. 우리 大陸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수 10年間에 걸친 敵對的인 立場으로부터 現實을 承認하는 理性的인 政策으로 轉換되고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現狀을—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와 「오데르·나이세」境界를 포함해서—궁극적으로, 留保함이 없이 承認함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다시 한번 結論적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하는데 관한 條約을 即刻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그에 合當한 草案을 提出했으며 그 草案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關係規制를 위해 要求되는 모든 內容을 包含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엔」機構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즉각 加入하는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어플트」와 「캇셀」에서의 우리의 對話經過를 고찰해 보건데 유감스럽게도 聯邦政府는 아직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할 意圖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結論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關係 規制속에는 一連의 其他問題들의 規制가 증속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解決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自身の 態度에 關係 熟考할 수 있는 一定한 時間을 必要로 하고 있음은 分明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가 兩國間의 平和共存을 達成하기 위한 最善의 길을 提供해 준다는 것을 貴政府가 認識하기를 希望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이러한 基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의 態度를 보일 때에는 언제든지 곧 政府首腦들의 對話를 持續할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即刻 「유엔」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加入해야 하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 人民과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에게 利益이 됨은 물론 모든 國家의 普遍的, 平和的 協力を 追求하는 世界機構의 利益에 寄與하기도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유엔」憲章의 崇高한 目的을 尊重하고 世界人民 相互間의 理解에 公헌할 것임을 다시 闡明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의 20年間에 걸친 一貫性있는 平和政策을 계속 推進하면서 將次 人間을 위해 歐洲의 平和와 安全에 寄與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出處 : 1970年 5月 23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18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合意에 關한 聯邦政府 公報局의 報告

1970年 10月 29日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歐洲心臟部에서의 緊張緩和를 規制하는데 寄與하며, 兩國家의 共同關心事로 되는 問題에 대해 公式的 經路를 통한 意見交換을 가질 것을 合意하였다.

〈出處 : 1970年 10月 31日字의 公報 150號〉

文 書 19

國務次官 「궤」博士와 國務次官 「바르」間의 意見交換에 關한 「콤뮈니케」

1970年 11月 27日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國務次官 「미카엘·궤」博士와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國務次官 「에곤·바르」는 1970年 11月 27日 公式的 意見交換을 위해 會談하였다. 同 會談은 獨逸民主共和國 閣僚會議 廳舍에서 開催되었다. 雙方은 意見交換을 계속한다는데 서로 合意되었다.

〈出處 : 1970年 11月 28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20

4大國協定과 附屬文書

1971年 9月 3日

1) 4大國協定

(번역)

佛蘭西共和國,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 大英聯邦王國 그리고 「아메리카」合衆國의 政府는 伯林的 美國管理地域에 있는 舊聯合國管理理事會의 建物에서 各側의 大使를 代表로 하여 一連의 會議을 開催하고,

今後에도 存續될 4大國의 權利와 責任 및 그에 相應하는 戰時 및 戰後의 4大國의 協定과 決定에 依據하여,

關聯地域의 現狀을 考慮하고, 現狀의 實際的인 改善을 위해 貢獻하려는 念願에 따라, 4大國의 法的 地位를 損傷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I 部 一般條項

1. 4大國 政府는 關聯地域의 緊張을 一掃하고 紛爭을 防止하기 위해 努力한다.
2. 4大國 政府는 「유엔」憲章에 따라서 4大強國의 義務를 고려하여 關聯地域에서 武力行使 및 그 威脅을 止揚해서 紛爭을 平和의 手段으로 解決할 것에 合意한다.
3. 4個政府는 變함없이 持續될 그들의 個別的이며 共同的 權利와 義務를 相互 尊重한다.
4. 4個政府는 法的 見解의 相違에도 不拘하고, 이 地域에서 發展된 現狀 및 本協定과 本協定이 引用하고 있는 他協定에 規定된 現狀을 一方的으로 變更하지 않을 것에 合意한다.

第 II 部 西伯林地域에 관한 規定

- A.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領土를 經由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을 往來하는 民間人 및 物資의 道路, 鐵道 및 水路에 依한 交通이 障礙를 받지 아니하며, 이같은 通行은 가장 簡便하고도 迅速한 形態로 行해지도록 便宜 및 緩和措置를 取할 것을 宣言한다.

上記 民間人交通에 관한 細目은 附屬文書 I에서 言及되어 있듯이 兩獨當局에 의하여 合意된다.

- B. 佛蘭西共和國, 大英聯邦王國과 「아메리카」合衆國 政府는 西伯林 地域이 계속 獨逸聯邦共和國의 構成部分이 아니며 同國에 의해 統治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考慮하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紐帶關係가 維持, 發展될 것임을 宣言한다.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에 관한 具體的 規制는 附屬文書 II에서 記述된다.

- C.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政府는 西伯林과 이 地域에 隣接한 地域 그리고 이 地域에 隣接하지 않은 獨逸民主共和國地域間的 接觸이 改善될 것임을 宣言한다.

西伯林地域의 居住者는 이 地域을 旅行하는 사람들에게 適用되는 것과 同一한 條件下에 人道的, 家事的, 宗教的, 文化的, 商業的 目的으로 혹은 觀光目的으로 이 地域을 旅行하고 訪問할 수 있다. 「슈타인슈튀켄」(Steinstücken)을 包含한 小包領(Enklaven), 기타 小地域의 문제는 領土交換으로 解決될 수 있다.

旅行, 通信 및 領土交換에 관한 具體的 規制는 附屬文書 III에 記述된 대로 該當 兩獨逸官廳間에 合意한다.

D. 西伯林地域의 利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問題,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의 駐西伯林 領事館 活動問題는 附屬文書 IV에 記述된대로 施行된다.

第III部 最終規定

本 4大國協定은 今後 締結될 4大強國 最終議定書에 定해진 日時, 즉 本 4大國協定の 第II部 및 附屬文書에 記述된 措置가 合意될 때 發效한다.

1971年 9月 3日 伯林的 美國占領地域에 있는 前 聯合國管理理事會 建物에서 英語, 佛語, 露語로 作成된 各 4個의 原文에 調印되었으며, 各 原文은 多같이 同等한 拘束力을 지닌다.

「아메리카」合衆國 政府를 代表하여

「케니스·러쉬」(Kenneth Rush)

佛蘭西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장·소바나르끄」(Jean Sauvagnargues)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표트르·압라시모프」(Pjotr Abrassimow)

大英聯邦王國 政府를 代表하여

「R. W. 잭크링」(R. W. Jackling)

2) 附屬文書 I

「佛·英·美 政府에게 보낸 蘇聯政府의 通知文」

소련政府는 今日 締結된 4大國協定 第II部 A項과 關聯하여, 獨逸民主共和國政府와의 協議 및 合意에 基礎해서 佛蘭西·英國 및 美國政府에게 다음과 같은 事項을 通知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1. 獨逸民主共和國 領土를 通過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을 往來하는 民間人과 物品의 道路, 鐵道 그리고 水路의 交通은 緩和되고 妨害받지 않을 것이다.

上記 通行交通은 國際的 慣例에 準해서 가장 簡略하고 迅速하며 또한 가장 有利한 方法으로 處理될 것이다.

2. 이에 따라서

a)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道路, 鐵道 그리고 水路를 通해서 輸送되는 一般 物品은 出發前에 封印裝置를 해서 發送할 수 있다.

檢問節次는 封印裝置와 送荷狀을 調査하는 것으로 끝낸다.

b) 예컨대 無蓋貨車의 경우처럼 封印이 不可能한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送荷狀만을 調査하게 된다.

通行過程에 풀어 놓을 目的으로 物品을 실었거나 또는 通行過程에서 사람 또는 物品을 실었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特別한 境遇에 限해서 封印裝置가 되어 있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容物을 調査할 수 있다. 이와같은 境遇의 處理節次에 關해서 兩獨政府의 當局은 相互 合意한다.

- c)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을 旅行하는 사람들은 直行 汽車와 「버스」를 利用할 수 있다. 檢問節次는 身分證 調査에 限한다.
- d) 通過旅行者임이 確認된 사람은 個人交通手段을 利用하여 指定된 通行經路를 따라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 사이를 往來할 수 있으며 通行經路 利用에 대한 公課金 또는 手數料를 支拂할 必要없이 目的地에 到着할 수 있다. 이와같은 通過旅行者들에게 適用시킬 節次는 遲滯없이 마련될 것이다.

旅行者들과 그들의 交通手段 및 個人所持品은 搜索, 拘留의 對象이 되지 않으며 通行經路의 使用이 保障된다.

그러나 다만 特殊한 例外的 境遇, 예컨대 西伯林地域을 往來하는 것과 直接的으로 無關하고 또 公共秩序의 一般的 法規를 違反하는 不純한 目的에서 通行經路를 惡用한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根據가 있을 境遇에는 雙方의 關係當局의 合意에 따라 이를 規制할 수 있다.

- e)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을 連結하는 通行經路의 使用에 따른 公課金, 手數料 및 기타 費用과 通行經路의 維持, 工事 및 施設利用 등에 따른 應당한 補償金을 年間 總決算 形態로 獨逸民主共和國에 支拂할 수 있다.

上記 1項 및 2項의 規定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規制事項은 兩獨의 關係當局間에 合意한다.

3) 附屬文書 II

「소련政府에게 보낸 美·英·佛 政府의 通知文」

美·英·佛 政府는 今日 締結된 4大國 協定 第II部 B項과 關連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의 協議 및 合意에 基礎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소련政府에게 通知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 1. 美·英·佛 政府는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結束關係를 維持·發展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權利와 義務를 遂行할 것이다.

이 境遇에 美·英·佛 政府는 西伯林地域이 如前히 獨逸聯邦共和國의(領土的) 一部가 아니며 同時에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를 받지 않는다는 事實에 留意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 및 西伯林地域에 適用되는 憲法의 條項中에서 本項과 背馳되는 規定은 留保되며 앞으로 그 效力을 發生하지 못한다.

- 2. 獨逸聯邦共和國의 大統領, 聯邦政府, 聯邦議會, 聯邦上院, 聯邦下院, 聯邦議會의 各委員會 및 各黨派 그리고 其他 聯邦政府機構들은 西伯林地域에서 前項 1에 違反되는 憲法的, 行政的 措置를 取하지 못한다.
- 3.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西伯林地域에 있는 美·英·佛 政府와 西伯林當局(Senat)에 대하여 그 곳에 常駐連絡事務所를 두어 代表한다.

4) 附屬文書Ⅲ

「美·英·佛 政府에 보낸 소련政府의 通知文」

소련政府는 今日 締結된 4大國協定 第Ⅱ部 C項과 관련하여 獨逸民主共和國政府와의 協議 및 合意에 基礎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美·英·佛 政府에 通知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1. 西伯林地域과 이 地域에 接하고 있는 地域 및 이 地域에 接하지 않는 獨逸民主共和國 地域間의 交流가 改善될 것이다.
2. 西伯林地域內에 現住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人道的, 家族的, 宗教的, 文化的, 商業的 또는 觀光旅行의 目的을 띠고 上記 地域을 旅行하거나 訪問할 수 있으며 同 地域을 旅行하는 다른 사람들과 同一한 條件을 保障받는다.
西伯林地域에 現住所를 둔 사람들의 이러한 訪問 및 旅行을 緩和하기 위하여 通過地點을 追加로 開設한다.
3. 小包領(Enklaven)과 岩石地帶 그리고 다른 小地域問題는 領土交換을 통해서 解決한다.
4. 西伯林地域과 外部와의 電話, 電信, 交通 및 기타 連絡手段이 擴張될 것이다.
5. 前項 1에서 4까지의 規定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規制內容은 兩獨政府의 관계當局間에 合意한다.

5) 附屬文書Ⅳ

A. 「소련政府에 보낸 美·英·佛 政府의 通知文」

美·英·佛 政府는 今日 締結된 4大國協定 第Ⅱ部 D項과 관련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의 協議 및 合意에 基礎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소련政府에 通知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1. 美·英·佛 政府는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權利와 義務을 保有하며 同時에 國際機構 및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西伯林地域의 安全과 地位問題에 대한 그의 權利와 義務을 保有한다.
2. 美·英·佛 政府는 前項의 內容이 保障되고 同時에 安全保障과 地位問題가 侵害받지 않는다는 前提條件下에 다음과 같이 合意하고 闡明한다.
 - a)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地域內의 居民들에 대하여 領事保護業務을 遂行할 수 있다.
 - b) 獨逸聯邦共和國이 締結하는 모든 國際法的 協約과 協定은 明文化된 節次規定에 따라서 西伯林地域까지 擴大하여 適用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에 그와같은 協約과 協定の 擴大適用에 관해서 具體的인 內容을 일일이 明示해야 한다.
 - c) 獨逸聯邦共和國은 國際機構 및 國際會議에서 西伯林地域의 利益을 代表할 수 있다.
 - d) 西伯林地域內에 居住하는 사람들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들과 함께 國際的 交流와 國際的 展示會에 參加할 수 있다. 國際機構의 集會, 國際會議 그리고 各種 國際展示會 等を 西伯林地域에서 開催할 수 있다. 行事的 主權은 西伯林當局이나 또는 西伯林當局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共同으로 할 수 있다.
3. 美·英·佛 政府는 소련政府의 駐西伯林 總領事館設置를 許可하며, 同 總領事館은 今日 締結

된 協定文書上의 諸規定 範圍內에서 美·英·佛 政府의 各 總領事館에 適用되는 同一한 節次 規定에 따라 領事保護業務를 遂行할 目的으로 領事權을 行使할 수 있다.

B. 「美·英·佛 政府에 보낸 소련政府의 通知文」

소련政府는 今日 締結된 4大國協定 第Ⅱ部 D項과 관련하여, 그리고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 居民의 利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문제에 대한 美·英·佛 政府의 通知文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美·英·佛 政府에 通知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1. 소련政府는 美·英·佛 政府가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內 居民들의 利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同時에 국제기구 및 他國과의 관계에서 西伯林地域의 安全과 地位問題에 대한 그의 權利와 義務를 保有한다는 事實에 留意한다.
2. 美·英·佛 政府는 西伯林的 安全과 地位問題가 侵害當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다음과 같은 事項에 異議가 없다고 하였다.
 - a)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地域의 居民들에 대한 領事保護業務를 遂行한다.
 - b) 獨逸聯邦共和國이 締結하는 모든 國際法的 協約과 協定은 그 擴大適用을 위한 具體的 內容을 明示하는 條件에서 別途의 明文化된 節次規定에 따라 西伯林地域까지 擴大適用할 수 있다.
 - c) 獨逸聯邦共和國은 國際機構 및 國際會議에서 西伯林地域의 利益을 代表한다.
 - d) 西伯林地域內의 居民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들과 함께 國際的 交流와 國際的 展示會에 參加할 수 있으며, 國際機構의 集會, 國際會議 그리고 여러나라가 參加하는 展示會 등을 西伯林地域에서 開催할 수 있다. 同行事의 主權은 西伯林當局이나 또는 西伯林當局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共同으로 할 수 있다.
3. 소련政府는 美·英·佛 政府가 西伯林地域에 駐在할 소련總領事館의 設置에 同意했음을 留意한다. 同 總領事館은 上記 3個 政府의 通知文 및 今日 締結된 協定文書에 明示된 諸規定과 目的에 맞게 美·英·佛 政府의 總領事館을 相對로 領事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翻 譯)

1971年 9月 3日

美·英·佛政府 大使는 今日 締結하는 4大國協定 附屬文書 Ⅱ에 規定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계에 대한 說明과 관련하여 소련政府 大使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들의 意思를 通告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즉, 우리들은 4大國協定이 署名되는 즉시 同 4大國協定 附屬文書 Ⅱ에서 밝힌 美·英·佛 政府의 立場을 거듭 確認하는 說明과 解釋이 담긴 書翰을 獨逸聯邦共和國政府 首相에게 보낼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首相에게 보낼 書翰의 寫本을 여기에 添付합니다.

美·英·佛 大使는 이 機會에 다시 한번 소련大使에게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장·소바냐르끄」

「R. W. 잭크링」

「케니스·렛쉬」

(翻 譯)

1971年 9月 3日

소련政府 大使는 美·英·佛政府 大使의 1971年 9月 3日字 覺書의 接受를 確認하며 同 通告內容에 留意합니다.

소련 大使는 이 機會에 다시 한번 美·英·佛 大使들에게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아브라씨모프」

〈出處：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 公報 174號, 附錄〉

文 書 21

美·英·佛 政府大使와 獨逸聯邦首相과의 書翰交換

(1971年 9月 3日)

1) 聯邦政府 首相에게 보낸 美·英·佛 政府大使의 書翰

(翻譯文)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 閣下

「본」

1971年 9月 3日

閣下

우리는 이 書翰과 함께 今日 伯林에서 締結된 4大國協定의 原文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게 보내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4大國協定은 伯林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締結된 것입니다.

우리는 4大國協定과 今後 同 協定의 發効日字 및 內容에 合意할 最終議定書에 따라서 우리들의 權利와 義務가 侵害當하지 않고 또 變更되지 않을 것임을 確信합니다.

우리들의 政府는 앞으로도 伯林 全體에 該當하는 4大國義務의 限度內에서 西伯林地域에 대하여 最高權限을 行使할 것입니다.

4大國協定 第Ⅱ部 A項에 따라 兩獨政府의 관계當局은 民間人 交通問題의 執行, 補完을 規定하는 關係協定에 合意할 것입니다. 4大國協定 第Ⅲ部의 規定에 의하면 同 協定은 兩獨政府當局間에 上記 交通協定이 締結된 즉시 署名될 4大國의 最終議定書에 明示된 日字에 發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이와같은 協商이 西伯林地域 當局을 包含한 獨逸聯邦共和國 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當局間에 곧 始作되기를 바랍니다.

4大國協定의 第Ⅱ部 B項, D項 및 附屬文書 Ⅱ, Ⅳ는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主要한 文書를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西方3個國 軍司令官이 議會 委員會에 보낸 1949年 3月 2日, 4月 22日 및 5月 12日字 通告文.

—3個國 高等辦務官이 伯林에 대한 聯合國들의 特殊權利 行使와 관련, 聯邦政府 首相에게 보낸

1954年 10月 23日字 書翰 10號 및 同一한 內容의 1952年 5月 26日字 書翰.

—1966年 1月 20日字 「니이키쉬」(Niekish) 事件에 대한 獨逸憲法裁判所 判決과 相關한 3個國政府의 1967年 4月 18日字 備忘錄.

우리 政府들은 이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과 3個聯合國間의 1954年 10月 23日字 條約文 및 同一한 1952年 5月 26日字 條約 第2條에 規定된 伯林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遂行함에 있어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地域間의 關係를 規定한 4大國協定 第Ⅱ部 B項, D項 및 附屬文書 Ⅱ, Ⅳ가 앞에 指摘된 文書에서 밝힌 有効한 立場과 完全히 一致한다는 것을 確認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地域間의 既存 關係에 대한 우리 政府들의 確固한 立場은 4大國協定 第Ⅱ部 B項 1에 規定된 同 結束關係가 伯林에 대한 聯合國들의 特殊한 權利行使와 相關하여 3個國 高等辦務官이 聯邦首相에게 보낸 1952年 5月 26日字 書翰 및 同一內容의 1954年 10月 23日 書翰과 符合되며 아울러 伯林的 聯合軍司令官의 決定과 符合되도록 保障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閣下에게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佛蘭西政府 代表 「장·소바냐르끄」

英國 代表 「R.W. 잭크링」

美國 代表 「케니스·럿쉬」

2) 美·英·佛 政府大使에게 보낸 獨逸聯邦政府 首相의 回答書翰

1971年 9月 3日, 「본」

閣下

本人은 1971年 9月 3日에 伯林에서 署名된 4大國協定의 原文을 同封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傳達한 美·英·佛 大使의 1971年 9月 3日字 書翰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아울러 本人은 貴 政府가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地域間의 關係에 대하여 4大國協定 附屬文書 Ⅱ項에서 取하고 있는 立場을 거듭 闡明하고 解說한 內容의 同日字 書翰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4大國協定 第Ⅱ部 A項에 規定된 民間人交通에 關한 具體的 協定을 체결하기 위하여 곧 協商을 始作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伯林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遂行하기 위한 閣下의 書翰內容에 留意하는 바이며 同 權利와 義務는 獨逸聯邦共和國과 3個聯合國間의 關係를 規定한 1952年 5月 26日字 및 同一內容의 1954年 10月 23日字 條約 第2條에 따라서 保障되고 더 나아가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의해서도 遵守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結束關係가 保障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閣下의 見解와 決意에 대해서 立場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本人의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브란트」

佛蘭西 大使 「장·소바냐르끄」 閣下

「본」, 「바드·골데스벨크」 53, 「카펠렌」街 1a

英國 大使 「R.W. 잭크링」정 閣下

「본」, 53 「프리드리히 에펠트」街 77

英國 大使 「케니스·릿쉬」閣下

「본」, 53 「바드·골데스벨크 베르메」街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獨逸政府公報 附錄 174號〉

文 書 22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間의 協商에 관한 議定書

1971年 9月 30日

1. 1971年 9月 30日부터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가 協商을 進行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 代表團은 同 局長 「에크너」(Eckner)博士에 의해 인솔되었다.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團은 同 局長 「렘케」(Lemke)博士에 의해 인솔되었다.
協商結果 다음과 같은 合意가 이루어졌다.
2.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이 1966年 12月 31日까지 遂行한 超過業務에 대한 補償을 獨逸聯邦共和國은 一時拂 總額清算으로 履行한다. 補償한 上記期間의 總額은 2億 5千萬「마르크」에 達한다.
이 金額은 1971年 12月 5日까지 獨逸聯邦銀行口座 4003/UK3에 있는 獨逸民主共和國 國家銀行 計定을 통해서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앞으로 送金된다.
2. 1.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는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우리는 上記 總額清算속에 獨逸郵便局의 對西伯林市當局 債權도 함께 清算될 것을 要求한다.
3.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는 獨逸民主共和國이 郵便과 電信交流를 改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措置를 取할 것을 通告한다.
3. 1. 1971年 12月 31日까지 長距離電話를 위해 全方向으로 30回線을 더 架設하고 半自動式 運營方式을 導入한다.
3. 2. 1972年 3月 31日까지 長距離電話 16回線이 增設된다.
3. 3. 電信交流는 1971年 12月 31日까지 自動化된다. 이를 위해 全方向으로 45回線을 增設한다.
3. 4. 1972年 6月 30日까지 「텔렉스」交流의 回線數는 全方向으로 12線이 增設된다.
3. 5. 周波數 利用은 相互 協議해서 해결한다.
3. 6. 完全自動式 長距離電話交流는 1974年 12月 31日까지 단계적으로 開通된다. 이를 위해 必

要한 回線이 開設된다.

3. 7. 新規 電信施設을 設置運營한다. (長距離電話를 위한 指向性放送交流은 1973年 12月 31日까지, 搬送주파수「케이블」은 1976年 12月 31日까지)
3. 8. 無線 中繼放送의 質을 改善하고 回路를 變更한다.
3. 9. 書翰, 手荷物 및 小包의 配達時間을 단축한다.
3. 10.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의 代表團長은 2. 1項과 3項에서 表明된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團長의 聲明을 認知하고 同意한다.
4.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指向性 「칼러텔레비전」放送區間 設置에 관한 合意書가 調印되었다.
5.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는 아래와 같이 聲明한다.
郵便을 통해 贈物을 發送하는데 다른 發送規定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內法的 規制의 對象이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肯定的인 規制를 目的으로 계속 協議한다.
6.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는 獨逸民主共和國이 西伯林地域의 郵便과 電信交流을 改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措置를 取할 것을 通告한다.
 6. 1. 1971年 12月 15日까지 長距離電話를 위해 60回線이 全方向으로 增設되고 이로써 總 150回線이 運營된다. 獨逸民主共和國의 獨逸郵便局은 部分的으로 完全自動式 運營方式으로 改善한다.
 6. 2. 電信交流은 1971年 12月 31日까지 自動化된다. 이를 위하여 全方向으로 12回線까지 增設된다.
 6. 3. 1971年 12月 31日까지 「텔레क्स」交流을 위해 全方向으로 6回線이 추가로 運營된다.
 6. 4. 周波數의 利用은 協議·調整한다.
 6. 5. 長距離電話交流은 完全自動化된다. 이를 위해 必要한 回線과 「케이블」連結工事は 1974年 12月 31日까지 施工된다.
7.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의 代表團長은 6項에서 언급된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 代表團長의 通告를 認知하고 承認한다.
8. 雙方代表團의 團長은 이 措置가 上記期間까지 履行된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技術的 措置에 必要한 對話는 技術的인 次元에서 兩側의 代表가 議定書에 調印한 後 1週以內에 갖는다.
9.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 相互 遂行한 業務에 대한 支拂 및 清算에 關해 1970年 4月 29日 「본」에서 이루어진 總額合意는 우선적으로 1976年까지 적용된다.

1971年 9月 30日, 伯林

獨逸聯邦共和國遞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博士

獨逸民主共和國遞信省을
代表하여
「렘케」博士

〈出處：1971年 10月 2日字 公報 142號〉

文 書 23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指向性 「컬러」放送間 設置 및 運營에 관한 協定

1971年 9月 30日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은 다음과 같은 協定에 合意하였다.

第 1 條

- (1) 「갈토프」(獨逸聯邦共和國) 放送局과 「테크베테」(獨逸民主共和國) 放送局 사이에 指向性 無線放送區間을 設置하여 1972年 6月 1日부터 運營한다.
- (2) 放送設備는 FM 960/7500指向性 「시스템」으로 한다. (施工者는 「시멘스」社)
- (3) 指向性 放送通信을 實施하기 위한 細部事項(周波數, 豫備「스위칭 시스템」, 業務用回線 等)은 指向性 區間的 計劃 및 實施를 委任받은 雙方的 機關間에 合意한다.

第 2 條

- (1) 「갈토프」—「테크베테」區間에 實施될 放送容量은 다음과 같다.
 - a) 映像 및 音響中繼施設 및 100%의 豫備施設을 갖춘 두개의 「텔레비전」 通信網
 - b) 雙方的 中繼所間 및 常勤者가 駐在하는 雙方的 最短거리의 「텔레비전」 中繼所間的 한개의 業務用 回線
- (2) 中繼「채널」用 自動 豫備「스위칭」(Ersatzschaltung)은 獨逸聯邦채신국 領域內에서는 中間 周波帶로 하고 獨逸채신국 領域內에서는 基本周波帶(Basisband)로 한다.

第 3 條

- (1) 中繼放送 「채널」의 中繼「파라미터」는 雙方的 委任機關을 통해서 合意한다.
- (2) 映像 및 音響通信의 運營 및 測定은 雙方的 委任機關에 의해서 今後 合意되는 協力原則에 따라 「유로비전」(Eurovision) 및 「인터비전」(Intervision)의 規定을 參考해서 實施한다.

※ Eurovision~西歐內 放送交流協力圈

Intervision~東歐內 放送交流協力圈

第 4 條

- (1) 本 指向性 區間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프로그램」交流뿐 아니라 「유로비전」과 「인터비전」間에 合意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放送機關間的 「프로그램」交流를 위해서도 利用된다.
- (2) 「인터비전」放送網을 위한 指向性 放送구간의 延長「스위칭」은 獨逸民主共和國內的 「테크베테」—柏林間 放送帶를 經由해서 實施한다.
(獨逸聯邦共和國) 「갈토프」 中繼所를 經由하는 指向性 구간의 延長「스위칭」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또는 「함블크」의 「유로비전」永續放送網을 連結해서 實施한다.

第 5 條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은 다음의 機關에 委任한다.

獨逸聯邦共和國側 : 「푸랑크푸르트 암 마인」所在, 獨逸聯邦체신국의 中央「테레비전」 및 「라디오」中
繼所

獨逸民主共和國側 : 伯林 所在, 獨逸체신국 中央放送局

第 6 條

- (1) 本 協定은 無期限으로 締結하며 署名後 發効한다. 本 協定은 2部를 作成한다.
- (2) 本 協定의 修正, 補完은 雙方의 合意와 文書化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文書化된 것은 本 協定의 附屬文書로 添付된다.

第 7 條

- (1) 本 協定의 滿期는 雙方間의 合意에 依한 公表 또는 相互 通告로써 이루어 진다.
- (2) 本 協定은 어느 一方이 他方에게 文書로 通告한지 6個月 後부터 効力を 喪失한다.

1971年 9月 30, 伯林

獨逸聯邦共和國政府 遞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 박사
獨逸民主共和國政府 遞信省을 代表하여 「렘케」 박사

〈出處 : 1971年 10月 2日字 公報 第142號〉

文 書 24

「本」駐在 西方 3大國 大使에게 보낸 聯邦政府首相의 書翰

1971年 12月 14日

閣下

本人은 1971年 9月 3日字로 本人에게 보낸 美國·英國·佛蘭西政府 大使의 書翰과 관련하여 閣下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즉 우리 聯邦政府로 부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의 協商代表로 任命된 聯邦首相廳의 「에곤·바르」次官은 1971年 12月 11日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品交通에 關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定에 署名하였읍니다. 本 協定의 原文 및 附屬文書를 여기에 同封하는 바입니다.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브란트」首相

佛蘭西政府 大使 「장·소바냐르끄」

「本」 53 「바드 고펜스벨크, 카페르」街 1a

英國政府 大使 「R.W 재크링」경

「本」 53 「프리드리히 에벨트」街 77

美國政府 大使 「케니스·렛쉬」

「本」 53 「바드 고펜스벨크 메레머 아우에」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公報 174號 附錄〉

文書 25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交通往來에 따른 民間人物資의 送荷狀 作成·處理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首相廳 「울리히·사암」局長과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카알·사이델」局長間의 書翰交換과 書式, 附屬文書 및 備忘錄

1971年 12月 15日

1) 「울리히·사암」博士의 書翰

聯邦首相廳 局長 「울리히·사암」博士

伯林, 1971年 12月 15日

「카알·사이델」局長 귀하

伯林

本人은 委任에 의하여 귀하에게 우리들의 協商結果와 相關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諒解事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物資交通協定이 1972年 3月 1日字로 發効함에 따라 여기에 使用될 送荷狀은 同封한 書式으로 定한다.

送荷狀의 作成·處理는 附屬文書에 規定된 節次에 따른다.

2. 修正은 雙方의 合意를 必要로 한다.

敬意를 表하면서

「울리히·사암」 박사

添附, 書式 및 附屬文書

2) 「카알·사이델」局長의 書翰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카알·사이델」局長

伯林, 1971年 12月 15日

「울리히·사암」局長 귀하

伯林

本人은 委任에 의하여 귀하에게 우리들의 協商結果와 相關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諒解事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物資 交通協定이 1972年 3月 1日字로 發効함에 따라 여기에 使用될 送荷狀은 同封한 書式으로 定한다.

送荷狀의 作成·處理는 附屬文書에 規定된 節次에 따른다.

2. 修正은 雙方의 合意를 必要로 한다.

敬意를 表하면서

「카알·사이델」

添附, 書式 및 附屬文書

3) 書 式

送 狀

전 면

서백림-서독간의 민간인 물품
통과용

도착지 검열기관용

1 매

I. 신고						
일련번호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번호, 수, 종류	상업관례상 물품의 특징	총중량 (kg)	가 격 (DM)	물품번호	품류번호
1	2	3	4	5	6	
7. 발송인 이름 : 주소 .			8. 수취인 이름 : 주소			
9. 신고인은 상기 1-8항에 기술한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신고인은 교통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일시, 서명(기관은 기관인장)			10. 수송인은 교통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일시, 서명(기관은 기관인장)			
11. 수송수단						
II. 봉인 번호 봉인자		III. 검사인 : 출발지 세관		경유지 세관		
		경유지 세관				

4) 附屬文書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物資 通行에 따른 送荷狀의 作成·處理 節次

I

1. 物資의 通行交通에는 每發送時마다 別表 書式의 送荷狀을 提示한다.
2. 送荷狀은 申告者에 의해서 作成한다. 申告는 發送人이 하거나 一般的인 民法上의 規定에 따라 發送人으로 부터 委任 또는 委託받은 輸送人이 한다.
發送人은 本人 自身이 直接 發送하거나 第3者를 通해서 發送하는 自然人 또 法人을 말한다.
3. 送荷狀은 비록 輸送手段이 物品을 積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封印되어 있을 경우에는 提出해야 한다. 이때 送荷狀의 輸送手段欄에 『積載物 없음』이라고 記載한다.
4. 發送地의 稅關은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서 一般的으로 實施되는 規定의 範圍와 方式에 따라 發送人과 物品輸送人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諸義務을 履行하는지 與否를 檢査한다.

II

1. 다음의 경우에는 送荷狀 提示가 不必要하다.
 - a) 휴대용 旅行用具, 旅行消耗品 및 휴대하는 購物: 여기에는 에컨대 附屬品을 包含해서 다음과 같은 品目이 해당된다.
 - 「캠핑」用具, 自転車, 「아웃」, 「스키」等 運動器具
 - 「라디오」 및 휴대용 「텔레비전셋트」
 - 사진기, 영사기 및 「필름」, 녹음테이프, 자료테이프, 印譜
 - 各種 樂器類
 - 一般的 個人的 職業上 휴대品으로서 無料 見本, 模型品, 宣傳印刷物, 기타 宣傳物, 그리고 又 에컨대 組立, 施工, 整備, 修理 等 作業에 必要한 機器들을 휴대할 수 있다.
 - b) 其他 移徙집, 遺産 等 商品이 아닌 휴대용 物品
 - c) 通過地域을 自身이 運轉해서 타고가는 許可받은 陸路 交通手段
 - d) 消費用으로 交通手段에 싣고 가는 食品 및 기호품
 - e) 旅行期間中에 同伴하는 動物에게 먹일 휴대용 飼料
 - f) 設計圖, 技術圖表, 計劃書, 說明書 等の 事業計劃
 - g) 便郵物
 - h) 商品이 아닌 急行貨物, 個人用品(移徙집, 遺産 等 包含)
 - i) 死亡者의 棺, 死亡者 遺骸 等으로서 檢屍證 또는 이에 準하는 證明書類가 添付된 것. 그리고 墳墓裝飾用 花環 等
2. 上記 I 項 a) 및 b)에서 말한 物品의 휴대는 貨物輸送用으로 規定된 交通手段에 積載되지 않은 境遇에 許可된다.
3. 物品送荷狀의 提出義務가 免除되었다고 해도 物品휴대와 物品 및 동물의 輸送에 따르는 諸般 規定은 준수되어야 한다.

5) 備 忘 錄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 獨逸聯邦共和國에서 封印되고 送荷狀이 添附될 경우, 獨逸聯邦共和國의 物品을 第3國의 輸送手段으로 運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 獨逸聯邦共和國에서 封印되고 送荷狀이 添附될 경우, 第3國의 物品을 獨逸聯邦共和國의 輸送手段으로 運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 送荷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의 許可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出處: 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官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6

聯邦政府首相에게 보낸 3大國政府 大使의 回答書翰

1971年 12月 16日

(번역문)

獨逸聯邦共和國 首相 閣下

「본」

우리는 1971年 12月 14日字 閣下の 書翰과 同 書翰에 同封한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品通行에 관한 兩獨政府協定原文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立場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 政府는 同 協定の 諸規定이 同 協定の 解釋과 適用의 基準을 明示한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과 一致한다고 생각합니다.

同 協定이 締結된 다음에 伯林駐在聯合國 當局은 西伯林地域에서 同 協定을 施行함에 있어 西伯林 當局이 管掌해야 할 任務遂行을 委任하고 要求할 것입니다.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佛蘭西政府 代表 「장·소바냐르프」

英國政府 代表 「R.W. 잭크링」

美國政府 代表 「케니스·럿쉬」

〈出處: 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官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7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的 協定, 附屬文書 및 議定書 附錄

1971年 12月 17日

1) 協 定 文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歐洲의 緊張緩和에 이바지할 目的으로 佛蘭西, 蘇

聯, 英國, 美國政府間에 締結된 1971年 9月 3日字의 協定規定에 따라 本 協定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第1條 이 協定의 適用對象은 道路, 鐵道, 水路를 통한—獨逸民主共和國의 統治地域을 通過하여—伯林의 西方地域(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이다. 以下 通行交通이라 略稱한다.

第2條

1. 通行交通은 緩和되며 妨害받지 않는다. 이것은 國際慣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簡便하고 迅速하며 便利한 方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이 協定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한, 通行交通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를 適用한다.

第3條 通行交通은 指定된 國境通過地點과 通行區域을 利用한다.

第4條 通過旅行者를 위한 「비자」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通過地域에서 發給된다.

이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急行「버스」, 急行列車 등의 交通手段을 利用하는 通行에 대해서는 最大限의 迅速을 保障한다. 「버스」業者나 혹은 그들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가 必要한 團體旅行者 名簿를 提出하는 경우에는 急行「버스」를 利用하는 通過旅行者에게 團體用「비자」가 發給될 수 있다.

第5條

1. 物資 通行交通의 경우에는 이에 必要한 公式의인 運送書類와 一定한 物品에 限해서 規定된 公式 證明書, 許可書를 提出해야 한다.
2. 이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物品, 通行手段과 그 物品自體에 대한 檢査를 實施한다.
3. 運送手段 또는 貨物이 지닌 特殊한 性格으로 因해 通行地域內에서 公式의인 保護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에 依據하여 運送業體의 經費負擔下에 物品運送을 護送할 수 있다.
4. 物品運送時 出發地의 該當稅關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聯邦共和國 該當 法規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該當物品이 運送書類의 內容과 符合하는가의 與否를 檢査한다. 出發地의 稅關은 關係書類에 押印으로 된 官印을 찍어, 위에 說明한 義務를 완벽하게 履行했다는 것을 表示한다.

運送書類가 여러 장일 경우 그 중 한 장의 書類에 나머지 書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을 때에는 그 한장의 書類에 押印으로 된 官印을 찍는 것으로 充分하다.

第6條 2項에 依하여 物品封印을 委任받은 業體가 封印을 했을 경우, 官廳에 의해서 그 使用權을 委任한 業體의 押印은 出發地稅關의 官印과 同等한 効力을 가진다.

第6條

1. 通行交通에서 民間物品의 運送을 위해서는 輸送手段(貨物自動車, 貨物列車, 內陸水路用貨物船, 容器)을 使用할 수 있다. 이 輸送手段은 出發前 稅關의 封印, 鐵道當局 또는 郵便局의 封印, 또는 該當官廳으로 부터 委任된 公式封印(以下 封印이라 부른다)節次를 밟아야 한다.

만드시 許可를 얻어야 通過할 수 있는 物品과 獨逸民主共和國이 輸入을 禁止하는 物品의 通過時에는 封印輸送이 特別히 要請된다. 物品을 전혀 실지 아니한 輸送手段 역시 封印될 수 있다.

通行交通의 節次를 가장 簡素하고 迅速하며 正確하게 하기 위하여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은 稅關이 封印하기 爲도록 構造上 必要한 裝置 또는 設備을 함으로써 輸送手段을 可能한 最大限의 封印形態로 만들도록 措置한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이러한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通行手續에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한다.

2. 技術的 與件을 감안하여 指定된 모든 部分에 必要한 數의 封印裝置를 하며 同 施行機關은 다음과 같다.
 - a) 出發地稅關
 - b) 鐵道交通에 있어서는 獨逸聯邦鐵道局과 獨逸聯邦郵便局
 - c) 該當稅關으로부터 封印業務를 委任받은 一定한 企業體, 이 協定의 節次와 規定을 合法的으로 遂行하기 위해 該當稅關은 委任받은 企業體에게 必要한 責任을 부여하고 業體에게 委任된 封印이 合法的으로 施行되고 있는 지를 監督한다.

獨逸聯邦鐵道局, 獨逸聯邦郵便局 또는 委任企業體가 封印을 했을 경우에도 該當稅關은 稅關自體가 封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本 協定에 의거하여 모든 責任을 진다.

3. 第2項에 依하여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機關(獨逸聯邦郵便局 以外의)은 運送書類에 封印한 部分의 數와 封印標識, 日字를 記入, 署名하고 押印으로 된 官印 또는 官에서 委任받은 「스탬프」를 찍는다. 運送書類가 여러 장이고, 그 중 한장의 書類에 나머지 書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장의 書類에 위의 事項을 記入하는 것으로 充分하다.
4.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國際慣行에 따라 稅關의 封印節次를 거쳐 物品을 運送할 수 있는 輸送手段은 모두 稅關封印에 적합한 것으로 認定된다. 道路車輛과 內陸船의 경우에는 稅關封印承認書를 封印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하며 容器的 경우 許可書를 封印 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한다.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自身の 權限의 範圍內에서 輸送手段이 稅關封印에 적합한 지를 檢査한다. 이 때 그는 유효기간이 지난 稅關의 封印承認書가 使用될 수 없다는 점과 그 輸送手段의 封印安全度에 관계되는 規定에 輸送手段이 符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檢査節次는 封印과 運送書類의 調查에 국한된다.
6.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封印을 더 安全하게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別途로 封印裝置를 더할 수 있다. 그로 인해 通行交通이 遲延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설치한 封印裝置가 破損되거나 또는 其他 事由로 封印의 安全度에 이상이 發生했을 때 運送責任者는 즉각 이 事實을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申告해야 한다. 不意의 사고나 기타 질박한 動機로 物品을 他輸送手段으로 옮겨 실어야 할 경우, 運送者는 이 事實을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申告해야 한다. 物品의 轉積은 반드시 當局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압박한 위험으로 즉각 物品을 내리거나 積載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運送者는 긴급히 安全措置를 취한 후 輸送手段을 停止시킨 채, 이 事實을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運送責任者의 人的事項, 輸送手段, 事件概要, 緊急措置內容 그리고 임시로 設置한 封印裝置에 관한 調書를 작성한다. 運送責任者는 그 調書의 1部를 휴대한다. 其他事項에 대해서는 7條를 適用한다.

第7條

1. 無蓋貨物車와 같이 第6條 1項에 따른 封印裝置를 할 수 없는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檢査節次를 運送書類 調查에만 국한시킨다.
2. 輸送手段이 1項에 따라 輸送途中에 내려 놓을 物資를 실었다거나 혹은 그 안에 도중에서 실은 사람이나 物資가 있다는 혐의가 있는 特殊한 경우에는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部를 調查할 수 있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法規에 의거하여 必要한 範圍內에서 調查한다. 第16條의 關係規定이 適用된다.

第8條

1. 通行路를 運行하는 貨物車는 責任保險에 加入해야 한다.
2. 貨物車와 「트레일러」의 運行 및 運轉士의 免許證은 相互 認定된다.
3. 車輛의 形態와 裝備가 그 車輛의 運行을 許可한 地域의 該當法規에 抵觸되지 않을 때, 이것은 他地域에서도 認定된다. 짐을 실었을 때의 貨物車와 「트레일러」가 獨逸民主共和國의 規定에 明示된 容量 및 重量規格을 벗어나는 경우, 이것도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特別許可를 必要로 한다.

第9條

1. 通行交通時 自家用 輸送手段도 利用可能하다.
2. 이 協定에서 말하는 自家用 輸送手段은 規定에 의거하여 許可를 받은 貨物車를 말하며 貨物 輸送車輛이나 急行「버스」가 아닌 것을 指稱한다. 道路, 鐵道, 水路用 輸送手段의 여러 部分中 貨物積載用이 아닌 部分과 急行버스의 一定한 部分中 乘客用이 아닌 部分은 個人用 輸送手段과 같은 系列에 속한다.
3. 自家用 輸送手段을 이용하는 旅行者에 대한 手續은 遲延되지 아니한다. 但, 本協定の 施行上의 例外는 別途로 定한다.
4. 旅行者, 그의 輸送手段과 그의 個人用 手荷物은 搜索 및 逮捕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며 道中에서의 使用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但 16條에서 規定하는 바와 같은 特別한 경우는 예외이다. 特別한 경우란 西伯林을 향해 또는 西伯林으로부터 直行하는 旅行과 無關하고 또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法律에 抵觸되는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惡用할 의도가 있거나, 惡用할 可能性을 疑心할 충분한 根據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 原則은 各事例別로, 個人別로 適用된다.
5. 貨物輸送手段의 運轉手 및 그의 手荷物에 대한 手續은 自家用 輸送手段을 利用하는 旅行者에 대한 것과 같다.

第10條

1. 通行交通時, 急行「버스」의 使用은 可能하다. 이 協定이 뜻하는 「버스」는 車體의 構造와 設

備로 보아 9名以上—運轉士포함—이 乘車하기에 적합한 車輛을 의미한다. 直行버스는 4項의 例外的 경우를 제외하고는 通過地域間的 獨逸民主共和國 領土를 한번도 停止하지 않고 運行하여야 한다.

2.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搭승자의 身分確認外的 어떤 檢問節次도 要求하지 아니한다. 이 協定의 施行上的 例外를 除外하고는 「버스」의 搭승자는 車內에 앉은 채로 越境手續을 밟는다.
3. 通行地가 長距離일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急行「버스」휴게소를 設置하며 獨逸聯邦共和國當局은 휴게소와 휴게소 外部로의 通行금지에 관해 제공한다.
4. 不意의 事故, 엔진故障 또는 天災地變등의 비상사태가 돌발하여 「버스」가 停車했을 경우, 運轉士와 旅行者는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許可나 要求에 의해서만 「버스」와 指定된 休憩所를 떠날 수 있다. 「버스」運轉士는 비상사태로 인한 運行中止와 그 理由를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運行中止의 事由와 旅行者, 乘務員의 身分을 再調査할 수 있다.
5. 4項에서 記述한 理由 以外的 다른 理由로 急行버스가 停車할 때는 搭승자들과 그들의 手荷物과 버스는 이 協定 16條의 規定에 의해 措置된다.

第11條

1. 鐵道交通에 있어서 協定 雙方의 中央官廳은 交通量을 감안하여 定期 및 臨時列車의 運行時間表를 合意에 의하여 定한다.
2. 交通量이 非正常的으로 增加할 경우, 鐵道の 可用限界內에서 列車을 增加하여 運行하는 問題를 協議·解決한다.
3.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境界線의 두 驛間의 鐵道運行을 위해서 協定雙方의 該當 中央官廳은 合意에 의하여 關係規定을 定한다.
4. 協定 雙方은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하여 列車乘務員과 機關士의 身分證明書를 서로 認定한다.

第12條

1. 通過交通에는 急行列車를 運行할 수 있다. 이 旅客列車은 —乘用車積載列車을 包含하여— 通過地域間을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에서 停車하지 않고 運行한다. 특별히 指定된 驛이나 公式的인 運行計劃에 明示된 獨逸民主共和國의 驛에서는 通過旅行者를 제외한 旅行者의 下車가 許容된다. 國境通過時의 停車와 其他 있을 수 있는 停車는 꼭 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許可된다.
2. 獨逸民主共和國의 檢問節次에는 乘客의 身分確認 以外的 다른 節次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協定 施行上的 例外를 제외하고 乘客에 대한 檢問은 列車內에서 實施된다.
3. 通過旅行者들은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또는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下에서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要求나 許可가 있을 경우에만 急行列車에서 下車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乘客의 身分調査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4. 萬一 通過旅行者가 3項에서 기술한 理由와 다른 理由로 急行列車로 부터 이탈할 때 이 旅行者와 그의 手荷物は 이 協定 16條의 해당 規定에 의해 措置된다.

第13條

1. 物品運送을 위해서 內陸水路船舶을 利用할 수 있다. 通過運航되는 內陸水路船舶은 獨逸民主

共和國의 內陸水路 交通規定에 規定된 要件을 具備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特殊船舶, 諸般水泳器具, 그리고 新造船舶의 移送도 해당된다. 「스포츠」用「보트」, 競漕「보트」, 기타 個人用 船舶들은 積載하거나 曳引船으로 끌고 갈 수 있다.

2. 船舶證明書 및 「엘베」江과 內陸運河에서 運航을 허가받은 運航證, 內陸水路船의 乘船人員에 관한 證明書類는 공식적으로 認定받는다.
3. 1項에서 기술한 內陸水路船은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指定한 휴게소에서 碇泊할 수 있다. 이 경우 內陸水路船의 船員은 특별히 許可된 휴게소에 上陸할 수 있다.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疾病이나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가 발생했을 경우와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要求나 許可가 있을 경우, 船員들은 運航을 中斷하고 다른 적절한 場所에 上陸하도록 許可된다. 이 경우 船長은 非常事態로 運航을 中斷하게 된 경위와 그 事由를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4. 水門, 船舶用起重機, 船舶休憩所를 포함한 水路의 利用에 대해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逸民主共和國 法規에 의거하여 税金과 使用料를 징수한다.

第14條

1. 獨逸民主共和國은 그 領域에서 輸送手段과 通過旅行者들이 不意의 災難, 機關故障과 水上事故를 당할 경우, 故障修理, 曳引作業, 醫療奉仕, 造船所 및 工場「서비스」등의 긴급구조를 提供할 것을 보증한다.
2. 災難과 事故가 發生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서를 작성하는 데는 獨逸民主共和國의 規定을 적용한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調書を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 送付한다.

第15條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道路의 狀態, 水深, 水位, 水門開閉時間, 船舶運航禁止區域 등에 관한 慣例의인 通知事項과 通行에 必要한 迂回路를 포함하여 관련된 기타 情報를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 通知한다.

第16條

1. 이 協定の 發効以後, 通行路를 利用하는 通行者가 一般的으로 통용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法規에 저촉되는 違法行爲 또는 犯法行爲를 할 때에는 이 協定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의 各 項目이 그러한 行爲에 해당한다.
 - a) 物資를 配布하거나 積載하는 行爲
 - b) 사람을 태우는 行爲
 - c) 不意의 災難이나 疾病의 특수상황이 아닌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許可없이 指定된 通行路를 이탈하는 行爲
 - d) 기타 犯罪行爲를 저지른 경우
 - e) 道路通行規定에 저촉되는 不法行爲를 하는 경우

이 協定の 發効以後, 通行路를 利用하는 사람이 違法的으로 犯罪행위를 하거나 혹은 했던 通行旅行者의 違反行爲에 同調者, 선동자, 公범자로 加擔한 경우에도 역시 이는 違反行爲로 간주한다.

2. 이 協定이 말하는 의심할만한 充分한 根據란 특정한 경우에 어떤 一定한 事實, 또는 具體的 根據를 土臺로 하여 볼 때 위의 1項의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惡用하려 했거나, 惡用하고 있거나 惡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를 말한다. 通行路 使用違反에 대한 의심할만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法規에 依據하여 旅行者들과 그들이 利用하는 輸送手段과 그들의 手荷物을 調査하거나 旅行者를 退去시킬 수 있다.
3. 嫌疑事實이 確認되면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通行路 使用違反行爲의 輕重에 따라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法規에 依據하여,
 - a) 견책 또는 反秩序犯으로 처벌하거나 警告와 벌금을 과하거나 對象物을 몰수 한다.
 - b) 對象物을 差押하거나 押收한다.
 - c) 犯法者를 退去시키거나 一定期間通行路의 利用을 不許한다.
 - d) 犯法者를 逮捕한다.
4. 過去の 通行路 利用時에 저지른 犯法行爲에 대해서도 3項에 기술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5. 3項에 기술한 措置를 取할 경우,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公共秩序法規에 의거하여 작성한 調書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對象物을 押留하거나, 差押, 몰수하면 해당자에게 對象物의 明細書를 교부한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旅行者의 逮捕, 通行路 利用不許 措置 및 還送措置, 그러한 措置의 根據에 관한 內容을 즉각 通告한다.
6. 通行路를 惡用한 者가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의 通行地를 通過한 뒤 通行路 惡用の 사실이 發見되면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惡用行爲, 證據資料 및 處罰對象者에 대한 事項을 通報한다.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共秩序法規에 의거하여 合當한 措置를 取하고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그에 관해 通報한다.

第17條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 協定 16條에 기술된 通行路의 惡用을 豫防하기 위하여 가능한 範圍內에서 必要한 豫防措置를 강구한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留意한다.

- a) 通行路를 利用하는 사람과 企業體에게 이 協定의 內容을 적절한 方法으로 周知시킨다.
- b)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이 通行路의 惡用企圖를 事前에 認知했을 때는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共秩序法規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內에서 通行路의 惡用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取한다.
- c) 輸送手段이 運行에 安全하지 못하다는 것이 明白히 드러날 때, 그 輸送手段의 國境線通過는 許可되지 아니한다.

第18條

1. 税金, 使用料, 通行路 및 그 施設과 設備의 維持費등 기타 費用은 1年單位の 總額清算方式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支拂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이 支拂해야 할 總額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包含된다.
 - a) 道路使用料,

- b) 税金補償料(Steuerausgleichsabgabe),
- c) 「비자」發給 手數料
- d) 「버스」의 定期運行 許可取消과 內陸水路船舶에 대한 運行許可 發給取消로 인한 獨逸民主共和國의 財政上의 損害와 이에 關連되는 기타 財政上 損害에 대한 補償金, 1972년부터 1975년까지 年間 支拂總額은 2億3,490萬「마르크」로 確定한다.
- 3. 獨逸聯邦共和國은 每年 3月 31日까지, 次회는 1972年 3月 31日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이 指定한 獨逸聯邦共和國 銀行의 計定을 通해서 伯林所在 獨逸對外貿易銀行 앞으로 該當年度의 支拂總額을 對替한다.
- 4. 1976年 以後에 支拂할 總額의 規模와 그 總額清算期間은 1975年度 後半期에 그 동안의 通行量을 감안하여 確定한다.

第19條

- 1. 協定 雙方은 이 協定의 解釋이나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難點과 見解差를 해결하기 위해 委員會를 設置한다.
- 2. 同 委員會는 獨逸聯邦共和國의 交通相이 全權을 委任한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의 交通相이 全權을 委任한 代表로 構成된다.
- 3. 同 委員會는 協定雙方中 一方의 要請으로 召集된다.
- 4. 具體的인 節次內容은 委員會가 確定한다.
- 5. 委員會가 그들에게 委任된 見解差의 調整을 解決하지 못할 때, 同 問題는 雙方 政府에게 넘겨지고 兩政府는 이를 協商을 통해 調整한다.

第20條 封印裝置를 하기에 適合하고 또 封印을 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封印을 하지 않은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第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1條 이 協定은 1971年 9月 3日의 佛蘭西共和國,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大英聯邦王國, 그리고 「아메리카」合衆國 政府間의 協定과 함께 동시에 効力を 發生하며 그 協定과 함께 계속 有効하다. 1971年 12月 17日 「본」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에곤·바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미카엘·볼」

2) 附屬文書

- I. 獨逸聯邦共和國 經濟 및 財務相은 獨逸民主共和國 關稅局에 下記事項을 通知한다.
 - 1. 第6條 2項에 依據하여 權限을 委任받은 企業體와 그 企業體에 下達한 行政指示.
 - 2. 第6條 3項 및 4項에서 기술한 封印裝置, 官印, 稅關封印承認書의 見本. 이 見本은 本 協定에 依據한 通行이 始作되기 前的 적절한 時機에 公表되어야 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封印裝置, 官印, 또는 稅關封印承認書를 變更하려고 할 때는 이 事實을 적절한 時機에 獨逸民主共和國에 通知한다.

- II.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地域 管理事務所는 可能한 限 이미 設置해 둔 封印裝置가 破損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III. 獨逸民主共和國 關稅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經濟 및 財務相에게 本 協定の 發効以後 特定物品 및 살아 있는 動物의 携帶 및 運搬에 대해서 適用할 條件들을 通知한다. 獨逸民主共和國關稅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經濟 및 財務相에게 將次 必要한 變更事項을 適時에 通知한다. 그러한 變更內容은 通行協定の 精神과 字句에 符合하여야 한다.

3) 議定書 附錄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民間物資通行에 관한 兩獨間協定の 添附物

1. 獨逸民主共和國側의 委員會代表는 第3條에 關係되는 事項으로서 通行을 위해 指定된 通過地點과 通行區域에 관한 事項을 通知한다. 本 協定の 發効以後에 可能해 질 通行上의 改善內容은 다음과 같다.

鐵道部門 :

- a) 交通量으로 보아 必要한 경우, 「구덴퀴르스트」 國境通過地點으로 定期旅客 및 特別旅客列車가 往來하며, 이 地點을 통해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送할 수 있고 直行貨物列車가 이 地點을 通過한다.
- b) 「게르스통엔」 國境通過地點을 利用하여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送할 수 있다.
- c) 「마리엔보른」 國境通過地點을 往來하는 列車의 수를 같은 比率로 줄인다는 條件下에서 「외비스펠데」 國境通過地點으로 列車을 運行한다.
- d) 交通量으로 보아 必要한 경우 「쉬반하이데」 國境通過地點으로 直行貨物列車를 運行한다.
- e) 貨物車만을 連結한 急行貨物列車에 定期運行客車를 連結한다.

陸路部門 : 「바르타」 國境通過地點으로 營業用 「버스」와 營業用 貨物車의 通行 그리고 動物輸送을 할 수 있다.

水路部門 : 全體 길이가 90m 以上인 船團이 「하벨」江流를 利用할 때 적용하던 統制措置를 撤廢한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불가피한 變更事項을 적절한 時期에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通知한다.

2. 通行에 使用되는 運送手段, 運送되는 貨物, 그리고 通行者가 携帶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關稅, 通行稅 또는 그와 비슷한 性格의 요금을 徵收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保安措置도 要求되지 아니한다.
3. 協定 雙方은 第4項에서 言及한 原則을 互惠主義에 立脚하여 적용하기로 合意한다. 그것에 相應하는 規定은 通行問題에 관한 兩獨條約에서도 採擇될 것이다.
4. 第7條의 規定은 通行時 特定物品 및 살아 있는 動物을 運搬 또는 携帶할 경우에 수반되는 條件을 기술한 通知事項 III 節 2~4項 및 IV 節 2項의 特別調査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附屬文書 III)
5. 協定 雙方은 通行에 利用되는 모든 運輸手段이 반드시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合意한다. 第20條의 內容은 여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6. 協定 雙方은 가능한 한 빠른 時日內에 國際慣例上의 形式을 갖춘 責任保險問題에 관한 規定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의 合意에 의하여 制定하기로 양해한다. 이러한 새 規定이 마련될 때까지는 現行制度를 계속 適用한다.

7.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發給한 交通手段과 「트레일러」의 運行證 및 運轉士의 運轉免許證을 獨逸聯邦共和國이 인정한다는 內容의 規定을 互惠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通行問題에 관한 兩獨間의 條約속에 包含시키기로 양해한다.
8. 條約 雙方은 貨物輸送用이 아닌 家屋車(家屋으로 利用되는 車)와 「트레일러」 그리고 이와 비슷한 性格의 交通手段을 第9條 2項의 內容에 包含시키기로 양해한다.
9. 通行 途中에 配布할 것이 아니고 通行者 個人이 使用할 書籍, 新聞 및 기타 印刷物의 携帶는 通行路를 惡用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0. 獨逸聯邦共和國은 通行協定の 發効以後부터는 內陸水路船의 許可手續이 獨逸民主共和國의 所管事項에서 除外된다는 것을 闡明한다.
11. 自家用 交通手段으로 通行하는 第3國人에 대한 「비자」發給 手數料는 第18條 2項에서 기술한 「비자」發給 手數料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3個月 以上の 滞在許可를 받았고 그 許可를 證明할 수 있는 第3國人의 경우는 여기서 除外된다.
12. 協定 雙方은 第19條에 依據하여 適當한 時期에 構成된 委員會問題와 通行計劃 및 그 實踐에 관한 問題를 서로 協議하기로 양해한다.

文 書 28

伯林市長에게 보낸 聯合軍司令部의 書翰

1971年 12月 18日

(번역문)

發信 : 伯林 聯合軍司令部

BKC/L(71)3

1971年 12月 18日

件名 :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 및 1971年 12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
林間의 民間人 및 物品通行에 관한 兩獨政府間의 協定の 履行問題

受信 : 伯林市長

존경하는 伯林市長 귀하!

聯合軍司令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과 관련하여 이 書翰을 보냅니다.

同 協定 第Ⅱ部 A 및 附屬文書 1의 3項에 의하면 兩獨政府의 관계當局은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通行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協定을 체결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관계當局이 同 協商에 着手하고 아울러 伯林當局과도 이를 進行할 것을 要求한 1971年 9月 3日字 聯邦首相에게 보낸 3大國大使들의 書翰에 따라서 獨逸聯邦政府의 代表는 1971年 12月 17日 同 協定에 署名하였습니다.

聯邦政府首相은 3大國大使에게 보낸 1971年 12月 14日字 書翰에서 同 協定の 原文을 提示하였습니

다. 3大國 大使는 1971年 12月 16日字 回答書翰에서 同協定の 諸規定이 同協定の 解釋과 適用의 基準을 明示한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 內容과 一致한다는 3大國政府의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71年 12月 17日字로 체결된 同協定은 4大國協定の 最終議定書가 調印된 날로부터 西伯林地域에서 發効되기 때문에 이에 우리는 西伯林地域에서 同協定을 實施함에 있어 西伯林當局이 執行해야 할 任務遂行을 委任하며 可能的 協調를 要望합니다.

1971年 12月 17日字 協定副本을 附屬文書와 함께 여기에 同封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M·루더에」 大將

聯合軍司令部 議長

(出處：1972年 12月 15日字 聯邦政府公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9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와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政府와 西伯林市當局의 協定 및 獨逸民主共和國 外務省 「코울트」次官과 西伯林市議會 「뮐러」局長 間의 議定書附錄과 書翰交換

1971年 12月 20日

1) 協 定 文

1971年 9月 3日字 美國, 英國, 佛蘭西, 蘇聯政府間의 伯林協定の 規定에 따라, 그리고 緊張緩和에 기여하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獨逸民主共和國政府와 西伯林市當局은 伯林西部區域(西伯林)市民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다음과 같이 緩和하고 改善하기로 合意하였다.

第 1 條

- (1) 西伯林에 常住하는 市民은 1년에 1回 또는 數회에 걸쳐 30日以內의 限度內에서 訪問을 目的으로 西伯林에 隣接한 地域과 隣接地域이 아닌 獨逸民主共和國內의 地域을 旅行할 수 있다.
- (2) 1項의 旅行은 그 事由가 人道的, 家族的, 文化的, 觀光的인 動機일 때 許可된다.

第 2 條

- (1) 西伯林에 常住하는 者가 東獨을 入國할 때에는 本人의 身分證明書와 通行證이 必要하며 出國時에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出國 許可가 要求된다. 必要한 證明書는 獨逸民主共和國의 該 當官廳에서 發給한다.
- (2)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그 保護者의 身分證明書에 그 어린이의 人的事項이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어린이 自身の 證明書나 사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例外的 경우(家族的 理由, 休暇中의 滞在)에 16세까지의 어린이는 保護者의 同伴없이도 入國이 許可된다.
- (3) 身分證明書を 所持하지 아니하고 西伯林에 常住하는 者는 入國時 西伯林이 규정한 節次에

따라 發給된 證明書類를 휴대해야 한다. 旅行者의 身分이 確實할 때에는 獨逸民主共和國 當局도 그에 該當하는 書類를 申請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하고 發給할 수 있다.

第 3 條

- (1) 西伯林常住者가 東獨에 入國할 경우에는 指定된 國境通過地點을 通過해야 한다.
- (2) 旅行許可書나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確認한 電報를 根據로 西伯林 常住者는 國境通過地域에서 入國許可를 發給받을 수 있다.

第 4 條

- (1) 긴급한 家族的 用務나 人道的 問題가 發生하면, 西伯林 常住者는 1條에서 許可한 訪問許容 期間이 이미 끝났을 경우라도 入國할 수 있다. 入國에 必要한 許可는 該當官廳에서 確認한 電報를 根據로 하여 國境通過地點에서 發給될 수 있다.
- (2) 1條에서 言及한 경우 以外에 社會的, 學術的, 經濟的, 商業的, 文化的 用務가 있을 경우에도 入國은 許可된다.
- (3) 1項에서 記述한 旅行은 獨逸民主共和國의 여러 지역을 訪問하는 경우에도 一括的인 申請이 可能하다. 3個月 以內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는 旅行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實施할 旅行을 1회에 申請할 수 있다.

第 5 條

- (1) 西伯林 常住者는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와 獨逸旅行社(西獨)間에 맺은 合意에 根據하여 觀光客의 자격으로 個別的으로 혹은 團體로 旅行할 수 있다. 그들은 數日間の 一周旅行, 當日旅行, 週末旅行을 할 수 있다. 休養旅行, 溫川療養, 특별행사참관도 할 수 있다.
- (2) 西伯林 常住者가 觀光客으로서 旅行社의 觀光計劃과 관계없이 當日觀光만 하고 되돌아 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西伯林에 있는 訪問 및 旅行事務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旅行許可書의 發給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旅行社는 旅行許可書를 作成하여 우편으로 또는 직접 傳達한다.
- (3) 西伯林 常住者는 巡廻旅行用으로 許可된 「버스」를 利用할 수 있다.
- (4) 西伯林的 「버스」會社는 이를 實施하기 위해 國境通過를 許可받을 수 있다.

第 6 條 이 協定을 施行함으로 얻은 經驗을 토대로하여 往來의 事情을 더욱 好轉시키기 위해 雙方은 이 協定을 토대로 하여 보다 前進的 旅行緩和措置에 合意할 수 있다.

第 7 條 雙方은 本 協定과 本 協定의 施行細則을 各自의 住民에게 적절한 方法으로 周知시키며, 協定과 施行細則이 合法的으로 施行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第 8 條

- (1) 雙方은 各其 代表를 임명하고 同 代表들에게 本 協定의 適用과 施行過程에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見解差와 難點을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 (2) 同 代表會議의 召集은 一方의 要請으로 이루어진다. 雙方代表들은 補佐官을 동반할 수 있고 또 이들에게 權限을 위임할 수도 있다.
- (3) 雙方代表들이 解決할 수 없는 問題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當局에 넘겨지며 이 때 兩側은 協商으로 이 問題를 解決한다.

第9條 本協定은 1971年 9月 3日字의 佛蘭西, 蘇聯, 英國, 美國政府間의 伯林協定과 동시에 發効하며 그와 同一한 有効期間을 가진다.

1971年 12月 20日 伯林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이 作成되었다.

西伯林市 當局을 代表하여
「울리히·필러」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컨터·코울트」

2)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當局間의 協定을 위한 議定書 附錄

1. 1년에 30日의 總滯在期間의 범위내에서 (合意書 1條 1項) 西伯林 常住者는 制限없이 東獨에 入國할 수 있다.
2. 1년에 30日의 總訪問期間이 이미 消盡되었을 경우에도 긴급한 家族的 用務가 있을 때에는 入國이 許可된다.
3. 특별한 경우에 限해서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協定(1條 1項)에 定해진 滯在期間을 초과하여 滯在를 연장시킬 수 있다.
4. 西伯林 常住者가 東獨에 入國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申請節次를 밟는다.
 - a) 人道的, 家族的, 宗教的 혹은 文化的 用務로 旅行하는 경우, 訪問하려는 者는 市, 郡의 當局이나 獨逸民主共和國의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각각 申請한다.
 - b) 集會, 學術, 經濟 및 商業 또는 文化的인 用務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獨逸民主共和國內의 招請機關이 該當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申請한다.
 - c) 西伯林 常住者가 觀光旅行을 할 경우에는
 - 西伯林的 獨逸旅行社(DER)를 통해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 申請한다.
 - 當일로 돌아오는 觀光旅行으로서 旅行社의 手續이 必要하지 않은 경우, 西伯林的 訪問 및 旅行事務所에 申請한다. 申請은 우편으로, 혹은 本人이 직접할 수 있다. 許可手續은 지체되지 아니한다. 發給된 旅行許可書는 申請者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다.
 - b) 滯在期間이 2日 以內인 旅行의 경우, 出國許可證은 入國時 國境通適地域에서 發給된다.
5. 旅行이 3個月 以內에 끝나는 경우에는 數회에 걸쳐 실시할 旅行을 一括的으로 申請할 수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의 여러 地域에 滯在하려는 旅行도 한꺼번에 申請할 수 있다.
6. 許可 申請에는 同一한 內容의 申請書 2통이 必要하다. 申請은 旅行豫定期限 3個月前부터 할 수 있다. 申請 事務節次는 一般的으로 6日이 소요된다.
7. 2日 以上の 滯在旅行時, 入國과 出國에는 相異한 通過地域을 利用할 수 있다.
8. 入國時 盲人을 인도하는 개(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 경우 獸醫師의 진단서가 必要하다.
9. 다음과 같은 절박한 경우에는 自家用車를 타고 入國할 수 있다.
 - 旅行者가 身體障碼로 인해 自動車를 利用해야 할 경우
 - 긴급한 用務가 있는 경우와 大衆交通手段으로 旅行目的을 時日內에 達成할 수 없는 경우

—3歲以下の 어린이를 同伴하는 경우

—目的地의 交通이 不便하거나 西伯林에서 100km以上 떨어져 있는 경우

이 외에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當局間에 체결된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合意(4條 2項)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경우에는 自家用乘用車의 利用이 許可된다.

「오토바이」, 小型「오토바이」, 自轉車를 使用하는 旅行은 許可되지 아니 한다.

10. 患者輸送은 종전과 같이 雙方的 赤十字社에 의해 실시된다.
11. 雙方은 예상되는 訪問者의 數를 算出한만한 實績根據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通行證 發給手數料의 清算總額을 아직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雙方은 短期旅行(1日)에 대해서는 手數料를 控除하기로 合意한다.

3) 議定書附錄

雙方은 訪問 및 旅行事務所가 수행할 業務에 대해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1. 本協定 5條(2項)에 의거하여 西伯林市當局은 5개의 訪問 및 旅行事務所를 설치한다.
이 事務所의 管理權은 西伯林市當局이 指定한 官吏들이 행사한다.
2. a) 西伯林市當局은 本協定調印後 8週以內에 事務所의 豫想 規模를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 通報한다.
b) 事務所를 開設하기 前에, 雙方的 委任 代表團은 事務所를 시찰하며, 問題點은 協議를 통해 解決한다.
c) 事務所의 場所 選定, 設備 및 그 變更事項에는 雙方的 合意가 必要하다.
3. 西伯林市當局은 이 事務所의 現관에 『訪問 및 旅行事務所』(『Büro für Besuchs-und Reisean-
gelegenheiten』)라고 쓴 간판을 붙인다.
事務所의 우편포시도 『訪問 및 旅行事務所』로 하며, 그 때 그 때 該當되는 우체국의 住所를 記入한다.
4. a) 獨逸民主共和國의 職員數는 各 事務所에 6人으로 한다. 職員의 數는 必要에 따라서 增減될 수 있다. 이 경우 職員中의 代表者는 西伯林當局이 指定한 該當 官吏에게 適時에 이 사실을 通知한다.
b) 同職員 및 必需品의 輸送에는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民間用 自動車를 使用한다.
5. 이 事務所의 執務時間(公休日은 除外)은 月, 火, 木, 金曜日은 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水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土, 日요일과 公休日에는 적어도 2개의 事務所가 3時間 執務한다.
6. 事務所에서의 許可申請은 申請者의 居住地와 關係없이 西伯林에서 할 수 있다.
男便은 夫人과 16歲以下の 子息의 旅行許可를 代身 申請하여 旅行許可書를 發給받을 수 있다. 이 때 그는 夫人과 子息의 身分證을 提示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代理申請權을 받았다는 證明書를 提示하는 第三者도, 本人을 代理해 旅行許可를 申請하여 旅行許可書를 發給받을 수 있다.

7. 事務所에 배치된 獨逸民主共和國 職員은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委任한 業務를 取扱한다. 그들은 執務時間에 訪問 및 旅行事務所의 職員임을 表示하는 制服을 一률적으로 着用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職權을 가진다.
 - 入國에 必要한 申請書 및 기타 書式을 提供하여 西伯林市當局이 指定한 官吏로 하여금 그 書式을 申請者에게 配付하도록 한다.
 - 訪問 및 旅行交流과 관련된 案内事項을 訪問者에게 通知한다.
 - 入國申請書を 접수하고 접수한 申請書와 身分證의 記載事項을 對照한다.
 - 旅行許可書を 發給한다. (날인과 서명포함)
 - 申請者와 申請을 委任받은 代理人에게 旅行許可書와 기타 旅行에 必要한 書類 및 旅行指針書を 직접 교부하거나 郵便으로 發送한다.
8. 西伯林市當局이 임명한 事務所官吏의 職務
 - 事務所出入의 秩序를 規制한다.
 - 訪問者를 案内한다.
 - 申請書와 기타 書式用紙를 配付할 수 있다.
 - 申請者의 書式記入을 도와줄 수 있다.
 - 必要한 案内事項을 傳達할 수 있다.
9. 事務所에서 근무하는 雙方의 職員은 서로 相對方의 業務를 干涉할 수 없다.
10. 西伯林市當局은 事務所에서의 마찰없는 業務遂行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事務所와 事務所 주위의 安全과 秩序維持, 西伯林市當局은 이 事務所의 施設과 業務遂行에 有害로운 모든 行爲를 禁止시킨다.
 - 獨逸民主共和國 職員과 그들의 必需品 運送의 安全保障
 - 事務所의 維持에 必要한 「서비스」提供 施設, 物品具備(例: 난방장치, 전기시설, 청소)
 - 雙方을 연결하는 電話架設
11. 雙方은 各자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各자 부담한다.

4) 書翰交換

i) 獨逸民主共和國內閣 外務省次官의 書翰

獨逸民主共和國 內閣 外務省 次官

1971年 12月 20日, 伯林

西伯林市廳

「울리히·필러」局長 貴下

尊敬하는 局長!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間的 協定』과 관련하여 本人은 全權委任代表로서 貴下에게 다음의 事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西伯林 常住者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위해 다음에 열거한 國境通過地點의 통과를 허가할 것입니다.

- ◎ 鐵道, 地下鐵, 急行列車를 이용한 東獨地域 入國의 경우(國境通過地點) : 「프리드리히」街 驛 (Bahnhof Friedrichstraße)
- ◎ 徒步者의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보른홀머」街(Bornholmer Straße)
 - 「쇼세」街(Chausseestraße)
 - 「인발리덴」街(Invalidenstraße)
 - 「오버바움」橋(Oberbaumbrücke)
 - 「존넨알레」(Sonnenallee)
 - 「드레뷔쯔」(Drewitz)
 - 「슈타켄」(Staaken)
 - 「루도버 쇼세」(Rudower Chaussee)
- ◎ 自動車를 利用한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보른홀머」街(Bornholmer Straße)
 - 「쇼세」街(Chausseestraße)
 - 「인발리덴」街(Invalidenstraße)
 - 「존넨알레」(Sonnenallee)
 - 「드레뷔쯔」(Drewitz)
 - 「슈타켄」(Staaken)
 - 「루도버 쇼세」(Rudower Chaussee)

敬意를 表하며
「코울트」次官

ii) 西伯林市廳 「뮐러」局長의 書翰

西伯林市廳 「뮐러」局長

1971年 12月 20日, 伯林

次 官

「귄터 · 코울트」 貴下

尊敬하는 次官!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當局間의 協定』締結과 관련하여 本人은 貴下의 今日字 書翰을 잘 받았습니다.

本人은 이 書翰을 통해 西伯林常住者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위해 다음의 國境通過地點이 開放되었다는 것을 認知했습니다.

- ◎ 鐵道, 地下鐵, 急行列車를 利用한 東獨入國의 경우(國境通過地點) : 「프리드리히」街 驛
- ◎ 徒步者의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보른홀머」街
 - 「쇼 세」街

「인발리덴」街

「오버바움」橋

「존넨알레」

「드레뷔쯔」

「슈타켄」

「루도버 쇼세」

◎ 自動車를 사용한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보른홀머」街

「쇼세」街

「인발리덴」街

「존넨알레」

「드레뷔쯔」

「슈타켄」

「루도버 쇼세」

本人은 通過地點의 數가 앞으로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西伯林市廳

「울리히·윌러」

5) 議定書 附錄

雙方은 通信을 改善할 것에 合意한다. 이에 必要한 協商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當局과 西伯林市 當局間에 進行될 것이다.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 公報 附錄 I74號〉

文 書 30

院內 基民黨(CDU)／基社黨(CSU), 社民黨(SPD), 自民黨(FDP)의 共同決議 案提出

1972年 5月 10日

a)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間의 1970年 8月 12日字 條約과 관련하여 聯邦政府가 提出한 法律草案 및

—油印物 M-3156, M-3397 中 M-3397—

b)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間의 相互 關係正常化原則에 關한 1970年 12月 7日字 條約과 관련하여 聯邦政府가 提出한 法律草案,

에 대한 두번째 勸告의 最終表決로서 聯邦議會는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

獨逸聯邦議會는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間的 1970年 8月 12日字 條約 및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間的 相互 關係正常化原則에 관한 1970年 12月 7日字 條約을 表決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宣言한다.

1. 歐洲平和 및 獨逸聯邦共和國의 安全保障은 우리의 對外政策이 追求하는 基本目標다. 條約當事國들이 暴力使用 및 暴力威脅을 엄숙히 그리고 철저히 拋棄할 것을 宣言한 獨·소條約과 獨·波條約은 이와같은 目標에 寄與할 것이다. 同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이 東歐羅巴 이웃나라들과 맺으려고 하는 暫定協定(Modus vivendi)의 主要要素다.
2. 獨逸聯邦共和國은 上記 두 條約締結으로써 賦與받은 諸般 義務를 自發적으로 履行할 것이다. 同條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 事實上 存在하는 國境線의 認定이며 同 國境線의 一方의 變更을 拒否한다는 것이다. 同 條約들은 獨逸에 대한 平和條約의 規制의 先例가 되지 않으며 現存하는 國境線에 대한 法的 根據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3. 上記 條約들은 양보할 수 없는 自決權을 侵害하지 못한다. 歐洲의 現狀속에서 民族的 再統一을 平和적으로 追求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은 獨逸問題의 正當한 解決을 阻害하지 않는 同 條約과 矛盾되지 않는다. 獨逸聯邦共和國이 自決權의 實行을 要求한다고 해도 그것이 領土와 國境線의 變更을 要求하는 것은 아니다.
4. 獨逸聯邦議會는 1954년에 체결된 獨逸條約 및 그에 附隨된 合意事項, 政策宣言과 1955年 9月 13日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間에 체결된 協定이 上記 두 條約과 背馳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完全히 有效하다는 것을 確認한다.
5. 獨逸全體 및 伯林에 대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는 同 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 獨逸聯邦議會는 獨逸問題 全體에 관한 最終的 解決이 留保되고 있다는 事實에 立脚해서 上記 權利와 義務가 存續되는 것을 重要視한다.
6. 同 條約의 重大意義와 관련하여 獨逸聯邦議會는 聯邦政府가 獨·소 및 獨·波條約의 批准案과 함께 立法機關에 提出한 覺書를 支持한다.
7. 獨逸聯邦共和國은 계속해서 安全과 自由의 支柱가 되고 있는 大西洋同盟에 充實할 것이다.
8. 獨逸聯邦共和國은 歐洲共同體를 점차 政治的 統合體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이 地域 同盟國들과의 協調下에 歐洲統合政策을 계속 推進해 나갈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이를 위해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이 歐洲經濟共同體와 協調를 증진하기를 바란다.
9. 獨逸聯邦共和國은 4大國協定 및 獨逸問題協定에 따라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結束關係를 계속 維持·發展시킬 것이라는 確固한 決意를 다짐한다.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은 將次 西伯林의 生活能力과 그곳 住民들의 生活向上을 위해서 努力할 것이다.
10.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한다. 이와같은 關係正常化의 基礎는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間의 人間的, 制度的 關係發展을 위해서 最大限 具現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1972年 5月 10日, 「본」

院內政黨代表 「바 르 젤」
「스튀켈른」
「베 너」
「미슈니크」

〈出處：1972年 5月 18日字 公報 第72號〉

文 書 3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과 同 條約과 關聯한 議定書附錄, 書翰交換, 國務省 「바르」次官 및 「콜」次官의 聲明

1972年 5月 26日

1) 條 約 文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獨立國家 相互間의 一般的 慣例에 따라 歐洲에서의 緊張緩和에 기여하고 兩國家間에 正常的 善隣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한 努力으로,

兩國家間의 領土內의 또는 領土를 通行하는 人的 및 物的의 交流 問題를 規制하려는 目的에서 本條約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I. 一 般 規 定

第 1 條

1. 이 條約의 對象은 이 條約이 有效한 領域內에서 許可되었거나 登錄된 交通手段을 利用한 道路, 鐵道 및 水路에서의 相互 往來交通과 通過交通이다(以下 交通이라 略稱한다).

特定한 輸送手段의 利用에 관한 內國法規는 저촉받지 아니한다.

2. 條約國은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하여 國際적으로 通用되는 慣例에 따라 그들의 領土內의 또는 領土를 通行하는 交通을 最大限의 範圍內에서 保障하고 緩和하며 가능한 한 合理的으로 處理할 義務를 진다.

第 2 條

이 條約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限 交通은 該當地域國家의 關係法의 規制를 받는다.

第 3 條

1. 交通當事者는 他條約國內에서 許可된 公共交通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2. 한 條約國이 自國領土를 通行하는 特定한 通行路線을 指定하는 경우에는 그 國家는 그것을 가급적 合理的으로 調整한다는 觀點에서 施行한다.

第 4 條

交通은 指定된 國境通過地點에서 이루어 진다. 이를 變更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의 交通省과 獨逸民主共和國의 交通省이 事전에 妥協한다.

第 5 條

交通手段의 運行을 證明하기 위해 雙方條約國이 發行한 官認書類와 그 國가의 領土에서 運行이 許可되고 또 登錄된 交通手段을 위해 發行된 官認書類는 20條에 別途의 規定을 두지 않는 限, 相互認定한다.

交通當事者의 身分은 條約國의 關係機關이 國境通過를 證明하기 위해 公的으로 發給한 身分證明에 의해 證明된다.

第 6 條

1. 交通과 관련되어 징수되는 公課金과 手數料는 總額清算으로 處理될 수 있다.
2. 交通當事者가 携帶하는 旅行用品 및 消費品에 대해서는 入國 및 出國公課金과 其他 유사한 手數料가 免除된다.

交通手段이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燃料 및 運轉유의 豫備品과 裝備附屬, 代用品 및 其他附屬品에 대해서는 入國 및 出國公課金과 其他 유사한 手數料가 免除된다.

第 7 條

1. 條約國 雙方은 自己側의 領土에서 不意의 災難과 水上事故가 發生하는 경우 故障修理, 曳引作業, 醫療奉仕, 造船所 및 工場「서비스」 등의 긴급구조를 提供한다.
2. 災難과 事故가 發生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必要한 조사作成에는 災難이 發生한 地點의 法規를 적용한다. 損害評價에 必要한 조서는 相互通知한다.

第 8 條

交通運行과 관련된 道路의 狀態, 高速道路의 지나친 長距離迂廻轉區間, 重要 長距離道路, 水路의 水深 및 水位, 水門管理時間, 船舶運行禁止, 기타 情報에 관해서는 相互 通報한다.

第 9 條

가능한 한 交通을 簡素하게 合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條約國은 土木工事を 計劃하고 이를 施行함에 있어서 이것이 他條約國의 越境交通에 影響을 주는 경우, 이를 事前通告하고 이에 必要한 措置에 關해서 相互協議한다.

Ⅲ. 鐵 道 交 通

第10條

1. 列車交通에 있어서 定期列車 및 臨時列車 運行計劃과 旅客用 列車配定 및 車輛配定은 國際 列車時間表協約에 기초한 交通協定을 고려하여 相互 解決하거나 條約國의 該當中央官廳間의 合意로 이루어진다.
2. 交通量이 例外的으로 過大할 경우에는 鐵道の 運營能力의 범위내에서 增車を 合意할 수 있다.

第11條

1. 旅行者와 手荷物 運送에는 『鐵道旅客手荷物 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V)과 그의 追加協定이 적용된다.
2. 貨物運送에는 『鐵道貨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M)과 그의 追加協定이 적용된다.

第12條

1. 이 條約에서 말하는 國境區間이란, 條約國의 國境地域의 두 鐵道驛間에 있는 急行列車路線 區間을 말한다. —부차적으로는 그와 隣接한 鐵道運營地域도 包含. 이 地域에서는 兩條約國의 法規가 適用된다. 鐵道運營法規도 적용된다. 例外的인 事項은 合意될 수 있다.
2.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自己側 地域內의 鐵道施設과 裝備를 維持, 修理, 改善한다. 이 條約에 規定되지 않은 例外的인 事項은 合意에 의해 決定될 수 있다.
3. 條約國의 該當 中央官廳은 施設의 變更計劃이나 國境區間과 國境鐵道驛에 있어서의 技術上의 變更이 交通運營에 影響을 미치는 한 이를 相互 通告한다.
4. 鐵道行政 當局은 交通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에는 國境區間에서의 施設維持, 修理, 改善作業의 時期를 合意한다.
5.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他條約國의 領土위에 있는 安全 및 電信施設의 維持, 修理 및 改修 作業에 關係 合意한다.
6. 兩 條約國의 鐵道驛間에 設置된 電信線은 오직 鐵道業務上의 通信用으로서만 使用될 수 있다. 이 線은 鐵道自體나 公共의인 通信網에 연결될 수 없다.
7. 國境區間에서의 鐵道交通에서 發生되는 그 때 그 때의 問題는 별도로 合意, 解決한다.

第13條

1. 乘務員의 證明書는 相互 認定한다.
2. 相對便 條約國의 領土에서 근무할 鐵道行政當局의 從業員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그들은 相對便 鐵道行政 當局의 業務規定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消費品이나 生活用品搬入에 대해서는 公課金이나 手數料의 徵收를 免除한다. 國境通過地域 鐵道驛에는 그들을 위한 휴게소가 설치된다. 必要한 경우에 그들은 醫療의 惠澤을 받는다.

第14條

1.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帝國鐵道區間인 「겔스통겐」(Gerstungen)과 「당크말스하우센」(Dankmalshausen) 地域에서 「카리」生產品을 輸送할 경우 獨逸聯邦鐵道局의 「헤링겐/베라」(Heringen/Werra) 往來列車가 逸獨民主共和國의 同 領土를 通過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 交通에 必要한 商業上 運營技術上의 條件은 별도로 合意한다.
2. 「헤링겐/베라」路線으로 「카리」를 獨逸民主共和國에 輸送하거나 그 地域을 通過하여 第3國으로 輸送하는 경우에 同 「카리」列車은 國境區間 鐵道驛인 「겔스통겐」을 直接 通過한다. 「겔스통겐」에 있어서의 越境手續은 獨逸聯邦共和國의 「베브라」(Bebra)와 獨逸民主共和國의 「겔스통겐」 通行方式과 같다.

第15條

1.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鐵道局의 列車가 自國의 領土를 지나 國境通過地域을 경유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의 「오버술」(Obersuhl)驛을 往來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 許可內容에는 이 地域의 建築物과 附帶施設에 必要한 敷地의 無償利用이 包含된다. 獨逸帝國鐵道局의 同 地域은 獨逸聯邦鐵道局이 自費로 補修하고 管理한다. 「베브라」(Bebra)—「겔스통겐」(Gerstungen) 間의 越境通行은 이로써 侵害받지 않는다.

2.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의 「슈베다」(Schwebda)驛과 「헬드라」(Heldra)驛間을 運行하는 獨逸聯邦鐵道局 列車가 上記項에서 合意된 것과 同一한 條件으로 自國의 領土를 通過하여 國境通過地域을 經유하는 것을 許容한다.

第16條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帝國鐵道局이 運行하는 列車가 復線으로 自國의 領土를 지나(獨逸民主共和國에 있는)「바르타/베라」—「게르스퉁」地域을 通行하는 것을 허락한다. 獨逸帝國鐵道局은 이 地域을 自己側의 人員과 費用으로 運營, 補修, 維持한다. 이 許可內容에는 이 地域의 建築物과 附帶施設에 必要한 敷地의 無償利用이 包含된다.

Ⅲ. 內陸 船舶交通

第17條

1. 兩 條約國은 그들의 領土에서 迅速하고 經濟的인 船舶運行을 위한 諸般與件이 마련되도록 努力한다.
2. 相互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水路運行을 위한 許可制은 不必要하다.

第18條

1. 相對便 條約國의 港口와 積荷場間에 物品을 運送하기 위해서는 該當機關 또는 主務當局의 特別許可가 必要하다.
2. 通過運航의 歸路에 相對便 條約國에 物品을 運送하는 경우에는 許可가 必要하지 않다.

第19條

1. 碇泊所가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17條1項이 적용된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許可된 碇泊所에서는 內陸船舶의 乘務員의 上陸이 保障된다.
2. 碇泊所가 規定되어 있더라도 不意의 事故, 運行故障, 疾病, 自然災害와 같은 特殊한 事件이 發生한 경우나 또는 現地 條約國의 該當官廳의 許可와 要請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適當한 場所에서도 運航中止나 上陸이 許可된다. 船長은 特殊한 事件이 發生한 경우, 運航中止 및 기타 合當한 理由를 主務當局 또는 관계기관에 通告해야 한다.
3. 高水位, 低水位, 凍結, 水上事故 등으로 因하여 繼續運航이 不可能하거나 運航制限을 받는 경우에는 物品을 옮기거나 內陸船舶의 짐을 輕減시킬 수 있다. 物品의 移積 또는 輕減은 該當 機關에 報告되어야 하며 관계자의 立會下에서만 可能하다.

第20條

1. 第5條에 의거하여 諸證明書를 相互 認定하는 것은 內陸船運航에 있어서 「엘메」江과 內陸運河를 위해 發給된 運行證明書에 限하여 有效하다. 獨逸民主共和國의 船舶證明書는 水路를 利用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同 水路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內陸船運行規定의 적용對象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의 船舶證明書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水路에서 認定된다.
2. 兩條約國中 一方의 內陸水路를 他方의 大型船舶이 또는 集團으로 過度히 運航할 때에는 該當官廳의 同意가 必要하다.

過度한 運航이란 個個의 船舶이나 船團의 容量이 水路利用에 관한 兩條約國家들의 法規에

規定된 容量을 超過하는 경우를 말한다.

3. 水上機器, 水上裝備는 運送될 수 있으며, 新造船도 運送될 수 있다. 競技用보트, 運動用보트, 기타 個人用 水上交通手段을 船積貨物로 또는 曳引하여 運送할 수 있다.
4. 運送路線이 規定되어 있는 限, 이 路線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該當 機關의 許可가 必要하다.

第21條

內陸船舶은 萬一 이것이 物品運送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國際的 慣例에 따라 保稅通關이 許可된 경우에 限해서 保稅通關이 保障된 것으로 認定된다.

保稅通關이 保障된 證據로서 保稅通關證이 認定된다.

第22條

水門, 船舶起重機, 船舶碇泊所 等を 包含한 水路의 利用에는 當地에서 적용되는 關係法規에 의거하여 公課金이나 手數料가 징수된다.

第23條

兩條約國은 「엘베」江上의 472.6km부터 566.3km까지의 區間에서 內陸船의 마찰없는 運航을 서로 保障한다.

Ⅳ. 自動車 交通

第24條

1. 이 條約에서 말하는 產業上 必要한 人的 輸送이란, 自動車와 「트레일러」便으로 사람을 有料로 혹은 事業上 運送하는 것을 이른다.
2. 이 條約에서 말하는 自動車便의 物品運送이란 自動車와 트레일러에 依한 產業上의 物品輸送과 工場間의 輸送을 意味한다.

第25條

1. 兩 條約國은 事業上 必要한 非正期的 人的 輸送과 各國의 領土內의 또는 領土를 通過하는 物資輸送에 대해서는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해서 許可發給權을 行使하지 아니한다.
2. 條約國 一方의 企業體가 事業上 他方의 領土內에서 또는 領土를 通過하여 사람을 定期 「버스」便으로 運送하기 위해서는, 그 條約國의 許可가 要求된다.
3. 兩 條約國은 事業上 自國의 領土에서 채용되는 雇傭人의 輸送 및 自國內에서의 物資運送에 대해서는 許可權을 保有한다.

第26條

自動車의 型이나 裝備가 許可地內에서 적용되는 法規와 一致하는 한, 그것은 相互 適法한 것으로 認定한다. 自動車와 「트레일러」 및 그 積載物이 通行地域 國家의 法規定이나 許可容量을 超過할 경우에는 그 條約國의 該當官廳의 許可가 必要하다.

第27條

運送에 使用되는 自動車는 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補償은 別途의 規制對象이다.

第28條

道路交通에 의한 物資運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

—國際運送에 관한 1957年 1月 15日字의 關稅協定(Carnets TIR)

—陸路運送上의 國際危險物取扱에 관한 1957年 9月 30日字의 歐洲協定(ADR)

V. 海 上 交 通

第29條

1. 兩條約國은 物資運送과 移積을 위하여 港口와 海上交通設備을 相互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合意한다. 兩條約國은 各其 自己側 港口에 있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舶을 他國의 船舶과 同等하게 取扱할 것을 保障한다. 이것은 특히 手續節次, 手數料 및 港灣使用料 徵收, 港灣의 自由로운 出入과 그 利用에도 적용된다.
2. 兩條約國의 船舶은 各己 自國의 國旗를 揭揚하고, 相對便 條約國에 出入하면서 物品을 運送할 수 있다. 相對便 條約國의 港口와 積載場間에 物品을 運送하기 위해서는 同 國家의 特別 許可가 必要하다.

第30條

1. 兩條約國은 自國法律에 의하여 國籍을 證明하기 위해 規定된 書類를 持參한 船舶이 同 國家의 國旗를 揭揚한 경우, 同 船舶은 同 條約國의 船舶으로 간주한다.
2. 合法的으로 發給된 船舶測定證明書を 保有한 船舶에 대해서는 再測定이나 事後測定이 免除된다.
3. 港口使用料를 支拂할 때는 船舶測定證書에 記載된 容積을 根據로 한다.

第31條

條約國 一方의 領海上에서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舶이 揭揚하고 있는 國旗의 國家에서 적용되는 乘務員, 裝備, 施設, 船舶安全 手段, 測定, 運航性能등에 관한 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VI. 終 結 規 定

第32條

1. 本條約의 適用이나 解釋에 대해 雙方의 見解差가 대두되는 경우에는, 兩條約國이 構成한 委員會가 이것을 解決한다.
2. 同 委員會의 各 代表團은 獨逸聯邦共和國 聯邦交通相의 全權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交通相의 全權代表가 이끌어 간다.
3. 同 委員會는 條約國 一方의 提案으로 召集된다.
4. 具體적인 運營節次는 委員會에 의해 確定된다.
5. 同 委員會가 提起된 雙方의 見解差를 解決하지 못할 경우에는 同 問題를 各國政府로 移管하며, 政府는 이를 協商을 통해서 解決한다.

第33條

本條約은 無期限으로 締結된다. 本條約은 發效 5年後 每年末 3個月前의 通告로 年末에 解約될 수 있다.

本條約은 相互 覺書交換을 통해서 本條約의 發效에 必要한 對內的 條件充足을 通告하는 날부터 發效된다.

그 證據로 兩國의 全權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한다.

1972年 5月 26日 伯林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을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代表하여

「에곤·바르」

「미카엘·콜」

2)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의 議定書 附錄

第1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海運旅客船과 內陸船舶便의 旅客의 運送은 現在는 實施되지 않고 있다. 雙方은 前提條件이 充足될 경우 이 問題를 處理하기 위한 協商을 開催할 것에 合意한다.

第12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兩 鐵道行政當局은 鐵道業務上의 通信을 위해 더 많은 長距離電話를 架設할 것을 檢討한다.

第17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陸船舶에 대한 許可業務 再開와 함께 獨逸聯邦共和國의 內陸船舶에 대한 許可措置도 再開할 것을 宣言한다.

第21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條約國은 內陸船과 그 積載物에 대해 現在 實施되고 있는 安全保障措置를 變更시키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第23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該當 官廳間에 물의 正常的 흐름狀態의 維持, 「엘베」江上의 472.6km부터 566.3km에서의 正常的인 船舶運行의 維持 等を 위해서 예컨대 縱·橫의 水位測定, 干潮測定, 水深이 얇은 곳을 조정하기 위한 浚渫과 航行障礙物의 除去 等에 관해서 適時에 事前通告할 것에 合意한다. 破冰이나 水路의 標識는 雙方의 合意로 施行한다.
2. 「엘베」江上의 水路, 發電所施設, 港口進入路 等은 지금까지의 慣例에 따라 標識된다. 이 慣例는 條約 署名日의 「엘베」江의 狀態를 基準으로 한다. 標識를 變更할 경우에는 雙方의 관계 機關間에 合意한다.
3. 엘베江上에서 不意의 事故와 水上事故가 發生한 경우 이에 대한 調査나 調書의 作成은 同 事故와 關聯된 國家의 監督 및 統制機關에 의하여 遂行된다. 兩條約國의 內陸船이 不意의 事故나 水上事故에 關連되는 경우 그 該當機關은 이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고 調書를 交換한다.
4. 獨逸民主共和國內 港口사이를 運行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陸船舶이 「엘베」江의 上記 國境 區域을 運行할 경우에는 特別한 船旗로 標識되고 또 獨逸聯邦共和國의 關係 機關의 通行手續을 밟지 않는다.

第25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兩獨逸의 定期路線 버스나 通行路線 交通을 위한 許可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條約國의 該當 官廳에서 處理된다. 이 申請에 對해 異議가 없는 경우에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곳의 條約國의

交通省은 相對便 條約國의 交通省에 自己側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회송한다.

兩條約國의 領土上에서 이루어지는 交通에 대한 許可發給과 申請은 當地의 法規定에 의해 遂行된다. 條約國의 領土上의 혹은 이를 通過하는 定期「버스」路線이나 通過路線의 運行에는 同條約國의 要請에 의해 雙方의 企業體가 參與한다.

第28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 國際貨物運送에 관한 1959年 1月 15日의 關稅協定(Carnets TIR)

— 陸路上의 國際危險物運送에 관한 1957年 9月 30日의 歐洲協定(ADR)에 兩國이 同等 資格의 會員으로 加入할 때까지 交通條約의 28條는 留保된다.

第32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第32條에 의하여 構成되는 委員會는 人的 및 物資交流를 緩和하고 合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問題에 관하여 주어진 시기에 咨문할 수 있다. 이에 必要한 提案은 兩政府나 혹은 關係機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航空交通에 관한 議定書 附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航空交通部門에 있어서 共同作業을 發展시키기 위해 適當한 時期에 航空交通協定 締結을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合意한다.

3) 書翰 交換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

1972年 5月 26日, 53「본」1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伯 林

尊敬하는 「콜」次官!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을 調印한 후, 鐵道旅客 및 手荷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V)과 鐵道貨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M) 및 그 追加協定에 加入하기 위해 申請하겠습니다.
2. 前記 1項에서 言及된 協定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同等 資格을 가진 會員國이 될 때까지 交通條約 第11條는 留保될 것입니다.
3. 獨逸聯邦共和國은 現存의 鐵道網을 國際鐵道協定에 연속시킬 것을 聲明합니다.
4. 西伯林內 鐵道路線의 法的 地位는 1項에서 言及된 協定の 會員國이 된 다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5. 獨逸聯邦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된 다음에도 影響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에곤·바르」

ii) 內閣廳 「미카엘·콜」次官의 書翰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미카엘·콜」次官

1972年 5月 26日, 伯林 102.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곤·바르」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과 逸獨聯邦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에 調印한 後, 鐵道旅客 및 手荷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V)과 鐵道貨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M) 및 그 追加協定에 加入하기 爲해 申請하겠습니다.
2. 前記 1項에서 言及된 協定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同等資格을 가진 會員國이 될 때까지 交通條約 第11條는 留保될 것입니다.
3. 獨逸民主共和國은 現存의 鐵道網을 國際鐵道協定에 예측시킬 것을 성명합니다.
4. 西伯林內 鐵道路線의 法的 地位는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됨으로 因해서 影響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5. 獨逸民主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됨으로 因해서 影響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심심한 敬意를 表하며

「미카엘·콜」

iii) 內閣廳 「미카엘·콜」次官의 書翰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콜」次官

1972年 5月 26日, 伯林 102.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 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交通條約이 發効된 다음 兩國家間의 交通에 있어서 지금까지 通常的으로 이루어지던 交通量을 超過할 수 있도록 交通緩和措置가 施行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이 申請하는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該當機關은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親戚이나 親知가 獨逸民主共和國을 年間 數회에 걸쳐 訪問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萬一 獨逸民主共和國의 該當機關이나 團體의 招請狀이 있으면, 獨逸聯邦共和國의 市民은 商業, 文化, 「스포츠」, 宗教上的 理由로 獨逸民主共和國에 入國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獨逸聯邦共和國의 觀光客은 兩國家의 旅行社間의 合意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을 旅行할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으로 旅行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더 많은 乘用車를 使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으로 旅行할 때 휴대할 수 있는 購物의 限界量도 增大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이 긴급한 家族事情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을 旅行하는 것을 許可할 것입니다.

貴下께서 이 通告를 貴下의 政府에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미카엘·콜」

iv)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

1972年 5月 26日

53 「본」 1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伯林)

「미카엘·콜」次官 貴下

本人은 今日字 貴下의 書翰을 接受했음을 確認합니다. 貴下는 同 書翰에서 交通條約의 發効 以後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取하게 될 旅行緩和措置에 관한 情報을 알려 주었습니다.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에곤·바르」

4) 1972年 5月 26日 締結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條約에 署名하고 이틀 西伯林에 適用함에 즈음한 聲明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은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本人은 1972年 5月 26日字로 체결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條約의 諸規定

이 1971年 9月 3日字로 체결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과 符合되도록, 그리고 同條約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 엄수된다는 前提下에 이를 充實히 適用한다는 合意事項을 確認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은 그의 立法限度內에서, 4大國協定의 諸規定을 준수하고 西伯林에 대한 通行協定の 適用을 調整할 것이다. ……」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미카엘·콜」次官은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本人은 署名에 즈음하여 本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日 체결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의 諸規定과 符合되며 同條約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 엄수될 것이라는 前提下에 이를 充實히 適用한다는 合意事項을 確認한다. ……」

(出處: 1972年度 聯邦法令集 Ⅱ, 1,450—1,458面)

文 書 32

4大國協定의 最終議定書

1972年 6月 3日

(번 역 문)

美國, 英國, 佛蘭西, 소련 政府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 第Ⅲ部에 留意하고 또한 以下の 諸合意事項 및 規制를 異議없이 받아 들이면서 아래와 같이 合意한다.

1. 4大國 政府가 本議定書에 署名함으로써 4大國協定이 發効되며 同協定은 本議定書를 包含해서 過去에 締結되었거나 合意된 4大國協定과 諸決定을 侵害하지 못한다.
2. 4大國 政府는 兩獨政府의 관계 當局間에 合意된 아래와 같은 諸協定과 規制가 4大國協定과 同時에 發効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즉, 1971年 12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的 民間人 및 物資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協定』

1971年 12月 20日字 『旅行 및 訪問通行의 緩和 와 改善에 관한 西伯林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協定』

1971年 12月 20日字 『領土交換을 통한 包領問題 調整에 관한 西伯林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協定』

1971年 9月 30日字 『獨逸聯邦共和國 체신省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체신省 代表間的 會談議定書』第6項 및 第7項

3. 4大國協定과 本議定書에서 指摘한 이 後의 兩獨政府 關係 當局間的 諸協定 및 規制는 協商과 政에서 提起된 主要한 問題들을 解決하며 모두 계속 有効하다.
4. 4大國協定 및 上記 諸協定과 規制를 施行하는데 따르는 어려운 問題가 發生하여 이를 4大國中의 한 政府가 提起할 境遇, 또는 4大國協定 및 기타 諸協定과 規制의 一部가 履行되지 않을 경우, 上記 問題를 提起하는 政府는 協定에 따르는 應당한 義務를 履行하고, 4大國協定과 本議定書에 符合되도록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3大國政府에게 4大國協定과 本議定書의

관계 規定에 注意를 喚起시켜 必要한 4大國協議會 召集을 要求할 權利를 갖는다.

5. 本 議定書는 署名하는 날로부터 發効한다. 本 議定書는 1972年 6月 3日 伯林의 美國管轄區域 內의 前 聯合國管理理事會 建物에서 署名되었고, 똑같은 拘束力을 갖는 原本 4部를 各各 英語 佛語, 露語로 作成하였다.

美國政府代表	「윌리엄 P. 로저스」
佛蘭西政府代表	「모리스·슈망」
英國政府代表	「아랙·더그라스·홉」
소련政府代表	「안드레·그로미코」

(出處：1972年 9月 15日字 聯邦政府公報 第174號 附錄)

文 書 33

1972年 10月 16日字 國籍問題에 관한 規制法令

1972年 10月 16日

第 1 條

- (1) 『勞動者와 農民의 國家』의 法을 위반하고 1972年 1月 1日 以前에 獨逸民主共和國을 離脱한 뒤 獨逸民主共和國에 다시 居住하지 않은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本 法令의 發効와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 (2) 上記 (1)項에서 規定한 사람들의 子孫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當局으로 부터 許可를 받지 않고 獨逸民主共和國 領土밖에 居住할 경우에도 本 法令의 發効와 함께 獨逸民主共和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第 2 條

本 法令 第1條 (1)項에서 말한 사람들이 不法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을 離脱한 事實에 대하여는 刑事處罰을 訴追하지 않는다.

第 3 條

內閣은 本 法令의 施行에 必要한 施行令을 公布한다.

第 4 條

- (1) 本 法令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効된다.
- (2) 本 法令과 背馳되는 法은 폐기된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議會가 1972年 10月 16日 議決한 本 法을 公告한다.

1972年 10月 16日, 伯林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울브리히트」

(出處：獨逸民主共和國 法令集 I, 第18號 265面)

文 書 34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旅行에 관한 規定

1972年 10月 17日

非社會主義國家 및 西伯林을 旅行하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內閣이 決議한 施行令에 따라 다음과 같은 規制를 받는다.

第 1 條

- (1) 獨逸民主共和國 人民들이 친척들의 招請을 받고 緊急한 家族問題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의 旅行證明書를 認定하는 非社會主義國家 또는 西伯林을 旅行할 必要가 있을 경우, 이를 許可한다.
- (2) 本 規定 (1)項에서 말하는 緊急한 家族問題란 出產, 結婚, 重病, 死亡 등의 경우를 말한다. 以上の 事由는 關係 證明書 乃至 公共醫師의 診斷書를 添付해서 立證해야 한다.
- (3) 緊急한 家族問題로 旅行이 許可되는 對象은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祖父母, 父母, 子女, 姉妹들이다.

第 2 條

- (1) 法的 年金生活老人 및 身體障礙者들은 上記 第1條에 規定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宗親과 같이 非社會主義國家 또 西伯林的 친척을 訪問하는 旅行이 許可된다.
- (2) 旅行許可 期間은 年間 30日 限度內에서 一時 또는 數次에 나누어 許可된다. 歐洲 以外の 旅行對象國일 경우에는 3個月까지 許可된다.

第 3 條

- (1) 職場을 가진 者가 非社會主義國家 또는 西伯林을 旅行하기 위하여 許可申請을 提出할 경우에는 機關長의 同意書를 添付해야 한다.
- (2) 緊急한 用務로 非社會主義國家 또는 西伯林을 旅行할 경우에는 乘用車를 타고 가는 것이 許可된다.

第 4 條

本 規定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効된다.

1972年 10月 17日, 伯林

內務相 겸 獨逸人民警察總長

「덕 켈」

(出處: 獨逸民主共和國 法令集, II, 第61號 653面)

文 書 35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定 및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972年 10月 17日

1)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定

獨逸民主共和國를 旅行하는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이 決議한 施行令에 따라 다음과 같은 規制를 받는다.

第 1 條

- (1)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그들의 친척과 친지의 招請을 받아 個人用務로 또는 獨逸民主共和國 관계기관의 招請을 받아 商業, 文化, 「스포츠」, 宗教的 用務로 獨逸民主共和國를 旅行할 수 있다.
- (2) 친척과 친지 訪問을 위한 同 旅行期間은 年間 30日 限度內에서 一時 또는 數회에 나누어서 許可된다.
- (3) 滞在는 一般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 全地域에 걸쳐서 許可된다.

第 2 條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聯邦共和國 旅行社와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間의 관계協定에 따라 觀光客으로 獨逸民主共和國를 旅行할 수 있다.

第 3 條

다음의 경우에 個人乘用車로 旅行할 수 있다.

- a) 緊急한 事情이 있을 경우 또는 公共交通手段便으로는 目的地에 適時에 到着할 수 없거나 目的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便한 경우
- b) 3歲 以下の 어린이를 同伴할 경우
- c) 旅行者가 身體的 不便으로 個人乘用車의 利用이 不可避할 경우
- d) 商業, 文化, 「스포츠」, 宗教的 事由로 必要할 경우

第 4 條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이 旅行許可를 얻기 위한 資格證明書를 交付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申請한다.

- a)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人民 또는 招請機關은 관계 國家機關(通行證 및 旅行申告 事務所 또는 各市廳 및 郡廳)에 申請
- b) 獨逸聯邦共和國의 市民이 觀光旅行을 目的으로 할 경우에는 獨逸聯邦共和國 旅行社를 經由하여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 申請

第 5 條

本 規定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効한다.

1972年 10月 17日, 伯林

內務相 겸 獨逸人民警察總長

「덕 켈」

2) 1972年 10月 17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954年 9月 15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法令集 81號 786面) 第10條에 依據하여 1968年 6月 11日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 施行令 改正(法令集 II 58號 331面)에 대한 外務相의 同意下에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第1條

法 第4條 2項에 다음 事項을 包含시킨다.

(1)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檢問所 또는 第3國駐在 獨逸民主共和國 公館에서 資格證明書 또는 기타 關係서류를 提示하여 入國許可를 받는다.

資格證明書는 이를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內의 居住人 또는 招請機關이 該當 國家機關에 申請함으로써 發給된다.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이 觀光目的으로 旅行할 경우에는 該當機關을 통해서 資格證明書を 發給받는다.

出國許可는 獨逸人民警察의 關係部處를 통해서 얻는다.

第2條

本 施行令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効한다.

1972年 10月 17日, 伯林

內務相 겸 獨逸人民警察總長

「덕 켈」

(出處: 獨逸民主共和國 法令集 II, 第61號 653~654面)

文 書 36

基本條約 假調印에 즈음한 「쿨」次官 및 「바르」次官의 聲明

1972年 11月 8日

1) 「쿨」次官의 聲明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의 「미카엘·쿨」次官은 1972年 11月 8日 「본」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 妥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존경하는 「바르」次官, 신사, 숙녀 여러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계에 관한 基本條約은 歐洲大陸의 各國과 人民들의 平和 共存을 위해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열어놓은 獨·소條約과 獨·波條約의 體制에 符合되는 것이다.

上記條約들은 全體的으로 소련과 獨逸民主共和國 및 기타 社會主義國家들이 追求하는 積極의인 平和共存政策의 表現이다. 그것은 또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協商에서 現實에 主要意味를 두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兩獨關係의 原則에 관한 條約의 歷史的 意義는 이제 通行協定과 交通協定 체결 以後 綜合的이며 永續的인 基本關係를 發展시킴으로써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 특히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의 原則에 符合되도록 相互社會制度가 相異한 自主的인 두 國家의 關係를 樹立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노력은 만일 保守派의 妨害를 받지 않는다면 歐洲의 緊張緩和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우리의 協商을 통해서 얻어낸 또 하나의 매우 重要한 成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會員加入을 위한 覺書에 署名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오래동안 지체되었던 일을 했고 또한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하였다.

그리고 今日 合意 또는 署名된 文書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마침내 相互 善隣關係속에서 平和共存할 수 있는 安全한 基礎를 마련하려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意志를 表現하고 있다.

그래서 基本條約과 追加議定書는 兩獨間의 具體的인 協力을 위한 多方面的인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런 協力에 必要한 條約과 協定을 締結할 決心이다.

郵便·通信分野에서는 이미 基本條約이 署名된 後에 必要한 協商을 始作할 수 있게 되었다.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은 基本條約 署名으로써 發効하게 된다.

現存하는 國境線의 標示 및 境界線區劃問題의 規制 등을 위해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로부터 그 任務를 賦與받은 委員會는 基本條約 署名後 作業을 始作하게 된다.

基本條約이 發効되면 무엇보다도 旅行者 交通問題가 훨씬 改善될 것이다. 雙方間에는 이에 관련된 情報가 相互 交換되었다.

우리는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延長문제를 伯林(西部)에 관한 4大國協定과 符合되도록 每事에 있어 協議할 것을 本條約 署名을 통해서 確認하기로 合意하였다.

本條約 署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獨逸民主共和國에 駐在하는 獨逸聯邦共和國 代表部가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의 利益을 代表한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나는 또한 記者活動保障에 관해서 今日 우리가 署名한 書翰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에 符合되도록 適用됨으로써 同 書翰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 잘 履行되어야 한다는 合意事項을 強調한다. 勿論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當局間의 諸協定은 다른 모든 協定에 關係없이 계속 有效하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은 重要한 國際的 寄與를 하게 된다. 즉 예컨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歐洲安保會議의 準備 및 進行에 積極的이며, 同等한 立場에서 參加하게 된 것이다.

本 協商을 통해서 歐洲의 平和와 緊張緩和 그리고 兩獨의 國民들에게 많은 利得을 주게 되었다. 本條約의 文書에서 言及된 內容들은 우리가 몇年 前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成果에 대해서 기뻐한다.

1972年 4月 18日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中央委員會 第1書記 「에리히·호네커」가 「쾨피야」市에서 行한 그의 重大演說 속에 밝힌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正常的 善隣關係로의 發

展過程』에서 우리는 主要한 成果를 이룬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國은 關係正常化를 위한 基本條約의 署名을 앞두고 同 條約締結 이후 雙方의 批准節次를 거쳐서 條約의 全體內容이 發効될 수 있도록 모든 態勢를 取하고 있다.

끝으로 本人은 雙方의 代表團成員들과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매우 어렵고 항상 전문적인 協商에 參與하여 成果를 거두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2) 「바르」次官의 聲明

獨逸聯邦共和國 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은 1972年 11月 8日 「본」의 首相廳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을 締結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今日 合意된 條約은 歐洲의 緊張緩和 및 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國際的 努力의 主要基礎다. 이로써 兩獨逸國家는 그러한 發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된다.

今日 合意된 基本條約은 오랜 協商에 終止符를 찍는 것이다. 우리의 協商은 1970年 11月 27日에 始作되었다. 거의 2年동안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協議하여 왔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通行協定 및 施行되기 始作한 交通協定の 두 停留場은 오늘의 條約을 낳은 必須的 先走者들이다.

本人은 雙方의 모든 協商 參加者들과 특히 「콜」博士 貴下에게 本人의 기쁨을 傳하고 싶고 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 雙方의 代表團이 2年間 平均 10日 간격으로 만나게 된 것은 거의 慣例에 없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다루어야 했던 問題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거의 慣例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本人은 때때로 意見對立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게 해준 雙方의 솔직하고 實際的 姿勢와 建設的인 成果를 이룩하려는 意志에 감사하고 싶다. 우리가 바란 것은 公明正大한 條約이다.

우리는 根本問題에서는 雙方間에 克服할 수 없는 見解差異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點을 감출 必要는 없다. 우리는 한쪽이 다른 쪽의 主張을 強制로 拋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民族問題에도 該當되는 原則이다. 우리는 4大國의 權利와 義務에 관해서 闡明된 것처럼 國際法的 現狀을 變更시킬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相互關係를 正常化하기를 願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協商終結은 規制된 共存關係를 넘어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하는 歷程上에 必須的인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本 條約은 다만 雙方의 政府가 願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兩獨逸國民들이 그것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日常生活의 모든 重要한 分野에 대한 實際的 規制問題에 큰 價値를 賦與하였던 것이다.

雙方은 本 條約에 署名함으로써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擴大問題가 1971年 9月 3日字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에 符合되도록 每事에 協議해서 施行된다는 點을 確認하게 된다.

獨逸民主共和國에 常駐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的 利益을 代表하게 된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効하다.

本人은 또한 記者活動保障에 관해서 今日 우리가 署名한 書翰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에 符合되도록 適用됨으로써 同 書翰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도 잘 履行되어야 한다는 合

意事項을 強調한다.

本人은 以外에도 國境線 兩側의 廣範圍한 地域에 사는 가족들이 西쪽에서 東쪽으로 家族再會를 容易하게 하도록 한 合意事項과 訪問 滞在問題가 改善된 것을 重要視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兩獨國民들은 새로운 生活을 經驗하게 된다. 우리는 1年前만 해도 關係正常化가 比較的 短期間內에 이렇게 빠른 速度로 發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모두 兩獨國家間的 同等權을 基礎로 하고 國際法的 拘束力을 갖는 協定을 基礎로 함으로써 可能하였다.

이것은 또한 國際的 分野에서도 寄與를 하게 된다. 2週日 以內에 우리 兩獨國家는 同等한 資格으로 歐洲安保 및 協力에 관한 準備會議에 參加하게 된다. 明年에는 雙方의 軍縮問題가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이다.

歐洲의 中心部이면서 歐洲問題의 中心이 되고 있는 두 獨逸國家가 故意로 平和의 根本問題를 서로 協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正常的인 일이 아니다. 政治的 協議에 관한 合意는 그래서 有益하다.

우리는 本 基本條約을 통해서 兩獨逸國家間的 斷絶을 解消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하는데 20年 以上の 期間이 所要되었다는 事實을 잊을 수가 없다.

(出處：1972年 11月 10日字 公報 第156號)

文 書 37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의 「에곤·바르」次官과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쿨」博士間의 郵便 및 電信業務에 관한 書翰交換

1972年 11月 8日

1)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發信：聯邦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쿨」博士 貴下

尊敬하는 「쿨」次官!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에 假調印한 後, 郵便 및 電信協定을 締結하기로 合意합니다. 이 協定을 締結할 때까지는 現存의 合意와 節次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兩 國家가 萬國郵便聯合(UPU) 및 國際通信聯盟 (UIT)에 同等資格으로 加入할 必要性이 있음을 참작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側이 協商을 始作한 후 上記 機構에 加入하기 위해

必要的 措置를 取할 것임을 認知하고 있습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바르」署名

2) 內閣廳 「미카엘·콜」博士의 書翰

發信：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伯林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곤·바르」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氏!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에 假調印한 후 郵便 및 電信協定을 締結할 것에 合意합니다. 이 協定이 締結될 때까지는 現存의 合意와 節次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兩 國家가 萬國郵便聯合(UPU) 및 國際通信聯盟(UIT)에 同等資格으로 加入할 必要性을 참작하여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게 協商이 始作되면 獨逸民主共和國은 上記 機構에 加入하는데 必要的 措置를 取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미카엘·콜」博士署名

(出處：1972年 11月 8日字 公報 155號)

文 書 38

「유엔」加入申請에 대한 書翰交換과 同 議定書에 관한 聲明

1972年 11月 8日

1)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發信：聯邦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伯林

尊敬하는 「콜」次官!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內法에 따라 유엔機構에 加入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는 點을 認知했습니다.

兩國의 政府는 加入申請書 提出時期에 대해 相互通告할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며

「바르」署名

2) 內閣廳 「미카엘·뮐」次官의 書翰

發信：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伯林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곤·바르」 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氏!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內法에 따라 유엔機構에 加入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는 點을 認知했습니다.

兩國의 政府는 加入申請書 提出時期에 關係 相互通告할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며

「뮐」博士署名

3) 「유엔」加入申請에 關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i)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聯邦議會가 開會된 後에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엔加入을 申請하는데 必要한 國內的 與件을 造成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취할 것이다.

ii) 兩國家代表의 聲明

兩國家의 政府는 加入申請書를 同時에 提出하기로 相互通告한다.

(出處：1972年 11月 8日字 公報 155號)

文 書 39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 同 書翰交換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假調印時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合意事項을 西伯林에 適用하는데 대한 雙
方の 聲明

1972年 11月 8日

1) 書翰 交換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의 書翰

發 信 : 聯邦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伯林

尊敬하는 「콜」博士!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委任을 받아 獨逸民主共和國의 記者가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活動하
는 問題에 대해 貴下에게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그의 現行 法令의 테두리內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記者와 그 補助員들이 職業
的인 活動과 自由로운 情報 및 報道活動을 할 權利를 保障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合法的인 職業活動, 特派員의 活動뿐만 아니라 相互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常
駐特派員의 職業上의 居住를 보장합니다.

常駐特派員에게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保障됩니다.

- 他國의 特派員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 權利
- 職業上 居住할 경우 通常의인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何時라도 出入할 수 있는 權利
- 報道, 意見 및 論評을 지체없이 送稿하는 것을 포함하여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서 活動하고 作業
할 수 있는 與件
- 通常의으로 一般人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利用
- 一般的으로 一般人과 言論機關에게 公開될 수 있는 公的인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人物과 官廳 또는 機關으로부터 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權利
- 個人의 職業上 必要한 物品, 資料 및 生活必須品을 持參할 수 있는 權利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 特派員이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서 活動하기 위한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施行되는 方式에 따른 居住地登錄

—公衆保健, 他人의 權利 및 自由, 安全과 防犯을 위한 諸法規과 法令의 嚴守

本 通報에서 말하는 記者란 合法的으로 또는 職業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의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週刊紙의 報道要員, 寫眞師, 技術者로서 獨逸民主共和國의 日刊紙, 定期刊行物, 報道機關, 「라디오」, 「텔레비전」放送 및 週刊紙를 위해 報道, 意見, 論評을 포함하여 情報을 蒐集, 受領하고 반포하는데 從事하는 者를 말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마르」

ii) 內閣廳 「미카엘·콜」次官의 書翰

發 信 :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伯林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곤·마르」 貴下

「본」

尊敬하는 「마르」氏!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委任을 받아 獨逸聯邦共和國의 記者가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는 問題에 대해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의 現行 法令의 테두리內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記者 및 그들의 補助員들에게 職業的인 活動과 自由로운 情報 및 報道活動을 할 權利를 保障한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合法的인 職業活動, 特派員의 活動뿐만 아니라 相互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常駐 特派員의 職業上의 居住를 보장합니다.

常駐 特派員에게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보장됩니다.

—他國의 特派員과 同特한 待遇를 받을 權利

—職業上 居住할 경우 通常的인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何時라도 出入할 수 있는 權利

—「뉴우스」, 意見 및 論評을 지체없이 送稿하는 것을 包含하여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고 作業할 수 있는 與件

—通常的으로 一般人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利用

—一般的으로 一般人에게나 言論機關에게 公開될 수 있는 公的인 情報을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人物과 官廳 또는 機關으로부터 情報을 蒐集할 수 있는 權利

—個人的 職業上 必要한 物品, 資料 및 生活必須品을 持參할 수 있는 權利

獨逸聯邦共和國의 常駐 特派員이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기 위한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施行되는 方式에 따른 居住地 登錄

—公衆保健, 他人의 權利와 自由, 安全과 防犯을 위한 諸法規와 法令의 嚴守

本 通報에서 말하는 記者란 合法的으로 또는 職業的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의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週刊紙의 報道要員, 寫眞師, 技術者로서 獨逸聯邦共和國의 日刊紙, 定期刊行物, 報道機關 「라디오」와 「텔레비전」放送 및 週刊紙를 위해 記事, 論評을 포함하여 情報를 蒐集, 受領하고 反포하는데 從事하는 者를 말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콜」博士

2)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i) 獨逸民主共和國의 聲明

1. 特派員의 活動에 관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은 下記事項을 確認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의 特派員은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모든 通常的인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出入하며 情報와 意見 및 論評을 지체없이 傳達하는 것을 포함하여 他國의 特派員과 같은 作業 및 活動與件을 보장 받는다. 그들은 通常的으로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을 利用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一般人과 言論機關에 公開될 수 있는 公的인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人物과 機關으로부터 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關係機關으로부터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職業的인 活動을 하도록 許可를 받은 후에는 個人的인 職務를 위해 必要한 物品, 資料 및 生活必須品을 持參할 수 있다.
2. 常駐 特派員의 居住登錄과 活動許可 業務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法令에 依據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機關이 取扱한다.
3.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에 駐在하는 그들의 常駐 特派員이 法人인 『獨逸聯邦共和國 駐在 外國人記者 俱樂部』에 加入하는 것을 希望한다.

ii)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1.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 特派員이 法人인 『獨逸聯邦共和國駐在 外國人記者 俱樂部』에 加入하려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希望에 대하여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이 同 俱樂部의 約定에 어떤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한다. 다시 말해서 約定은 이 俱樂部 自體의 權限에 속한다.
2. 그럼에도 不拘하고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 特派員에게 他國의 特派員과 同等한 活動與件을 保障한다. 즉 『獨逸聯邦共和國 駐在 外國人記者 俱樂部』에 加入하는 경우와 같은 活動與件을 保障한다. 聯邦政府가 一般的으로 外國 特派員들에게 許容하는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 特派員에게도 모든 情報에 接할 수 있도록 한다. 聯邦政府는 特派員을 公式의 行事

에招待할 때 獨逸民主共和國의 特派員을 差別하지 아니한다.

3. 聯邦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活動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特派員에게도 記者會見時 質問權을 賦與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與件을 保障할 것이다.

3) 假調印時 記者의 活動保障에 관한 合意事項을

西伯林에 適用하는데 대한 雙方的 聲明

本人은 오늘 調印된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翰交換의 規定內容이 1971年 9月 3日 締結된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에서도 嚴守된다는 前提下에 同 書翰의 規定을 西伯林에 適用할 것을 合意한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市 當局間의 合意事項은 이것으로 저속되지 않는다.

〈出處：1973年 2月 9日字, 印刷物 7/153〉

文 書 40

4大國의 聲明

1972年 11月 9日

外務省 報告：佛蘭西, 英國, 美國政府大使는 1972年 11月 9日 佛蘭西, 英國, 蘇聯 및 美國政府자 같은 날 4個國首都에서 同時 發表한 다음의 聲明을 獨逸聯邦政府에게 傳達하였다.

『佛蘭西共和國,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大英聯邦王國 및 「아메리카」合衆國 政府는 그들의 大使들을 통해 過去의 4大國 管理委員會 建物에서 一連의 會議를 開催한 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加入申請을 할 경우 4大國政府는 그 加入을 支援할 것에 合意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會員資格이 결코 4大國의 權限과 責任 또는 이에 相應하는 4大國間의 協定, 決定 및 慣行을 侵害하는 것이 아님을 確認한다.』

本 聲明에 앞서 佛蘭西, 英國 및 美國大使와 駐獨逸民主共和國 蘇聯大使가 伯林에서 1972年 10月 23日부터 11月 5日까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유엔」加入申請 意思와 관련하여 4大國의 權利와 責任에 관한 意見交換을 하였다.

〈出處：1972年 11月 11日字 公報 157號〉

文 書 4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과 其他 事項

1972年 12月 21日

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

條約國은

平和維持에 대한 그들의 責任에 留念하고,

歐洲에서의 緊張緩和와 安全保障에 기여하려는 努力에서
現歐洲의 國境內의 모든 國家에 대한 不可侵, 領土保全, 그리고 主權尊重이 平和를 위한 基本條
件임을 認識하며,

따라서 兩獨逸國家는 그들의 相互關係에서 武力行使나 威脅을 抑制해야 함을 認定하고, 歷史的
事實에 基礎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民族問題를 포함한 根本的인 問題에 있어서
그들의 見解差에도 不拘하고,

兩獨逸國家 國民의 福祉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相互協力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 正常的 善隣關係
를 發展시킨다.

第 2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에 規定된 目的과 原則, 특히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全의 尊重, 自決權, 人權保護 및 無差別에 관한 目的과 原則에
따른다.

第 3 條 「유엔」憲章에 따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紛爭問題를 平和의 方法으
로 解決하고 武力에 의한 威脅이나 그 使用을 止揚한다. 그들은 現在나 將來에도 그들의 現存 境界
線의 不可侵을 再確認하며 그들의 領土保全을 無條件 尊重할 責任을 진다.

第 4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家의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國際적으로 代表
하거나 다른 國家를 代理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原則에 合意한다.

第 5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歐洲 諸國間의 平和的 關係를 促進시키고 歐洲에서의
安全과 協力を 위해 기여한다.

雙方은 歐洲內에서 武力和 軍備를 減縮시키려는 努力을 支持하며 이로 因하여 參加國의 安全을
沮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國際的 安全保障을 위해 實効性 있는 國際的 監視下에 全般
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小를 目標로 하여 특히 核武器와 其他 大量虐殺武器分野에 있어서의 軍備制限
과 減縮을 위한 努力을 支持한다.

第 6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의 統治權이 各自의 領土內에서만 有効하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雙方은 兩國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 相互 그 獨立성과 自主성을 尊重한다.

第 7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關係를 正常化하는 過程에서 實際的이고 人
道的 問題를 規制할 用意在 있음을 宣言한다. 雙方은 本 條約의 原則에 立脚해서 相互 利益을 위하
여 經濟, 學術, 技術, 交通, 司法, 郵便, 電信業務, 保健, 文化, 「스포츠」, 環境保護 등의 分野의 協
力を 發展시키고 促進시키기 위해 協定을 締結할 것이다. 細部事項은 追加議定書에 規定되어 있다.

第 8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常駐代表部를 서로 交換한다. 代表部는 雙方의 政府
所在地에 各其 設置된다. 代表部設置와 關係되는 實際的 問題는 追加로 規定된다.

第 9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以前에 雙方이 締結한 모든 雙務的, 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合意한다.

第 10 條 本 條約은 批准을 要하며 批准에 관한 覺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發効한다. 이에 대한 證

據로서 兩 條約國의 全權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하였다. 1972年 12月 21日 伯林에서 獨逸語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을 代表하여

「에곤·마르」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미카엘·쿨」

2) 獨逸統一에 關해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

共和國 政府에게 1972年 12月 21日에 보낸 書翰

發 信 :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쿨」博士 貴下

伯林

오늘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關한 基本條約에 署名한 것과 關聯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歐洲平和維持에 寄與하며 獨逸民族의 自由로운 自決로 國家統一을 達成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的 目標에 本 條約이 矛盾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하였음을 通告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며

「마르」

3) 基本條約에 대한 追加議定書

I

第3條에 대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는 兩國政府가 任命한 者로 委員會를 構成하기로 合意한다. 同委員會는 兩國家間의 現存 境界線表示를 再檢討하고 必要에 따라 이를 改正, 補完하며, 國境線問題에 關해 必要한 報告文書를 作成한다. 同委員會는 同時에 國境線에 關한 問題 以外에 예컨대 水力管理, 「에너지」供給 및 災害防止와 같은 현안 問題를 規制하는데 努力한다.

本 委員會는 이 條約이 署名된 후 그들의 作業을 시작한다.

II

第7條에 대하여

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易은 現存協定의 原則에 立脚하여 展開된다. 獨逸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經濟關係의 계속적인 發展을 促進하며 지금까지의 規制를 調整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長期的인 協定을 締結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經濟와 技術分野에서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協力을 促進하고 이에 要求되는 條約을 締結할 意圖가 있음을 表明한다.
3. 1972年 5月 26日字의 條約과 더불어 始作된 交通分野에서의 協力은 擴大, 強化된다.
4.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法的 救助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위하여 특히 民法과 刑法分野의 法律共助 關係를 可能한 限 간소하게 그리고 合理的으로 條約上 規制할 意思가 있음을 表明한다.
5.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萬國郵便聯盟 및 國際電信條約의 原則에 立脚하여 郵便 및 電信協定을 締結하기로 合意한다. 雙方은 同 協定을 萬國郵便聯盟(UPU)과 國際通信聯盟(UIT)에 通告한다. 同 協定에는 現存의 合意事項과 雙方에게 有利한 節次가 包含된다.
6.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保健分野에서 協調할데 대한 關心을 表明한다. 雙方은 條約에 依據하여 許容된 範圍內에서 醫藥品과 特殊病院 및 診療所의 治療方法의 交流에 대해서도 規制할 것에 合意한다.
7.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文化分野에서의 協調를 發展시킬 意圖를 表明한다. 이 目的을 위해 雙方은 政府間의 協定締結에 관한 協商을 始作한다.
8.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이 條約이 署名된 후 「스포츠」關係를 增進하기 위한 協定을 통해 「스포츠」關係機關을 支援할 用意가 있음을 強調한다.
9. 環境保護 分野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相互間의 損害와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 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10.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書籍, 雜誌, 「라디오」 및 「텔레비전」製作物의 相互間 購入을 擴大할 目的으로 協商을 進行한다.
1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當事者의 便宜를 위해 非商業性 支拂 및 清算去來를 規制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한다. 雙方은 相互間의 利益을 위해 社會的인 觀點에서 最短期間內에 協定을 締結할 것을 우선적으로 考慮한다.

財産問題에 관한 條約議定書 附錄

財産問題에 관한 法的 見解差異로 인하여 이 問題는 條約으로 規制될 수 없었다.

4) 國籍問題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聲明

獨逸聯邦共和國은 議定書에 關해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國籍問題는 條約에 規制되지 않았다.』

獨逸民主共和國은 議定書에 關해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國籍問題의 規制를 容易하게 할 것이라는 立場을 堅持한다.』

5) 家族의 再會와 旅行規制緩和 및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註釋 添加)

i) 內閣廳 「미카엘·쿨」次官의 書翰

發信：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日, 伯林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 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長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이 오늘 署名된 것과 관련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이 條約이 發効된 이후 關係正常화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다음의 分野에 관한 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措置를 取한다.

1.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
2. 1972年 5月 26日字의 書信交換의 內容을 계속 履行하는데 있어서 觀光을 포함하여 兩獨間 旅行 및 訪問交流를 改善하기 위한 措置
3.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非商業性 物資交流를 改善하는 문제
 - 兩獨間의 贈物用 小包 및 手荷物 交流의 規制緩和
 -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에 있어서 非商業性 物資 持參의 規制緩和
 - 現在의 搬入 및 搬出規定에 대한 再檢討
 - 이삿짐 및 遺産에 대한 許可節次의 簡素化

敬意를 表하며

「쿨」 博士

i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의 書翰

發信：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쿨」博士 貴下

伯林

尊敬하는 「쿨」氏!

本人은 오늘 아래와 같은 內容의 貴下의 書信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의 署名과 관련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本 條約이 發効한 後 關係正常化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다음의 分野에 대한 規定을 마련할 것입니다.

1.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
2. 1972年 5月 26日字의 書翰交換의 內容을 계속 履行하는데 있어서 觀光을 包含하여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한층 더 改善하기 위한 措置
3.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 兩獨間의 膳物用 小包 및 手荷物交流의 規制緩和
 -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에 있어서 非商業性 物資의 持參에 대한 規制 緩和
 - 現存의 搬入 및 搬出規定에 대한 再檢討
 - 이삿짐 및 遺産에 대한 許可節次의 簡素化

敬意를 表하며

「바르」

6) 家族의 再會와 旅行規制緩和 및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한 書翰交換에 대한 說明

基本條約이 發効함과 더불어 下記의 緩和策이 施行된다.

1. 離散家族의 再會問題:
 - 夫婦의 再會
 - 子女의 保護가 必要한 父母의 移住, 특히 父母中 한 사람만 生存한 경우. 이것은 祖父母가 그들의 孫子에게 移住하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 특수한 例外的인 경우의 結婚許可
2.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의 改善:
 -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이 獨逸聯邦共和國을 訪問할 수 있는 許可의 범위中 긴급한 家族用務를 銀婚式과 金婚式까지 擴大
 - 긴급한 家族問題로 旅行하는 경우, 이에 適用되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範圍를 異腹兄弟까지 擴大
 -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을 通行하는 경우 通行「비자」發給節次를 鐵道 및 內陸船 交通便으로까지 擴大(書面申請의 省略)
 -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서 正當한 證明을 받아 通過旅行(伯林交通은 除外)을 中斷할 수 있는 措置
 - 獨逸民主共和國의 港口를 지나는 貨物船에 乘船한 獨逸聯邦共和國의 旅行者가 關係 港口都市에서 一泊 滞在하기 위한 上陸許可(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의 要請으로 一泊하는 것을 包含하여)

獨逸聯邦共和國 國境隣接地에 居住하는 住民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隣接地에서 滞在할 수 있는 措置 :

- 附錄 1에 열거된 獨逸聯邦共和國 地域의 住民은 年 30日의 限度內에서 1回 申請으로 9回까지 旅行을 하며, 附錄 2에 열거된 獨逸民主共和國의 地域과 都市에서 一泊 滞在하는 것이 許可된다. 但, 이 旅行은 3個月의 期間內에 行해진다.
- 申請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境隣接地에 居住하는 親戚이나 親知를 통하여 提出하거나 혹은 獨逸聯邦共和國의 上記 地域에 居住하는 者가 書面으로 訪問地域을 管轄하는 東獨의 人民警察署에 提出한다.
- 許可에 있어서는 每回 一泊 滞在用的 「비자」를 9개까지 受領할 資格을 주는 『「비자」受領을 위한 資格證明書』가 發給된다. 이 資格證明書を 提示하면 國境通過地域에서 每回 一泊用 「비자」가 發給된다.
- 資格證明書에는 入國希望地가 表示된다.
- 「비자」를 發給받기 위한 前提條件은 法規에 따라 의무적으로 最少限度의 DM貨를 交換하는 것이다.
- 資格證明書의 裏面에는 그 때 그 때 『「비자」가 發給됨』이라는 인장이 찍힌다. 9번째의 「비자」가 發給된 후 또는 効力を 喪失한 후에는 이 資格證明書는 回收된다.
- 觀光客으로서 當日치기의 旅行을 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居住者는 警察에 申告할 必要가 없다.
-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疾病, 不意의 事故)에는 必要한 期間동안의 滞在許可와 「비자」가 人民警察署의 關係機關에서 發給될 수 있다.

3.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하여 :

- 兩獨間의 旅行交流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커피」 500그램의 輸入制限量을 1,000그램으로 增加한다.
- 旅行交流에 있어서 지금까지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에 적용되어 온 「필름」, 寫眞原版, 「스라이드」, 印畫紙, 音盤의 輸入禁止를 廢止한다. (音盤의 경우엔 文化的 遺產品이거나 眞正한 文化的인 現代創作品이어야 한다.)

兩獨間의 贈物 및 手荷物 交流 :

- 織物類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一般의 輸出禁止를 廢止하되 每 郵送時에 獨逸民主共和國 貨로 60「마르크」의 가격까지로 制限한다. (一定한 種類, 예컨대 幼兒服, 兒童服, 作業服은 除外된다.)
- 贈物郵送에 대한 輸出許容 限界를 獨逸民主共和國貨로 30「마르크」에서 100「마르크」로 緩和
- 音盤의 輸出入에 대한 一般의인 禁止를 廢止(文化的 遺產品이거나 文化的 現代創作品에 한함.)

7) 附屬文書 I

獨逸聯邦共和國內의 郡行政地域 :

1. 「오스트—홀슈타인」(Ost-Holstein)
2. 「프뮌」(Plön)
3. 「뤼베크」市(Lübeck)
4. 「노이뮌스터」市(Neumünster)
5. 「바트 세게베르크」(Bad Segeberg)
6. 「스토르마른」(Stormarn)
7. 「헤르조그툼 라우엔부르크」(Herzogtum Lauenburg)
8. 「하르부르크」(Harburg)
9. 「뤼네부르크」(Stadt und Landkreis Lüneburg)
10. 「뤼코프—단넨베르크」(Lüchow-Dannenberg)
11. 「윔젠」(Uelzen)
12. 「졸타우」(Soltau)
13. 「셀레」(Stadt und Landkreis Celle)
14. 「기프호른」(Gifhorn)
15. 「부르크도르프」(Burgdorf)
16. 「볼프스부르크」市(Stadt Wolfsburg)
17. 「헬름스테트」(Helmstedt)
18. 「브라운슈바이크」(Stadt und Landkreis Braunschweig)
19. 「파이네」(Peine)
20. 「볼펜뷔텔」(Wolfenbüttel)
21. 「잘쯔기터」市(Stadt Salzgitter)
22. 「힐데스하임」市(Stadt Hildesheim)
23. 「힐데스하임 마린부르크」(Hildesheim Marienburg)
24. 「고스탈」(Goslar)
25. 「알펠트」(Alfeld)
26. 「간델스하임」(Gandelsheim)
27. 「오스테로데」(Osterode)
28. 「두더슈타트」(Duderstadt)
29. 「노르트하임」(Northeim)
30. 「아인베크」(Einbeck)
31. 「괴팅겐」(Göttingen)
32. 「뮌덴」(Münden)
33. 「캇셀」(Stadt und Landkreis Kassel)
34. 「뤼첸하우젠」(Witzenhausen)
35. 「에슈베게」(Eschwege)
36. 「멜슁겐」(Melsungen)

37. 「프리쯔랄—홈베르크」(Fritzlar-Homberg)
38. 「헬스펠트—로텐부르크」(Hersfeld-Rotenburg)
39. 「제겐하인」(Ziegenhain)
40. 「풀다」(Stadt und Landkreis Fulda)
41. 「보겔스베르크」(Vogelsberg-Kreis)
42. 「쉬뤼히터른」(Schlüchtern)
43. 「바트 노이슈타트 아·테·잘레」(Bad Neustadt a.d. Saale)
44. 「바트 키싱엔」(Bad Kissingen)
45. 「쉬바인 푸르트」(Stadt und Landkreis Schweinfurt)
46. 「하스베르크」(Haßberg-Kreis)
47. 「코부르크」(Stadt und Landkreis Coburg)
48. 「리히텐펠스」(Lichtenfels)
49. 「밤베르크」(Stadt und Landkreis Bamberg)
50. 「포르히하임」(Forchheim)
51. 「크로나흐」(Kronach)
52. 「쿨롬바흐」(Kulmbach)
53. 「바이로이트」(Stadt und Landkreis Bayreuth)
54. 「호프」(Stadt und Landkreis Hof)
55. 「분시델」(Wunsiedel)
56. 「티르셴로이트」(Tirschenreuth)

8) 附屬文書 II

獨逸民主共和國內의 郡行政地域：

1. 「비스마르크」(市와 郡) [Wismar (Stadt-und Landkreis)]
2. 「그레베스뮐렌」(Grevesmühlen)
3. 「가데부쉬」(Gadebusch)
4. 「쉬베린」(市와 郡) [Schwerin (Stadt-und Landkreis)]
5. 「하게노프」(Hagenow)
6. 「루드비히스루스트」(Ludwigslust)
7. 「파르힘」(Parchim)
8. 「페르레베르크」(Perleberg)
9. 「제하우젠」(Seehausen)
10. 「잘쯔베델」(Salzwedel)
11. 「오스터부르크」(Osterburg)
12. 「칼베」(Calbe)
13. 「클뢰제」(Klötze)

14. 「쉬텐달」(Stendal)
15. 「가르데레젠」(Gardelegen)
16. 「탕어휘테」(Tangerhütte)
17. 「할덴스레벤」(Haldensleben)
18. 「볼미르슈테트」(Wolmirstedt)
19. 「반쯔레벤」(Wanzleben)
20. 「오셸스레벤」(Oschersleben)
21. 「스타스푸르트」(Staßfurt)
22. 「할버슈타트」(Halberstadt)
23. 「아셸스레벤」(Aschersleben)
24. 「베르니게로데」(Wernigerode)
25. 「크베드린부르크」(Quedlinburg)
26. 「노르트하우젠」(Nordhausen)
27. 「장에하우젠」(Sangehausen)
28. 「보르비스」(Worbis)
29. 「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
30. 「존더스하우젠」(Sondershausen)
31. 「뮐하우젠」(Mühlhausen)
32. 「랑엔잘짜」(Langensalza)
33. 「아이제나흐」(Eisenach)
34. 「고타」(Gotha)
35. 「바트 잘쑹엔」(Bad Salzungen)
36. 「쉬말칼덴」(Schmalkalden)
37. 「마이닝엔」(Meiningen)
38. 「술」(Suhl)
39. 「힐트부르크하우젠」(Hildburghausen)
40. 「일메나우」(Ilmenau)
41. 「노이하우스」(Neuhaus)
42. 「존네베르크」(Sonneberg)
43. 「루돌슈타트」(Rudolstadt)
44. 「잘펠트」(Saalfeld)
45. 「피스넥」(Pößneck)
46. 「로벤슈타인」(Lobenstein)
47. 「쉬라이쯔」(Schleiz)
48. 「쫘이렐로다」(Zeulenroda)
49. 「그라이쯔」(Greiz)

50. 「프라우엔」(市와 郡) [Plauen(Stadt-und Landkreis)]
51. 「외스니쯔」(Ölβnitz)
52. 「라이헨바흐」(Reichenbach)
53. 「아우어바흐」(Auerbach)
54. 「클링엔탈」(Klingenthal)

9) 國境通過地域 增設에 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

i) 內閣廳 「미카엘·쿨」次官의 書翰

發信 :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日, 伯林

聯邦首相廳

「에곤·마르」政務長官 貴下

「본」

尊敬하는 「마르」長官!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基本條約의 發効와 同時에 人的 交流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에 接한 下記의 陸路國境通過地點을 開放합니다.

—「잘즈베델」(Salzwedel)

—「워비스」(Worbis)

—「마이닝엔」(Meiningen)

—「아이스펠트」(Eisfeld)

敬意를 表하며

「쿨」博士

ii) 聯邦首相廳 「에곤·마르」政務長官의 書翰

發信 :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長 「미카엘·쿨」博士 貴下

伯林

尊敬하는 「쿨」次長!

1972年 12月 21日字 貴下の 書翰과 관련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基本條約의 發効와 同時에 人的 交流을 위하여 貴下가 通告한 陸路國境通過地點에 相應하는 다음의 地點을 開放합니다.

- 「윔젠」(Uelzen)
- 「두더쉬타트」(Duderstadt)
- 「바트 노이쉬타트」(Bad Neustadt)
- 「코부르크」(Coburg)

敬意를 表하며

「바 르」

10) 條約 第9條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간의 覺書原文에 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翰交換

i)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의 書翰

發信：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日, 「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伯林

尊敬하는 「콜」次官!

本人은 聯邦政府 外務省이 獨逸聯邦共和國에 駐在한 佛蘭西大使, 英國大使 및 美國大使에게 下記事項을 覺書로 傳達한다는 것을 貴下에게 通報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1972年 12月 21日에 締結된 基本條約의 第9條와 關聯하여 4大國의 權利 및 責任과 이와 關係되는 4大國의 諸 合意事項, 決定 및 慣行은 同 條約으로 因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바 르」

ii) 內閣廳 「미카엘·콜」次官의 書翰

發信：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日, 伯林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 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長官!

本人은 今日 外務省이 駐獨逸民主共和國 蘇聯大使에게 覺書를 통해서 下記事項을 傳達한다는 것을 貴下에게 通報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1972年 12月 21日에 締結된 基本條約 第9條와 관련하여 4大國의 權利와 責任 및 이와 關係되는 4大國의 諸合意事項, 決定 및 慣行은 本條約으로 인하여 影響 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콜」博士

11) 西伯林問題와 관련한 雙方的 聲明

追加議定書 第7條에 明示된 協定과 規定을 1971年 9月 3日字의 4大國協定에 따라서 西伯林에도 擴大 適用시킬 것을 合意할 수 있다는데 雙方은 見解를 같이 한다.

獨逸民主共和國에 駐在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常駐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의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의 利益을 代表한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市 當局間의 合意事項은 影響을 받지 않는다.

12) 條約署名時 政治的 協議에 대한 口頭合意事項

兩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를 추진하는 過程에서 雙方의 利害, 특히 歐洲의 平和保障에 寄與하는 問題에 關係해서 協議할 것에 合意하였다.

13) 國境委員會의 任務에 關한 議定書에 대한 兩首席代表의 聲明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關한 基本條約 追加議定書 1項에 對해서 다음과 같은 合意가 이루어졌다.

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線은 1944年 9月 12日字 議定書의 關係規定에 의해 決定된다.

同 國境委員會는 그 당시 占領軍의 此後의 合意에 따라 規定上 境界線에 變更된 地點이 있다면 그러한 地點의 正確한 境界線에 對하여 모든 根據를 土臺로 現場을 確認하고 表示한다.

國境線에 關한 國境地圖와 實用性을 감안한 國境標識를 雙方의 便宜를 위해 만든다.

標識를 위해 必要되는 技術的인 費用은 兩條約國이 分擔한다.

2. 現 國境線의 實用性이 현저히 缺如되어 있다면, 同 委員會는 土地와 產業道路의 使用에 關한 合意를 包含하여 改善措置를 강구해야 한다. 同 委員會는 其他 國境線과 관련하여 發生되는 副次的인 實際問題를 직접 解決한다.

3. 同 委員會가 取扱하는 문제에서 相互 意見差異가 發生한 경우 雙方은 問題를 그들의 政府에 위임하고 政府는 이를 協商을 통해 해결한다.

14) 行政交流에 關한 議定書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 首席代表의 聲明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機關과 獨逸聯邦共和國의 行政機關間의 現存 交流를 變更하거나 生計支援, 後見關係, 身元問題, 社會保障問題의 分野를 變更시킬 意向이 없으며, 오히려 現存 交流를 持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促進시킬 用意在 있다.

(出處: 1973年 2月 9日字 印刷物 7/153)

基本條約 署名後의 雙方 協商代表 聲明

1972年 12月 21日

1) 「바르」長官의 聲明

「콜」博士, 紳士, 淑女 여러분!

今日 署名된 條約은 兩獨國家 關係의 基礎입니다. 同 條約은 人間의 幸福을 위해서 그 위에 相互 關係의 建物を 쌓아올릴 礎石이 됩니다.

本 條約은 歐洲의 中央에 똑같은 두 個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國際法的 狀況에 意味를 賦與하고 있습니다.

獨逸帝國의 廢墟에서 發展된 두 個의 獨逸國家는 各其 相異한 社會制度和 다른 同盟에 所屬되어 있으며 많은 問題에서 서로 根本的 見解差異가 存在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두 獨逸國家는 本 條約을 통해서 平和, 暴力拋棄, 「유엔」憲章의 目標와 原則 존중, 兩獨逸國家의 同等權, 對內外問題에서 의 自主性 等に 관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獨逸國家는 平和共存 關係로부터 協力 關係로 發展하는데 必要한 相互 協力的 善隣關係를 위한 與件을 造成하게 됩니다.

人間의 利益과 歐洲諸國의 平和維持에 寄與하는 이러한 建設的인 目標는 兩獨逸의 相異한 目標와 심지어 民族의 問題 보다도 優先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今日 체결된 條約이 發効되면 離散家族問題의 解決 및 旅行緩和 그리고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等に 대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公約하였습니다. 本人은 이러한 公約을 該當 書翰을 통해서 確認하였습니다.

우리는 協商中에 以上과 같은 改善措置가 단 한번의 措置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關係正常化를 推進하면서 그것을 擴大하여 나간다는 點에 合意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곧 越境檢問所를 增設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書翰交換입니다.

今日 함께 署名된 條約 第9條와 관련한 書翰交換은 基本條約이 4大國의 權利와 義務를 侵害하지 못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同 書翰交換은 1971年 9月 3日字 協定속에서 4大國 政府代表가 合意한 內容 및 兩獨國家의 「유엔」 加入에 즈음한 4大國 政府代表의 聲明內容과 一貫性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延長은 西伯林에 관한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과 符合되도록 每境遇마다 協議하여 實施한다는 것이 合意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 常駐하는 獨逸聯邦共和國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의 利益을 代表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効합니다.

相互 原則的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兩獨國家가 서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길이 封鎖된

다면 관계 正常化를 위한 基本條約은 本來의 意味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兩獨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雙方的 共同關心事, 特히 歐洲平和保障에 有益한 問題等에 關해서 協調할 것에 合意하였읍니다.

聯邦政府는 明日 本 基本條約과 「유엔」加入 申請에 必要한 法律案을 聯邦議會에 提出할 것입니다. 基本條約은 發効되는 대로 그 成果가 發揮될 것입니다. 그러나 同 條約은 이미 그 以前에도 우리가 期待한 바와 같이 兩獨關係에 肯定的인 效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發足될 國境線 委員會는 明年 1月 後半期부터 作業을 始作할 것입니다. 「스포츠」交流를 強化하기 위한 會談도 始作될 것입니다. 記者活動에 關한 合意事項은 今日부터 發効됩니다.

그토록 長期間의 硬直關係, 아니 敵對關係를 고낸 우리가 아무런 摩擦없이 關係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움과 언짢은 인도 생길 것입니다. 雙方은 모두 測量을 끝내고 길을 닦기 위해서 時間, 忍耐 그리고 意志가 必要합니다. 雙方의 協商代表는 꾸준한 接觸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今日の 條約締結으로써 兩獨政府는 協商結果에 대하여 共同的 責任을 지게됩니다. 兩獨政府는 歐洲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에 參與하게 됩니다.

2) 「클」次官의 聲明

「마르」氏, 紳士, 淑女 여러분!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關係에 關한 基本條約 締結은 獨逸民主共和國이 始終一貫 主張해 온 平和政策과 一致합니다.

本人은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中央委員會 第1書記 「에리히·호네커」(Erich Honecker)가 今年 4月 「불가리아」共和國 公式訪問에 즈음하여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 實現 및 이를 위한 協定締結을 提議한 事實을 喚起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署名이 끝난 基本條約을 通해서 우리는 兩獨國家間의 正常的 善隣關係를 위한 普遍的 國際法的 基礎를 마련하였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은 本 條約을 通해서 條約當事者 相互間의 完全的 主權과 獨立 및 兩者間에 現存하는 國境線의 不可侵을 確認하였읍니다.

本 條約은 兩獨國家에게만 有益한 뿐 아니라 平和와 緊張緩和를 希求하는 모든 사람에게 有益한 것입니다. 本 條約은 平和를 保障하는 가장 重要的 條約들이라고 할 수 있는 「獨·소條約」 및 「獨·波條約」等을 制度的으로 補完해주는 主要한 一部分을 이루는 것입니다. 本 條約은 歐洲大陸에서 社會制度가 서로 다른 國家들사이에 平和共存을 具現하기 위한 獨逸社會主義統一黨 第8次大會 綱領 및 社會主義國家들이 共同 決議한 政策과 一致합니다.

本 條約이 成立된 前提條件은 獨逸民主共和國와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가 반드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符合되고 全世界의 自主的이며, 相互 獨立的인 國家들사이에 一般 慣例와 利益에 準하는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認識입니다.

本 條約이 締結됨으로써 兩獨國家의 自主權과 合法的 利益이 保障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細心한 配慮가 있으므로 해서 條約締結의 正當性이 立證되는 것입니다.

相互關係의 原則에 關한 條約締結만으로도 世界各國은 緊張緩和를 위한 重大한 意義로 評價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意義를 지니는 것이 바로 本 條約과 함께 今年 11月 8日에 署名, 交換된 兩獨國家의 「유엔」會員加入에 관한 書翰交換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國際機構에 不參했던 것은 國際機構 그 自體와 同 機構의 世界的 關心事에 不利한 結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週日 前에 獨逸民主共和國이 會員國 全體의 贊成으로 유네스코機構에 加入된 事實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象徵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同時加入은 무엇보다도 全會員國들과 同 國際機構 自體의 利益에 寄與하게 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滿 一年前부터 「유엔」會員 加入申請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도 條約批准節次와 함께 早速히 會員加入에 必要한 節次를 밝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黨과 政府側에서 數次 強調한 바와 같이 우리側은 基本條約의 즉각적인 發効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相應하는 措置를 取한다면 批准節次를 促進시킬 用意가 있습니다.

條約이 發効되면 兩獨國家間의 平和共存的 關係正常化의 基礎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비록 서로 社會制度가 相異하지만 相互 便宜와 利益을 위해서 實際的인 關係를 發展시킬 수 있고 또 發展시켜야만 할 여러가지 分野가 存在합니다. 이와같은 可能性에 대해서 條約 第7條 및 同 追加議定書는 言及하고 있습니다.

條約이 發効되면 必要한 協商이 本格的으로 進行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分野에서는 이미 協商이 始作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는 郵便·電信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습니다.

條約署名이 끝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線 表示作業을 하게 될 兩獨國家의 境界線委員會가 構成될 것이며 其他 境界線과 聯關되는 여러가지 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과 「바르」長官은 條約署名 前에 條約 第9條와 관련하여 그리고 條約發効와 同時에 追加로 道路越境哨所 4個所 增設問題에 관한 覺書에 署名하고 이를 相互交換하였습니다. 그리고 本人은 「바르」長官에게 傳達한 또 하나의 覺書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條約 發効後 處理하게 될 越境旅行 및 訪問交通의 緩和 및 其他 몇몇 措置와 관련된 情報를 通報하였습니다. 「바르」長官은 同 覺書의 接受를 確認하였습니다.

條約署名에 즈음하여 本人은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延長이 1971年 9月 3日字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에 따라 每境遇마다 協議해서 施行한다는 合意事項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 常駐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的 利益을 代表하게 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効합니다.

本人은 또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相互關係를 正常化하는 過程에서 共同關心事, 特히 歐洲에서의 平和保障과 같은 主要問題를 協議할 것에 合意한 事實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紳士, 淑女 여러분! 本 條約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새로운 關係의 原則을 이루는 것입니다. 兩獨國家는 서로 對立되는 社會制度를 侵害함이 없이 將次 善隣的 平和共存關係속

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順坦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보다 좋은 方向으로 案内하는 決定的 立場이 될 것입니다.

基本條約이 締結됨으로써 歐洲의 緊張緩和를 가져오는 時代가 開幕됩니다. 基本條約 그 自體가 歐洲緊張緩和의 時代의 要求입니다. 이 條約이 歐洲平和의 礎石이 되기를 바랍니다.

(出處: 1972年 12月 22日字 公報 第171號)

文 書 43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基本條約에 대한 備忘錄

1972年 12月 22日

A. 一 般 事 項

I

聯邦政府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相互관계에 관한 基本條約을 締結한 目的은 獨逸民族이 더 以上 斷絶狀態를 持續하는 것을 防止하는데 있다.

獨逸民族은 오늘날 서로 對立되는 政治的·社會的 制度를 가진 두개의 獨自의 國家에서 살고 있다. 이와같은 分斷狀態가 完全히 終熄될 展望은 보이지 않는다.

分割過程은 同時에 人間의 紐帶관계에 苦痛을 주었다. 分割이 斷絶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狀態下에서 政治的 任務는 人間 相互間的 接觸을 緩和, 改善시켜 줌으로써 무엇보다도 一體性에 대한 意志와 確信을 通해서 獨逸民族의 生存을 保障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獨逸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留保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的 關係를 暫定協定 方式으로 規制한다. 그래서 基本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이 1970年 1月 소련 및 「폴란드」와 締結한 條約들의 一部에 該當한다.

1971年 9月의 4大國 伯林協定도 主要內容으로 다루고 있는 基本條約은 歐洲平和維持를 바탕으로 해서 獨逸民族의 自決에 의한 再統一을 達成하려는 聯邦政府의 政策과 一致한다.

聯邦政府는 統一의 目標를 계속 追求할 것이라는 그의 立場을 協商中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게도 항상 分明히 하였다. 이와같은 聯邦政府의 立場은 以外에도 基本條約 署名 當일에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에 傳達된 한 覺書속에서도 確認되었다.

II

1969年 10月 28日 「빌리·브란트」聯邦首相은 그의 政策演說을 通하여 兩獨間에 相互 同等한 資格에 基礎해서 政府次元의 條約을 締結하여 서로 協力을 圖謀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게 거듭 提議하였다.

聯邦政府가 協商目標로 提起한 것은 우선 兩獨國家間的 硬直된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이를 契機로 하여 規制된 共存關係에서 規制된 協力關係로 發展하는 問題였다.

1969年 12月 17日 獨逸民主共和國 政府 內閣首相은 聯邦政府 大統領에게 보낸 그의 書翰에서 獨逸

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相互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正常化 樹立과 同時에 根本적으로 現存 國境線의 認定, 大使交換, 「유엔」同時加入等を 規定한 條約草案을 提議하였다. 細部事項의 相互關係는 別途의 條約締結을 通해서 規制한다는 것이었다.

1970年 5月 21日 聯邦首相은 「캅셀」에서 또다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 內閣首相에게 20個項으로 된 包括的인 聯邦政府側의 協商提案을 내놓았는데 그 속에는 相互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國家關係의 規制, 相互協力 및 緊急한 問題의 解決 等에 관한 原則과 條約要綱이 包含되어 있었다. 同 20個項目과 獨逸民主共和國側 條約案을 함께 檢討해서 合意를 보기 위한 協商을 始作하자고 한 聯邦首相의 提議에 대해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同意를 하지 않고 研究할 時間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1970年 8月 12日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間의 條約이 署名되고 또 4大國의 伯林協定이 完全 妥結된 후에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1970年 10月 29日 相互 緊張緩和 및 共同關心事에 寄與할 수 있는 問題를 協商하기 위한 意見交換을 始作할 것에 合意하였다.

1970年 11月 27日 「에곤·바르」次官과 「미카엘·쿨」次官을 協商代表로 한 兩側의 代表團이 東伯林과 「본」에서 번갈아 接觸을 進行하였다. 對話의 中心은 처음부터 兩獨國家 相互關係의 原則問題였다.

1971年 9月부터 雙方代表의 接觸은 그간에 合意된 4大國 伯林協定の 施行協定 및 兩獨國家間의 交通協定에 관한 正式 協商으로 進展되었다.

1972年 4月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中央委員會 第1書記 「에리히·호네커」는 「소피아」에서 行한 그의 演說을 通해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平和共存關係, 즉 兩獨國家의 平和와 人民들의 利益을 도모하는 協力關係로 發展하기 위한 正常的 善隣關係』를 樹立할 수 있다는 希望을 表明했다.

그는 關係正常화를 樹立하기 위한 協議를 하자고 提議하였다.

1972年 5月 10日 聯邦首相은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그의 政策演說을 通해 兩獨國家間의 相互關係에 대한 根本問題를 條約상으로 規制하기 위하여 協商할 用意가 있다는 聯邦政府의 立場을 表明하였다.

交通協定 및 4大國協定 最終議定書가 署名된 다음에 이와같은 協商이 1972年 6月 15日 始作될 수 있었다.

1972年 8月 9日 內閣은 同 協商을 受諾했다.

1972年 11月 7日 內閣은 同 協商의 結果에 同意하였고 1972年 11月 8日 假調印에 同意하였다.

1972年 12月 15日 內閣은 條約締結을 議決하였으며 1972年 12月 21日 伯林에서 正式 調印되었다.

III

1972年 5月 17日 獨逸聯邦議회가 滿場一致로 採擇한 決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正常화를 推進한다. 關係正常化의 出發點은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國家의 사람들과 制度의 相互關係에까지 充分히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은 다음 事項을 參酌한다.

—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의 規制되지 않은 相互關係에 終止符를 찍는다. 基本條約은 兩獨國家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合理的인 與件을 造成하며 基本原則을 確固히 設定한다.

- 基本條約은 獨逸의 再統一問題를 留保하며 兩獨國家가 서로 外國이 되는 것을 防止한다. 平和條約이 締結될 때까지 獨逸問題 全體와 伯林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利 및 義務는 存續된다. 基本條約은 더 나아가서 兩獨國家의 人的 接觸을 改善시키기 위한 與件과 바탕을 마련하고 이를 通해서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紐帶意識을 維持·強化한다.
- 基本條約은 將次 兩獨國家가 國際機構에서 協力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未解決狀態로 남아있는 獨逸內部問題를 處理하도록 도와준다.

兩獨國家는 相互間의 國家的 地位를 認定하고 유엔會員加入에 必要한 諸般措置를 取한다.

- 基本條約속에는 兩獨國家의 相互關係에 대한 規制와 함께 條約을 通해서 사람들에게 實質的인 利得을 줄수 있고 또 時間이 지나감에 따라서 實質的인 事情이 보다 改善될 수 있도록 하는 規制까지 包含시켜야 한다는 聯邦政府의 構想이 反映되어 있다.

根本的인 政治的 對立과 法的 見解差異가 障礙로 되지않은 限度內에서 全分野에 걸친 協力を 위해 努力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忍耐와 愼重의 過程이 必要하며 마침내 그 結實은 獨逸問題의 漸進的 改善으로 나타날 것이다.

- 西伯林에 관한 兩側의 政策表明에서 重要한 前提가 되는 것은 條約當事者들이 兩獨國家間의 問題를 1971年 9月 3日字의 4大國協定에 符合되도록 解決한다는 點이다.
- 1972年 12月 21日 條約締結을 契機로 雙方은 合意된 口頭聲明을 通해서 政治問題에 관한 協議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雙方의 合意는 國際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共同의 努力에 도움이 될 것이다.

B. 特 殊 事 項

條約前文의 첫 두文段에서 兩獨國家는 『平和維持에 대한 그의 義務』를 公約하고 있다.

雙方은 『歐洲의 緊張緩和 및 安全保障에 寄與하겠다』는 그의 決意를 明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雙方의 認識의 出發點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兩獨國家 相互關係의 秩序가 歐洲中央의 平和的 發展과 平和維持 그리고 歐洲諸國間의 關係改善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前提가 된다는 것이다.

條約前文 세째 및 네째 文段에서는 武力行使拋棄가 平和保障의 基本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런데 同 武力行使拋棄는 本 基本條約에서 뿐만 아니라 1970年 8月 12日 체결된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과의 條約 및 1970年 12月 7日 체결된 「폴란드」人民共和國과의 條約속에서도 가장 重要한 緊張緩和政策의 原則으로 合意되어 있다.

條約前文 다섯째 文段에서는 주어진 歷史的 與件과 根本問題에 대한 條約雙方의 見解差異를 前提로 基本條約이 締結되어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이 文段은 基本條約이 暫定協定の 性格을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民族問題에 대한 見解差異의 存在를 強調하고 있는 點은 獨逸問題를 留保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다.

條約前文 마지막 文段은 基本條約의 成果가 兩獨國家의 사람들에게 惠澤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條約雙方은 相互協力を 위해서 努力한다. 다시 말해서 雙方은 條約上의 諸合意規定을 履行함으로써 相互關係의 發展의 改善을 위해 努力할 것이다.

第1條는 相互 同等資格에 基礎한 正常的 善隣關係를 發展시키려는 雙方의 目標을 強調하고 있다.

正常的 相互關係를 위해 努力한다는 말은 緊密한 地理的, 人間的 相互關係를 意味하는 「善隣」이란 表現으로 分明히 하고 있다.

同等資格에 基礎한다는 말은 兩獨國家가 獨逸領土內에서 어느쪽도 다른 한쪽의 위에 君臨할 수 없는 相互獨立의 旨을 意味한다.

第2條는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이 條約當事者의 相互關係를 樹立하는 指針이 되어야 함을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目的과 原則의 一部가 明示되어 있는 바, 그 중 主要한 것은 主權平等, 自決權 그리고 人權保障등이다.

第3條 1項은 이미 上記 第2條에서 指摘된 義務를 條約雙方이 具體化하였다. 條約 3條 1項은 兩獨國家 相互間에 武力行使拋棄, 平和的 手段에 의한 모든 紛爭問題의 解決等의 諸原則을 無條件 適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3條 2項은 第1項의 相互武力行使 拋棄問題를 具體化하였다. 條約雙方의 現存하는 國境線에 대한 不侵害 規定은 境界線問題의 平和的 그리고 相互合意에 의한 訂正, 取消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다.

領土保全에 대한 完全한 尊重義務는 條約雙方이 現存하는 事實上의 實體를 暴力威脅 또는 武力行使를 통해서 變更시키지 못한다는 義務를 意味한다.

第3條는 追加議定書 第1部 및 國境線委員會의 任務에 관한 議定書 解說文 등으로 그 內容이 補完되어 있다. 兩獨政府의 代表로 構成되고 또 基本條約 署名後 이미 作業이 着手된 同 國境線委員會는 두가지의 任務을 賦與받고 있다.

그 첫째 任務은 1944年 9月 12日字 獨逸占領地域 및 大柏林市 管理에 관한 「런던」議定書와 그 後의 當時 占領國들의 合意事項에 의해서 만들어진 境界線 標識를 點檢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任務속에 境界線 變更問題는 包含되어 있지 않다.

둘째 任務은 境界線과 關係되는 諸般問題를 規制하는 일이다.

以上の 두가지 任務은 追加議定書 및 議定書 解說文 속에 明文化될 것이다. 「同時에」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은 두가지 任務가 同一한 價値를 가지며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意味가 된다.

第4條는 第6條와 마찬가지로 相互 獨立性과 自主性을 존중하는 原則을 前提로 한다.

兩獨國家中 어느쪽도 國際적으로 다른쪽을 代表할 수 없으며 代行할 수 없다.

第5條는 兩獨國家가 緊張緩和 및 安全保障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을 多務의 水準에서 傾注하겠다는 立場을 여러가지로 明示하고 있다.

第1項에서는 歐洲諸國과의 平和的 關係促進 및 歐洲의 安全과 相互協力에의 寄與에 관해서 言及하고 있다. 第2項에서는 歐洲에서의 相互 均衡的인 兵力 및 軍備減縮의 原則에 관한 一般의 態度表明이 包含되어 있다.

第3項에서는 雙方이 全般的이고 統制된 完全한 軍縮을 目標로 하는 軍備制限 및 軍備縮小를 위해 協力한다는 共同의 立場을 明示하고 있다.

第6條 1項은 雙方의 條約當事者가 兩獨國家 相互間의 獨立性과 自主性의 原則에 따라 한쪽의 主

權이 다른쪽의 國家領域으로 擴大될 수 없다는 當然한 結論을 強調하고 있다. 各己 對內外問題를 規制할 수 있는 條約雙方의 權利는 全的으로 各者의 主權領域內에서만 行使된다. 이에 따라서 雙方은 條約相對方의 主權領域에 屬하는 義務와 權能을 존중해야 한다. 第6條 2項에서는 이를 明示하고 있다. 第6條는 條約雙方이 各者의 憲法領域 以內에서만 義務를 지게 하고 있다.

財産 및 國籍問題에 關해서 基本條約에는 直接的 또는 間接的 言及이 없다. 이에 關해서는 財産問題에 對한 議定書 附錄 및 國籍問題에 對한 獨逸聯邦共和國의 留保條項에서 자세히 說明될 것이다.

第7條 1項은 하나의 一般條項이다. 雙方은 兩獨國家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實際의이며 人道的인 問題를 規制하겠다는 立場을 強調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兩獨國家間의 人的 接觸과 交流가 漸次 惡化되고 있던 狀態에서 方向을 바꾸어 雙方이 現在의 諸障 障礙를 段階的으로 解消함으로써 漸次 人道的인 問題를 解決하도록 義務를 다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當面問題를 規制하기 위하여 어떤 分野에서 具體的인 措置를 取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關해서는 한 覺書交換을 통해서 合意된 바 있다.

즉,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는 家族再會, 相互訪問往來, 觀光旅行, 그리고 非商業性 物資交流 等이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協商中에 基本條約 發效後 그들이 具體的으로 取해야 할 措置가 어떤 것인가에 關해서 說明한 바 있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意見을 基本條約 假調印時에 한 解說文을 통해서 公開한 바 있다.

『條約發效後 關係正常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라는 表現은 더욱 改善시켜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基本條約發效와 同時에 實現될 顯著한 旅行緩和措置의 한 實例는 境界線 近處地域의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이 境界線 近處地域의 獨逸民主共和國住民을 訪問하여 一泊滞在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立證된다. 또 하나의 主要 實例로는 두번째의 覺書交換을 통해서 새로운 4個所의 道路越境檢問所를 增設하기로 合意한 것인데 이로써 境界線 近處地域의 交通問題' 뿐 아니라 同時에 人的 往來 全般에 걸쳐서 改善策이 마련된 것이다.

第7條 2項은 兩獨國家間의 全般的 條約政策의 原則과 雙方이 協定을 통해서 相互協力을 發展促進시킬 主要한 分野를 明示하고 있다.

第3項은 追加議定書 II部를 指摘하고 있는데 同 內容에는 第7條에 規定된 分野 및 기타 여러 分野中 將次協定에 包含시킬 範圍에 關해서 合意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重要한 點은 兩獨國家間의 交易이 既存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該當 法秩序內에서 더욱 發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交易關係의 特色은 계속 維持될 것이다.

우편 및 通信分野에 있어서도 既存 合意事項 및 雙方에 有益한 規定은 계속 施行되며, 將次 체결되는 우편 및 通信協定에 受容된다.

協商은 始作되었다. 1972年 11月 8日字 覺書交換을 통해서 合意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모든 協定과 規定은 앞으로 체결될 協定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有效하다.

條約의 結果 모든 有益하고 簡單한 實質問題들이 더욱 改善되어야 한다는 原則은 이미 獨逸民主共和國 協商代表에게 通報된 바와 같이 行政交流에 關한 議定書 解說文속에도 強調되고 있다.

雙方은 條約發效 以前인 1972年 11月 8日에 한 覺書交換을 통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的 記者가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보다 自由롭게 活動할 수 있고 또 獨逸民主共和國 記者가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에서 보다 自由롭게 活動할 수 있게 하는 問題에 合意하였다.

第8條는 常駐代表部 交換에 關해서 規定하고 있다. 兩獨國家는 獨逸안에서 서로 外國이 아니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은 外交關係를 樹立할 意向이 없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常駐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的 利益을 代表한다.

第9條는 條約雙方이 過去에 締結한 條約 또는 雙務的, 多務的 條約들이 基本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1952年 5月 26日 및 1954年 10月 23日字 獨逸聯邦共和國과 3大國間의 條約內容도 包含된다.

第9條의 規定은 또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가 基本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이 點을 特히 重要視하는 理由는 獨逸問題에 대한 平和條約의 規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限 獨逸問題 全體 및 伯林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가 存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條約雙方은 第9條와 關한 書翰交換을 통해서 3大國政府 및 소련政府에 各各 通告한 覺書內容과 同一한 原文을 서로 交換하였다. 同 覺書에서 雙方은 4大國의 權利와 義務 및 이와 關連된 4大國間의 合意事項 그리고 決議, 慣例 등이 本 條約으로 因해 侵害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第10條는 本條約의 有效期間 및 기타 節次에 關한 規定이다.

(出處 : 1973年 2月 9日字 油印物 7-153)

文 書 44

「빌리·브란트」聯邦首相의 施政演說(拔萃)

1973年 1月 18日

紳士, 淑女 여러분!

本人은 各 政黨을 代表한 議員 여러분들이 平素의 政見差異를 超越해서 1969年 10月 本人이 行한 施政演說中の 基本方針, 다시 말해서 2次世界大戰의 結果와 「히틀러」政權의 反民族行爲로 말미암아 獨逸民族에게 派生된 諸般 問題는 終局的으로 歐洲平和秩序의 테두리內에서 解決되어야 한다는 方針에 贊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또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獨逸民族이 다른 모든 民族과 마찬가지로 自決權을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變更시킬 수 없다는 點을 強調하였습니다.

當時 本人은 또한 앞으로 우리가 解決해 나가야 할 實用政策의 課題는 兩獨國家間의 現 硬直關係를 解消함으로써 獨逸民族의 一體性を 保存하는 것임을 強調하였습니다.

本人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의 目標와 任務로 和合할 때 그 最善의 方法을 찾아내기 위한 우리의 討論은 妨害와 對立이 없이 進陞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協力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지난날의 危機를 背景으로 評價함으로써만 그 正當性이 돋보이는 伯林協定, 바로 이 伯林協定이야 말로 兩獨國家間의 關係改善을 出發시킨 關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本人은 또한 우리가 1969年度의 施政演說속에서, 그리고 1970年初에 「캄셀」

의 20個項目에서 具體化한 바와 같이 東伯林 政府側도 이제 『規制된 共存關係를 지나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하는 것을 希望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年間에 이루어 놓은 成果를 그 누구도 過小評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멀고 順坦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兩獨國家의 國民들과 政府들은 多年間의 斷絶과 敵對關係를 끝내고 相互 接觸을 體驗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對立이 오래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發展에 基礎가 되는 基本條約이 政治的, 法律的 次元으로까지 그 結實을 맺고 兩獨國民들의 利益을 남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紳士, 淑女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단번에 到達할 수 없는 目標을 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兩獨國家 相互關係의 規制는 分斷의 뼈아픈 遺産인 人間的 問題에 寄與할 수 있어야 합니다.

聯邦政府는 다른 當事國들과 마찬가지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을 重要한 國際的 所得으로 評價하고 있습니다. 同 協定의 意義는 單純히 西伯林이라는 한 特定 領土와 聯邦國家와의 結束關係를 維持하고 發展시킨다는 規定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當事國들이 보다 큰 關心을 두고 있는 것은 1971年~1972年間의 成果가 다만 協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歐洲中心의 緊張緩和에 充分히 寄與하도록 活用되어야 한다는 點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伯林은 緊張緩和을 위해서 重要한 그리고 自然스러운 機能을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聯邦政府는 앞으로도 西伯林 當局을 最大限 支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의 政治體制 및 社會制度를 反對하여 왔으며 지금도 反對하고 있습니다. 同時에 우리는 우리의 體制와 制度를 反對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政策이 變化될 것이라고 期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兩獨政府는 基本條約을 通해서 이러한 對立을 超越하여 各者의 義務를 履行하고 武力行使를 拋棄한다는데 合意하였습니다. 雙方은 서로의 對立을 止揚해서 平和를 優先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民族問題 보다도 平和確保問題를 優先시키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獨逸民族이 歐洲市民을 위해 할 수 있는 奉仕입니다.

兩獨國家間의 共存關係로 부터 協力關係로의 멀고도 어려운 過程을 밝아 나감으로써만 獨逸民族에게 希望을 줄 수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發展에 관한 報告書가 議會에서의 基本條約 處理를 위해서 提出될 것입니다.

獨逸問題 및 兩獨國家間의 問題는 앞으로도 聯邦議會에서 우리들의 業務를 끊임없이 바쁘게 할 것입니다.

〈出處：1973年 1月 19日字 公報 第6號〉